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00-01
연 구 보 고	2010-56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2010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연구보고 2010-56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2010.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택 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은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 보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장 연 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보 조 연 구 원 : **박 은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이 재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결혼이 늦춰지고 출산의 연기와 기피가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바야흐로 한국사회의 최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가족은 형태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특정한 가족형태에 부여되어왔던 정당성의 토대 역시 크게 약화되는가 하면, 가족의 개인화 경향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이혼 및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역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모들은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사회적 낙인과 함께 양육자인 동시에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양육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파악을 통해 미혼모의 자녀양육실태와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이들에게 시급한 지원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전개되어온 한국의 미혼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에 대한 정의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잠정 추계되어온 미혼모 가족의 수와 이들 가구의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실태와 함께 미혼부와의 관계 및 미혼부의 아버지 역할 수행여부,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위기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망과 동원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양육미혼모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삶에서 현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이 갖는 의미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조망하고, 향후 이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자녀양육을 위한 미혼모 가족의 사회적 자본의 양과 특성이 어떠한가를 가늠하기 위해 이들의 교육수준과 함께 부모의 교육 및 직업특성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업훈련과 직장경험 등을 통해 실제로 이들의 자립기반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혼모들이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이들에게 지원가능한 공·사적 네트워크의 유무 및 특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즉 이들의 원가족 및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미혼한부모 가족의 효과적인 지지망으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 지점의 범주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혼모들이 알고 있는 현재 한부모지원정책의 내용과 수준, 시설평가,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서비스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미혼모들의 지원욕구를 그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혼모지원정책이 이들 가구의 생애주기와 특징에 따라 더욱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는 미혼한부모를 지원하는 국내외 정책동향 및 구체적인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미혼모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언하였다.

이같이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계획된 연구절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미혼모 관련 연구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관점을 정립함은 물론 문항지표의 구성 및 국내외 정책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미혼모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우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정책현장에 있는 관계자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II. 기존연구 검토 및 미혼모 현황

이 장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선행연구를 위시하여, (양육)미혼모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대략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 미혼모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미혼모의 발생 원인이나 실태파악과 같은 기술 분석에 치중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자발적으로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 연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험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점차 10대 미혼모 또한 증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성경험 및 임신과정에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규명하거나 일탈행동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 혹은 성경험 및 임신·출산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혼란이나 미숙한 의사소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청소년 미혼모들 가운데 점차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임신과 출산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10대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경우 기본권인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일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미혼모는 미혼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을 하거나 별거·이혼·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미혼모는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산하지 않은 임산부는 법률적으로 미혼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법률혼에 진입하지 않은 여성들의 자녀출산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거의 없다. 예컨대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미혼모 및 입양아동 수의 추이, 인구센서스 자료의 미혼한 부모 가구 수, 혼외출생아 수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의 증가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이들 가구 수를 추정한 연구가 없지 않으나, 이들의 추정치 역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양육미혼모의 정확한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정책을 설계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혼모자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생산과 이들 생활상태에 대한 자료구축은 매우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Ⅲ. 미혼모의 자녀양육실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양육미혼모들의 자녀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혼모들은 대부분 한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응답자의 82.8%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6～11세에 해당하는 경우(15.3%)도 적지 않아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원서비스의 확대,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연령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만 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돌보미 서비스 및 보육지원 서비스와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반면, 만 6～11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예체능 등 특기교육과 기초교과 지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인 학령기에 접어드는 만 12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예체능 등 특기교육과 함께 진학지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 자녀연령별로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되고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의 자녀돌봄 실태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와 취학자녀 모두 미혼모 본인이 주 돌봄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본인 이외의 가족과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의 돌봄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관련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공적 서비스 이용시 추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만 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 및 서비스의 확충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자녀양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어려움 또한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미혼모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양육시간 부족’, ‘자녀의 훈육지도’ 등이 있었다. 이를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경우, 초기 자녀 양육과정에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의 부족, 자녀 양육비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반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공적 돌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과 적절한 훈육 지도의 어려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제시되었다. 특히 공적 돌봄의 공백은 사교육비 부담과 연계되어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감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양육의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자녀와의 갈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자녀와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된 어려움은 미혼모 가족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에 대한 수용성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가족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적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추가적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미혼부들은 어리고, 무능력한 아버지들이 아니며, 자녀의 존재 또한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혼부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이들 가운데는 무직이나 학생과 같이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나, 경제적 부양능력을 갖춘 집단 또한 적지 않았다. 또한 미혼모들의 절반 이상은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혼부에게 기대하는 아버지 역할로는 자녀양육비 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미혼모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양육비를 계기로 원치 않는 미혼부와의 교류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함께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인지도나 절차의 번거로움, 소요되는 시간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급이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및 인지시기로부터 미혼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미혼모의 자립 여건,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차별경험

본 장에서는 미혼모 집단의 자립기반 정도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지망, 그들의 일자리 경험 및 차별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양육 미혼모들의 정규학력을 살펴보면 고교 재학및 졸업자 비중이 가장 높으나 대학재학 및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그룹의 비중도 32.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 미혼모 중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15.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의 부친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단순노무직이 많았으나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경우는 관리직 및 전문직(14.1%)이었다. 특히 10대 연령층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 부친을 둔 경우가 많았다(17.1%). 이는 양육미혼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직업훈련 수강 경험은 35.6%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수강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직업훈련이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추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66.9%나 되는 등 양육미혼모들의 직업훈련 요구와 참여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훈련 수강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훈련시간 중 자녀 돌봄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47.9%)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시간부족을,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관련 정보의 부족(14.7%)을 들었다.

한편 양육미혼모의 주거 실태는 월세나 기타와 같이 불안정한 주거 형태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46%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1천300만원 정도였다.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총소득은 78만 5천원 선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일자리가 없는 양육미혼모들의 월평균 비근로소득(이전 소득)은 41만2천원에 불과했다. 일자리가 있는 대재 이상 고학력 양육미혼모들의 총소득도 일반 여성의 동일 학력 소지자의 근로소득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양육한부모의 총소득은 정부지원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그룹의 총소득보다 월등히 낮아, 정부의 소득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양육미혼모가 얼마나 사회적 지지망 속에 잘 통합되어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망을 정부로부터 지지, 부모로부터 지지, 일상생활에서 지지망으로 나누고, 각 영역 별로, 예컨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 생존한 부모와 아무런 접촉이 없는 그룹,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룹을 각각 정부지원으로부터 고립자, 부모로부터 고립자,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자로 정의하였다. 조사 결과 정부로부터 고립자는 전체 응답자의 22.4%, 부모로부터 고립자는 부모가 생존한 전체 응답자의 9.0%,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자는 전체 응답자의 13.2%에 달했다. 따라서 이들 고립자 그룹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이 돌보미나 가사돌보미 금융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육미혼모 여성들 중 일자리가 있는 여성은 전체의 45%로서, 전체 여성 취업률

인 47.3%를 밑돌고 있다. 특히, 자녀 연령이 2세 이하인 집단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24%로 가장 낮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 집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직이 가장 많고(35.3%),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24.5%, 관리직 및 전문직(19%), 단순노무직(15%) 순이었다.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전일제 일자리 취업자의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도 39.8%나 되었다. 20대 이하 젊은층 혹은 중재 이하 저학력그룹에서는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6시간, 평균 근로소득은 월 105.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중에서 특별히 평균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은 시설 거주자, 20대 이하 젊은 층 및 고교 이하 저학력 그룹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비중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64.8%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그 중 73.4%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지원 수혜자나 비수혜자 사이에 일자리를 원하는 미혼모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부의 생활비지원이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를 크게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양육미혼모들이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비교적 많이 느끼는 영역은 '관공서 등에서 관련 업무를 볼 때'였으며, 이웃관계, 직장, 자녀 학교생활 등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쪽으로 응답분포가 기울었다. 전체 평균에서 가장 차별 인지 정도가 높았던 영역인 관공서에서의 차별을 살펴보면, 취업자, 재가, 2·30대 이상 연령층, 고재 이상의 상대적 고학력층이 각각 관공서에서의 차별 경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그룹이 상대적으로 관공서 출입 빈도가 잦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분석 결과는 관공서 출입 자체가 양육미혼모들에게는 스티그마라고 보는 해석도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양육미혼모의 자립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그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미혼모에게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한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인 읍면동사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새일센터 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미혼모에 한해 보육수당 혹은 보육료 환급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미혼모 집단에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말단과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양육미혼모의 지원과 관리가 읍면동사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고용지원센터와 새일센터 등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자체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추가나 강화가 불가능하다면, 전달체계간 연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링킹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Ⅴ. 미혼모의 정책욕구

본 장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미혼모들의 정책욕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집단이 발견된다. 한 집단은 주로 24세 이하의 연령이 낮은 청소년미혼모로서,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학력수준도 낮으며 현재 비취업 중이고 시설에 머무르는 집단으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혼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집단은 25세 이상 성인 미혼모들로서 자녀도 3세 이상으로 비교적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도 고졸 또는 대졸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취업상태인 경우가 많고 시설보다는 재가인 경우가 많다. 이들 집단은 연령이나 학력, 노동시장참여 등의 측면에서 자립환경이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고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한부모와 큰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보인다.

둘째, 전반적인 미혼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낮고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으며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시설에서 출산을 경험한 후 아직까지 퇴소하지 않았고 자립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혼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고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시설경험이 없는 재가미혼모들은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음으로 현재 미혼모 정책은 미혼모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설을 거치지 않는 미혼모의 규모나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가미혼모의 과반수 이상이 입소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입소경험이 없는 재가 미혼모가 실제로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 중에서도 연령이 높고 취업상태로 자립환경이 되는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어서' 시설에 남아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패러다임이 현재와 같이 시설을 중심으

로 하는 정책경향에서 보다 일반적 거주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특히 양육미혼모과 관련된 정책욕구를 분석해본 결과, 생계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 등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수혜율도 가장 높으면서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비지원의 경우 자립환경이 되지 않는 미혼모들이 시급한 정책으로 꼽고 있으나 실제로 만 2세미만 아동을 둔 미혼모의 경우 수혜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집단별로는 청소년미혼모들의 경우, 학습지원과 자산형성계좌 등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정책에 대해 2/3가 인지하고 있고 1/3이 수혜를 받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환경이 되는 성인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일반적 주거형태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고 시급한 서비스로 보고 있었으며, 그 외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Ⅵ. 미혼모 정책동향 및 지원서비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현황과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외 지원프로그램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한국 미혼모 지원 정책은 미혼모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정책(한부모가족지원법)과 소득 및 자녀연령에 따른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적 정책(기초생계급여, 아동보육지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혼모의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로는 크게 기초생계급여, 주거관련 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 보건과 영양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는 저소득 미혼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신을 전후로 가족과 심한 갈등과 단절을 경험하는 미혼모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비록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서 쉽게 제외되곤한다. 물론 시설 밖에서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많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양육미혼모를 위한 주거정책으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과 저소득층 주택정책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미혼모 정책의 중심은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심을 이루는데,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시설은 출산 전후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사회 주거공간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의 대상이 기초생계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타 저소득층으로서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되기 때문에 현재 이 혜택을 받는 미혼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구 소득수준별, 자녀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수준별로 제공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5만원이라는 양육수당(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5만원,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는 월 10만원)은 입양가정에서 받는 아동수당이 10만원인 것에 비해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상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2007년부터 실시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더해 전국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과 영양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전후 진료, 아동 예방접종 및 여타 보건서비스, 여기에 더해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청소년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수혜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자로 아동수당, 의료비 제공, 학습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만 24세 이하의 미혼한부모만이 수혜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의 양육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자립지원프로그램들이 부족한 반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양육지원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시행률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시 응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걸쳐 17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 실시 프로그램들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많아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양육미혼모를 위한 해외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미혼모 정책은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성교육 프로그램등과 같은 보수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영국은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아 미혼모의 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정책과 함께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파워 프로그램'(Power Program)을 운영하여 출산을 전후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미혼모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미혼모만을 위한 특화된 법이나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자가정의 한 유형에 포함시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정책의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혼모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 미혼모 지원이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미혼한부모 가족의 특성이 일반 한부모가족과 다르며 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미혼부 프로그램,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확대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미혼모부자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단체, 기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혼모부자가족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개별 미혼모 지원 기관 및 시설에 유용한 정보 및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핵심 기관과 미혼모의 개별화된 욕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양육미혼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매우 다른 서비스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동적이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인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과의 연동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옹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시에 미혼모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 5
3. 연구 방법 및 지표의 구성 ····· 7
4. 조사대상자의 특성 ····· 13

Ⅱ. **기존연구 검토 및 미혼모 현황** ····· 17

1. 선행연구의 검토 ····· 19
2. 미혼모의 개념과 추이 ····· 22

Ⅲ. **미혼모의 자녀양육실태** ····· 33

1. 미혼모의 자녀양육 현황 ····· 35
2. 자녀양육의 어려움 ····· 46
3. 미혼부와의 관계 및 양육지원 ····· 58
4. 요약 및 논의 ····· 67

Ⅳ. **미혼모의 자립 여건,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차별 경험** ····· 71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지망 ····· 73
2. 직업경험 및 현재 고용상태 ····· 104
3. 비취업자의 취업의지 및 구직활동 ····· 113
4. 차별경험 ····· 117
5. 요약 및 논의 ····· 124

Ⅴ. **미혼모의 정책욕구** ····· 133

1.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 135
2. 미혼모시설의 이용경험 ····· 145
3. 양육미혼모의 지원정책 욕구 ····· 151
4. 요약 및 논의 ····· 173

Ⅵ. **미혼모 정책동향 및 지원서비스** ····· 175

1. 한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현황 ····· 177
2.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 196
3. 정책 제언 및 과제 ····· 228

■ **참고문헌** ····· 245

■ **부　　록** ····· 251

■ Abstract ····· 273

표 목 차

<표 Ⅰ-1>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 8
<표 Ⅰ-2> 설문조사의 주요 지표 및 문항 수 ····· 11
<표 Ⅰ-3> 양육미혼모의 연령분포 ····· 13
<표 Ⅰ-4> 양육미혼모의 교육수준 ····· 14
<표 Ⅰ-5> 양육미혼모의 자녀연령분포 ····· 15
<표 Ⅱ-1> 연도별 미혼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 ····· 24
<표 Ⅱ-2> 연도별 미혼모 양육 아동 추정치 ····· 27
<표 Ⅱ-2-1> 2010년 자녀 연령별 양육미혼모 수 추정치 ····· 28
<표 Ⅱ-2-2> 연도별 미확인 아동의 소재 추정 ····· 28
<표 Ⅱ-3> 한국의 한부모가구 및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 29
<표 Ⅱ-4> 18세 미만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 30
<표 Ⅱ-5>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한부모가족의 추정 ····· 31
<표 Ⅲ-1> 자녀양육 결정시기 ····· 36
<표 Ⅲ-2> 자녀양육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 37
<표 Ⅲ-3> 미취학 자녀 주 돌봄자 ····· 40
<표 Ⅲ-4> 미취학 자녀 돌봄기관 이용 여부 ····· 41
<표 Ⅲ-5> 자녀양육으로 인한 변화 ····· 45
<표 Ⅲ-6> 자녀양육 포기 욕구 경험 정도 ····· 47
<표 Ⅲ-7>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 49
<표 Ⅳ-1> 학력분포: 거주특성별 ····· 74
<표 Ⅳ-1-1> 학력분포: 연령별 ····· 74
<표 Ⅳ-1-2> 학력분포: 정부지원유무별 ····· 74
<표 Ⅳ-2>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 분포 ····· 75
<표 Ⅳ-3> 학업 중단 사유별 분포 ····· 76
<표 Ⅳ-4> 학업을 계속할 의향 유무 ····· 76
<표 Ⅳ-5>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 77
<표 Ⅳ-6> 부친 직종(생존시만 응답) ····· 78

<표 Ⅳ-7> 임신 혹은 출산 후 정규학교 이외의 직업교육(훈련)수강 경험 ····· 79
<표 Ⅳ-8>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비 주 부담자 ····· 80
<표 Ⅳ-9> 직업훈련 이수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82
<표 Ⅳ-10>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의 자립 기여 정도 ····· 83
<표 Ⅳ-11>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85
<표 Ⅳ-12>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이수 필요성 평가 ····· 87
<표 Ⅳ-13> 양육미혼모의 주거 점유 형태별 분포 ····· 88
<표 Ⅳ-14> 부채 여부 및 부채액 ····· 89
<표 Ⅳ-15> 집단별 부채규모 비교 ····· 90
<표 Ⅳ-16> 저축 여부 ····· 91
<표 Ⅳ-17> 집단별 월평균 저축액 차이 비교 ····· 92
<표 Ⅳ-18>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 평균(표준편차) ····· 93
<표 Ⅳ-19> 집단별 총소득 평균 비교 ····· 94
<표 Ⅳ-20> 집단별 평균 소비 비교 ····· 95
<표 Ⅳ-21> 집단별 정부지원 수혜액 비교 ····· 96
<표 Ⅳ-22> 부모 생존 여부 ····· 97
<표 Ⅳ-23> 부모와의 만남 ····· 97
<표 Ⅳ-23-1> 부모와의 연락 ····· 97
<표 Ⅳ-24> 부친 혹은 모친과의 완전단절 ····· 98
<표 Ⅳ-25> 상황별 도움 요청 1순위 대상자 분포 ····· 98
<표 Ⅳ-26>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네트워크 ····· 99
<표 Ⅳ-27> 정부 지원 비수혜자 비중 ····· 100
<표 Ⅳ-28> 양친 모두로부터 고립 ····· 101
<표 Ⅳ-29>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된 사람 ····· 102
<표 Ⅳ-30> 취업여부별 분포 ····· 105
<표 Ⅳ-31> 현재 취업 직종 ····· 106
<표 Ⅳ-32> 현재 직장 고용 ····· 107
<표 Ⅳ-33> 현 직장의 월 급여액 ····· 108
<표 Ⅳ-34> 월평균 급여 집단별 비교 ····· 109
<표 Ⅳ-35> 집단 간 일자리 만족도 평균 비교 ····· 110
<표 Ⅳ-36> 현 직장 근무 시 애로사항 ····· 111

<표 Ⅳ-37> 자립가능한 일자리 유지 및 이직 가능성 ····· 112
<표 Ⅳ-38> 취업 욕구 유무 ····· 113
<표 Ⅳ-39> 구직활동 여부 ····· 114
<표 Ⅳ-40> 취업여부별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 ····· 116
<표 Ⅳ-40-1> 취업 희망 여부별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 ····· 116
<표 Ⅳ-41> 비취업자 중 일자리 희망자 직업훈련 수강 여부 ····· 116
<표 Ⅳ-42> 전반적 영역별 차별 경험 정도 ····· 118
<표 Ⅳ-43>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이웃관계에서의 차별) ····· 118
<표 Ⅳ-44>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직장에서의 차별) ····· 119
<표 Ⅳ-45>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관공서에서의 차별) ····· 121
<표 Ⅳ-46>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자녀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 122
<표 Ⅳ-47> 집단별 차별경험 분포 ····· 123
<표 Ⅳ-48> 학교 혹은 직장에서의 차별 가해자 ····· 124
<표 Ⅴ-1> 정책별 인지도 ····· 135
<표 Ⅴ-2> 모자보호시설 인지도 ····· 135
<표 Ⅴ-3> 기초생계비 수급 인지도 ····· 136
<표 Ⅴ-4> 거점기관 인지도 ····· 137
<표 Ⅴ-5> 저소득 미혼모가족지원 인지도 ····· 138
<표 Ⅴ-6> 아동보육지원 인지도 ····· 139
<표 Ⅴ-7> 양육비이행청구소송비 인지도 ····· 140
<표 Ⅴ-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인지도 ····· 141
<표 Ⅴ-9> 보건 및 영양 관련지원 인지도 ····· 142
<표 Ⅴ-10> 출생신고시 담당공무원 설명 여부 ····· 143
<표 Ⅴ-11>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 145
<표 Ⅴ-12> 시설 경험 여부 ····· 146
<표 Ⅴ-13> 시설이용 이유 ····· 147
<표 Ⅴ-14> 미혼모시설 평가 ····· 148
<표 Ⅴ-14-1> 미혼모시설 평가(계속) ····· 149
<표 Ⅴ-15> 시설추천 여부 ····· 151
<표 Ⅴ-16> 정책별 인지 및 수혜 ····· 152
<표 Ⅴ-17> 기초생활수급비지원 인지 및 수혜 ····· 153

<표 Ⅴ-18> 아동양육비지원 인지 및 수혜 ····· 154
<표 Ⅴ-19> 보육료지원 인지 및 수혜 ····· 155
<표 Ⅴ-20> 의료비지원 인지 및 수혜 ····· 156
<표 Ⅴ-21>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인지 및 수혜 ····· 157
<표 Ⅴ-22> 학습지원 인지 및 수혜 ····· 158
<표 Ⅴ-23> 임대주택 등 주거지제공 인지 및 수혜 ····· 159
<표 Ⅴ-24> 친자확인·양육비지급이행소송지원 인지 및 수혜 ····· 160
<표 Ⅴ-25> 자산형성계좌지원 인지 및 수혜 ····· 161
<표 Ⅴ-26>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 ····· 162
<표 Ⅴ-27>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 ····· 164
<표 Ⅴ-27-1>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계속) ····· 165
<표 Ⅴ-27-2>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계속) ····· 166
<표 Ⅴ-28> 시급한 서비스(연령별) ····· 168
<표 Ⅴ-29> 시급한 서비스(교육수준별) ····· 169
<표 Ⅴ-30> 시급한 서비스(자녀연령별) ····· 170
<표 Ⅴ-31> 시급한 서비스(취업여부별) ····· 170
<표 Ⅴ-32> 시급한 서비스(정부지원여부별) ····· 171
<표 Ⅴ-33> 시급한 서비스(거주특성별) ····· 172
<표 Ⅵ-1> 기초생활보장 개요 ····· 178
<표 Ⅵ-2> 미혼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 180
<표 Ⅵ-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 181
<표 Ⅵ-4>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수 ····· 181
<표 Ⅵ-5>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 185
<표 Ⅵ-6> 아동양육비 지원 ····· 187
<표 Ⅵ-7>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 현황 ····· 187
<표 Ⅵ-8> 영유아보육법: 아동보육료 지원 개요 ····· 188
<표 Ⅵ-9>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원 ····· 189
<표 Ⅵ-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90
<표 Ⅵ-11>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191
<표 Ⅵ-12> 여성가족부 지원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 현황 ····· 192
<표 Ⅵ-13>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 194

<표 Ⅵ-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2010 신설) ····· 196
<표 Ⅵ-15> 서울 지역 미혼모자시설 양육미혼모 프로그램 ····· 198
<표 Ⅵ-16> 서울 지역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양육미혼모 프로그램 ····· 199
<표 Ⅵ-17>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200
<표 Ⅵ-18> 전국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201
<표 Ⅵ-19> 미혼모부자거점기관별 시행 프로그램의 예시 ····· 203
<표 Ⅵ-20>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2010년 기준) ····· 229
<표 Ⅵ-21>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 230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주요 연구 내용 및 특징 ····· 7
<그림 Ⅰ-2> 주요 연구의 흐름 및 방법 ····· 11
<그림 Ⅲ-1> 양육 자녀수 및 연령 ····· 38
<그림 Ⅲ-2> 미취학자녀의 주 돌봄자 ····· 39
<그림 Ⅲ-3> 돌봄기관 미이용 사유: 미취학자녀 ····· 42
<그림 Ⅲ-4> 미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유무 및 평균시간 ····· 42
<그림 Ⅲ-5> 취학 자녀의 방과후 주 돌봄자 ····· 43
<그림 Ⅲ-6> 취학 자녀의 방과후 학습서비스 유무 및 종류 ····· 44
<그림 Ⅲ-7> 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유무 및 평균시간 ····· 44
<그림 Ⅲ-8>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 48
<그림 Ⅲ-9>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전체 ····· 57
<그림 Ⅲ-9-1>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자녀연령별 ····· 58
<그림 Ⅲ-10> 미혼부의 연령 분포 및 미혼모연령별 미혼부 평균연령 ····· 59
<그림 Ⅲ-11> 임신당시 미혼부의 가족상황 ····· 59
<그림 Ⅲ-12> 임신당시 미혼부의 직업 ····· 60
<그림 Ⅲ-13> 미혼부의 출산 및 임신 인지여부 ····· 61
<그림 Ⅲ-14> 미혼부에게 자녀양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61
<그림 Ⅲ-15> 미혼부의 현재 직업 ····· 62
<그림 Ⅲ-16> 미혼부의 근황에 대한 정보 ····· 63
<그림 Ⅲ-17>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미혼모의 인식 ····· 64
<그림 Ⅲ-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인식 ····· 64
<그림 Ⅲ-19> 양육비 요구 유무 및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 ····· 65
<그림 Ⅲ-20> 양육비 요구액 ····· 66
<그림 Ⅲ-21> 미혼부의 월평균 양육비 지원액(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66
<그림 Ⅵ-1>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업무 흐름도 ····· 202
<그림 Ⅵ-2>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도해 ····· 232
<그림 Ⅵ-3> 양육미혼모 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 예 ····· 238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5
3. 연구 방법 및 지표의 구성 7
4. 조사대상자의 특성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지하듯,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가족은 급속한 변화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가족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위 양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족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또한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쟁 소비주의사회에서 심화되는 개인화의 경향은 향후 더욱 다양한 삶의 방식이 내포된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와 기피로 인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고,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는 물론 국경을 넘어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이미 전체 결혼건수의 10%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족이나 혈연적 특성에 기반 한 통념의 가족의미는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같은 다양한 가족의 증가는 그동안의 정형화된 가족 이미지의 변화를 추동하면서 점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적 분위기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결혼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미혼한부모들이나 이혼 및 별거와 사별로 인한 한부모, 혹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적 포용력이 점차 확대됨은 물론, 이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안팎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선도하면서 점차로 제도적 혼인관계를 통한 자녀출산만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온 가족문화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련의 자료들에서 최근 미혼 모・부자 가족의 증가나 혼인 외 출산 비중의 증가를 통해 미혼모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한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해외 입양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고무적인 문화변동의 징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는 분위기가 유지됨으로써 미혼여성의 출산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혈통에 기반 한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장년세

대나 노년층에게는 여전히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공개될 수 없는 개인사이자,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평생에 걸친 불명예의 낙인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거의 미혼모들은 그들의 경험이나 존재를 드러내기 보다는 가급적 임신과 출산의 사실을 표출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김혜영 외, 2009:4).

더욱이 혼전에 배우자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미혼모들은 양부모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혼 및 사별 한부모에 비해 정서적, 경제적 지지망이 현격히 위축되거나 봉쇄되는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 예컨대 학교나 직장으로부터의 배제까지 경험하기도 한다. 심지어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심리정서적 고립감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미혼모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여느 한부모와 동일하게 양육자와 생계부양자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미혼모'와 '그의 자녀'라는 보이지 않은 주홍글씨와 맞서야하는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생활실태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자립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현재 이들 지원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에게 적실한 지원정책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관입소 미혼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에 입소한 양육미혼모 뿐만 아니라 재가미혼모의 사례발굴을 통해 시설의 안팎에서 이들이 봉착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고충을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미혼모연구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가미혼모들을 상당부분 발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자녀연령, 이들 가구의 다양한 사회자본의 수준별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한국미혼모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미혼모의 추이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물론 법률적, 정책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동안 잠정 추계되어온 양육미혼모의 추이만이 확인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객관적인 자료생산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양육미혼모들의 자녀양육실태와 함께 이들과 미혼부와의 관계 및 미혼부의 아버지 역할 수행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자녀양육이 이들에게 초래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 양육미혼모가 봉착하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녀연령별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녀양육의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와 연계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양육미혼모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삶에서 현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망하고, 향후 이들의 삶의 계획과 자립지원 욕구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이 희망하는 미혼부들의 부모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미혼부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는 미혼부 책임법제화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들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소유한 자립기반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의 특징과 양을 가늠해봄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현재 책임있는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준비하는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예컨대 이들의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준비과정 및 자립노력에서부터 이들이 경험한 직업훈련의 효과성과 욕구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자립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사적 지원네트워크는 무엇이며, 그러한 지원망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넷째, 지원정책에 대한 미혼모의 인지도와 평가,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미혼모들이 알고 있는 한부모지원정책의 내용

과 수준, 시설평가,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지원욕구를 그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혼모지원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미혼모를 지원하는 국내외 정책동향을 통해 효과적인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혼모 지원 정책은 주로 10대 청소년 미혼모와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원 및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부터 국내 한부모 가족지원정책의 현황들을 살펴봄은 물론,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시사점을 통합하여 향후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더불어 본 연구가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혼모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시설입소 미혼모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설 입소미혼모 외에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재가미혼모들의 사례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미혼모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파악은 물론 향후재가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표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그 어떤 미혼모 연구보다도 가장 많은 미혼모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미혼모 사례 발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미혼모들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현재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양육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물론 자녀연령과 이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미혼모 생활세계 및 자녀양육의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특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주요 연구 내용 및 특징

3. 연구 방법 및 지표의 구성

1)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미혼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미혼모와 연관된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결과로부터 미혼모를 둘러싼 정책 쟁점 현황, 나아가 미혼모들의 심리·정서적 변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질적 조사와 양적조사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발견하였다.

(2)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는 면접자가 원하는 연구주제에 대한 대답들을 획득하기 위해 그에 맞게 고안된 질문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일종의 대면 상호작용적인 역할상

황을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 역시 미혼모의 내밀한 생활세계의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미혼모,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지원대상으로서 정의된 미혼모로써 법률적인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한부모여성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인터뷰는 원칙적으로 일대일의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심층인터뷰는 설문지 구성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2010년 11월 말부터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본 인터뷰에서는 자녀연령에 따라, 즉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와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미혼한부모, 그리고 취학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양육미혼모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녀양육의 경험과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에 앞서 반구조화(semi-structure)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과정은 정보제공자들로부터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정보제공자가 면접을 거절할 경우, 면접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의 과정에는 최소 연구자가 2인 이상 참여하여 1인은 면접을 실시하고 나머지 연구자는 이들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술하였는데, 특히 자녀를 동반한 양육미혼모일 경우에는 연구진 1인이 아이 돌봄을 전담하면서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터뷰의 내용들은 정보제공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꺼이 심층인터뷰에 응해준 정보제공자들의 주요한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Ⅰ-1〉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	이름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	자녀
1	곽OO	29세	모자원	비취업(취업준비중_보육교사)	1녀(12개월)
2	김OO	24세	공동생활가정	취업(간호조무사)	1녀(12개월)
3	신OO	30세	재가	취업(사무직)	1녀(21개월)
4	김OO	29세	재가	비취업(자녀양육에 전념)	1남(12개월)
5	김OO	38세	모자원	취업(사회복지사예정)	2녀(6세, 8세)
6	이OO	35세	재가	취업(프리랜서_자영업)	1남(7세)
7	김OO	37세	재가	취업(프리랜서_문화센터 강사 등)	1남(7세)
8	목OO	38세	재가	비취업(최근 퇴직)	1남(6세)

(3) 실태조사

자료 수집은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협조아래 전국에 산재한 양육미혼모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연구진이 각각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혹은 미혼모들이 외부자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본 조사의 취지와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 후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현재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들 가운데 미혼의 청소년한부모들 또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한 지침과 안내사항을 전달받은 각각의 기관에서는 해당 양육미혼모들에게 직접 설문을 배포하거나 일부 거점기관과 시군구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다시 설문지를 배포하는 우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양육미혼모시설의 경우에는 미혼모들의 집합거주지라는 점에서 담당 복지사에 의해 설문지가 배포되고 수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17개소의 거점기관 가운데, 조사기간 중 자조모임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과 시군구에 의뢰한 청소년미혼한부모의 경우 그들의 동의를 얻어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군구와 미혼모 관련 기관관계자의 도움을 얻어 시설에서 퇴소한 미혼모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미혼모들 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기관에 의뢰할 경우 전문적인 면접원들에 의해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응답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혼모연구에서는 대인면접방법이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둘 수 있어 미혼모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함께 응답결과의 신뢰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대한 미혼모들의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조사 방식을 선택하였고, 우편조사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말 예비조사를 거쳐 11월~12월초까지 진행되었다. 당초 계획으로는 11월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재가 미혼모 발굴의 어려움과 함께 우편조사의 원만하지 못한 진행으로 일정이 다소 지체되었다. 배포

된 설문지 1400부 가운데 최종 수거된 설문지는 882부로 63%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가 직접 연구진에게 우편 발송한 탓에 수거된 설문지들 가운데는 문항의 오류 및 무응답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 경우에는 적시된 연락처를 통해 연구조사원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 에디팅 과정 역시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응답자료들은 부호화되어 입력되었으며,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오류나 무응답이 10%를 초과하는 설문지 등을 모두 선별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727부이다.

(4) 국내외 정책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혼모지원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혼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함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한 방식을 몇몇 국내외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에는 이들의 학업 및 양육지원에서부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이르는 자립지원정책까지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돌봄과 동시에 자신의 자립기반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업 및 안정적인 일가정양립은 물론 효과적인 부모역할 습득을 위한 부모교육과 다양한 공·사적 양육지원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육미혼모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의 정책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5) 관계자 자문회의

미혼모 지원 관련 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양육미혼모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현재 미혼모지원정책의 방향 및 과제 등을 가지고 활발한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과제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된 연구의 흐름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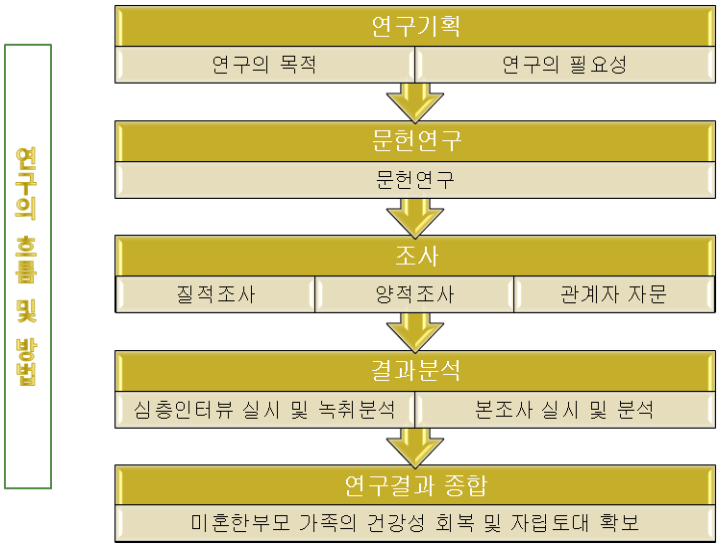

〈그림 Ⅰ-2〉 주요 연구의 흐름 및 방법

2) 조사방법 및 조사지표

본 조사를 위해서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인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Ⅰ-2〉 설문조사의 주요 지표 및 문항 수

지표	문항설명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자녀유무/ 거주지역/ 자녀수 및 연령/ 현재 거주 구성원/ 주택 소유형태/ 저축 유무와 월평균 저축액/ 부채 유무와 총부채액/ 소득항목별 월평균 소득액/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록 유무 및 미등록 이유/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 유무 및 미등록 이유/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록 유무 및 미등록 이유	6
자녀 돌봄	미취학 자녀 돌봄 시설 및 기관 이용 여부/ 미취학 자녀 돌봄 시설 및 기관 미이용 이유/ 미취학 자녀 주 돌봄자/ 미취학 자녀 방임 시간	4
	초등생 자녀 방과후 교실 및 학원 이용 여부/ 방과후 관련 시설 미이용 이유/ 방과후 자녀 주 돌봄자/ 초등생 자녀 방임 시간	4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횟수	1
자녀 양육 과정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 양육 시 고민사항/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자녀양육에 가장 의지 되는 사람/ 자녀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변화(5문항 4점 척도)/ 자녀양육 포기 생각 정도 및 이유	8

지표	문항설명	문항수
미혼부에 대한 정보	임신 당시 미혼부 연령/ 임신 당시 미혼부 가족상황/ 임신 당시 미혼부의 직업/ 현재 미혼부의 직업	4
자녀출산 및 양육	출산 결정 시기/ 출산 및 양육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2
미혼부와의 관계 및 자녀양육	미혼부에게 양육비 요구 여부/ 현재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액수/ 미혼부의 출산 사실 인지 여부/ 미혼부의 양육 사실 인지 여부/ 미혼부에게 양육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본인 생각/ 미혼부가 수행하기 원하는 역할/ 미혼부에 대한 정보 인지 여부 및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	9
학교 교육 관련 경험 및 인식	현재 재학 여부/ 재학 중인 학교/최종 교육 기관	3
	임신으로 인한 재학포기 경험 여부/ 재학포기 이유/ 학업 지속 의향/ 학업 지속 시 희망하는 교육유형/ 중퇴 시 학업 지속 가능 방법 인지 여부	5
	본인의 자립을 위한 높은 학력 취득 필요 정도/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학력 요건	2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경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한 학교·직장 내 차별 및 소외 경험 여부/ 학교 및 직장에서 주로 차별이나 소외를 시키는 주체/ 직장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된 내용	4
	미혼한부모로서 느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	1
직업교육 및 훈련	임신 및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 여부/ 교육받은 직업 훈련프로그램명/ 직업훈련 기관/ 직업훈련 비용 부담자/ 임신 및 출산 후 직업훈련 시 어려움/ 훈련 프로그램 기간/ 직업훈련의 자립 시 도움 정도 및 도움이 되지 않았을 시 이유/ 직업훈련 미수강 이유/ 자립을 위한 추가 직업훈련 필요 정도/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11
직장생활 및 경험	임신으로 인한 퇴직 경험/ 퇴직 사유/ 퇴직한 직장 근속기간	3
	지난 1주간 유급근로 여부/ 직종/ 고용형태/ 주당 근로 일 및 하루 평균 근로시간/ 현재 직장 근속기간/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 현재 직장 만족도/ 현재 근로 시 어려움/ 경제적 자립가능한 직장 유지 및 이직 가능성	9
	구직 희망 여부/ 구직 활동 유무/ 1년간 구직활동 횟수/ 구직 시 어려움	4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모자관련시설 거주 및 경험 유무/ 시설 입소 이유/ 미혼모 시설에 대한 견해(6문항 4점 척도)/ 친구에게 미혼모 시설 권유 의향 및 이유	4
	미혼한부모 지원내용 인지 여부 및 경험 유무/ 미혼한부모 지원서비스 중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 미혼한부모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미혼한부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식	4
	미혼한부모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 정도(11문항 4점 척도)/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지원서비스	2
미혼모 자조모임	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의향/ 참여 중이거나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자조모임 종류/ 자조모임 참여 목적	3
미혼모 부모	본인의 부모 연령/ 부모의 직종/ 부모와의 만남 횟수/ 부모와의 연락 횟수	4
미혼모의 지지망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금전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자녀에게 긴급한 일이 생긴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정서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상담 및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5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실태와 함께 이들의 자립기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양육 미혼모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함께 기관에 입소해 있거나 지역 사회 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재가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설문조사에 응한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미혼모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높아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30대로 미혼모의 약 3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혼모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모 현황에 따르면, 10대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조사에서는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10대 미혼모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본 연구가 양육미혼모만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미혼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을 선택하기 보다는 입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25세 이상의 미혼모 집단은 20대 초반 이하 연령대에 비해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미혼모의 평균연령은 일반 미혼모들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외, 2009).

〈표 Ⅰ-3〉 양육미혼모의 연령분포

(단위: 명, %)

	응답자 수(%)
전체	727(100.0)
19세 이하	99(13.7)
20~24세	188(25.8)
25~29세	186(25.6)
30세 이상	254(34.9)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양육미혼모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Ⅰ-4>와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비중(53.5%)이 가장 높고, 대학재학 및 졸업이상의 학력비율 역시 적지 않아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저학력자의 비중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연령에 따른 학업의 이수와 진학이라는 상황적 여건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10대나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된 경우는 20대 중반이후에 미혼모가 된 여성에 비해 학업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저학력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높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Ⅰ-4〉 양육미혼모의 교육수준

(단위: 명, %)

	교육수준				
	중졸재학 및 이하	고졸 및 재학	대졸 및 재학 이상	전체	x^2(df)
전체	90(14.2)	340(53.5)	205(32.3)	635(100.0)	
연령대					
10대	35(39.8)	50(56.8)	3(3.4)	88(100.0)	130.6(4)***
20대	43(13.0)	206(62.2)	82(24.8)	331(100.0)	
30대 이상	12(5.6)	84(38.9)	120(55.6)	216(100.0)	

한편, 본 조사대상자들을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모자공동생활가정이나 모자원 등에 입소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양육미혼모의 39.4%이며, 재가미혼모로서 일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미혼모들은 과반수가 넘는 60.6%에 달하고 있다. 이는 본 조사가 이제까지 진행된 미혼모 연구와 달리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양육미혼모의 사례발굴에 주안점을 둔 결과로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자인 미혼모의 자녀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 미혼모들의 자녀연령은 만 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동기에 속한 자녀들은 15.3%이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미혼모들은 전체 응답자의 1.9%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곧 미혼한부모들은 다른 정책대상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여 자녀의 성장과 함께 그들의 존재를 더욱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미혼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서비스의 대부분이 긴급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시적인 출산지원이나 생계의 어려움으로 기초적인 복지안전망에 진입할 필요가 없는 미혼모 가족들은 정확한 가구구성 파악조차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Ⅰ-5〉 양육미혼모의 자녀연령분포

(단위: 명, %)

	응답자 수(%)
전체	727(100.0)
만2세 이하	366(50.3)
만3~5세	236(32.5)
만6~11세	111(15.3)
만12세 이상	14(1.9)

특히 본 조사대상자들의 86.5%가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조사대상자의 발굴자체가 대단히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요컨대 본조사의 경우, 재가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유관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하고 있는 미혼모, 나아가 현재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미혼한부모들을 선별하여 조사를 설계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수혜받는 대상자들이 집중 분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사대상자들을 접촉한 주요기관별 미혼모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시군구를 통한 청소년 미혼한부모는 전체의 15.5%인 113명, 공동생활가정은 24.5%인 178명, 모자원 13.8%(100명), 거점기관 24.2%(176명),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미혼모는 22%(160명)이다. 이들을 현재 거주방식 및 형태별로 재구분해보면, 재가미혼모가 61.8%(449명)이며 현재 모자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미혼모는 48.2%인 278명이다.

한편 조사대상 미혼모들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5%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근로소득은 평균 105.3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1) 이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 IV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Ⅱ 기존연구 검토 및 미혼모 현황

1. 선행연구의 검토 19
2. 미혼모의 개념과 추이 22

1. 선행연구의 검토[2)]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미혼모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미혼모의 실태파악 중심의 기술 분석에 치중되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김혜영 외, 2009). 기실 이같은 경향은 미혼모에 대한 연구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논의는 무엇보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형태나 복지대상자에 비해 연구관심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 역시 그간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영향 받은 바 크다.

미혼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혼모의 삶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에서부터 미혼모의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는 연구경향으로 대별될 수 있지만, 기실 그러한 연구들 속에서 발견되는 강조점은 대단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혼모의 발생원인(한국여성개발원, 1984; 김근조, 1995; 안순덕, 1984)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이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양미, 2000; 이유정, 1996; 이지은, 1995; 최용희, 1997)이나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체계(한영주, 1998; 배영미, 2001), 양육미혼모와(김유순・김은영, 2008; 이명순・박주현, 2008; 김윤아・이형하・김혜선, 2008)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노충래・김원희, 2004)에 대한 연구 등으로 주제가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그럼에도 최근 들어 미혼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들의 자녀양육의 선택비중이 증가하면서 양육미혼모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실, 미혼모들은 다른 기혼여성들과 달리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를 둘러싼 사회적 지지망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당면한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즉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미혼여성들 가운데 다수는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양육미혼모들은 이미 자녀출산을 앞두거나 이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다. 미혼으로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입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미혼모로서 그들 자신과

---

2) 이 부분은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김혜영・선보영 외, 2009:21-25)의 해당 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자녀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결정짓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김윤아・이형하・김혜선(2008)의 연구는 미혼 양육모의 양육체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과 궁핍하고 팍팍한 살림살이 가운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미혼모들의 자녀에 대한 양가적 감정, 즉 자녀양육결정을 후회하거나 자녀에게 감정적인 분노를 투사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로 인해 삶의 의지와 힘을 확인하거나 원가족과 화해의 계기를 얻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미혼 양육모들의 자아정체감 상기를 위한 개입, 가족과 미혼부로 인한 상처에 대해 치료적 개입, 원가족과의 상담,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혼 양육모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밀감 형성에 필요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사회로부터 보다 쉽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 통합과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한다.

한편, 김유순・김은영(2008)은 기존의 미혼모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혜선・김은하(2006)는 미혼 양육모들의 체험을 통해 양육결정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과 사회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이복숙・전영주(2005)는 미혼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삶과 역사적 맥락을 통해 한 인간의 심리적 내면세계를 추론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혼모의 생애사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심층면접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경험이 미혼모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를 갖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과 대별되는 연구로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명순・박주현(2008)의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와 노충래・김원희(2004)의“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승희(2002)는 “10대 미혼모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연구를 통해 외국의 경우에는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슬픔과 상실의 감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정서적 개입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10대 미혼모는 여전

히 소외된 계층이자 문제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체가 미혼모와 청소년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매우 취약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10대 미혼모들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승희는 무엇보다 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정서인 “슬픔”과 이를 원조하기 위한 개입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후 미혼모들의 입양과 양육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성경험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반영하듯, 미혼모 연구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10대 미혼모의 경우로 대체로 친구집단의 성태도에 영향을 받거나 일탈적 행동으로 혼전성경험을 통해 임신에 이르며, 이들의 성관계나 피임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미숙함 뿐만 아니라 임신사실의 확인 직후에 경험하는 극심한 혼란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경순, 2008; 윤미현・이재연, 2000; 천혜정・배선희・송말희・송현애・전길양, 2002; 도미향・정은미, 2001, 김만지, 2000).

그러나 최근의 연구경향은 대체로 이들이 양육모의 삶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점차 십대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서정애(2009)는 그동안 십대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하면 십대미혼모는 미성년, 청소년이라는 단일한 특성을 가진 동질적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제를 벗어나는 일탈자로 규정되어 왔지만, 최근 새로운 십대주체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종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중 십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혼모의 3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여성가족부, 2005), 이들 중 다수가 아이양육을 원하거나 실제 양육하는 십대엄마로 살아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속한 가족, 학교, 노동시장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맺는 관계가 이들의 임신인식과 경험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탐색하고, 이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함께 근자에 와서는 성경험을 한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은 임신과 출산사실로 인해 정규교육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홍순혜 외, 2007; 석창훈 외,

2008).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 향후 이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학습권과 진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순혜 외(2007)의 연구에서는 시설에 머무르는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관종사자와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태도와 교육방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비교함으로써 향후 10대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최근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온 사실은 바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의식조사"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혼모와는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임애덕・최승희(2006)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와 문의승・임애덕(2005)의 "미혼모・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가 있는데, 이는 모두 제주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2. 미혼모의 개념과 추이

1) 미혼모의 개념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는 특정한 사실을 지칭하는 학문적 개념이기 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판단이 더욱 짙게 내포되어 있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기에 미혼모의 정의보다는 그 용어에 내포된 차별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미혼모는 그 정의상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1965;

보건복지부, 1999:30; 김혜영・선보영 외, 2009:26에서 재인용).

그러나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미혼모는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산하지 않은 임산부는 법률적으로 미혼모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어머니를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는 기성의 통념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이를 수태하는 순간부터 모성 보호가 시작되고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미혼모의 개념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여성 모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출생의 적법성을 혼인제도에 기반한 경우로 한정하는 우리사회의 경우, 실제로 출산여부로 미혼모를 규정하고 이들을 백안시하는 풍토가 강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의 높은 인공임신중절률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미혼모의 규모를 전혀 가늠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인 편견으로 자신의 미혼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의 수 또한 적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연간 낙태 건수 34만여 건 가운데 미혼여성의 낙태건수는 약 14만 건으로 전체 낙태건수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05; 김혜영・선보영 외, 2009:26).

2) 미혼모의 주이

이처럼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강한 사회적 편견은 곧 이들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미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병원출입에서부터 출생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별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혼모들의 상당수는 출산 후 자녀입양을 선택하거나 자신보다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혼모의 수와 이들 자녀의 수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배타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는 자신들의 존재를 은폐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공식통계에서 조차 기혼자들에게만 출생자녀수와 이들의 정보를 질문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정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서도 미혼모의

현황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센서스의 조사 설계상 한부모 가구 가운데 혼인지위에 따른 재분류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들 가구가 곧 미혼한부모 가구인지의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혼모 가구의 수는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혼부 가구를 추가한다면 미혼모/부 가구의 비율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만으로 미혼모와 자녀수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위탁아동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김혜영・선보영 외, 2009).

〈표 Ⅱ-1〉 연도별 미혼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

(단위: 가구)

연도	구분	가구 전체	한부모 가구	모+자녀 가구	부+자녀 가구
2005년	가구 계	15,887,128	1,369,943	1,083,020	286,923
	사 별	1,832,308	501,095	427,209	73,886
	유배우	11,120,410	327,864	263,716	64,148
	이 혼	904,154	398,532	258,861	139,671
	미 혼	2,030,256	142,452	133,234	9,218
2000년	가구 계	14,311,807	1,123,854	903,857	219,997
	사 별	1,561,841	502,284	438,226	64,058
	유배우	10,739,411	252,917	194,690	58,227
	이 혼	552,720	245,987	153,177	92,810
	미 혼	1,457,155	122,666	117,764	4,902
1995년	가구 계	12,958,181	959,972	787,574	172,398
	사 별	1,407,557	526,320	458,298	68,022
	유배우	10,060,042	216,067	165,401	50,666
	이 혼	277,798	123,969	72,889	51,080
	미 혼	1,212,746	93,616	90,986	2,630

출처: 통계청. 각 년도별 인구센서스.

미혼모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공식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성적욕망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증가하면서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에 비춰 본다면(은기수・권태환, 2002), 적어도 임신이나 낙태를 경험한 미혼여성의 수가 감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

한 낙태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미 낙태의 시기를 놓쳐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출산 후 자녀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의 증가가 확인되는데, 이는 미혼모 자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입양아동의 수적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미혼모의 추이는 미혼모지원기관이나 입양 기관에 입소한 미혼모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1991년 1,029명(시설 10개소), 1995년 990명(9개소), 2000년 1,273명(8개소), 2002년 1,673명(8개소), 2005년 2,123명(14개소), 2008년 2358명(48개소)으로 시설 수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입양아동 역시 91년 3,438명에서 95년 3,205명, 2000년 4,046명, 2002년 4,059명으로 연간 4,000여명에 이르렀으나, 2005년 3,562명, 2007년 2,652명, 2008년 2,556명으로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김혜영・선보영 외, 2009:26에서 재인용). 그러나 국외 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의 비율은 여전히 높아 2008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2,556명 가운데 총 미혼모 자녀의 비중은 84.9%에 달하며 국내 입양 역시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통상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미정 외, 2008: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양육미혼모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곧 정책설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생산 및 이들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생산은 매우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양육미혼모와 이들 자녀 수 추정

현재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공식통계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연구결과에 따른 가구 수 추정 결과를 통해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대략의 기초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미혼모를 위시한 한부모 가구 추이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양육미혼모와 이들 자녀수 및 연령별 자녀수에 대한 추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추계하는 자료와 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두 연구결과가 추산하는 양육미혼모와 이들 자녀의 수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추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육미혼모 수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미정 외(2010)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인구센서스 조사표로는 미혼인 사람의 자녀유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인구센서스는 조사 설계에서부터 자녀 출생을 혼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이미 조사표에서 설계단계부터 유배우자・이혼・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만 자녀 출생과 관련된 사항을 묻고 미혼인 여성에게는 출산을 확인하지 않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항구조는 결과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는 미혼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확한 추이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미혼모 지원정책이 더욱 적실하게 설계되기 위한 기초단계는 무엇보다 이들의 규모와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저출산 심화와 함께 정확한 통계생산을 통해 과학적인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요구하는 시대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욱 출생자 통계 등의 개선작업이 요청된다.

요행히 최근 들어 미혼모와 이들 아동수를 추정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표 Ⅱ-2>와 같다. 추정치는 혼인 외 출생자 통계와 그동안 진행되어온 시설거주 미혼모들의 자녀양육비율을 원용하여 구성한 결과이다. 1984년 여성개발원 연구에서는 양육 희망 비율이 5.8%, 1998년~2001년도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비율은 7.2%, 8.3%, 8.6%, 11%로, 2005년도 연구에서는 31.7%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비율을 근거로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

---

3) 이러한 문항구조는 사회적 편견이 강한 한국사회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이는 미혼모들의 응답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4) 해당내용은 본원에서 주최한 포럼 가운데 이미정이 발표한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의 해당 내용을 발췌・재구성한 것으로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자료집을 참조하라(「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표 Ⅱ-2〉 연도별 미혼모 양육 아동 추정치

(단위: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혼인외 출생자	10,017	11,021	11,779	12,185	11,447	9,112
Ⓑ 출생통계	7,259	8,304	8,799	9,272	8,748	6,290
Ⓒ 미혼모 입양아동	2,758	2,717	2,980	2,913	2,699	2,822
Ⓓ 미혼모 양육 아동	651	727	789	829	790	638
Ⓔ 미확인 아동	6,608	7,577	8,010	8,443	7,958	5,652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혼인외 출생자	7,278	7,766	8,338	9,246	9,192	8,892
Ⓑ 출생통계	4,196	4,428	4,716	5,540	5,330	5,184
Ⓒ 미혼모 입양아동	3,082	3,338	3,622	3,706	3,862	3,708
Ⓓ 미혼모 양육 아동	517	559	692	795	1,011	1,438
Ⓔ 미확인 아동	3,679	3,869	4,024	4,745	4,319	3,746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혼인외 출생자	9,546	9,623	9,623	9,706	10,070	10,533
Ⓑ 출생통계	6,082	6,116	6,459	6,805	7,774	8,363
Ⓒ 미혼모 입양아동	3,464	3,507	3,164	2,901	2,296	2,170
Ⓓ 미혼모 양육 아동	2,038	2,553	3,050	3,077	3,192	3,339
Ⓔ 미확인 아동	4,044	3,563	3,409	3,728	4,582	5,024

자료: Ⓐ 혼인외 출생자 = Ⓑ + Ⓒ
Ⓑ 혼인외 출생자: 통계청(2009), 인구동향조사, “혼인 외의 자”
Ⓒ 입양아동: 보건복지가족부(2009), “‘국내외 입양아동 중 미혼모아동 수”
Ⓓ 미혼모 양육 아동: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
Ⓔ 미확인 아동 = Ⓐ - (Ⓒ + Ⓓ)

주: 1984년 양육미혼모 비율 5.8%(한국여성개발원 서베이 분석결과), 1998년~ 2001년 양육미혼모 비율 각 7.2%, 8.3%, 8.6%, 11%(강영실, 2002) 2005년 양육미혼모 비율 31.7%(허남순 외, 2005)를 통해 추정한 연도별 비율을 통계청 ‘혼인 외의 자’ 통계에 대입하여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 추정치 산정.

<표 Ⅱ-2-1>은 2010년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별 양육 미혼모의 수를 추정한 것으로, 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는 3,339명이고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총 26,034명으로 추정된다. <표 Ⅱ-2-2>는 <표 Ⅱ-2>의 연도별 미혼모 양육아동에 대한 추정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입양아동과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의 행방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추측될 뿐이며, 이들 아동의 수는 1991년 6,608명, 1995년 7,958명, 2000년 4,745명, 2007년 4,582명이다. 이들 아동들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기록된 국내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하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법원행정처의 국내입양 자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보호와 시설보호 자료에서 해당 아동의 미혼모 자녀 여부와 관련된 기

록이 제시된다면 이들 아동의 행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2-1〉 2010년 자녀 연령별 양육미혼모 수 추정치

(단위: 명, %)

항목	명수	비율
0세 ~ 2세 이하	3,339	12.8
0세 ~ 3세 이하	6,531	25.1
0세 ~ 5세 이하	12,658	48.6
0세 ~ 7세 이하	17,249	66.3
0세 ~ 13세 이하	22,261	85.5
0세 ~ 15세 이하	23,689	91.0
0세 ~ 18세 이하	26,034	100.0

주: 연구시점에서 통계청의 2009년도 출생아 통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2세이하 아동을 가진 양육모의 숫자에는 2009년도 이후 출생아는 고려하지 못했음.

〈표 Ⅱ-2-2〉 연도별 미확인 아동의 소재 추정

(단위: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미확인 아동	6,608	7,577	8,010	8,443	7,958	5,652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2,568	3,061	4,227	2,791	2,043	2,010
위탁보호	999	1,212	943	927	505	727
시설보호	3,414	3,122	2,940	2,953	2,819	3,161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미확인 아동	3,679	3,869	4,024	4,745	4,319	3,746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2,248	2,572	2,713	2,777	2,864	2,423
위탁보호	1,209	2,353	1,249	1,406	3,090	2,177
시설보호	3,917	5,112	4,683	4,453	6,274	4,663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미확인 아동	4,044	3,563	3,409	3,728	4,582	5,024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2,198	2,562	3,154	3,890	3,853	4,034
위탁보호	2,392	2,212	2,322	3,101	3,378	-
시설보호	4,824	4,782	4,818	4,366	3,245	-

자료: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건수 - 사법연감 각년도
위탁보호 및 시설보호 - 보건복지가족부(2008), 입양현황통계, 요보호아동현황보고서

주: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내입양 건수 중 약 2.5%~3.8% 정도는 입양·신고하여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건수로 추계되나 그 외에는 비밀입양으로 추계되고 있지 않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본 양육미혼모 수[5)]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하지만 현재 한부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외(200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가족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인구센서스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혼인 외 출생자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음에 비해, 이 연구는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자료를 기본으로 한국의 총가구 15,887천가구의 8.6%에 해당하는 1,370천가구를 모부자로 구성된 한부모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부자로 구성된 한부모가구 중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별·이혼·미혼인 순(純) 한부모가구는 2005년 기준 1,042천가구, 총가구의 6.56%에 해당되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면, 2009년 1,109,554가구, 2010년 1,124,987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표 Ⅱ-3〉 한국의 한부모가구 및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2005년 가구수	비율	가구추계	
			2009년	2010년
한국의 총가구(A)	15,887천	100.0%	16,916,966	17,152,277
한부모가구(B)	1,370천	A의 8.62%	1,458,818	1,479,110
순(純) 한부모가구(C) (모자 및 부자가구만 의미)	1,042천	A의 6.56% B의 76.06%	1,109,554	1,124,987

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결과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결과에 의하여 산출함.

다음으로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첫째 자녀의 연령을 교차하여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순 한부모가구를 추출하면, 2009년 341,667가구, 2010년 346,419가구로 추정된다. 이를 다시 18세

5) 이 부분은 김승권이 수행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연구」(보건복지부, 2009:198-205)에서 해당부분을 발췌, 재구성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보고서를 참조하라.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와 18세 미만의 가구로 세분해 보면, 18세 이하인 경우는 2009년 361,765가구, 2010년 366,797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산정은 각 연령에 동일한 수준의 가구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가구를 산출한 것으로, 총가구의 0.47%, 한부모가구의 24.8%, 이혼·사별·미혼인 순(純) 한부모가구의 32.6%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Ⅱ-4〉 18세 미만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단위: 가구)

구분	2005년 가구수	비율	가구추계	
			2009년	2010년
한국의 총가구(A)	15,887천	100.0%	16,916,966	17,152,277
한부모가구(B)	1,370천	A의 8.62%	1,458,818	1,479,110
순(純) 한부모가구(C) (사별·이혼·미혼 모자 및 부자가구만 의미)	1,042천	A의 6.56% B의 76.06%	1,109,554	1,124,987
18세 이하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D) (사별·이혼·미혼 모자 및 부자가구만 의미)	339,739	A의 2.14% B의 24.80% C의 32.60%	361,765	366,797
18세 미만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E) (사별·이혼·미혼 모자 및 부자가구만 의미)	320,865	A의 2.02% B의 23.42% C의 30.79%	341,667	346,419

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결과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결과에 의하여 산출함.

이를 다시 한부모가족의 혼인상태, 즉 유배우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실제 한부모가구인 순(純) 한부모가구 가운데 사별·이혼과 미혼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각 86.38%, 13.62%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사별은 소폭 상승을 하였고, 이혼과 미혼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의 비율은 2000~2005년 사이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년 동일한 추세로 상승(4년간 약 13%)한다는 가정 하에, 미혼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면 약 15.4%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의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한부모 가족은 2009년 52,583가구, 2010년 53,314가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가구 중 24세 이하 가구를 산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24세 이하를 50%, 다른 하나는 24세 이하를 60%로 가정한 것이다.

〈표 Ⅱ-5〉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한부모가족의 추정

(단위: 가구)

구분	2005년 가구수	비율	가구추계	
			2009년	2010년
18세 미만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E) (사별·이혼·미혼 모자 및 부자가구만 의미)	320,865	-	341,667	346,419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순(純) 한부모가구의 미혼가구(H)	142,000	A의 0.89% B의 10.36% C의 13.62%	151,205	153,309
증가율 적용한 2009년의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한부모가족(I)	-	C의 15.39%	52,583	53,314
24세 이하 청소년기 한부모가족의 추정(J) 1안(50%) 2안(60%)	-	 I의 50% I의 60%	 26,292 31,549	 26,657 31,988

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3차 자료) 분석결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결과에 의하여 산출함.

III 미혼모의 자녀양육실태

1. 미혼모의 자녀양육 현황 35
2. 자녀양육의 어려움 46
3. 미혼부와의 관계 및 양육지원 58
4. 요약 및 논의 67

다음에서는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현황 및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미혼부와의 관계 및 지원여부 등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의 자녀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양육 현황은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결정과정과 자녀 돌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미혼모들의 삶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 정도와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자녀 연령별로 분석함으로써 미혼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녀양육의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혼부와의 관계는 미혼부의 개인적 특성, 출산 및 양육사실 인지여부, 미혼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도, 미혼부의 양육 지원과 관련된 미혼모의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미혼부의 책임법제화 등과 같은 향후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였다.

Ⅰ. 미혼모의 자녀양육 현황

1) 자녀양육 결정과정

본 조사에서 미혼모들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신사실 직후와 자녀를 낳기 전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할 경우, 전체 76.3%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자녀 출산 이전에 이미 양육을 결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임신 직후나 자녀를 낳기 전 자녀양육을 결정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거주특성별로는 재가 미혼모들이 시설 거주 미혼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 직후에 양육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시설 거주 미혼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 이후나 입양의뢰후 결정을 번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결정은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여건과 연동되어 있는 교육수준이나 취업상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자녀양육 결정시기

(단위: 명, %)

	자녀 낳기 전	자녀 낳은 후	입양을 의뢰했다가 마음이 바뀜	임신사실 직후	기타	전체	x^2(df)
전체	265(36.5)	92(12.7)	67(9.2)	289(39.8)	14(1.9)	727(100.0)	
연령대							
10대	34(34.3)	13(13.1)	10(10.1)	38(38.4)	4(4.0)	99(100.0)	16.803(8)*
20대	154(41.2)	48(12.8)	31(8.3)	132(35.3)	9(2.4)	374(100.0)	
30대 이상	77(30.3)	31(12.2)	26(10.2)	119(46.9)	1(0.4)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40(44.4)	14(15.6)	5(5.6)	30(33.3)	1(1.1)	90(100.0)	10.943(8)
고졸 및 재학	127(37.4)	38(11.2)	33(9.7)	135(39.7)	7(2.1)	340(100.0)	
대졸 및 재학	68(33.2)	29(14.1)	21(10.2)	87(42.4)	0(0.0)	205(100.0)	
자녀 연령							
만2세 이하	144(39.3)	45(12.3)	30(8.2)	138(37.7)	9(2.5)	366(100.0)	
만3~5세	81(34.3)	31(13.1)	24(10.2)	96(40.7)	4(1.7)	236(100.0)	6.312(12)
만6~11세	34(30.6)	15(13.5)	12(10.8)	49(44.1)	1(0.9)	111(100.0)	
만12세 이상	6(42.9)	1(7.1)	1(7.1)	6(42.9)	0(0.0)	14(100.0)	
취업여부							
취업	110(33.6)	46(14.1)	29(8.9)	138(42.2)	4(1.2)	327(100.0)	4.724(4)
비취업	155(38.8)	46(11.5)	38(9.5)	151(37.8)	10(2.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31(36.8)	76(12.1)	61(9.7)	246(39.2)	13(2.1)	627(100.0)	3.341(4)
지원받지 않음	34(34.0)	16(16.0)	6(6.0)	43(43.0)	1(1.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64(36.5)	43(9.6)	37(8.2)	193(43.0)	12(2.7)	449(100.0)	16.491(4)**
시설	101(36.3)	49(17.6)	30(10.8)	96(34.5)	2(0.7)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결과는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결정에는 자신의 의향과 가족, 미혼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66.3%가 자녀양육 결정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고 응답했으며, 미혼모의 가족과 미혼부는 각각 12.9%, 12.5%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을 하고 있을수록 자녀양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뚜렷하게 많았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미혼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재가 미혼모들의 경우 시설 거주 미혼모들에 비해 가족의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시설 등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결정에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2〉 자녀양육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

	나 혼자 결정	미혼부	나의 가족	미혼부의 가족	시설, 기관 상담자	종교인	또래 친구	미혼모 경험자	기타	전체	x^2(df)
전체	482(66.3)	91(12.5)	94(12.9)	6(0.8)	11(1.5)	11(1.5)	10(1.4)	11(1.5)	11(1.5)	727(100.0)	
연령대											
10대	44(44.4)	27(27.3)	16(16.2)	2(2.0)	3(3.0)	0(0.0)	1(1.0)	2(2.0)	4(4.0)	99(100.0)	57.061 (16)***
20대	249(66.6)	48(12.8)	51(13.6)	2(0.5)	6(1.6)	3(0.8)	6(1.6)	7(1.9)	2(0.5)	374(100.0)	
30대 이상	189(74.4)	16(6.3)	27(10.6)	2(0.8)	2(0.8)	8(3.1)	3(1.2)	2(0.8)	5(2.0)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이하	49(54.4)	16(17.8)	16(17.8)	2(2.2)	2(2.2)	0(0.0)	3(3.3)	1(1.1)	1(1.1)	90(100.0)	23.414 (16)
고졸 및 재학	218(64.1)	49(14.4)	41(12.1)	3(0.9)	6(1.8)	6(1.8)	5(1.5)	5(1.5)	7(2.1)	340(100.0)	
대졸 및 재학	153(74.6)	18(8.8)	24(11.7)	1(0.5)	1(0.5)	2(1.0)	1(0.5)	4(2.0)	1(0.5)	205(100.0)	
취업여부											
취업	248(75.8)	28(8.6)	26(8.0)	3(0.9)	3(0.9)	6(1.8)	6(1.8)	3(0.9)	4(1.2)	327(100.0)	31.476 (8)***
비취업	234(58.5)	63(15.8)	68(17.0)	3(0.8)	8(2.0)	5(1.3)	4(1.0)	8(2.0)	7(1.8)	400(100.0)	
거주특성											
재가	291(64.8)	55(12.2)	72(16.0)	4(0.9)	6(1.3)	5(1.1)	2(0.4)	5(1.1)	9(2.0)	449(100.0)	21.258 (8)**
시설	191(68.7)	36(12.9)	22(7.9)	2(0.7)	5(1.8)	6(2.2)	8(2.9)	6(2.2)	2(0.7)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 돌봄 실태

양육 미혼모들의 자녀 돌봄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들의 양육 자녀 수 및 연령 분포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사 참여 미혼모들은 대부분 한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들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만 2세 이하가 전체 50.3%로 가장 많았고, 만 3~5세(32.5%), 만 6~11세(15.3%), 만 12세 이상(1.9%)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동기에 해당되는 만 6~1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15.3%)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영유아기 자녀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 정책이 다양한 연령의 자녀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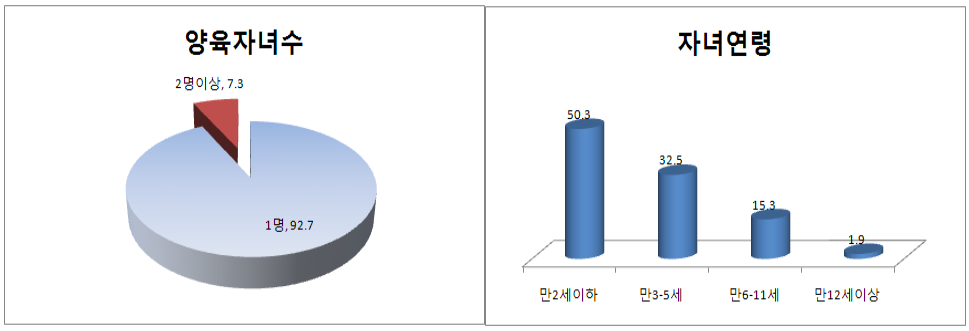

〈그림 Ⅲ-1〉 양육 자녀수 및 연령

(1) 미취학자녀 돌봄 실태

본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혼모 자녀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를 살펴보면, 주 돌봄자는 미혼모 본인인 경우가 71.0%로 가장 많았고, 가족(16.0%)과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7.5%) 등의 순이었으며, 이웃·친구 등으로부터의 돌봄 지원은 매우 적은 것(1.0%)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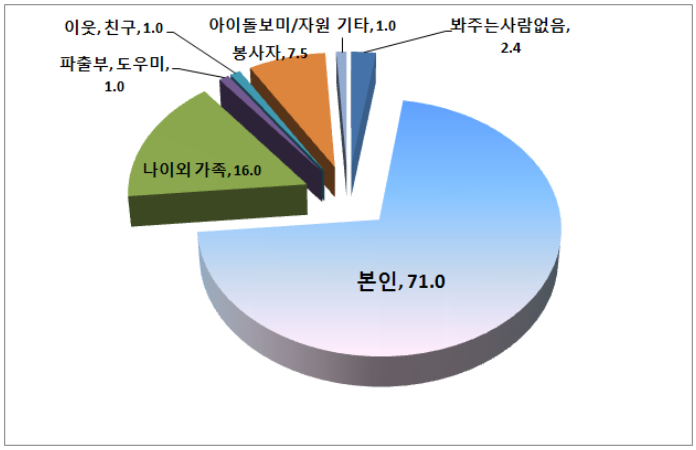

〈그림 Ⅲ-2〉 미취학자녀의 주 돌봄자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는 미혼모의 취업여부와 거주 특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업 미혼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이외에 다른 돌봄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는데, 특히 가족(26.8%)이나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11.3%)가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가 미혼모의 경우에도 시설 미혼모에 비해 본인이 주로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다소 낮아진 반면, 가족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가 23.5%에 달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취업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의 경우에도 본인이 미취학 자녀의 주 돌봄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0.7%, 69.9%에 달해 다른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일-가정양립 부담이 상당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이용률(7.5%)뿐만 아니라, 취업 미혼모(11.3%)와 재가미혼모(0.0%)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한 집단의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여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 미취학 자녀 주 돌봄자

(단위: 명, %)

구분	봐주는 사람 없음	본인	나 이외의 가족	파출부, 도우미	이웃, 친구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기타	전체	x^2(df)
전체	7(2.4)	208(71.0)	47(16.0)	3(1.0)	3(1.0)	22(7.5)	3(1.0)	293(100.0)	
연령대									
10대	1(1.7)	48(82.8)	4(6.9)	0(0.0)	1(1.7)	3(5.2)	1(1.7)	58(100.0)	18.599(12)
20대	3(1.9)	100(64.1)	36(23.1)	1(0.6)	1(0.6)	13(8.3)	2(1.3)	156(100.0)	
30세 이상	3(3.8)	60(75.9)	7(8.9)	2(2.5)	1(1.3)	6(7.6)	0(0.0)	79(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0(0.0)	36(76.6)	7(14.9)	0(0.0)	0(0.0)	4(8.5)	0(0.0)	47(100.0)	14.873(12)
고졸 및 재학	4(2.9)	97(69.3)	26(18.6)	0(0.0)	0(0.0)	11(7.9)	2(1.4)	140(100.0)	
대졸 및 재학	2(2.8)	52(72.2)	10(13.9)	2(2.8)	2(2.8)	4(5.6)	0(0.0)	72(100.0)	
취업여부									
취업	3(4.2)	36(50.7)	19(26.8)	2(2.8)	3(4.2)	8(11.3)	0(0.0)	71(100.0)	28.513(6) ***
비취업	4(1.8)	172(77.5)	28(12.6)	1(0.5)	0(0.0)	14(6.3)	3(1.4)	222(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7(2.8)	171(68.7)	42(16.9)	2(0.8)	3(1.2)	22(8.8)	2(0.8)	249(100.0)	9.190(6)
지원받지않음	0(0.0)	37(84.1)	5(11.4)	1(2.3)	0(0.0)	0(0.0)	1(2.3)	44(100.0)	
거주특성									
재가	6(3.3)	128(69.9)	43(23.5)	2(1.1)	2(1.1)	0(0.0)	2(1.1)	183(100.0)	55.252(6) ***
시설	1(0.9)	80(72.7)	4(3.6)	1(0.9)	1(0.9)	22(20.0)	1(0.9)	110(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전체 응답자의 약 65%가 미취학 자녀를 위해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때 미혼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기관은 어린이집이었다.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을 했을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 미취학 자녀를 돌봄 기관에 보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4.5%에 달했는데, 특히 10대 미혼모(59.2%)와 비취업 미혼모(53.2%),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44.9%)에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94.9%)이 매우 높았던 10대 미혼모 가정의 돌봄기관 이용 비율이 낮다는 점은 그간 보육 정책이 상당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함께 미혼모 자신의 자립을 위한 준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자녀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취업 미혼모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또한 생계 활동이나 자립 준비를 위해 돌봄기관의 이용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돌봄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4〉 미취학 자녀 돌봄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기타	전체	x^2(df)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414(61.2)	25(3.7)	233(34.5)	4(0.6)	676(100.0)	
연령대						
10대	39(39.8)	0(0.0)	58(59.2)	1(1.0)	98(100.0)	39.543(6)***
20대	224(63.8)	11(3.1)	115(32.8)	1(0.3)	351(100.0)	
30대 이상	151(66.5)	14(6.2)	60(26.4)	2(0.9)	227(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5(42.2)	0(0.0)	46(55.4)	2(2.4)	83(100.0)	28.295(6)***
고졸 및 재학	203(63.4)	12(3.8)	104(32.5)	1(0.3)	320(100.0)	
대졸 및 재학	121(65.1)	9(4.8)	56(30.1)	0(0.0)	186(100.0)	
취업여부						
취업	244(83.8)	17(5.8)	28(9.6)	2(0.7)	291(100.0)	140.573(3)***
비취업	170(44.2)	8(2.1)	205(53.2)	2(0.5)	385(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373(63.5)	19(3.2)	193(32.9)	2(0.3)	587(100.0)	14.432(3)**
지원받지 않음	41(46.1)	6(6.7)	40(44.9)	2(2.2)	89(100.0)	
거주특성						
재가	227(55.2)	21(5.1)	161(39.2)	2(0.5)	411(100.0)	18.763(3)***
시설	187(70.6)	4(1.5)	72(27.2)	2(0.8)	265(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가 39.0%로 가장 많았고,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

아서'(19.7%), '보육료가 부담되어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거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와 같은 시설 접근성에 따른 기관 미이용 사유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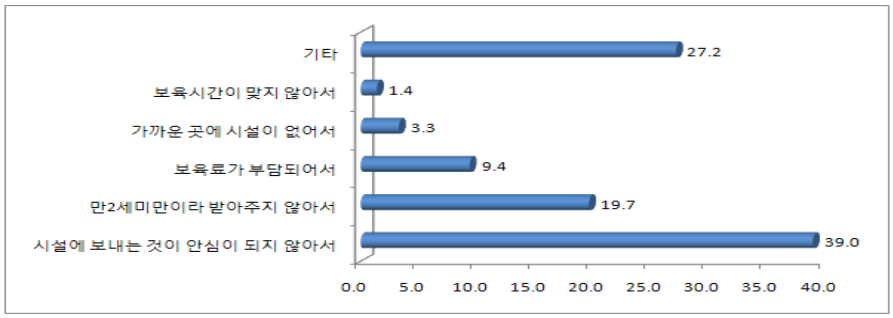

〈그림 Ⅲ-3〉 돌봄기관 미이용 사유: 미취학자녀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1%(35명)에 그쳐, 미취학 자녀에 대한 주변의 돌봄지원이 부재하고,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자녀 돌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수가 매우 적어 해석에 제한이 따르나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미만(50%)이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경우도 19.2%에 달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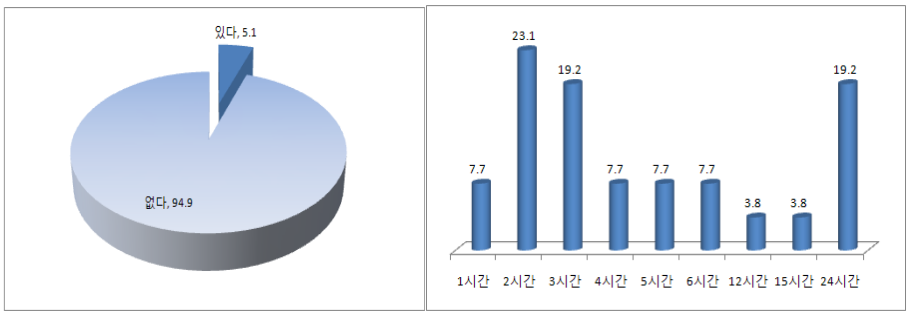

〈그림 Ⅲ-4〉 미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유무 및 평균시간

(2) 취학자녀 돌봄 실태

본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총 38명으로, 다음의 분석은 해석에 다소간의 제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향후 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결과는 미혼모의 취학자녀 돌봄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방과후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미혼모 본인이 51.5%로 가장 많았고, 가족(24.2%),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9.1%), 이웃/친구(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의 경우, 미취학 자녀에 비해 가족이나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이웃/친구 등의 돌봄지원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미혼모 본인 이외의 돌봄 자원은 열악한 상황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6.1% 존재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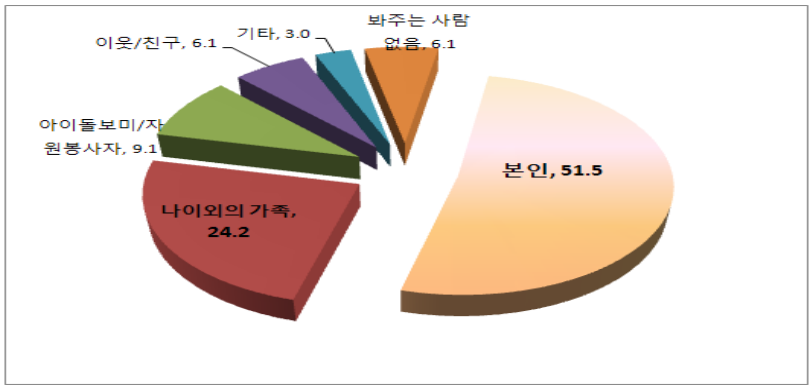

〈그림 Ⅲ-5〉 취학 자녀의 방과후 주 돌봄자

취학자녀가 학교를 마친 뒤 방과후 교실이나 학원과 같은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이용하는 학습 서비스로는 사설학원이 31.0%로 가장 많았고, 교내 방과후 교실(29.0%)과 공부방(20.0%) 등이 뒤를 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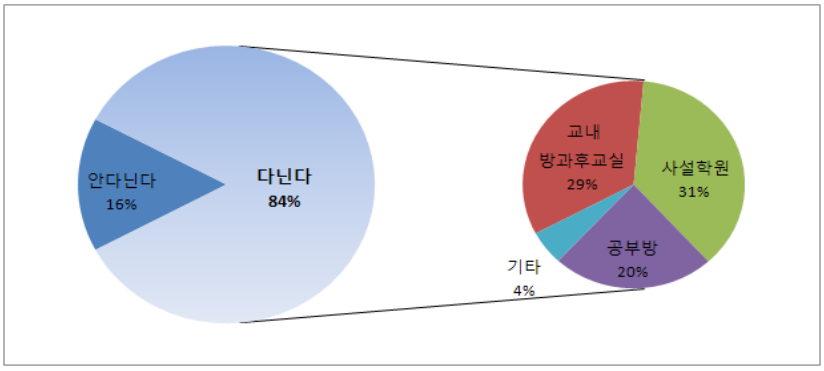

〈그림 Ⅲ-6〉 취학 자녀의 방과후 학습서비스 유무 및 종류

취학자녀가 평상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2%가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학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은 평균 3.23시간으로, 2~3시간이 각각 30.8%로 가장 많았다. 사례수의 제약으로 인해 절대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같은 결과는 미취학자녀가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혼모 가정에서 취학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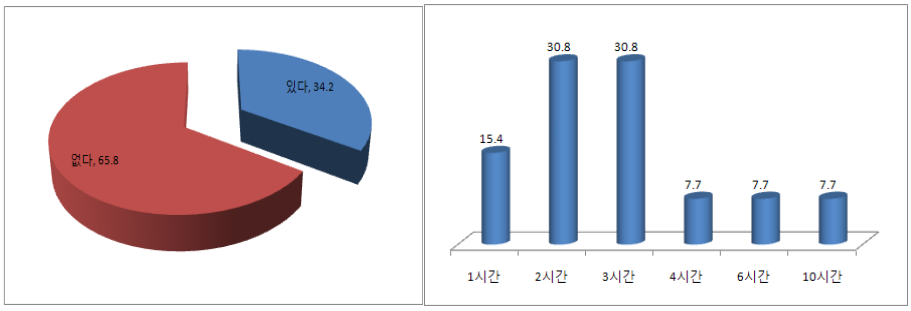

〈그림 Ⅲ-7〉 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유무 및 평균시간

3) 자녀양육과 미혼모의 삶

다음으로 미혼모가 자각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변화를 통해 미혼모의 삶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변화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등의 총 5개 문항에 대해 1을 '전혀 아니다', 4를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수치가 클수록 개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미혼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평균 3.67점)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평균 3.37점)의 항목에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미혼모들의 삶에 있어 자녀양육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모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변화가 커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는데,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와 '아이에 매어 전과 같이 자유롭게 지낼 수 없어 짜증난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 등의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5〉 자녀양육으로 인한 변화

(단위: 점)

구분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내가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이에 매여 전과 같이 자유롭게 지낼 수 없어 짜증난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
전체평균(N=727)	3.37	3.67	1.56	2.11	2.33
연령대					
10대	3.51	3.82	1.78	2.53	2.74
20대초반	3.31	3.69	1.48	2.14	2.29
25대후반	3.34	3.58	1.70	2.16	2.33
30세 이상	3.37	3.66	1.42	1.88	2.19
F	1.472(3)	2.757(3)*	5.755(3)***	9.640(3)***	5.778(3)***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이하	3.26	3.66	1.60	2.21	2.32
고졸 및 재학	3.36	3.70	1.63	2.13	2.35
대졸 및 재학	3.41	3.67	1.42	2.00	2.32
F	1.165(2)	0.218(2)	2.973(2)	1.483(2)	.074(2)

구분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내가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이에 매여 전과 같이 자유롭게 지낼 수 없어 짜증난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42	3.73	1.57	2.14	2.39
만3세-5세	3.32	3.61	1.54	2.14	2.31
만6세-11세	3.32	3.59	1.57	1.95	2.20
만12세 이상	3.07	3.79	1.43	1.71	2.14
F	1.766(3)	2.280(3)	0.146(3)	1.637(3)	1.211(3)
취업여부					
취업	3.42	3.71	1.51	2.03	2.27
비취업	3.33	3.64	1.59	2.17	2.38
t	1.624	1.413	-1.111	-1.785	-1.243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3.35	3.67	1.54	2.10	2.32
지원받지 않음	3.48	3.69	1.66	2.13	2.38
t	-1.255	-.299	-.939	-.208	-.413
거주특성					
재가	3.37	3.62	1.61	2.18	2.33
시설	3.37	3.74	1.46	1.98	2.32
t	-.085	-2.272*	2.067*	2.352*	.064

주1)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음(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양육의 어려움

1) 자녀양육 포기 욕구 경험 정도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8%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포기할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비취업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 또한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를 크게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 자녀양육 포기 욕구 경험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하는 편이다	자주 있다	전체	x^2(df)
전체	305(42.4)	284(39.4)	121(16.8)	10(1.4)	720(100.0)	
연령대						
10대	42(43.3)	28(28.9)	23(23.7)	4(4.1)	97(100.0)	36.461(6)***
20대	129(34.8)	164(44.2)	74(19.9)	4(1.1)	371(100.0)	
30대 이상	134(53.2)	92(36.5)	24(9.5)	2(0.8)	252(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5(39.8)	27(30.7)	20(22.7)	6(6.8)	88(100.0)	31.343(6)***
고졸 및 재학	130(38.7)	137(40.8)	67(19.9)	2(0.6)	336(100.0)	
대졸 및 재학	102(49.8)	79(38.5)	22(10.7)	2(1.0)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63(45.0)	132(36.5)	62(17.1)	5(1.4)	362(100.0)	
만3~5세	92(39.3)	102(43.6)	38(16.2)	2(0.9)	234(100.0)	11.358(9)
만6~11세	42(37.8)	48(43.2)	19(17.1)	2(1.8)	111(100.0)	
만12세 이상	8(61.5)	2(15.4)	2(15.4)	1(7.7)	13(100.0)	
취업여부						
취업	142(44.0)	137(42.4)	39(12.1)	5(1.5)	323(100.0)	9.575(3)*
비취업	163(41.1)	147(37.0)	82(20.7)	5(1.3)	397(100.0)	
거주특성						
재가	170(38.1)	188(42.2)	83(18.6)	5(1.1)	446(100.0)	10.039(3)*
시설	135(49.3)	96(35.0)	38(13.9)	5(1.8)	274(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이 63.1%로 가장 많았고, '양육시간의 부족'(16.4%), '자녀의 훈육지도'(9.1%)등의 순이었으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6.1% 가량 존재하였다. '자녀의 유치원생활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자녀학습관리', '자녀의 학습부진' 등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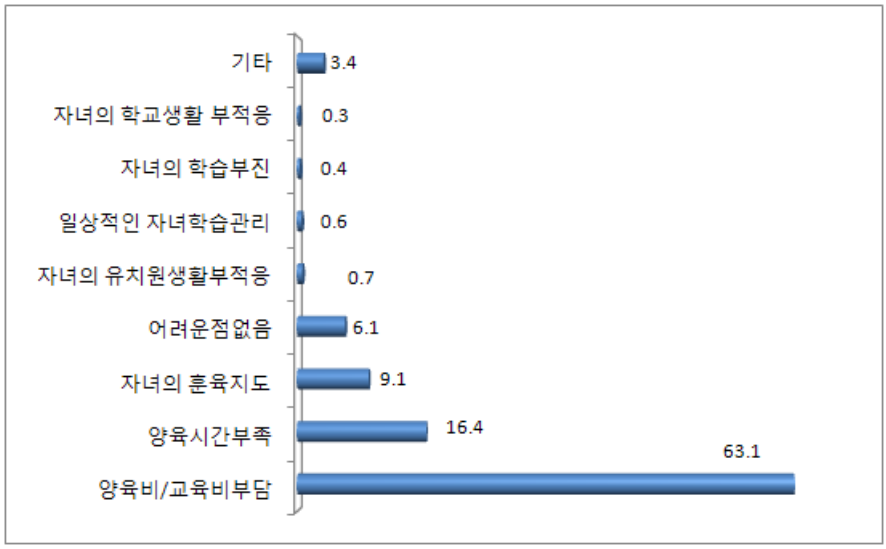

〈그림 Ⅲ-8〉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상위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의 경우 미혼모의 연령이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비취업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10대 미혼모의 경우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미혼모 내에서도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10대 미혼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시간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연령이 만 3세에서 11세인 경우와 취업미혼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훈육지도' 관련 어려움의 경우에도, '양육시간의 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모, 자녀연령이 많은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미혼모들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초기 양육기의 경우, 양육비나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돌봄시간의 부족이나 자녀의 훈육지도 등과 같은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표 Ⅲ-7〉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양육 시간의 부족	자녀의 훈육 지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자녀의 유치원 생활 부적응	일상적인 자녀 학습 관리	자녀의 학습 부진	자녀의 학교 생활 부적응	기타	전체	x^2(df)
전체	459(63.1)	119(16.4)	66(9.1)	44(6.1)	5(0.7)	4(0.6)	3(0.4)	2(0.3)	25(3.4)	727(100.0)	
연령대											
10대	68(68.7)	4(4.0)	9(9.1)	13(13.1)	1(1.0)	0(0.0)	0(0.0)	0(0.0)	4(4.0)	99(100.0)	39.714 (16)**
20대	248(66.3)	63(16.8)	29(7.8)	22(5.9)	2(0.5)	2(0.5)	1(0.3)	0(0.0)	7(1.9)	374(100.0)	
30대 이상	143(56.3)	52(20.5)	28(11.0)	9(3.5)	2(0.8)	2(0.8)	2(0.8)	2(0.8)	14(5.5)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73(81.1)	7(7.8)	2(2.2)	6(6.7)	0(0.0)	0(0.0)	0(0.0)	0(0.0)	2(2.2)	90(100.0)	34.218 (16)**
고졸 및 재학	217(63.8)	46(13.5)	33(9.7)	24(7.1)	3(0.9)	2(0.6)	2(0.6)	0(0.0)	13(3.8)	340(100.0)	
대졸 및 재학	112(54.6)	50(24.4)	22(10.7)	9(4.4)	1(0.5)	2(1.0)	0(0.0)	1(0.5)	8(3.9)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40(65.6)	44(12.0)	29(7.9)	30(8.2)	4(1.1)	0(0.0)	0(0.0)	0(0.0)	19(5.2)	366(100.0)	95.248 (24)***
만3~5세	142(60.2)	49(20.8)	29(12.3)	9(3.8)	1(0.4)	1(0.4)	1(0.4)	0(0.0)	4(1.7)	236(100.0)	
만6~11세	71(64.0)	25(22.5)	6(5.4)	4(3.6)	0(0.0)	3(2.7)	1(0.9)	1(0.9)	0(0.0)	111(100.0)	
만12세 이상	6(42.9)	1(7.1)	2(14.3)	1(7.1)	0(0.0)	0(0.0)	1(7.1)	1(7.1)	2(14.3)	14(100.0)	
취업여부											
취업	175(53.5)	90(27.5)	30(9.2)	11(3.4)	3(0.9)	3(0.9)	3(0.9)	1(0.3)	11(3.4)	327(100.0)	66.600 (8)***
비취업	284(71.0)	29(7.3)	36(9.0)	33(8.3)	2(0.5)	1(0.3)	0(0.0)	1(0.3)	14(3.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400(63.8)	97(15.5)	62(9.9)	34(5.4)	5(0.8)	3(0.5)	3(0.5)	0(0.0)	23(3.7)	627(100.0)	23.780 (8)***
지원받지 않음	59(59.0)	22(22.0)	4(4.0)	10(10.0)	0(0.0)	1(1.0)	0(0.0)	2(2.0)	2(2.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308(68.6)	72(16.0)	24(5.3)	20(4.5)	3(0.7)	3(0.7)	3(0.7)	2(0.4)	14(3.1)	449(100.0)	32.355 (8)***
시설	151(54.3)	47(16.9)	42(15.1)	24(8.6)	2(0.7)	1(0.4)	0(0.0)	0(0.0)	11(4.0)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시 어려움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확인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이나 '양육시간의 부족', '자녀의 훈육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녀연령별 양육시 어려움을 정리한 것이다.

(1) 영아기 자녀 양육시 어려움

심층면접 결과, 0세에서 2세의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은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의 부족, 자녀양육비 부담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양육자로서의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은 가족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재가 미혼모들에게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 어후... 처음에는, 애를 평소에 안키워 봤기 때문에, 손도 못댔어요, 애기가 조금 울면은 막 어쩔 줄 몰라하고..막...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애가 '아앙' 이러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5분뒤에 할게.' 이렇게, 이렇게, 전...모르니까. 모유를 먹인 적도 없고...또 애를 안은 적이 없으니까... (사례3)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적절한 돌봄서비스의 부족이 제시되었다. 생계활동과 자녀양육을 홀로 담당해야 하는 미혼모들에게 어린이집이나 돌보미 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지원이 매우 절실하지만, 영아를 받아주는 곳이 없거나, 돌봄 기관의 서비스 제공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생각보다 영아를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다 돌 이상이 많아요. (사례1)

> 아 그게 너무 또 힘든게, 저는 아침에 못해도 회사를 8시40분 까지 가야되요. ..그러면 애기들이 일찍 깨우는 거는 그래, 둘째치고, 애기를 놀이방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하는 놀이방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내가 이래저래서 나 10시까지 갈껍니다, 이럴 수도 없는거고... (사례3)

이제 어린이집 대기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집 가까운데 몇 군데 지금 대기 올려놨는데...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순위라고는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그렇다고 아무 어린이집이나 맡길순 없는거고...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가...그게 정말 우선순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례4)

돌봄서비스의 부족과 함께 기본 보육료 이외에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특별활동 비용이나 입학금, 연장보육 비용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일단 아이사랑도 되고요, 저희 애기는 코앤코라고 무슨 무용같은 것도 하고, 어린이 집에서 체육활동....그게 이만원 나가고요, 또, 어린이집이 멀 경우는 차량이 와요. 그 차량비 내야 되고요. (그건 개인 부담이죠?) 예예 개인 다..그 입학금도 개인부담 이에요. 입학금 오만원. (사례2)

그리고, 야간으로 추가 됐을 시는, 그게 한계가 있던데요? 제가 그때 잠깐 3주 보냈는데, 몇 시간은 무료로 우리같은 경우 나라에서 해주는데, 그 이상이나...뭐 저녁 가격...저녁 식사비를 또 내야...뭐 그런게 있었는데... (사례1)

저녁에 일할 때, 물류센터 일할 때, 애기 밤에 보내는데 그 뭐죠? 애기사랑카드 그걸로 일반...저녁까지 야간까지 다 끊어요. 국가에는 지원해 주는 14만 얼마인가...다 끊은 다음에, 내가 애를 그런식으로 밤에 보내고...하기 때문에도 케어...케어비 같은 식으로...있어, 그거 따로 내야되요..아후 그게 무시 못해요. 저는 20만원 냈어요. (사례3)

저는 3주를 맡겼는데, 3주 동안에, 기저귀를 한팩을 드렸는데 반팩이 남은거에요. 그렇게 안갈아 주는 거에요. 깜짝 놀랬어, 기저귀 50개 짜리를 3주를 반팩, 반팩밖에 안썼다는 거... 그리고 더 충격을 받은건, 분유가 얘가 그때가 세숫갈 반이었어요, 메모해서 보냈죠 당연히. 그런데 두숫갈 반으로 적어놓은 거에요 분유통에...그럼 얘는 여태까지 두숫갈 반으로 먹은 거에요 물만 많이 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안되겠다 그래도 돌까지는 혼자 데리고 있어야겠다.... (사례1)

일단, 엄마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애기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그런...보육적인 시설이나,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정말...물론 애기들이 좀 낯을 가리더라도 엄마들이 걱정없게...그런 철저한...육아적인...보육관리? 보육관리가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엄마들이 아까 말했듯이,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는게...물론 애기가 낯을 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겼을 때...그런 불안함도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그런 거 같애요, 그런 불안감? (사례3)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미혼모들에게 중요한 돌봄자원이 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기본비용 외에 심야 돌봄 서비스 비용이나 돌보미에 대한 부대 비용 등의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전 이천원 천원이었는데 시간당, 지금은 올라서 시간당 만원인데 그게 원래 그게 반반...나눠...자기...해서 오천원. 근데, 제가 있는 곳은 한달에 두 번, 3만원...그러니까 3만원, 3만원, 총 6만원인가...두번을 부를 수 있게... 자기가 개인사정이 있으면, 그거는 지원해 줘요. (사례1)

>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어린이집에다가도 맡기기는 하지만, 애기 혼자 맡기면 좀 눈치 보이고 그러거든요..그래서, 아이돌보미...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쎄니까...아후 못하고... 진짜...장난이 아니고, 가격이 6천원 그런 거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수급비도 조금씩 받지만, 그래도 아이돌보미는 너무 가격이 너무 쎈거에요. (심야엔) 택시비까지 줘야 되고요...아주머니 밥도 줘야 되고요...나갈 때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례2)

(2) 유아기 자녀 양육시 어려움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도 영아기 자녀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부담이나 돌봄서비스 부재와 같은 유사한 어려움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자녀의 성장에 따른 적절한 훈육지도의 어려움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 미혼모 가정으로서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 보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교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미혼모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비교적 단순한 돌봄이 중심이었던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학습지나 특기교육과 같은 사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 저희 애기는 또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또 피아노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보내고. 인제 두 개는 또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보낼라다 보니까 너무 비용적으로 사실 힘들어요. (사례7)

> 저는 그... 학습지...학습지나 학원다니는거 있잖아요. 태권도, 피아노, 뭐... 발레... 엄마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또 영어.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피아노 한번 가는데 10만원에 태권도 한번 가는데 8만원, 10만원... 뭐 이정도 되죠..…솔직히 유치원 비용도 좀...추가 비용도 그렇구요. 0세에서 1세까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38만원인가 그정도 되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지원금은 줄어들고, 유치원에서 비용은 더 커지고...그니까 이게 너무 갭이 생기는거야..근데 정부 지원은 뭐냐면 0세에 들어가는 선생님, 선생님 수인거

에요. 선생님 한명에 아이가 세명인거든요 0세는. 그런데 큰아이면 큰 아일수록은, 저희 ○○이가 6살인데 6살이면 선생님이 1명이 20명인거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보조할 금액이 적기 때... 그니까 20명 한테 내가 인제 정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돈이 적어지는건데 엄마들 한 개인개인을 따지다 보면, 더 인제 지출들이 늘어난거죠. 그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갔고 정부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정부는 한부모가정 같은... 130%까지 100%로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요번에 내년에는 맞벌이나 아니면 고소득까지 생각을 하셔서 400만... 460인가요 420만원까지 지금 폭이 넓혀졌잖아요. 근데 이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질도 좀 높여주는... 좀 되야되지 않느냐... (사례8)

자녀의 성장에 따른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이러한 여력이 없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였다. 특히 아이들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자녀가 성장할수록 짧아지는 공적 돌봄 시간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제 일이 인제 그...저희...직계가..회사의 직계분들이 다 그만 두구서 저 혼자 일을 하는데 맨날 밤 한시, 새벽 두시, 세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일도 제대로 안되고 또 집안에 아이도 돌보지도 제대로 못하고...아이가 어렸을때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지금부터도 엄마의 손길이...얘가 그 작년에 유치원에 인제 처음 들어갔는데 적응을 참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참 아이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잘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유치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거에요 맨날 유치원가고 싶지 않다고 맨날 울고불고 아침부터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아, 좀 아이한테 그...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거...또 인제 친구들하고도 상대도 별로 안 좋지... 그 다음 우리 자조모임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인제 저희 집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좀 하고... (사례8)

근데 방과후 교실 자체가 솔직히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생기는 교실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엄마들이 해당사항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해당사항일거거든요. 애들 1학년만 들어가도 12시 반에 집에 와요. 7시에 오던 애들이 갑자기 12시 반에 오면 6시간을 어떻게 떼워야 되는지 엄마들이 난감해 하잖아요. 벌써... 그것 때문에 방과후 교실이 생겼고 학원이 이렇게 번성해진 계기가 된거잖아요. 지금... 8시까지 봐주던 유치원이 학교는 12시 반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 내... 3개월 전.. 3개월 후의 일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난감한데 이제 학원부터 알아보는 거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게 학원차가 셔틀이 돌아다니면서 내려주고 태우고 그다음에 저녁이 나오는데... 간식이 나오는데 알아보기 시작한 거에요. 엄마가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모든 엄마들의 고통, 공통사항인데 저희는 더 목마르다는거죠..왜냐하면 이혼한 엄마들은 차라리 친정에서 도와, 도와라도 줘요. 우리 딸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낳기 때문에 딱 치고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낳으라고 했냐고. 니가 낳았으니가 니가 키워. 이거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사례6)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왜 취업을 좀 왜 몇 개월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업을 가서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훈련을 받는게 목적이 취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학교를 들어가면 일찍 마치면... 그럼 또 못하는거에요. 사실은. (사례7)

그게 이제 맞벌이부부, 워킹맘의 비애인데 여기서도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도 비교가 되요.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보육, 그러니까 보육이라고 하거든요.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가면 2시, 10시에 가면 3시에 끝나요. 이렇게 끝나면서 종일반도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간다던지 아니면 또 교육이라다 보니까 뭐 원....개교기념일같은 경우에는 쉬고, 뭐한다고 쉬고, 그렇거 다 있다보면 종일반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견학을 가게 되면 세시, 네시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종일반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요. 이 엄마들은 견학을 가게 되면 그 엄마들은 반가를 내갔고 나가야 되는거에요. 아니면 누구를 붙여주던가 이제 그래야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종일반의 의미가 거의 없는 거에요.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사례8)

이처럼 자녀가 성장할수록 공적인 돌봄기관에서의 자녀 돌봄 시간은 줄어들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미혼모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우리 애기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지금은 저녁에 손님 만날 일 있으면 나가거든요 . 그러면 여섯시에 나가도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두세번씩 있어요. 자기가 먹을 다...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절대 남이 눌러도 열어주지 말고 전화기 다 있으니까 전화해라 엄마한테. 제가..슬픈이야기 하나 하면요...세 살 네 살때요 크리스마스때 제가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크리스마스땐 보모도 없더라구요 베이비시터도 없더라구요. 혼자 밥먹다가 장난감 놀다가 네 살짜리가 그냥 잤어요. 아침 여덟시부터 새벽 세시까지. …정말 일 그 편의점가서 알바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편의점 알바가 꼭 중고등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세대도 많이 하고 취직 못한 애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세대를 그 국가 공무원 단체 이런 기간제로 인턴제. 인턴제... 전 진짜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난데 인턴제 제도보단 이 사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베이비시터를 정말 활성화시켜가지고 24시간 베이비시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면은 야간수당도 붙고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국가예산이 저는 그게 없을거라는 생각 절대 안하거든요...그건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례6)

아이돌보미 서비스... 그래서 저녁에 뭐 동사무소 가서 수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끊어진 거에요. 그래서 수업을 다 없앴어요. 저녁 수업을...거기에다가 인제 제가 또 어떨 때는 교육이 2박 3일 이렇게 가는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에요. (사례7)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된 양육의 어려움도 크게 가시화되었는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미혼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지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재에 대한 염려 등도 지적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한부모 가족들도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원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미혼모에게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씩 내속을 끓는다고 아빠이야기를 해요. 인제는... 엄마 때문에 아빠하고 헤어지고... 엄마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큰애는 그렇게 하거든요. 엄마, 무조건 다 엄마 때문이래. 얘가 점점점 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5)

다른 가정...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저희도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잘 얘기해요... ○○이도... 편안하게... '아! 우리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차를 운전을 하거든요. 마티스를....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면 자기는 뒤에서 있거나 앞에 벨트를 메고 있거나... 뭐 '아～～ 아빠가 운전하고, 아빠가 생겨서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랑 뒤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아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빠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자기... 그래서 니가... 그러면 지가 본 사람이 몇사람 안되요... 삼촌... 뭐 고종사촌들 제... 누구누구... 그러면 우리 친척이어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그러니까... 더 골라보자... 더 생각해보자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근데 어쨌거나 아빠를 많이 찾기는 찾더라구요. 일곱 살 되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거 같아요. (사례6)

저희 아들은 여섯살인데도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니깐. 이걸 한번을 물어보질 않아서 참 얘는 왜 아빠에 대해서 한번도 물어보질 않을까...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것도 솔직히 무섭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지 그것도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얘기를 안하는데 한번, 인제 너무 인제 심각하니까 여섯 살때까지 한번도 물어보질 않아서.. 상담을 받았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없는걸 걔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고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가 슬퍼하는 것을 뻔히 알고있기 때문에 안물어보는거다... 그렇게..…저번에 갓난쟁이, 50일 밖에 안된 아이를 데리고온 엄마가 있어... '참 아이 이쁘다.. 너도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난 싫어' 그러더니 자리를 뜨드라구요. '그럼 너는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아니 필요없어' 그 자리를 뜨는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한테 문제가 벌써부터...너무 걱정이 돼서 니가 아빠를 원하면 엄마가 아빠를 찾아줄게. 저는 인제 거기까지는 대답을 하는데 만약 물어보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애가 '엄마, 그럼 아빠를 찾아. 나 아빠가 보고싶어' 하고 했을 때, 찾는 거 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남자쪽에서 보고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례8)

저는 인제...남자애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애다보니까 스포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구도 하고싶어하고 축구도 같이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데... 맨날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 맨날 공던져야 되고... 지치면 주스러 가야되고... 축구도 계속 같이 이걸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왜 뭔가 힘 있는 그런 동작해야 되고 좀 와일드하게 놀아야 되는데 항상 엄마랑 놀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요... 엄마의 모습만 보면 그 어떤 남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그런게 이게 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언니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고 있고 삼촌도 있잖아요... 저는 전혀 없어요... 서울에 아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여자같이 이렇게 막 놀고... 그런데도 스포츠나 이런 건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이제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같이 놀아야되고... 그러구 이렇게 사소하게 뭔가 자기가 하잖아요... 그럼 꼭 엄마의 이게 칭찬을 들어야 되고... 엄마의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뭔가 일을 하는데... 팽이를 두 개를 막 동시에 돌려놓고... 하나를 쓰러트렸어요. 그러면 이걸 쓰러뜨렸으면 자기를 이걸 보라는 거야...그런 것까지도 너무 다 챙겨야 되니까 이런게 힘들고... 그... 남자에 대한 모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사례7)

유아기 자녀를 양육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가족을 전제로 운영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가면은... 5월 달 되면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게 5월달이에요... 엄마아빠 만나서 결혼해서 애난다... 한달 내~내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정말 그런 가정 없어요... 이제... 저희 같은 가정도 많고... 아빠 혼자 키우는 가정도 많고... 그런데... 정말 교육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강력하게 싸웠데요... 여자아이 다섯명하고... 결혼안하고 애 낳을 수 있어...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이... 말이 좀 쎈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줌마, 아줌마... 근데요, 물어볼 거 있는데요... 왜 결혼안하고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는 거에요... 선생님은 아...그래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고 끝냈대요... 자세하게 이야기 못하니까... 어 그래 ○○이는 엄마가... 있는데 아빠는 없어... 그게 아줌마가 결혼 안하고 ○○이를 낳아서 지금 이렇게 사는거야... 그랬더니... 지들 딴에는 이해는 안되지만... ○○가 그렇게 산다니까 할말이 없는 거잖아요... (사례6)

올 여름에 아버지랑 같이 수업하는게 있어요 유치원... 근데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데 저희 아버지는 없고 인제 할아버지, 삼촌이 인제 작년에는 가줬는데 올해는 안됐어요. 그래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해줬는데 이제 슬퍼하더라구... 그럼 뭐 할 수 없지, 멀기도 하니깐... 그럼 난 안갈게... 그래놓고서는 그 아이가 너무 실망이 커서 한번 아빠의 존재감이... 내가 그때 미혼모가 된거에 대해서 참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다른 건 여지까지 후회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유치원에서 애기 아빠의 존재를 심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참... 아빠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사례8)

유치원에서 생일날이 되면 엄마가 가요... 저희 유치원에는 생일날 엄마가 가서 엄마가 이 아이의 역사를 인제 이야기를 해줘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

진을 한 장씩 가져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진에 아빠가 늘 없는거에요. 혼자 있거나 엄마랑 둘이 있거나...그렇지. 그러니까... 한아이가 물어보더라구... 왜 ○○이는 아빠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씩 웃고 지나가더라구요. 내가 또 거기서 암말 않고... '왜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는 사람은 없지...'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딱 물어보더라구요....…미혼모까진건 몰라도 혼자 사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또 성이 특이하잖아요. 같은 성을 쓰니까... 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쓰죠... 가정... 그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례8)

3)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돌보미서비스/보육지원서비스'가 56.4%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서비스'(15.4%), '심리정서적 상담'(8.4%), '예체능 등 특기교육'(8.1%), '기초교과지도'(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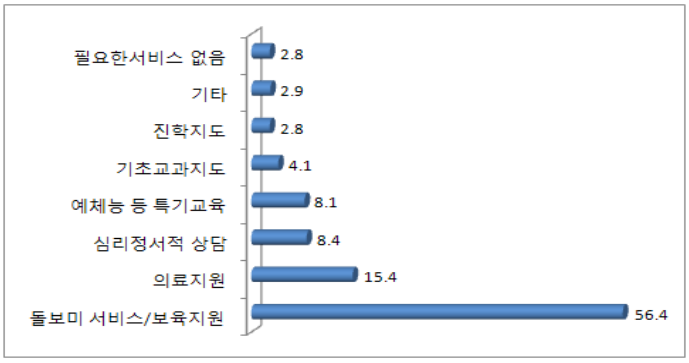

〈그림 Ⅲ-9〉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전체

이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모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돌보미서비스/보육지원'(56.8%)을 꼽았으며, '의료지원서비스'(22.1%)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만 3~5세 자녀에 대해서는 '돌보미서비스/보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60.2%로 다소 증가한 반면, '의료지원서비스'는 10.6%로 감소하였고, '심리정서적 상담'(11.0%)과 '예체능 등 특기교육'(8.1%)에 대한 수요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만 6세~11세 자녀들의 경우 '돌보미서비스/보육지원'(50.5%)과 '의료지원서비

스'(5.4%), '심리정서적 상담'(6.3%) 수요는 이전 연령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데 반해, '예체능 등 특기교육'(24.3%)과 '기초교과 지도'(9.9%)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예체능 등 특기교육'(28.6%)과 '진학지도'(21.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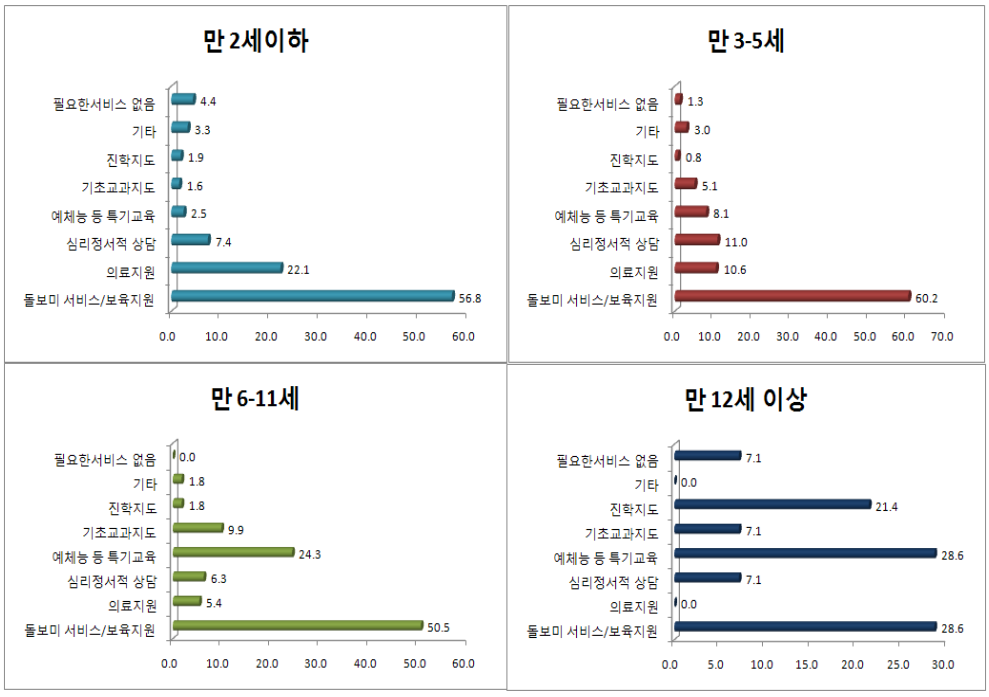

〈그림 Ⅲ-9-1〉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자녀연령별

3. 미혼부와의 관계 및 양육지원

1) 미혼부와의 관계

(1) 미혼부의 개인적 특성

본 조사에서 미혼부들의 평균 연령은 31.0세로,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이 42.6%

로 가장 많았고, 25-29세(25.7%), 20-24세(22.1%), 19세 이하(9.5%)의 순으로 나타나 미혼모와 미혼부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미혼부의 평균연령이 22.8세로 가장 적었고, 미혼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혼부의 평균연령도 각각 27.5세, 32세, 36세로 증가하였다.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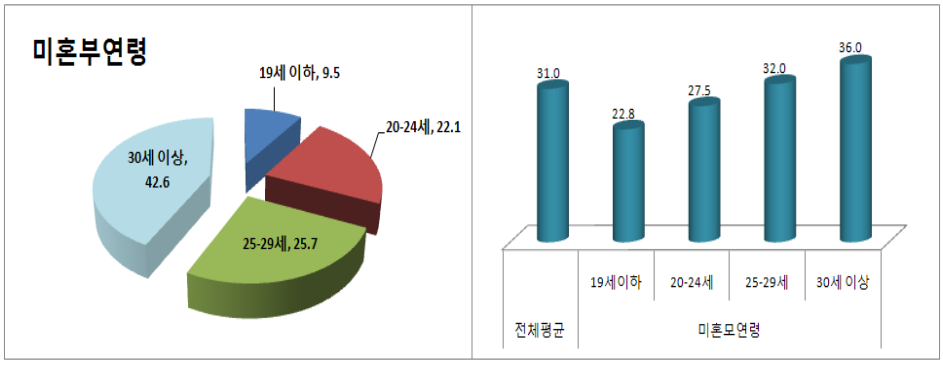

〈그림 Ⅲ-10〉 미혼부의 연령 분포 및 미혼모연령별 미혼부 평균연령

약 89%의 미혼모들이 임신당시 미혼부의 가족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응답을 통해 파악된 미혼부의 가족상황은 부모님 모두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55.2%로 가장 많았다. 미혼부의 가족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으나, 연령이 어린 미혼모일수록 미혼부의 가족상황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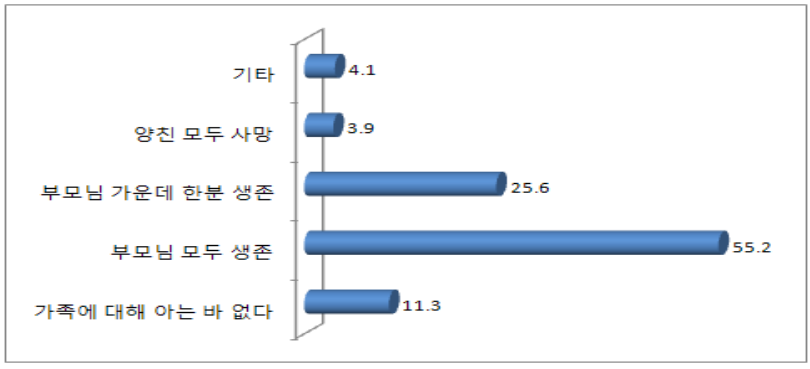

〈그림 Ⅲ-11〉 임신당시 미혼부의 가족상황

임신당시 미혼부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3.0%로 가족상황에 비해 미혼모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 미혼부의 직업으로는 임금근로자(22.7%)가 가장 많은 가운데, 학생과 무직이 각각 17.5%, 17.9%로 뒤를 이었으며 자영업자인 경우도 15.0% 가량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부 가운데 무직, 학생과 같이 부양 능력이 부족한 집단이 상당수 존재(35.4%)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부양능력을 갖춘 집단 또한 적지 않은 비중(37.7%)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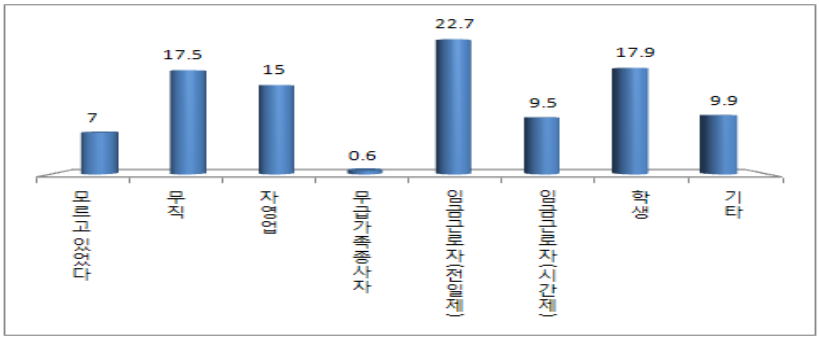

〈그림 Ⅲ-12〉 임신당시 미혼부의 직업

(2) 미혼부의 출산 및 양육사실 인지여부

미혼모의 80% 이상은 미혼부에게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했는데, 양육사실보다는(80.0%) 출산사실을 알린 비율(86.0%)이 조금 더 높았으며, 이를 통해 대다수의 미혼부들은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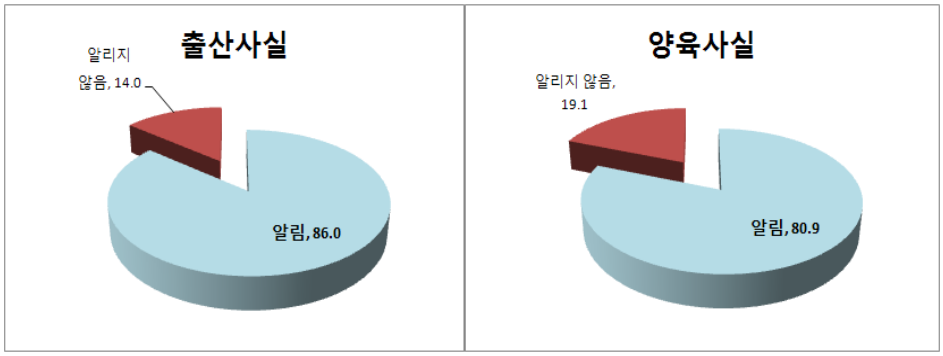

〈그림 Ⅲ-13〉 미혼부의 출산 및 임신 인지여부

한편, 미혼모들이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의 친권을 빼앗길까봐'가 26.1%로 가장 많았고, '사는 곳이나 연락처를 몰라서'와 '연락을 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가 각각 24.3%에 해당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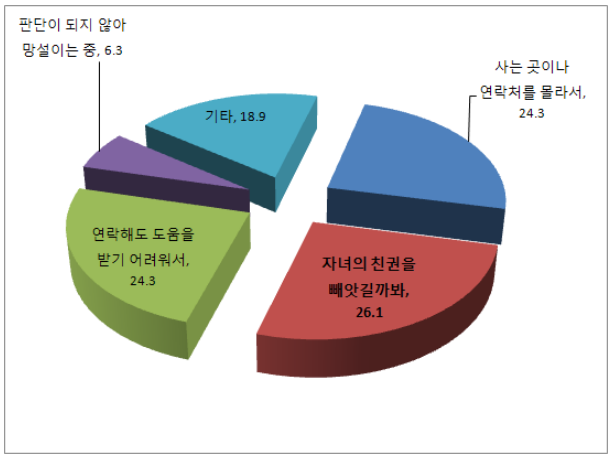

〈그림 Ⅲ-14〉 미혼부에게 자녀양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3) 미혼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미혼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는 미혼부의 현재 직업과 소식/근황, 집주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미혼모의 응답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미혼부의 현재 직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미혼부의 직업으로는 임금근로자(전일제)가 가장 많았고(16.9%), 자영업(8.9%), 학생(6.2%), 임금근로자(시간제, 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부의 현재 직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대 미혼모와 시설거주 미혼모에게서 다소 두드러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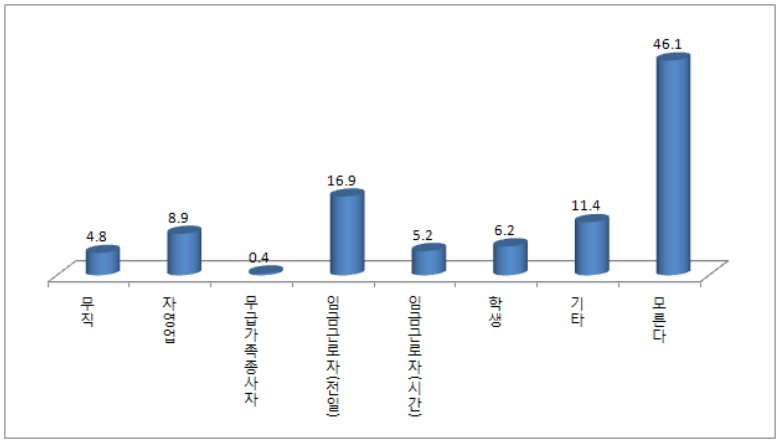

〈그림 Ⅲ-15〉 미혼부의 현재 직업

미혼부의 현재 소식이나 근황,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장(혹은 학교) 등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인지정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식이나 근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미혼부의 자녀양육부양과 관련된 항목으로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능력에 대해서는 지급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으나 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2.9%에 달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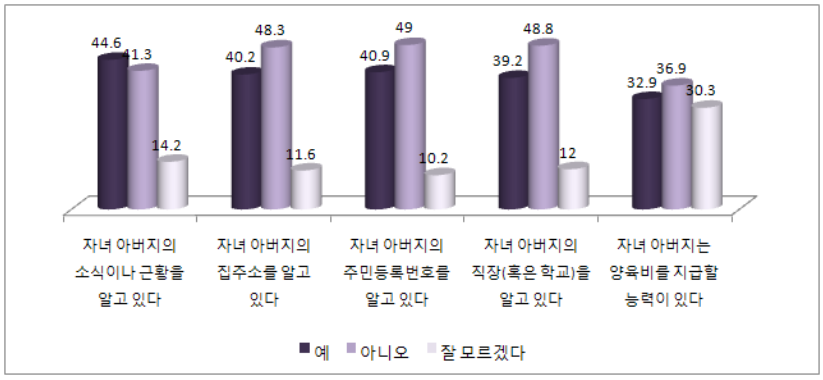

〈그림 Ⅲ-16〉 미혼부의 근황에 대한 정보

2) 미혼부의 양육 지원

(1)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미혼모의 인식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미혼모들이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나이가 어린 미혼모와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 미취업 미혼모,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미혼모들에게서 미혼부에게도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미혼부에게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미혼부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역할로는 자녀양육비 지급(38.4%)이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본인과의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6.5%)이나 자녀와의 정기적 교류(5.8%)등과 같은 희망 사항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혼모들은 미혼부와의 정서적 교류나 지원보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실질적 지원을 더 크게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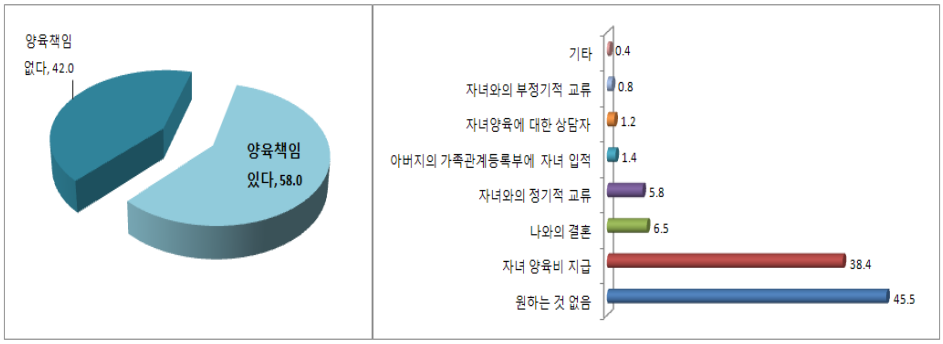

〈그림 Ⅲ-17〉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미혼모의 인식

미혼모들이 미혼부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아버지 역할로서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혼모의 연령이 많고 자녀연령이 어린 경우에 '자녀양육비 지급'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비취업상태의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에게서도 이와 같은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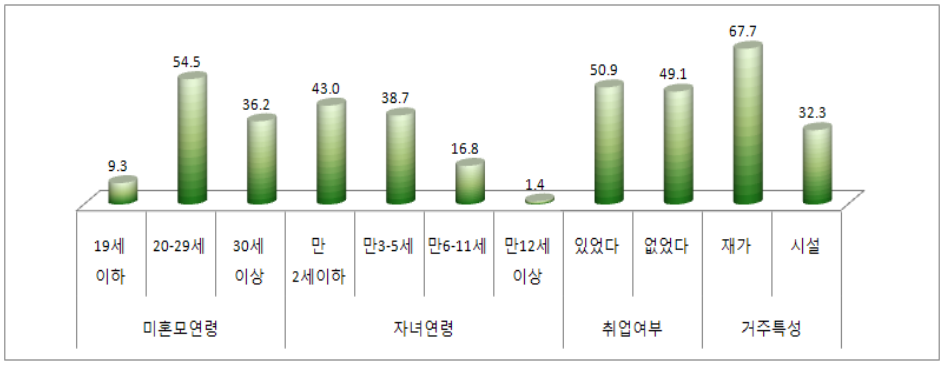

〈그림 Ⅲ-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인식

(2) 미혼부의 양육비 지원 현황

미혼부의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6.0%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에 있어서도 미혼모들의 태도는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청구소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2.6%에 해당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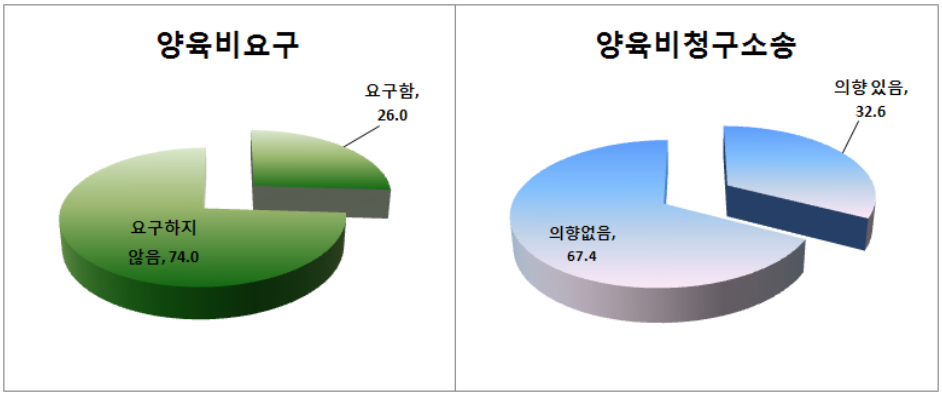

〈그림 Ⅲ-19〉 양육비 요구 유무 및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요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미혼부의 도움 없이 지내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양육비 요구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녀 출산 및 인지시부터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그거, 양육비 지급 법정 명령제도 인가? 그거 저는 설문할 때 그거 필요하다고...정말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그거 했거든요. 왜냐면, 애 아빠를 만나서 합의를 우선 봐야 되고, 이런거 필요 없잖아요. 우선 바로 애 낳고 나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그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송 지금 신청한게 7월달인데, 8,9...벌써 지금 1월달까지 갈 거 같거든요, 6개월이...이게 지금 빠른거래요. 길면 1년 이래요. 이게, 너무 힘든거지. (사례1)

>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되기 전에. 이렇게 딱 애기 첨 낳고 나서, 좀 진짜 나라에서 법적 제재가 가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그냥 딱 그것부터가, 딱 그게 출발점인거 같은데... (사례4)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요구액은 월평균 31~60만원(45.5%)이 가장 많았고, 일시금으로는 31만원~100만원(3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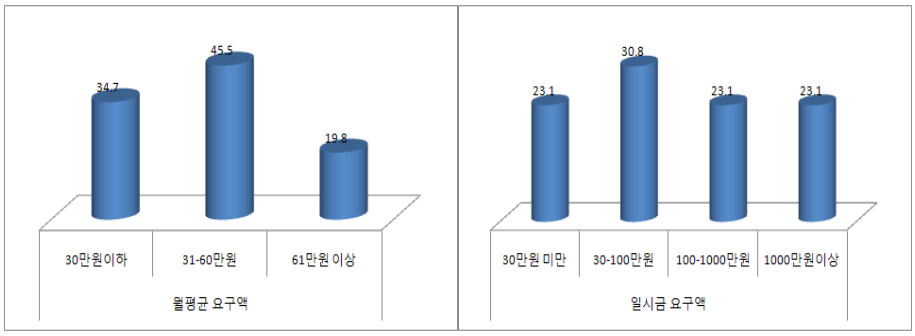

〈그림 Ⅲ-20〉 양육비 요구액

실제로 미혼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N=30)했으며, 이때 미혼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는 월평균 30~50만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30.0%), 30만원 미만(23.3%)의 순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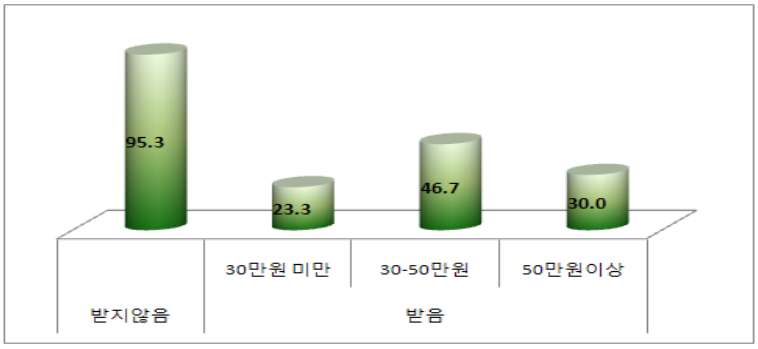

〈그림 Ⅲ-21〉 미혼부의 월평균 양육비 지원액(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요약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양육미혼모들의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양육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미혼부와의 관계 및 지원여부 등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 연구에서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 결정은 비교적 이른 시기, 즉 임신 직후나 자녀를 낳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의 경제적 여건(취업여부)이나 주변의 도움(가족, 미혼부, 이웃 등)과 같은 현실적 여건들보다는 본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미혼모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듯 미혼모들의 자발적인 양육 선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미혼모들은 대부분 한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만 2세 이하가 절반 가량, 만 5세 이하가 82.8%로 대부분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 6~11세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행 지원 서비스는 향후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지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본적인 돌봄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 및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자녀 연령별로 지원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연령별 양육비 지원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의 양육지원 정책이 보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까닭은 미혼모들이 자녀 연령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 연령별로 요구되는 서비스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만 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돌보미 서비스 및 보육지원 서비스와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반면, 만 6~11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예체능 등 특기교육과 기초교과 지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인 학령기에 접어드는 만 12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예체능 등 특기교육과 함께 진학지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지원 서

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되고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모의 자녀돌봄 실태와 관련해서는 미취학자녀와 취학자녀 모두 미혼모 본인이 주 돌봄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의 돌봄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나 자원봉사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는 있으나, 본 분석에서 이들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매우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한 미혼모 집단에게서조차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용률은 관련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들 서비스 이용시 추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만 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 및 서비스의 확충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자녀양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다. 미혼모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양육시간 부족', '자녀의 훈육지도' 등이 있었는데,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 부담이 주된 어려움이었다면,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양육시간 부족이나 자녀의 훈육지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경우, 초기 자녀 양육과정에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의 부족, 자녀 양육비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공적 돌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적절한 훈육 지도를 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양육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제시되었다. 돌봄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미혼모 뿐만 아니

라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가족에게도 유사하게 공유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혼모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같은 공적 돌봄의 공백은 사교육비 부담과 연계되어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양육의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자녀와의 갈등 문제도 제기되었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된 고민과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부재는 미혼모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국한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에 대한 수용성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가족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적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추가적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서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미혼부들은 어리고, 무능력한 아버지들이 아니며, 자녀의 존재 또한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혼부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이들 가운데는 무직이나 학생과 같이 부양능력이 부족한 집단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경제적 부양능력을 갖춘 집단 또한 적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미혼모들은 미혼부에게 자녀출산 및 양육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미혼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도 파악하고 있었다. 미혼모들의 절반 이상은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미혼부에게 기대하는 아버지 역할로는 자녀양육비 지급이 가장 많아 미혼부와의 정서적 교류나 지원보다는 실질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미혼모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양육비를 계기로 원치 않는 미혼부와의 교류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함께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인지도나 절차의 번거로움, 소요되는 시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급이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및 인지시기로부터 미혼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미혼모의 자립 여건,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차별 경험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지망 73
2. 직업경험 및 현재 고용상태 104
3. 비취업자의 취업의지 및 구직활동 113
4. 차별경험 117
5. 요약 및 논의 124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지망

양육미혼모가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들의 향후 노동시장 기회와 접근가능한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되며, 따라서 그들의 자립 여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그들의 정규교육수준 및 인적자원 축적 실태, 부모의 교육수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본인의 소득수준, 부채 및 소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미혼모의 자립 여건을 결정하는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망의 존재와 특성이다.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지망, 부모로부터 지지망, 여타 일상생활에서 지지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자(social isolate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배경

(1) 교육수준과 인적자원

우선 양육미혼모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중졸 이하(재학중 포함)는 14.2%로 가장 비중이 낮았고 고졸및 고교재학중이 53.5%로 가장 많았다. 대재 및 대졸이상 고학력자도 32.3%에 이르렀다. 학력분포를 거주 특성과 연령별, 정부지원 유무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재가나 시설 입소자 사이에는 교육수준의 분포에 있어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연령대에서는 24세 이하 혹은 10대와 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저학력자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과 학력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응답자는 86.5%인데 대학 이상 고학력자 그룹에서는 78%로서 그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고교졸업이나 재학중인 학력그룹의 정부지원 수혜 비중이 가장 높았고(91.6%), 저학력 그룹과 고학력 그룹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14.4%, 22.0%).

〈표 Ⅳ-1〉 학력분포: 거주특성별

(단위: 명, %)

	교육수준				
	중졸재학 및이하	고졸및 재학	대졸및 재학 이상	전체	x^2(df)
거주 특성					
재가	58(15.1%)	203(52.7)	124(32.2)	385(100.0)	0.672(2)
시설	32(12.8)	137(54.8)	81(32.4)	250(100.0)	
전체	90(14.2)	340(53.5)	205(32.3)	635(100.0)	

〈표 Ⅳ-1-1〉 학력분포: 연령별

(단위: 명, %)

	학력				
	중졸재학 및 이하	고졸 및 재학	대졸 및 재학 이상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66(25.7)	157(61.1)	34(13.2)	257(100.0)	93.5(2)***
25세 이상	24(6.3)	183(48.4)	171(45.2)	378(100.0)	
연령대					
10대	35(39.8)	50(56.8	3(3.4)	88(100.0)	130.6(4)***
20대	43(13)	206(62.2)	82(24.8)	331(100.0)	
30대 이상	12(5.6)	84(38.9)	120(55.6)	216(100.0)	
전체	90(14.2)	340(53.5)	205(32.3)	635(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1-2〉 학력분포: 정부지원유무별

(단위: 명, %)

	학력				
	중졸재학 및 이하	고졸 및 재학	대졸 및 재학 이상	전체	x^2(df)
정부지원 유무					
지원받음	77(85.6)	312(91.8)	160(78.0)	549(86.5)	20.6(2)***
지원받지 않음	13(14.4)	28(8.2)	45(22.0)	86(13.5)	
전체	90(100.0)	340(100.0)	205(100.0)	635(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다음 <표 Ⅳ-2>에서 보듯이, 임신사실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들의 정규 교육이 임신으로 인해 단절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0대 및 20대 초반(20~24세

이하) 젊은 연령집단에서 학업 단절의 비중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42.4%, 26.1%), 학생 양육미혼모의 학업 단절을 막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2〉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 분포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115(15.8)	612(84.2)	727(100.0)	
연령대				
10대	42(42.4)	57(57.6)	99(100.0)	
20대초반(20~24세)	49(26.1)	139(73.9)	188(100.0)	104.6(3)***
20대후반(25~29세)	15(8.1)	171(91.9)	186(100.0)	
30대 이상	9(3.5)	245(96.5)	254(100.0)	
교육수준[6]				
중졸 및 재학 이하	28(31.1)	62(68.9)	90(100.0)	16.7(2)***
고졸 및 재학	46(13.5)	294(86.5)	340(100.0)	
대졸 및 재학	30(14.6)	175(85.4)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68(18.6)	298(81.4)	366(100.0)	
만3~5세	29(12.3)	207(87.7)	236(100.0)	4.5(3)
만6~11세	16(14.4)	95(85.6)	111(100.0)	
만12세 이상	2(14.3)	12(85.7)	14(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양육미혼모 중에서는 상당수가 비자발적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임신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자퇴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 학교의 징계 또는 강요로 자퇴한 경우가 14.8%에 달해 전반적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비자발적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연령인 10대 및 20대 초반 연령층에서 이런 비자발적 학업 중단의 비중이 높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Ⅳ-3〉 학업 중단 사유별 분포

(단위: 명, %)

	임신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자퇴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학교의 징계 또는 강요로	부모님의 권유	기타	전체
전체	47(40.9)	21(18.3)	17(14.8)	7(6.1)	23(20.0)	115(100.0)
연령대						
10대	22(52.4)	5(11.9)	7(16.7)	4(9.5)	4(9.5)	42(100.0)
20대초반(20~24세)	20(40.8)	9(18.4)	9(18.4)	2(4.1)	9(18.4)	49(100.0)
20대후반(25~29세)	5(33.3)	2(13.3)	1(6.7)	0(0.0)	7(46.7)	15(100.0)
30대 이상	0(0.0)	5(55.6)	0(0.0)	1(11.1)	3(33.3)	9(100.0)

주: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셀이 존재하므로 카이스퀘어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 중 대다수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Ⅳ-4>에서 보듯이,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77.4%가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대졸 수준에서 학업 지속 희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3.3%).

〈표 Ⅳ-4〉 학업을 계속할 의향 유무

(단위: 명, %)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전체	89(77.4)	7(6.1)	19(16.5)	115(100.0)
연령대				
10대	32(76.2)	3(7.1)	7(16.7)	42(100.0)
20대초반(20~24세)	40(81.6)	3(6.1)	6(12.2)	49(100.0)
20대후반(25~29세)	9(60.0)	1(6.7)	5(33.3)	15(100.0)
30대 이상	8(88.9)	0(0.0)	1(11.1)	9(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7(60.7)	3(10.7)	8(28.6)	28(100.0)
고졸 및 재학	35(76.1)	2(4.3)	9(19.6)	46(100.0)
대졸 및 재학	28(93.3)	1(3.3)	1(3.3)	30(100.0)

주: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셀이 존재하거나 5사례 미만인 경우에는 이후 분석에서 카이스퀘어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자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6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매우그렇다 26.1%, 대체로 그렇다 38.4%). 예상대로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은 학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중이 컸다.

〈표 Ⅳ-5〉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x2(df)
전체	190(26.1)	279(38.4)	218(30.0)	40(5.5)	727(100.0)	
연령대						
10대	43(43.4)	44(44.4)	12(12.1)	0(0.0)	99(100.0)	
20대초반(20~24세)	63(33.5)	80(42.6)	36(19.1)	9(4.8)	188(100.0)	-
20대후반(25~29세)	39(21.0)	77(41.4)	62(33.3)	8(4.3)	186(100.0)	
30대 이상	45(17.7)	78(30.7)	108(42.5)	23(9.1)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3(36.7)	42(46.7)	11(12.2)	4(4.4)	90(100.0)	34.8(6)***
고졸 및 재학	92(27.1)	137(40.3)	98(28.8)	13(3.8)	340(100.0)	
대졸 및 재학	42(20.5)	62(30.2)	83(40.5)	18(8.8)	205(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개인의 인적자본 이외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친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친의 직업을 질문하였다. 다음 <표 Ⅳ-6>은 그 응답 결과이다.

〈표 Ⅳ-6〉 부친 직종(생존시만 응답)

(단위: 명, %)

	부친 직종								
	관리직 혹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 조립직	단순 노무직	직업이 없다	무응답	전체
전체	73 (14.1)	28 (5.4)	68 (13.1)	70 (13.5)	40 (7.7)	93 (18.0)	109 (21.0)	37 (7.1)	518 (100.0)
거주유형									
시군구	8 (9.1)	4 (4.5)	18 (20.5)	8 (9.1)	5 (5.7)	26 (29.5)	13 (14.8)	6 (6.8)	88 (100.0)
공동생활가정	20 (14.0)	4 (2.8)	22 (15.4)	19 (13.3)	21 (14.7)	18 (12.6)	27 (18.9)	12 (8.4)	143 (100.0)
재가	23 (21.1)	12 (11.0)	7 (6.4)	16 (14.7)	0 (0.0)	26 (23.9)	20 (18.3)	5 (4.6)	109 (100.0)
모자원	7 (10.8)	1 (1.5)	9 (13.8)	16 (24.6)	4 (6.2)	6 (9.2)	16 (24.6)	6 (9.2)	65 (100.0)
거점기관	15 (13.3)	7 (6.2)	12 (10.6)	11 (9.7)	10 (8.8)	17 (15.0)	33 (29.2)	8 (7.1)	113 (100.0)
연령대									
10대	14 (17.1)	7 (8.5)	11 (13.4)	6 (7.3)	11 (13.4)	19 (23.2)	7 (8.5)	7 (8.5)	82 (100.0)
20대초반 (20~24세)	15 (10.3)	10 (6.9)	23 (15.9)	18 (12.4)	16 (11.0)	29 (20.0)	23 (15.9)	11 (7.6)	145 (100.0)
20대후반 (25~29세)	26 (19.8)	8 (6.1)	24 (18.3)	9 (6.9)	8 (6.1)	22 (16.8)	22 (16.8)	12 (9.2)	131 (100.0)
30대 이상	18 (11.3)	3 (1.9)	10 (6.3)	37 (23.1)	5 (3.1)	23 (14.4)	57 (35.6)	7 (4.4)	160 (100.0)

부친의 직업은 무직이 21%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단순노무직으로서 18%를 차지했다. 관리직 및 전문직의 비중도 14.1%나 되었다. 거주 유형별로는 재가의 경우에 관리직 및 전문직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며(21.1%), 모자원이나 거점기관 거주자의 경우 부친이 무직인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많이 높았다(24.6%, 29.2%).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에서 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부친이 고령자일 확률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이한 점은 10대 젊은 연령층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17.1%)과 단순노무직(23.2%)의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직업훈련이다. 정규교육 이외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에 얼마나 참여했느냐는 양육한부모 여성의 자립에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아래 <표 Ⅳ-7>에서 보듯이 35.6%로 대단히 높다. 19세 이상 64세 이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여성이 8.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양육한부모 여성들의 직업훈련 참여도는 매우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7] 특히 자녀 연령이 만3~5세인 집단,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 재가보다는 시설 거주자 중에서 직업훈련 유경험자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재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서비스를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Ⅳ-7〉 임신 혹은 출산 후 정규학교 이외의 직업교육(훈련)수강 경험

(단위: 명, %)

	있다	없다	전체	x^2(df)
전체	259(35.6)	468(64.4)	727(100.0)	
연령대				
10대	27(27.3)	72(72.7)	99(100.0)	3.5(2)
20대	138(36.9)	236(63.1)	374(100.0)	
30대 이상	94(37.0)	160(63.0)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96(33.4)	191(66.6)	287(100.0)	1.0(1)
25세 이상	163(37.0)	277(63.0)	44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3(25.6)	67(74.4)	90(100.0)	5.8(2)*
고졸 및 재학	132(38.8)	208(61.2)	340(100.0)	
대졸 및 재학	69(33.7)	136(66.3)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19(32.5)	247(67.5)	366(100.0)	
만3~5세	100(42.4)	136(57.6)	236(100.0)	7.0(3)*
만6~11세	35(31.5)	76(68.5)	111(100.0)	
만12세 이상	5(35.7)	9(64.3)	14(100.0)	
취업여부				
취업	123(37.6)	204(62.4)	327(100.0)	1.0(1)
비취업	136(34.0)	264(66.0)	400(100.0)	

7)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응답결과는 “지난조사 이후 1년동안”의 직업훈련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있다	없다	전체	x^2(df)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45(39.1)	382(60.9)	627(100.0)	23.6(1)***
지원받지 않음	14(14.0)	86(86.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10(24.5)	339(75.5)	449(100.0)	63.4(1)***
시설	149(53.6)	129(46.4)	278(100.0)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0.4%가 훈련비용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부담해주었다고 응답했고, 30.4%는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부담했다고 응답했다(<표 Ⅳ-8>). 30대 이상(48.4%), 중학재학 및 졸업이하의 저학력층(39.1%), 취업자(48%), 한부모가족지원 등 미혼모 관련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자(35.7%), 시설(44.3%) 등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훈련비 수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의 직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면 이들 집단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Ⅳ-8〉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비 주 부담자

(단위: 명, %)

	정부나 공공기관	미혼모 보호 시설	본인 전액부담	본인과 부모	직장	부모님	기타	전체
전체	131 (50.4)	79 (30.4)	25 (9.6)	4 (1.5)	4 (1.5)	2 (0.8)	15 (5.8)	260 (100.0)
연령대								
10대	15 (55.6)	8 (29.6)	3 (11.1)	0 (0.0)	0 (0.0)	0 (0.0)	1 (3.7)	27 (100.0)
20대	70 (50.7)	39 (28.3)	9 (6.5)	4 (2.9)	4 (2.9)	2 (1.4)	10 (7.2)	138 (100.0)
30대 이상	46 (48.4)	32 (33.7)	13 (13.7)	0 (0.0)	0 (0.0)	0 (0.0)	4 (4.2)	95 (100.0)
연령대								
24세 이하	54 (56.3)	24 (25.0)	6 (6.3)	2 (2.1)	2 (2.1)	1 (1.0)	7 (7.3)	96 (100.0)
25세 이상	77 (47.0)	55 (33.5)	19 (11.6)	2 (1.2)	2 (1.2)	1 (0.6)	8 (4.9)	164 (100.0)

	정부나 공공기관	미혼모 보호 시설	본인 전액부담	본인과 부모	직장	부모님	기타	전체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9 (39.1)	6 (26.1)	1 (4.3)	0 (0.0)	0 (0.0)	0 (0.0)	7 (30.4)	23 (100.0)
고졸 및 재학	75 (56.4)	38 (28.6)	12 (9.0)	1 (0.8)	2 (1.5)	2 (1.5)	3 (2.3)	133 (100.0)
대졸 및 재학	33 (47.8)	22 (31.9)	8 (11.6)	2 (2.9)	2 (2.9)	0 (0.0)	2 (2.9)	69 (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55 (45.8)	45 (37.5)	7 (5.8)	3 (2.5)	0 (0.0)	1 (0.8)	9 (7.5)	120 (100.0)
만3~5세	49 (49.0)	31 (31.0)	13 (13.0)	0 (0.0)	2 (2.0)	1 (1.0)	4 (4.0)	100 (100.0)
만6~11세	25 (71.4)	2 (5.7)	3 (8.6)	1 (2.9)	2 (5.7)	0 (0.0)	2 (5.7)	35 (100.0)
만12세 이상	2 (40.0)	1 (20.0)	2 (4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취업여부								
취업	59 (48.0)	38 (30.9)	14 (11.4)	1 (0.8)	4 (3.3)	0 (0.0)	7 (5.7)	123 (100.0)
비취업	72 (52.6)	41 (29.9)	11 (8.0)	3 (2.2)	0 (0.0)	2 (1.5)	8 (5.8)	137 (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126 (51.2)	74 (30.1)	24 (9.8)	4 (1.6)	3 (1.2)	2 (0.8)	13 (5.3)	246 (100.0)
지원받지 않음	5 (35.7)	5 (35.7)	1 (7.1)	0 (0.0)	1 (7.1)	0 (0.0)	2 (14.3)	14 (100.0)
거주특성								
재가	65 (58.6)	15 (13.5)	14 (12.6)	3 (2.7)	4 (3.6)	2 (1.8)	8 (7.2)	111 (100.0)
시설	66 (44.3)	64 (43.0)	11 (7.4)	1 (0.7)	0 (0.0)	0 (0.0)	7 (4.7)	149 (100.0)

직업훈련을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2%의 응답자가 '훈련시간 동안 자녀 돌봄 문제'를 꼽았다(<표 Ⅳ-9>). 실제로 심층인터뷰에 응한 미혼모들의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단절 속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고 직업훈련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토로한 바 있다. 더욱이 이들에게 유용했던 아이돌보미 지원이 대폭으로 삭감되면서 최근 이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기도 한다.

>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네..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지원이 없는 상태서...제가 말하는 거는 부모님도 지원이 없고 형제들도 지원이 없는 상태잖아요. ---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왜 취업을 좀 왜 몇 개월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업을 가서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훈련을 받는게 목적이 취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애가 학교를 들어가면 일찍 마치면.. 대책이 없어요. (사례6)

>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수급비도 조금씩 받지만, 그래도 아이돌보미는 너무 가격이 너무 쎈거에요. --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어린이집에다가도 맡기기는 하지만, 애기 혼자 맡기면 좀 눈치보이고 그러거든요. (사례2)

특히 미혼모 관련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자(57.1%)와 재가 거주자(50.5%) 중에서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사람의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6.3%에 불과하지만 공동생활 가정 거주자 중에서 이 비중이 11.4%로 특별히 높았다. 이 집단에 대해 직업훈련 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표 Ⅳ-9〉 직업훈련 이수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훈련시간 동안의 자녀 돌봄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 선택	훈련비용 부담	기초지식 부족	체력소모 및 건강문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전체	x^2(df)
전체	115(45.6)	47(18.7)	36(14.3)	19(7.5)	19(7.5)	16(6.3)	252(100.0)	
연령대								
10대	10(40.0)	5(20.0)	2(8.0)	5(20.0)	2(8.0)	1(4.0)	25(100.0)	15.3 (10)
20대	67(50.4)	18(13.5)	18(13.5)	10(7.5)	9(6.8)	11(8.3)	133(100.0)	
30대 이상	38(40.4)	24(25.5)	16(17.0)	4(4.3)	8(8.5)	4(4.3)	94(100.0)	
연령대								
24세 이하	45(50.0)	13(14.4)	10(11.1)	10(11.1)	5(5.6)	7(7.8)	90(100.0)	6.5 (5)
25세 이상	70(43.2)	34(21.0)	26(16.0)	9(5.6)	14(8.6)	9(5.6)	162(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1(50.0)	3(13.6)	3(13.6)	4(18.2)	1(4.5)	0(0.0)	22(100.0)	
고졸 및 재학	60(46.5)	22(17.1)	15(11.6)	10(7.8)	8(6.2)	14(10.9)	129(100.0)	
대졸 및 재학	29(42.6)	18(26.5)	12(17.6)	0(0.0)	9(13.2)	0(0.0)	68(100.0)	

	훈련시간 동안의 자녀 돌봄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 선택	훈련비용 부담	기초지식 부족	체력소모 및 건강문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전체	x^2(df)
자녀연령								
만2세이하	53(45.7)	21(18.1)	12(10.3)	9(7.8)	10(8.6)	11(9.5)	116(100.0)	
만3~5세	46(47.4)	18(18.6)	16(16.5)	9(9.3)	4(4.1)	4(4.1)	97(100.0)	
만6~11세	14(41.2)	8(23.5)	6(17.6)	1(2.9)	4(11.8)	1(2.9)	34(100.0)	
만12세이상	2(40.0)	0(0.0)	2(40.0)	0(0.0)	1(20.0)	0(0.0)	5(100.0)	
취업여부								
취업	55(45.8)	27(22.5)	18(15.0)	7(5.8)	9(7.5)	4(3.3)	120(100.0)	6.1 (5)
비취업	60(45.5)	20(15.2)	18(13.6)	12(9.1)	10(7.6)	12(9.1)	132(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107(45.0)	45(18.9)	35(14.7)	18(7.6)	18(7.6)	15(6.3)	238(100.0)	1.1(5)
지원받지않음	8(57.1)	2(14.3)	1(7.1)	1(7.1)	1(7.1)	1(7.1)	14(100.0)	
거주특성								
재가	53(50.5)	18(17.1)	20(19.0)	7(6.7)	4(3.8)	3(2.9)	105(100.0)	11.0 (5)*
시설	62(42.2)	29(19.7)	16(10.9)	12(8.2)	15(10.2)	13(8.8)	147(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다음 <표 Ⅳ-10>에서 보듯이 직업훈련 경험이 자립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큰 도움이 됐다 20.8%, 도움이 됐다 38.8%). 30대 이상(66.0%), 고졸학력(64.4%)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비중이 특별히 높았으며, 정부지원 비수혜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비중이 특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2.9%).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그 효과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0〉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의 자립 기여 정도

(단위: 명, %)

	큰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런 편임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전체	x^2(df)
전체	53(20.8)	99(38.8)	71(27.8)	23(9.0)	9(3.5)	255(100.0)	
연령대							
10대	5(18.5)	10(37.0)	11(40.7)	1(3.7)	0(0.0)	27(100.0)	
20대	26(19.4)	49(36.6)	41(30.6)	13(9.7)	5(3.7)	134(100.0)	-
30대 이상	22(23.4)	40(42.6)	19(20.2)	9(9.6)	4(4.3)	94(100.0)	

	큰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그저 그런 편임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23(24.7)	32(34.4)	32(34.4)	4(4.3)	2(2.2)	93(100.0)	8.5(4)*
25세 이상	30(18.5)	67(41.4)	39(24.1)	19(11.7)	7(4.3)	162(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4.5)	12(54.5)	6(27.3)	1(4.5)	2(9.1)	22(100.0)	9.6(8)
고졸 및 재학	35(26.5)	50(37.9)	35(26.5)	9(6.8)	3(2.3)	132(100.0)	
대졸 및 재학	12(17.4)	29(42.0)	20(29.0)	4(5.8)	4(5.8)	69(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8(23.7)	51(43.2)	30(25.4)	9(7.6)	0(0.0)	118(100.0)	
만3~5세	17(17.3)	34(34.7)	29(29.6)	11(11.2)	7(7.1)	98(100.0)	-
만6~11세	6(17.6)	13(38.2)	10(29.4)	3(8.8)	2(5.9)	34(100.0)	
만12세 이상	2(40.0)	1(20.0)	2(40.0)	0(0.0)	0(0.0)	5(100.0)	
취업여부							
취업	24(20.0)	47(39.2)	33(27.5)	10(8.3)	6(5.0)	120(100.0)	1.6(4)
비취업	29(21.5)	52(38.5)	38(28.1)	13(9.6)	3(2.2)	135(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52(21.6)	94(39.0)	65(27.0)	21(8.7)	9(3.7)	241(100.0)	-
지원받지 않음	1(7.1)	5(35.7)	6(42.9)	2(14.3)	0(0.0)	14(100.0)	
거주특성							
재가	21(19.4)	43(39.8)	30(27.8)	11(10.2)	3(2.8)	108(100.0)	3.5(4)
시설	32(21.8)	56(38.1)	41(27.9)	12(8.2)	6(4.1)	147(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는 다음 <표 Ⅳ-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응답자의 거의 절반(47.9%)은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14.7%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시간부족에 응답한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집단은 재가 거주자 집단(62%)이었다. 직업훈련 중 보육지원 서비스는 이들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집단은 10대 젊은 층, 중졸 및 재학 이하의 저학력 층 집단이었다(27.8%, 26.9%).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가 요청된다.

〈표 Ⅳ-11〉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훈련이 없었다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본래의 직장으로 복귀해서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다
전체	224(47.9)	69(14.7)	34(7.3)	27(5.8)	26(5.6)	16(3.4)
연령대						
10대	32(44.4)	20(27.8)	2(2.8)	5(6.9)	2(2.8)	3(4.2)
20대	59(49.6)	37(15.7)	12(5.1)	13(5.5)	11(4.7)	8(3.4)
30대 이상	69(43.1)	12(7.5)	20(12.5)	9(5.6)	13(8.1)	5(3.1)
연령대						
24세 이하	91(47.6)	44(23.0)	11(5.8)	10(5.2)	6(3.1)	6(3.1)
25세 이상	133(48.0)	25(9.0)	23(8.3)	17(6.1)	20(7.2)	10(3.6)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0(44.8)	18(26.9)	3(4.5)	7(10.4)	1(1.5)	4(6.0)
고졸 및 재학	110(52.9)	32(15.4)	13(6.3)	11(5.3)	5(2.4)	7(3.4)
대졸 및 재학	59(43.4)	15(11.0)	12(8.8)	6(4.4)	11(8.1)	3(2.2)
자녀 연령						
만2세 이하	115(46.6)	47(19.0)	12(4.9)	17(6.9)	12(4.9)	8(3.2)
만3~5세	68(50.0)	11(8.1)	16(11.8)	4(2.9)	7(5.1)	7(5.1)
만6~11세	38(50.0)	8(10.5)	6(7.9)	6(7.9)	6(7.9)	1(1.3)
만12세 이상	3(33.3)	3(33.3)	0(0.0)	0(0.0)	1(11.1)	0(0.0)
취업여부						
취업	75(36.8)	24(11.8)	23(11.3)	15(7.4)	19(9.3)	8(3.9)
비취업	149(56.4)	45(17.0)	11(4.2)	12(4.5)	7(2.7)	8(3.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187(49.0)	56(14.7)	28(7.3)	23(6.0)	16(4.2)	15(3.9)
지원받지 않음	37(43.0)	13(15.1)	6(7.0)	4(4.7)	10(11.6)	1(1.2)
거주 특성						
재가	177(52.2)	50(14.7)	25(7.4)	14(4.1)	22(6.5)	10(2.9)
시설	47(36.4)	19(14.7)	9(7.0)	13(10.1)	4(3.1)	6(4.7)

〈표 Ⅳ-11〉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이어서)

(단위: 명, %)

	체력 혹은 건강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기타	무응답	전체
전체	13(2.8)	47(10.0)	12(2.6)	468(100.0)
연령대				
10대	0(0.0)	7(9.7)	1(1.4)	72(100.0)
20대	8(3.4)	24(10.2)	0(0.0)	236(100.0)
30대 이상	5(3.1)	16(10.0)	11(6.9)	160(100.0)
연령대				
24세 이하	2(1.0)	20(10.5)	1(0.5)	191(100.0)
25세 이상	11(4.0)	27(9.7)	11(4.0)	277(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1.5)	2(3.0)	1(1.5)	67(100.0)
고졸 및 재학	4(1.9)	21(10.1)	5(2.4)	208(100.0)
대졸 및 재학	6(4.4)	20(14.7)	4(2.9)	136(100.0)
무응답	2(3.5)	4(7.0)	2(3.5)	57(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6(2.4)	25(10.1)	5(2.0)	247(100.0)
만3~5세	4(2.9)	14(10.3)	5(3.7)	136(100.0)
만6~11세	2(2.6)	7(9.2)	2(2.6)	76(100.0)
만12세 이상	1(11.1)	1(11.1)	0(0.0)	9(100.0)
취업여부				
취업	3(1.5)	28(13.7)	9(4.4)	204(100.0)
비취업	10(3.8)	19(7.2)	3(1.1)	264(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11(2.9)	37(9.7)	9(2.4)	382(100.0)
지원받지 않음	2(2.3)	10(11.6)	3(3.5)	86(100.0)
거주특성				
재가	8(2.4)	23(6.8)	10(2.9)	339(100.0)
시설	5(3.9)	24(18.6)	2(1.6)	129(100.0)

한편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직업훈련 수요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66.9%의 응답자가 추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매우그렇다 35.4%, 대체로 그렇다 31.5%). 상대적으로 젊은 층(10대, 20대, 혹은 24세 이하)에서 직업훈련 수요가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2〉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이수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x^2(df)[8]
전체	257(35.4)	229(31.5)	192(26.4)	39(5.4)	10(1.4)	727(100.0)	
연령대							
10대	40(40.4)	30(30.3)	22(22.2)	5(5.1)	2(2.0)	99(100.0)	8.0(6)
20대	134(35.8)	126(33.7)	36(19.1)	6(3.2)	2(1.1)	188(100.0)	
30대 이상	83(32.7)	73(28.7)	76(29.9)	19(7.5)	3(1.2)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08(37.6)	106(36.9)	58(20.2)	11(3.8)	4(1.4)	287(100.0)	14.1(3)***
25세 이상	149(33.9)	123(28.0)	134(30.5)	28(6.4)	6(1.4)	44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9(32.2)	30(33.3)	25(27.8)	6(6.7)	0(0.0)	90(100.0)	12.1(6)*
고졸 및 재학	124(36.5)	122(35.9)	79(23.2)	12(3.5)	3(0.9)	340(100.0)	
대졸 및 재학	67(32.7)	53(25.9)	69(33.7)	12(5.9)	4(2.0)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46(39.9)	121(33.1)	76(20.8)	18(4.9)	5(1.4)	366(100.0)	
만3~5세	87(36.9)	70(29.7)	62(26.3)	13(5.5)	4(1.7)	236(100.0)	-
만6~11세	19(17.1)	35(31.5)	48(43.2)	8(7.2)	1(0.9)	111(100.0)	
만12세 이상	5(35.7)	3(21.4)	6(42.9)	0(0.0)	0(0.0)	14(100.0)	
취업여부							
취업	89(27.2)	100(30.6)	114(34.9)	19(5.8)	5(1.5)	327(100.0)	27.6(3)***
비취업	168(42.0)	129(32.3)	78(19.5)	20(5.0)	5(1.3)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33(37.2)	194(30.9)	160(25.5)	31(4.9)	9(1.4)	627(100.0)	7.5(3)*
지원받지 않음	24(24.0)	35(35.0)	32(32.0)	8(8.0)	1(1.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57(35.0)	134(29.8)	129(28.7)	25(5.6)	4(0.9)	449(100.0)	3.5(3)
시설	100(36.0)	95(34.2)	63(22.7)	14(5.0)	6(2.2)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자산과 부채

양육미혼모의 거주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세 33.8%, 기타 47.6%로 불안

8) 무응답 케이스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정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가나 전세의 경우는 각각 7.7%와 9.6%로 비중이 미미했다(<표 Ⅳ-13>). 연령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부모나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대(10대와 20대)에서 자가 비중이 10%, 9%로 가장 높았고, 학력수준별로는 역시 부모와 함께 살 가능성이 높은 중졸 혹은 중학 재학 이하 학력층에서 자가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Ⅳ-13〉 양육미혼모의 주거 점유 형태별 분포

(단위: 명,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응답	전체	x^2(df)[9]
전체	56(7.7)	70(9.6)	246(33.8)	346(47.6)	9(1.2)	727(100.0)	
연령대							
10대	14(14.1)	13(13.1)	19(19.2)	52(52.5)	1(1.0)	99(100.0)	24.0(6)***
20대	34(9.1)	30(8.0)	137(36.6)	169(45.2)	4(1.1)	374(100.0)	
30대 이상	8(3.1)	27(10.6)	90(35.4)	125(49.2)	4(1.6)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2(13.3)	9(10.0)	28(31.1)	40(44.4)	1(1.1)	90(100.0)	
고졸 및 재학	23(6.8)	31(9.1)	113(33.2)	169(49.7)	4(1.2)	340(100.0)	5.1(6)
대졸 및 재학	14(6.8)	22(10.7)	66(32.2)	100(48.8)	3(1.5)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2(8.7)	36(9.8)	96(26.2)	198(54.1)	4(1.1)	366(100.0)	
만3~5세	17(7.2)	23(9.7)	98(41.5)	96(40.7)	2(0.8)	236(100.0)	-
만6~11세	6(5.4)	11(9.9)	50(45.0)	42(37.8)	2(1.8)	111(100.0)	
만12세 이상	1(7.1)	0(0.0)	2(14.3)	10(71.4)	1(7.1)	14(100.0)	
취업여부							
취업	22(6.7)	33(10.1)	119(36.4)	149(45.6)	4(1.2)	327(100.0)	2.5(3)
비취업	34(8.5)	37(9.3)	127(31.8)	197(49.3)	5(1.3)	400(100.0)	
정부지원							
지원받음	40(6.4)	54(8.6)	214(34.1)	311(49.6)	8(1.3)	627(100.0)	19.2(3)***
지원받지 않음	16(16.0)	16(16.0)	32(32.0)	35(35.0)	1(1.0)	100(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응답자들의 부채 현황은 다음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9) 무응답 케이스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62%로서 과반수를 넘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높았다(10대 14.1%, 30대 이상 50.4%). 학력별로는 대재 및 졸업 이상(50.2%), 거주특성별로는 시설 거주자(44.6%) 집단에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특별히 높았다. 또한 비취업자 보다는 취업자 중에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43.1%).

〈표 Ⅳ-14〉 부채 여부 및 부채액

(단위: %)

구분	부채있음	부채없음	전체	x^2 (df)[10]
전체	276(38.2)	452(62.0)	727(100.0)	
연령대				
10대	14(14.1)	85(85.9)	99(100.0)	41.2(2)***
20대	134(35.8)	240(64.2)	374(100.0)	
30대 이상	128(50.4)	126(49.6)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66(23.0)	221(77.0)	287(100.0)	45.1(1)***
25세 이상	210(47.7)	230(52.3)	44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7(18.9)	79(81.1)	90(100.0)	27.0(3)***
고졸 및 재학	125(36.8)	215(63.2)	340(100.0)	
대졸 및 재학	103(50.2)	102(49.8)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27(34.7)	239(65.3)	366(100.0)	
만3~5세	98(41.5)	138(58.5)	236(100.0)	7.1(3)*
만6~11세	42(37.8)	69(62.2)	111(100.0)	
만12세 이상	9(64.3)	5(35.7)	14(100.0)	
취업여부				
취업	141(43.1)	186(56.9)	327(100.0)	6.7(1)**
비취업	135(33.8)	265(66.3)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40(38.3)	387(61.7)	627(100.0)	0.2(1)
지원받지 않음	36(36.0)	64(64.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52(33.9)	297(66.1)	449(100.0)	8.4(1)***
시설	124(44.6)	154(55.4)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10) 무응답 케이스를 제외한 분석결과임.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약 1천300만원이며, 연령별로 24세 이하 젊은 층의 부채 규모가 25세 이상 연령층의 그것에 비해 절반 정도도 안되게 적었다(699만원 대 1천5백5십만원). 나머지 집단 특성별 비교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5>).

〈표 Ⅳ-15〉 집단별 부채규모 비교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F[11]
전체	252	1349.24	2144.935	
연령대				
10대	14	328.07	277.105	9.562***
20대	123	896.63	1265.301	
30대 이상	115	1957.66	2772.201	
연령대				
24세 이하	60	699.13	1381.701	7.419***
25세 이상	192	1552.40	2298.266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5	1182.67	2250.751	0.900
고졸 및 재학	113	1180.04	2418.090	
대졸 및 재학	94	1585.69	962.040	
취업여부				
취업	130	1340.69	1781.835	0.004
비취업	122	1358.35	2481.669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21	1264.75	2114.535	2.808
지원받지 않음	31	1951.61	2296.981	
거주특성				
재가	138	1545.36	2394.531	2.566
시설	114	1111.83	1778.748	

한편 미혼모의 자립기반 형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이들의 저축유무와 규모에 대한 것이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저축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의 52.1%에 달했다(<표 Ⅳ-16>). 집단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연령별로는 20대(57.5%),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

11) 무응답 케이스를 제외한 분석 결과임.

집단(66.0%), 거주 특성별로는 재가 집단(56.3%)에서 저축을 하지 않는 비중이 특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저축 여부

(단위: 명, %)

구분	한다	하지 않는다	전체	x^2(df)
전체	348(47.9)	379(52.1)	727(100.0)	
연령대				
10대	46(46.5)	53(53.5)	99(100.0)	11.6(2)***
20대	159(42.5)	215(57.5)	374(100.0)	
30대 이상	143(56.3)	111(43.7)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25(43.6)	162(56.4)	287(100.0)	3.5(1)*
25세 이상	223(50.7)	217(49.3)	44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3(36.7)	57(63.3)	90(100.0)	25.7(2)***
고졸 및 재학	140(41.2)	200(58.8)	340(100.0)	
대졸 및 재학	126(61.5)	79(38.5)	205(100.0)	
취업여부				
취업	212(64.8)	115(35.2)	327(100.0)	68.5(1)***
비취업	136(34.0)	264(66.0)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305(48.6)	322(51.4)	627(100.0)	1.1(1)
지원받지 않음	43(43.0)	57(57.0)	100(100.0)	
거주 특성				
재가	196(43.7)	253(56.3)	449(100.0)	8.4(1)***
시설	152(54.7)	126(45.3)	278(100.0)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저축액을 보면 월 31만원 선이며, 집단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많고(10대 18.5만원, 30대 39.8만원),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많으며(대재 이상 32만원, 중재 이하 18만원), 취업자의 저축액이 비취업자에 비해 많으며(38만원 대 20만원),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보다 받지 않는 집단의 저축액이 월등히 많다(59만원 대 27만원).

〈표 Ⅳ-17〉 집단별 월평균 저축액 차이 비교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332	31.05	26.388		-
거주유형					
재가	187	32.67	28.713	-	1.634
시설	145	28.94	22.975	-	
연령대					
10대	41	18.5	13.299	3	15.435***
20대	155	26.69	20.886	2	
30대 이상	136	39.79	31.794	1	
연령대					
24세 이하	118	20.58	17.034	-	31.465***
25세 이상	214	36.82	28.784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0	18.27	16.265	3	7.755***
고졸 및 재학	134	28.70	21.539	2	
대졸 및 재학	121	37.51	32.228	1	
취업여부					
취업	209	37.63	28.824	-	39.200***
비취업	123	19.85	16.498	-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92	27.16	21.251	-	62.223***
지원받지 않음	40	59.40	40.036	-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소득과 소비

자립기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일 것이다. 다음은 양육미혼모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한 결과이다.[12] 근로소득(본인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과 기타소득(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등) 및 가족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 미혼부 및 그 가족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 각종 정부 지원, 복지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등을 합한 총소득은 월평균 78만 5천원 가량이었다. 근로소득과 비근로소

12) 모든 소득항목에서 "해당 없음"이나 "소득없음"을 모두 0원으로 처리하여 합산했다. 예컨대 부모가 안 계셔서 부모로부터의 지원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나 부모는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0원으로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비취업자의 근로소득도 모두 0원으로 처리되었다.

득으로 나누어보면, 평균 근로소득은 월 105만원 가량이고 평균 비근로소득(이전소득)은 월 33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를 근로소득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소득은 월 124만원선인데 반해 비취업자들은 월 41만원(평균 비근로소득과 동일)에 불과했다. 월평균 비근로소득은 비취업자의 경우 41만원, 취업자는 23만7천원 선이었다.

〈표 Ⅳ-18〉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 평균(표준편차)

(단위: 만원)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총소득
취업여부			
취업	105.33(59.6)	23.7(25.2)	124.17(60.6)
비취업	-	41.2(33.1)	41.2(33.1)
전체	105.33(59.6)	33.3(31.0)	78.5(62.9)

총소득을 각 집단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Ⅳ-19>와 같다. 우선 거주특성별로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평균 총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가장 소득이 높은 2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그룹(대재 혹은 대졸 이상)의 평균 총소득 99만원은 타 조사의 비슷한 학력 그룹의 평균 근로소득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2,3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임금근로자)이 132만원,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임금근로자)이 173만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학력수준의 양육미혼모 여성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이 안된다는 것은 그들의 소득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준다.

한편 자녀 연령에서는 만 2세 이하인 집단의 평균총소득이 가장 낮았고 만 6세~11세 사이의 아동을 둔 집단이 가장 높았다. 만 12세 이상 아동을 둔 집단에서는 사례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웠다. 한편 총소득 중에서 정부지원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총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이 비수혜집단에 비해 소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지원 수혜집단은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총소득이 45만원 선 밖에 되지 않음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은 94만원이었다(정부지원1). 정부 지원액수를 모두 합한 후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면 여전히 정부수혜를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0만

원 가량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76만원 대 95만원) 이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정부지원2). 이는 정부의 지원액을 합해도 수혜대상 집단의 총소득이 비수혜집단의 그것에 비해 현격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 지원의 규모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Ⅳ-19〉 집단별 총소득 평균 비교

(단위: 명, 만원)

	N	평균총소득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결과 순위
전체	727	78.4979	62.94194		
연령대					
10대	99	44.0101	43.80325	34.724***	3
20대	374	72.7620	52.57666		2
30세 이상	254	100.3858	74.52941		1
자녀 연령					
만2세 이하	366	56.3169	60.22258		3
만3~5세	236	93.7669	54.83399	40.953***	2
만6~11세	111	119.0631	58.82984		1
만12세 이상	14	79.3571	60.36250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90	50.0222	38.17493	23.839***	3
고졸 및 재학	340	71.2265	52.06229		2
대졸 및 재학	205	98.8537	78.82674		1
정부지원1					
지원받음	627	45.3206	53.14010	50.736***	
지원받지 않음	100	94.3700	109.96883		
정부지원2					
지원받음	627	75.8581	51.35444	8.097***	
지원받지 않음	100	95.0500	109.79700		
거주특성					
재가	449	85.9488	67.95340	16.812***	
시설	278	66.4640	51.76618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미혼모의 소비 항목들 중에서 자녀의 공·사교육비, 양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자녀 의료비를 합한 액수는 월평균 46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0)>.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소비액도 높았으며, 시설거주자보다는 재가가 평균 소비액이 더 많았다. 한편 6-11세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가 다른 연령대 자녀를 둔 미혼모보다 월평균 소비액이 더 많았다.

〈표 Ⅳ-20〉 집단별 평균 소비 비교

(단위: 명, 만원)

	N	평균 소비액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결과 순위
전체	727	45.7552	35.57862		
연령대					
10대	99	25.9192	30.63501	28.451***	3
20대	374	44.0187	34.90634		2
30세 이상	254	56.0433	34.75359		1
자녀 연령					
만2세 이하	366	34.0710	35.06855		3
만3~5세	236	52.9068	32.06363	34.908***	2
만6~11세	111	67.2613	28.40733		1
만12세 이상	14	60.1429	42.50042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90	34.4222	32.78016	9.387***	2
고졸 및 재학	340	42.1912	35.00967		2
대졸 및 재학	205	52.2878	36.76075		1
정부지원					
지원받음	627	44.6172	32.97613	4.687**	
지원받지 않음	100	52.8900	48.44739		
거주특성					
재가	449	57.5768	35.19618	157.594***	
시설	278	26.6619	26.86604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적 지지망

(1) 정부로부터 지지망

다음 <표 Ⅳ-21>은 양육한부모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정부로부터 받는 생활비 보조 액수를 살펴본 결과이다. 응답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으로 월평균 34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특성별로 평균 수혜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거주특성, 연령,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취업자와 비취업자간 차이만 유의미했다. 취업자의 평균 정부지원 수혜액은 월 24만원임에 비해 비취업자의 수혜액은 월평균 43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 지원이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취업자의 소득이 비취업자의 소득보다 더 높은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표 Ⅳ-21〉 집단별 정부지원 수혜액 비교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564	34.06915	26.14294		-
연령대					
10대	71	36.0704	27.64899		0.303
20대	306	34.1144	26.19454		
30대 이상	187	33.2353	25.56666		
연령대					
24세 이하	234	36.00855	26.37937	-	2.206
25세 이상	330	32.69394	25.92613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69	35.89855	25.03183	-	0.324
고졸 및 재학	281	35.13879	27.29178	-	
대졸 및 재학	146	33.28082	24.81761	-	
취업여부					
취업	261	24.02299	21.02872	-	82.072***
비취업	303	42.72277	27.03804	-	
거주특성					
재가	344	34.74128	28.64073	-	0.582
시설	220	33.01818	21.68958	-	

주: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로부터 지지망

전체 응답자 중에서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는 61.5%, 부친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6.7%, 모친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18.4%에 달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응답자도 전체의 10.2%나 되었다.

〈표 Ⅳ-22〉 부모 생존 여부

(단위: 명, %)

		모생존여부			전체
		생존	사망	무응답	
부생존여부	생존	447(61.5)	49(6.7)	7(1.0)	503(69.2)
	사망	134(18.4)	74(10.2)	1(0.1)	209(28.7)
	무응답	8(1.1)	1(0.1)	6(0.8)	15(2.1)
	계	589(81.1)	124(17.1)	14(1.9)	727(100.0)

부친이 생존해 있는 경우 중에서 부친과 전혀 만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은 25.1%나 되었다. 모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16.1%가 모친과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부모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부친의 경우 27.8%, 모친의 경우 15.6%였다.

〈표 Ⅳ-23〉 부모와의 만남

(단위: 명, %)

	부친	모친
전체	518(100.0)	603(100.0)
전혀 만나지 않는다	130(25.1)	97(16.1)
만난다	388(74.9)	506(83.9)

〈표 Ⅳ-23-1〉 부모와의 연락

(단위: 명, %)

	부친	모친
전체	518(100.0)	603(100.0)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144(27.8)	94(15.6)
연락한다	374(72.2)	509(84.4)

부친 혹은 모친과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 경우를 “완전단절”의 상태라고 정의하면 아래 <표 Ⅳ-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친과 완전단절의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부친이 생존해 있는 전체 응답자의 22.4%, 모친과 완전단절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모친이 생존해 있는 전체 응답자의 12.8%였다.

〈표 Ⅳ-24〉 부친 혹은 모친과의 완전단절

(단위: 명, %)

	부친	모친
전체	518(100.0)	603(100.0)
완전단절	116(22.4)	77(12.8)

그러나 양친과 완전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상생활에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Ⅳ-25>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할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자녀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모두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할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집안 일 30.4%, 돈 39.6%, 자녀위급 42.9%).

〈표 Ⅳ-25〉 상황별 도움 요청 1순위 대상자 분포

(단위: 명, %)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	감자기 돈이 필요	자녀에게 위급상황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 필요	어려움 토로 및 조언 구함
전체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부모	221(30.4)	288(39.6)	312(42.9)	61(8.4)	109(15.0)
형제자매	84(11.6)	115(15.8)	78(10.7)	70(9.6)	66(9.1)
친구	72(9.9)	90(12.4)	66(9.1)	365(50.2)	250(34.4)
이웃	45(6.2)	12(1.7)	30(4.1)	37(5.1)	30(4.1)
선생님	23(3.2)	13(1.8)	36(5.0)	25(3.4)	89(12.2)
자녀의 아버지	16(2.2)	25(3.4)	30(4.1)	12(1.7)	4(0.6)
친척	9(1.2)	8(1.1)	12(1.7)	4(0.6)	12(1.7)
조부모	3(0.4)	2(0.3)	3(0.4)	0(0.0)	1(0.1)
직장 동료	3(0.4)	7(1.0)	3(0.4)	13(1.8)	20(2.8)
아무도 없다	251(34.5)	167(23.0)	128(17.6)	140(19.3)	146(20.1)

(3) 일상생활에서 지지망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영역을 크게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 2명까지 응답하게 한 결과 다음 <표 Ⅳ-26>와 같은 응답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양육미혼모들이 가장 많은 조력자를 동원할 수 있는 영역은 자녀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였다(평균 1.39명). 자녀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4.9%였으며 최소 한 명이상의 조력자를 확보한 응답자가 전체의 84.2%나 되었다. 반면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32.9%는 집안일에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했다.

〈표 Ⅳ-26〉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네트워크

(단위: 명, %)

도움을 청할 곳	전체	평균
전체	727(100.0)	-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다	239(32.9)	1.10
1명	172(23.7)	
2명	316(43.5)	
돈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다	150(20.6)	1.30
1명	206(28.3)	
2명	371(51.0)	
자녀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아무도 없다	115(15.8)	1.39
1명	213(29.3)	
2명	399(54.9)	
우울해서 대화 필요할 때		
아무도 없다	125(17.2)	1.32
1명	242(33.3)	
2명	360(49.5)	
어려움 토로 혹은 조언을 구할 때		
아무도 없다	134(18.4)	1.33
1명	217(29.8)	
2명	376(51.7)	

(4) 사회적 고립

양육미혼모가 아무런 외부적 지지망이 없어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면,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세가지 주요 정부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며 집단 특성별로 그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27>과 같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서 세가지 정부지원금 중에서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는 2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특성별로 살펴보면 10대 젊은 층과 30대 이상 고령층(28.3%, 26.4%), 만 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집단(27.3%), 대재 이상 고학력자 집단(28.8%)에서 각각 세가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정부 지원 비수혜자 비중

(단위: 명, %)

	비수혜자	전체
전체	163(22.4)	727(100.0)
연령대		
10대	28(28.3)	99(100.0)
20대	68(18.2)	374(100.0)
30대 이상	67(26.4)	254(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00(27.3)	366(100.0)
만3~5세	32(13.6)	236(100.0)
만6~11세	26(23.4)	111(100.0)
만12세 이상	5(35.7)	14(100.0)
취업여부		
취업	66(20.2)	327(100.0)
비취업	97(24.3)	40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1(23.3)	90(100.0)
고졸 및 재학	59(17.4)	340(100.0)
대졸 및 재학	59(28.8)	205(100.0)
거주특성		
재가	105(23.4)	449(100.0)
시설	58(20.9)	278(100.0)

사회적 고립의 두 번째 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고립이다. 이 조사에서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으면서도 양친 모두와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 그룹(즉, 양친 모두와 완전 단절된 그룹)을 부모로부터 고립된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 <표 Ⅳ-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친모두로부터 고립된 응답자는 양친모두 생존한 응답자의 9.0%나 되었다.

〈표 Ⅳ-28〉 양친 모두로부터 고립

(단위: 명, %)

	양친모두로부터 고립자	전체
전체	42(9.0)	468(100.0)
연령대		
10대	3(4.1)	74(100.0)
20대	24(9.5)	253(100.0)
30대 이상	15(10.6)	141(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6(10.9)	55(100.0)
고졸 및 재학	14(6.9)	203(100.0)
대졸 및 재학	16(11.0)	14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7(6.6)	256(100.0)
만3~5세	21(14.9)	141(100.0)
만6~11세	4(6.1)	66(100.0)
만12세 이상	0(0.0)	5(100.0)
취업여부		
취업	22(10.7)	206(100.0)
비취업	20(7.6)	262(100.0)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38(9.4)	404(100.0)
지원받지 않음	4(6.3)	64(100.0)
거주특성		
재가	19(6.8)	280(100.0)
시설	23(12.2)	188(100.0)

시설 거주자, 자녀연령 만 3~5세,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 집단 중에서 양친모두로부터 고립된 비중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시설거주자 12.2%, 자녀연령 만 3~5세 14.9%, 대재이상 11.0%).

사회적 고립의 마지막 차원으로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의 고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 영역들 중 다소간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두 영역을 제외하고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그 비중과 각 특성집단별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29>와 같다.

〈표 Ⅳ-29〉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된 사람

(단위: 명, %)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자	전체
전체	96(13.2)	727(100.0)
연령		
10대	5(5.1)	99(100.0)
20대	56(15.0)	374(100.0)
30대 이상	72(16.4)	44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11(12.2)	90(100.0)
고졸 및 재학	45(13.2)	340(100.0)
대졸 및 재학	24(11.7)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3(9.0)	366(100.0)
만3~5세	39(16.5)	236(100.0)
만6~11세	22(19.8)	111(100.0)
만12세 이상	2(14.3)	14(100.0)
취업여부		
취업	49(15.0)	327(100.0)
비취업	47(11.8)	400(100.0)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86(13.7)	627(100.0)
지원받지 않음	10(10.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70(15.6)	449(100.0)
시설	26(9.4)	278(100.0)

전체적으로 위의 세가지 영역에서 모두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그룹에서,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자녀가 만 6~11세 연령대인 층에서, 취업자 층에서 각각 이런 고립적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다. 사회적 고립은 실제로 이들의 자립기반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양육미혼모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애기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지금은 저녁에 손님 만날 일 있으면 나가거든요 언니도 봤지만. 그러면 여섯시에 나가도 혼자있을 때가 있어요. 한 두세번씩 있어요. 자기가 먹을 다...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절대 남이 눌러도 열어주지 말고 전화기 다 있으니까 전화해라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제가..슬픈이야기하나 하면요... 제가 근데... 제가 세 살 네 살때요 크리스마스때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크리스마슨땐 보모도 없더라구요 베이비시터도 없더라구요. 혼자 밥먹다가 장난감놀다가 네 살짜리가 그냥 잤어요. 아침 여덟시부터 새벽 세시까지-- (중략) 이혼한 엄마들은 차라리 친정에서 도와, 도와라도 줘요. 우리 딸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낳기 때문에 딱 치고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낳으라고 했냐고. 니가 낳았으니가 니가 키워. 이거에요. 그러니까 할말이 없는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독하게해야되요. 그러면 또 사회에서 저 독한 엄마... 또 혼자한다. 또 이렇게 먹는거에요. (사례 6)
>
> 애기가 만약 아팠을 때, 그런 거 있죠,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숨겼어, 숨겨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머, 막 병원이야, 애기 아프데, 큰일났데요, 뭐 수술해야 할거 같데... 그럼 뛰어가야 하는데, 그걸 사람들 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중략) 나는 당장에 애기가 아파서 나는 가야 되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 못할거 같은... 못하는거...말 빙빙 돌려서 해야될거 같은거... 아,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요. (사례 3)
>
> 저는 계속 거짓말 하면서... 애기 엄마란 말을,,,말 자체를 안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계속...근데, 애기가 아프고 하니까, 무슨 거짓말을 쳐야 되는데...못나가겠다고... 그냥...아... 일단 처음에는 일단 거짓말을 치고 안나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의심을 했었나봐요, 병원에 전화해서....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했는데 그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 봤나봐요. OOO 환자 있냐고...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례2)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세 가지 차원이 모두 겹치는 고립 고위험 집단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5세 이하 연령층은 정부지원으로부터의 고립 비중과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변인으로부터의 고립 비중이 모두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고립 위험군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재 이상 고학력자 집단

또한 정부지원으로부터의 고립 비중과 양친모두로부터의 고립비중이 높게 나타나 또다른 고립 위험군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이 돌보미나 가사돌보미 금융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직업경험 및 현재 고용상태

1) 취업 분야와 고용형태

다음 <표 Ⅳ-30>은 응답자의 취업여부별 분포를 보여준다. 양육미혼모 여성들 중 일자리가 있는 여성은 전체의 45%였다. 이는 19세 이상 64세 미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드러난 여성 취업률 47.3%를 밑도는 수치이다. 연령대로 보나 양육미혼모라는 처지로 보나 양육미혼모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평균치 보다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거주 유형별로는 재가 거주자와 모자원 거주자 중에서 취업자 비중이 특별히 높았으며(60.6%, 74%), 공동생활가정 거주자의 취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24.2%였다.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집단에서 취업자 비중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 집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의 고 연령집단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61.8%), 자녀 연령이 만 2세 이하인 집단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24%로 가장 낮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 집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을 받는 그룹과 받지 않는 그룹 사이에는 취업률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44.7% 대 47%). 이는 취업하지 못한 집단에 대해 정부지원이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 고학력자에서 취업자 비중이 유난히 높았다(56.1%).

〈표 Ⅳ-30〉 취업여부별 분포

(단위: 명, %)

	취업자	전체
전체	327(45.0)	727(100.0)
연령대		
10대	11(11.1)	99(100.0)
20대	159(42.5)	374(100.0)
30대 이상	157(61.8)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0(22.2)	90(100.0)
고졸 및 재학	144(42.4)	340(100.0)
대졸 및 재학	115(56.1)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88(24.0)	366(100.0)
만3~5세	139(58.9)	236(100.0)
만6~11세	90(81.1)	111(100.0)
만12세 이상	10(71.4)	14(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80(44.7)	627(100.0)
지원받지 않음	47(47.0)	100(100.0)
거주유형		
시군구	51(45.1)	113(100.0)
공동생활가정	43(24.2)	178(100.0)
재가	97(60.6)	160(100.0)
모자원	74(74.0)	100(100.0)
거점기관	62(35.2)	176(100.0)

일자리가 있는 경우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Ⅳ-31>), 서비스 및 판매직이 가장 많고(35.3%), 사무직이 24.5%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 관리직 및 전문직(19%), 단순노무직(16%)순이었다. 관리직 및 전문직은 대재 이상 고학력자 그룹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그룹에서 특히 많이 관측되었다(고학력자 그룹 30.4%, 정부지원 비수혜자 그룹 36.2%). 서비스 및 판매직은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관측되었으며(10대 72.7%, 20대 40.3%), 단순노무직은 중학교 재학 이하의 저학력 그룹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30%).

〈표 Ⅳ-31〉 현재 취업 직종

(단위: 명, %)

	관리직 혹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 조립직	단순 노무직	기타	전체
전체	62(19.0)	80(24.5)	115(35.3)	1(0.3)	14(4.3)	52(16.0)	2(0.6)	326(100.0)
연령대								
10대	0(0.0)	1(9.1)	8(72.7)	0(0.0)	0(0.0)	2(18.2)	0(0.0)	11(100.0)
20대	25(15.7)	37(23.2)	64(40.3)	0(0.0)	11(6.9)	21(13.2)	1(0.6)	159(100.0)
30대 이상	37(23.7)	42(26.9)	43(27.6)	1(0.6)	3(1.9)	29(18.6)	1(0.6)	156(100.0)
연령대								
24세 이하	6(7.9)	11(14.5)	38(50.0)	0(0.0)	7(9.2)	14(18.4)	0(0.0)	76(100.0)
25세 이상	56(22.4)	69(27.6)	77(30.8)	1(0.4)	7(2.8)	38(15.2)	2(0.8)	250(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10.0)	1(5.0)	8(40.0)	0(0.0)	3(15.0)	6(30.0)	0(0.0)	20(100.0)
고졸 및 재학	17(11.8)	27(18.8)	65(45.1)	0(0.0)	9(6.3)	25(17.4)	1(0.7)	144(100.0)
대졸 및 재학	35(30.4)	36(31.3)	26(22.6)	1(0.9)	0(0.0)	16(13.9)	1(0.9)	11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6(6.9)	23(26.4)	41(47.1)	0(0.0)	5(5.7)	11(12.6)	1(1.1)	87(100.0)
만3~5세	32(23.0)	33(23.7)	44(31.7)	0(0.0)	7(5.0)	23(16.5)	0(0.0)	139(100.0)
만6~11세	20(22.2)	23(25.6)	28(31.1)	1(1.1)	2(2.2)	16(17.8)	0(0.0)	90(100.0)
만12세 이상	4(40.0)	1(10.0)	2(20.0)	0(0.0)	0(0.0)	2(20.0)	1(10.0)	1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45(16.1)	66(23.7)	103(36.9)	1(0.4)	13(4.7)	49(17.6)	2(0.7)	279(100.0)
지원받지 않음	17(36.2)	14(29.8)	12(25.5)	0(0.0)	1(2.1)	3(6.4)	0(0.0)	47(100.0)
거주특성								
재가	37(17.7)	53(25.4)	72(34.4)	0(0.0)	12(5.7)	34(16.3)	1(0.5)	209(100.0)
시설	25(21.4)	27(23.1)	43(36.8)	1(0.9)	2(1.7)	18(15.4)	1(0.9)	117(100.0)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전일제 일자리 취업자의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도 39.8%나 되었다. 전일제 취업자 비중이 특별히 높았던 그룹은 자녀연령 만 6~11세 그룹(58.9%), 정부지원 비수혜 그룹(53.2%), 재가그룹(56.7%) 등이었다. 한편 20대 이하 젊은층 혹은 중졸 이하 저학력그룹에서는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시군구 거주자 중에서도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특별히 높았다(58.8%).

〈표 Ⅳ-32〉 현재 직장 고용

(단위: 명, %)

	전일제 고용	시간제 고용	자영	무급가족 종사	기타	무응답	전체
전체	135(41.3)	130(39.8)	14(4.3)	6(1.8)	40(12.2)	2(0.6)	327(100.0)
연령대							
10대	3(27.3)	8(72.7)	0(0.0)	0(0.0)	0(0.0)	0(0.0)	11(100.0)
20대	60(37.7)	72(45.3)	2(1.3)	4(2.5)	19(11.9)	2(1.3)	159(100.0)
30대 이상	72(45.9)	50(31.8)	12(7.6)	2(1.3)	21(13.4)	0(0.0)	157(100.0)
연령대							
24세 이하	26(34.2)	43(56.6)	1(1.3)	2(2.6)	4(5.3)	0(0.0)	76(100.0)
25세 이상	109(43.4)	87(34.7)	13(5.2)	4(1.6)	36(14.3)	2(0.8)	251(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15.0)	14(70.0)	1(5.0)	1(5.0)	1(5.0)	0(0.0)	20(100.0)
고졸 및 재학	60(41.7)	62(43.1)	5(3.5)	4(2.8)	13(9.0)	0(0.0)	144(100.0)
대졸 및 재학	54(47.0)	35(30.4)	7(6.1)	1(0.9)	16(13.9)	2(1.7)	11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9(33.0)	42(47.7)	3(3.4)	3(3.4)	11(12.5)	0(0.0)	88(100.0)
만3~5세	51(36.7)	56(40.3)	9(6.5)	1(0.7)	20(14.4)	2(1.4)	139(100.0)
만6~11세	53(58.9)	27(30.0)	2(2.2)	2(2.2)	6(6.7)	0(0.0)	90(100.0)
만12세 이상	2(20.0)	5(50.0)	0(0.0)	0(0.0)	3(30.0)	0(0.0)	1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110(39.3)	120(42.9)	6(2.1)	6(2.1)	36(12.9)	2(0.7)	280(100.0)
지원받지 않음	25(53.2)	10(21.3)	8(17.0)	0(0.0)	4(8.5)	0(0.0)	47(100.0)
거주특성							
재가	86(41.0)	88(41.9)	13(6.2)	5(2.4)	17(8.1)	1(0.5)	210(100.0)
시설	49(41.9)	42(35.9)	1(0.9)	1(0.9)	23(19.7)	1(0.9)	117(100.0)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나 서비스 판매직과 같은 한계적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저학력, 젊은층 양육미혼모 그룹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근로조건

한편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6시간(표준편차 13.96), 평균 근속년수

는 15.1개월(표준편차 18.32)이었다. 평균 근로소득은 월 105.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4>).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그룹이 47.4%로 가장 많고 80만원 미만 저임금 그룹도 30%나 되었다(<표 Ⅳ-33>).

〈표 Ⅳ-33〉 현 직장의 월 급여액

(단위: 명, %)

	80만원 미만	8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전체	97(29.7)	155(47.4)	60(18.3)	15(4.6)	327(100.0)
연령대					
10대	4(36.4)	4(36.4)	0(0.0)	3(27.3)	11(100.0)
20대	46(28.9)	93(58.5)	15(9.4)	5(3.1)	159(100.0)
30대 이상	47(29.9)	58(36.9)	45(28.7)	7(4.5)	157(100.0)
연령대					
24세 이하	28(36.8)	43(56.6)	0(0.0)	5(6.6)	76(100.0)
25세 이상	69(27.5)	112(44.6)	60(23.9)	10(4.0)	251(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9(45.0)	11(55.0)	0(0.0)	0(0.0)	20(100.0)
고졸 및 재학	46(31.9)	78(54.2)	12(8.3)	8(5.6)	144(100.0)
대졸 및 재학 이상	28(24.3)	46(40.0)	38(33.0)	3(2.6)	11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3(37.5)	39(44.3)	8(9.1)	8(9.1)	88(100.0)
만3~5세	36(25.9)	77(55.4)	22(15.8)	4(2.9)	139(100.0)
만6~11세	24(26.7)	36(40.0)	29(32.2)	1(1.1)	90(100.0)
만12세 이상	4(40.0)	3(30.0)	1(10.0)	2(20.0)	1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94(33.6)	148(52.9)	27(9.6)	11(3.9)	280(100.0)
지원받지 않음	3(6.4)	7(14.9)	33(70.2)	4(8.5)	47(100.0)
거주특성					
재가	54(25.7)	96(45.7)	53(25.2)	7(3.3)	210(100.0)
시설	43(36.8)	59(50.4)	7(6.0)	8(6.8)	117(100.0)

한편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가 특정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34>와 같다. 거주유형별로는 시설 거주자가 재가 그룹에 비해 월평균 급여가 유의미하게 낮고(88만원 대

114만원), 24세 이하 젊은 그룹도 월 80만원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는 그룹이 비수혜그룹보다 월평균 급여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3만원 대 184만원), 중학교 재학 이하 그룹과 고졸 ·고재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급여 차이가 없지만 이들과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 그룹과 비교하면 고학력 그룹의 급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6만원). 즉 저임금을 받는 그룹은 시설 거주자, 24세 이하 젊은 층 및 고교 이하 저학력 그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Ⅳ-34〉 월평균 급여 집단별 비교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312	105.3333	59.59913	-	-
연령대					
10대	8	81.88	19.261	2	6.481***
20대	154	94.64	40.537	2	
30대 이상	150	117.57	73.558	1	
연령대					
24세 이하	71	80.39437	28.69319	-	16.918***
25세 이상	241	112.6805	64.22261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0	76.15	25.46468	2	13.612***
고졸 및 재학	136	90.83088	37.18912	2	
대졸 및 재학	112	125.7054	79.12388	1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269	92.80297	37.56599	-	119.014***
지원받지 않음	43	183.7209	100.0039	-	
거주특성					
재가	203	114.4532	68.71617	-	14.182***
시설	109	88.34862	30.81227	-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는 응답이 30.6%로서 “만족하지 않는다”(불만족+매우불만족)는 응답비중(18%)보다 높았다. 특성 집단별로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Ⅳ-35>), 재가 보다는 시설 거주자가, 정부지원 수혜자보다는 비수혜자가 일자리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타나났다. 연령별 및 학력별로는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집단 간 일자리 만족도 평균 비교

(단위: 명)

	전체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327	3.094801	0.858128	-	-
연령대					
10대	11	3.00	1.000	-	0.118
20대	159	3.11	.864	-	
30대 이상	157	3.08	.847	-	
연령대					
24세 이하	76	3.131579	0.822064	-	0.181
25세 이상	251	3.083665	0.870041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0	2.8	0.767772	-	
고졸 및 재학	144	3.131944	0.955269	-	1.327
대졸 및 재학	115	3.104348	0.729983	-	
합계	279	3.096774	0.857441	-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280	3.042857	0.862367	-	7.275***
지원받지 않음	47	3.404255	0.770646	-	
거주특성					
재가	210	2.961905	0.868633	-	14.667***
시설	117	3.333333	0.787839	-	

주: * $p < .05$, ** $p < .01$, *** $p < .001$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24.5%)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저임금과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꼽은 사람들도 각각 21.4%, 20.2%나 되었다.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미혼모 집단에서도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30.7%), 자녀양육시간의 부족(29.5%) 그리고 저임금(23.9%)이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표 Ⅳ-36>).

〈표 Ⅳ-36〉 현 직장 근무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자녀 양육시간의 부족	저임금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불투명한 직업전망	장시간 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기타	무응답	전체
전체	80(24.5)	70(21.4)	66(20.2)	46(14.1)	43(13.1)	10(3.1)	2(0.6)	8(2.4)	2(0.6)	327(100.0)
연령대										
10대	2(18.2)	2(18.2)	6(54.5)	0(0.0)	1(9.1)	0(0.0)	0(0.0)	0(0.0)	0(0.0)	11(100.0)
20대	40(25.2)	36(22.6)	33(20.8)	19(11.9)	20(12.6)	6(3.8)	2(1.3)	2(1.3)	1(0.6)	159(100.0)
30대 이상	38(24.2)	32(20.4)	27(17.2)	27(17.2)	22(14.0)	4(2.5)	0(0.0)	6(3.8)	1(0.6)	157(100.0)
연령대										
24세 이하	22(28.9)	16(21.1)	21(27.6)	5(6.6)	7(9.2)	3(3.9)	1(1.3)	1(1.3)	0(0.0)	76(100.0)
25세 이상	58(23.1)	54(21.5)	45(17.9)	41(16.3)	36(14.3)	7(2.8)	1(0.4)	7(2.8)	2(0.8)	251(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이하	3(15.0)	4(20.0)	3(15.0)	3(15.0)	2(10.0)	2(10.0)	0(0.0)	2(10.0)	1(5.0)	20(100.0)
고졸 및 재학	35(24.3)	28(19.4)	39(27.1)	14(9.7)	23(16.0)	2(1.4)	1(0.7)	2(1.4)	0(0.0)	144(100.0)
대졸 및 재학	29(25.2)	30(26.1)	13(11.3)	23(20.0)	12(10.4)	4(3.5)	1(0.9)	3(2.6)	0(0.0)	11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6(29.5)	21(23.9)	27(30.7)	4(4.5)	4(4.5)	2(2.3)	0(0.0)	4(4.5)	0(0.0)	88(100.0)
만3~5세	34(24.5)	32(23.0)	22(15.8)	21(15.1)	22(15.8)	4(2.9)	2(1.4)	2(1.4)	0(0.0)	139(100.0)
만6~11세	18(20.0)	15(16.7)	16(17.8)	21(23.3)	14(15.6)	3(3.3)	0(0.0)	1(1.1)	2(2.2)	90(100.0)
만12세 이상	2(20.0)	2(20.0)	1(10.0)	0(0.0)	3(30.0)	1(10.0)	0(0.0)	1(10.0)	0(0.0)	1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63(22.5)	66(23.6)	58(20.7)	36(12.9)	39(13.9)	7(2.5)	2(0.7)	7(2.5)	2(0.7)	280(100.0)
지원받지 않음	17(36.2)	4(8.5)	8(17.0)	10(21.3)	4(8.5)	3(6.4)	0(0.0)	1(2.1)	0(0.0)	47(100.0)
거주특성										
재가	57(27.1)	46(21.9)	37(17.6)	34(16.2)	26(12.4)	5(2.4)	0(0.0)	3(1.4)	2(1.0)	210(100.0)
시설	23(19.7)	24(20.5)	29(24.8)	12(10.3)	17(14.5)	5(4.3)	2(1.7)	5(4.3)	0(0.0)	117(100.0)

자립과 관련한 일자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45.3%는 비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54.7%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다(<표 Ⅳ-37>). 그러나 10대와 20대에서 비관적 응답비중이 높았으며(54.6%, 49.1%), 재가 집단에서도 비관적 응답비중이 높았다(49%).

〈표 Ⅳ-37〉 자립가능한 일자리 유지 및 이직 가능성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체	36(11.0)	112(34.3)	160(48.9)	19(5.8)	327(100.0)
연령대					
10대	3(27.3)	3(27.3)	5(45.5)	0(0.0)	11(100.0)
20대	20(12.6)	58(36.5)	71(44.7)	10(6.3)	159(100.0)
30대 이상	13(8.3)	51(32.5)	84(53.5)	9(5.7)	157(100.0)
연령대					
24세 이하	14(18.4)	20(26.3)	37(48.7)	5(6.6)	76(100.0)
25세 이상	22(8.8)	92(36.7)	123(49.0)	14(5.6)	251(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3(15.0)	6(30.0)	10(50.0)	1(5.0)	20(100.0)
고졸 및 재학	16(11.1)	50(34.7)	68(47.2)	10(6.9)	144(100.0)
대졸 및 재학	10(8.7)	38(33.0)	60(52.2)	7(6.1)	11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9(10.2)	22(25.0)	50(56.8)	7(8.0)	88(100.0)
만3~5세	15(10.8)	58(41.7)	58(41.7)	8(5.8)	139(100.0)
만6~11세	11(12.2)	31(34.4)	46(51.1)	2(2.2)	90(100.0)
만12세 이상	1(10.0)	1(10.0)	6(60.0)	2(20.0)	1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36(12.9)	101(36.1)	128(45.7)	15(5.4)	280(100.0)
지원받지 않음	0(0.0)	11(23.4)	32(68.1)	4(8.5)	47(100.0)
거주특성					
재가	25(11.9)	78(37.1)	97(46.2)	10(4.8)	210(100.0)
시설	11(9.4)	34(29.1)	63(53.8)	9(7.7)	117(100.0)

3. 비취업자의 취업의지 및 구직활동

1) 구직자와 구직활동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64.8%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표 Ⅳ-38>), 그 중 73.4%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70%), 만 6~11세 학령기 아동을 둔 집단(76.2%), 시군구와 모자원 거주자(71%, 84.6%)에서 특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지원 수혜자나 비수혜자 사이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미혼모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65.1, 62.3%), 정부의 생활비지원이 취업의 동기나 욕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표 Ⅳ-38〉 취업 욕구 유무

(단위: 명, %)

	그렇다	아니다	전체	x^2(df)
전체	259(64.8)	141(35.3)	400(100.0)	
연령대				
10대	60(68.2)	28(31.8)	88(100.0)	1.1(2)
20대	140(65.1)	75(34.9)	215(100.0)	
30대 이상	59(60.8)	38(39.2)	97(100.0)	
연령대				
24세 이하	132(62.6)	79(37.4)	211(100.0)	0.9(1)
25세 이상	127(67.2)	62(32.8)	189(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40(57.1)	30(42.9)	70(100.0)	2.9(2)
고졸 및 재학	124(63.3)	72(36.7)	196(100.0)	
대졸 및 재학	63(70.0)	27(30.0)	90(100.0)	
자녀 연령				
만2세 이하	175(62.9)	103(37.1)	278(100.0)	
만3~5세	65(67.0)	32(33.0)	97(100.0)	-
만6~11세	16(76.2)	5(23.8)	21(100.0)	
만12세 이상	3(75.0)	1(25.0)	4(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226(65.1)	121(34.9)	347(100.0)	0.2(1)
지원받지 않음	33(62.3)	20(37.7)	53(100.0)	

	그렇다	아니다	전체	x^2(df)
거주 유형				
시군구	44(71.0)	18(29.0)	62(100.0)	19.6(4)***
공동생활가정	88(65.2)	47(34.8)	135(100.0)	
재가	27(42.9)	36(57.1)	63(100.0)	
모자원	22(84.6)	4(15.4)	26(100.0)	
거점기관	78(68.4)	36(31.6)	114(100.0)	
거주특성				
재가	149(62.3)	90(37.7)	239(100.0)	1.5(1)
시설	110(68.3)	51(31.7)	161(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아래 <표 Ⅳ-39>에서 보듯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 역시 30대 이상 연령층(76.3%),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79.4%), 만 6~11세 학령기 아동을 둔 집단(81.3%), 모자원 거주자(81.8%)에서 특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집단이 여전히 구직활동 중인 자의 비중도 높은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재학 이하의 저학력층, 정부지원 비수혜 집단, 거점기관 거주자 중에서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단념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현격히 높아(저학력층 35%, 정부지원 비수혜 집단 30.3%, 거점기관 거주자 32.1%), 이 집단들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39〉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그렇다	아니다	전체	x^2(df)
전체	190(73.4)	69(26.6)	259(100.0)	
연령대				
10대	42(70.0)	18(30.0)	60(100.0)	0.6(2)
20대	103(73.6)	37(26.4)	140(100.0)	
30대 이상	45(76.3)	14(23.7)	59(100.0)	
연령대				
24세 이하	93(70.5)	39(29.5)	132(100.0)	1.2(1)
25세 이상	97(76.4)	30(23.6)	127(100.0)	

	그렇다	아니다	전체	x^2(df)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26(65.0)	14(35.0)	40(100.0)	2.6(2)
고졸 및 재학	90(72.6)	34(27.4)	124(100.0)	
대졸 및 재학	50(79.4)	13(20.6)	63(100.0)	
지녀연령				
만2세 이하	126(72.0)	49(28.0)	175(100.0)	
만3~5세	49(75.4)	16(24.6)	65(100.0)	0.9(3)
만6~11세	13(81.3)	3(18.8)	16(100.0)	
만12세 이상	2(66.7)	1(33.3)	3(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167(73.9)	59(26.1)	226(100.0)	0.3(1)
지원받지 않음	23(69.7)	10(30.3)	33(100.0)	
거주유형				
시군구	32(72.7)	12(27.3)	44(100.0)	
공동생활가정	68(77.3)	20(22.7)	88(100.0)	-
재가	19(70.4)	8(29.6)	27(100.0)	
모자원	18(81.8)	4(18.2)	22(100.0)	
거점기관	53(67.9)	25(32.1)	78(100.0)	
거주특성				
재가	104(69.8)	45(30.2)	149(100.0)	2.3(1)
시설	86(78.2)	24(21.8)	110(100.0)	

2) 구직자의 직업훈련

취업자 중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응답자의 비중이 37.6%인데 비해 비취업자 중에서는 34%가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취업여부 별로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다(<표 Ⅳ-40>). 비취업자로서 현재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35.9%로 비취업자 전체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비중보다 약간 높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30.5%에 달한다(<표 Ⅳ-40-1>). 이는 양육미혼모들 사이에서는 일자리가 있든 없든 일자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업훈련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여타 여성집단에 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40〉 취업여부별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

(단위: 명, %)

	직업훈련경험		
	있다	없다	전체
전체	259(35.6)	468(64.4)	727(100.0)
취업여부			
취업	123(37.6)	204(62.4)	327(100.0)
비취업	136(34.0)	264(66.0)	400(100.0)

〈표 Ⅳ-40-1〉 취업 희망 여부별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

(단위: 명, %)

	직업훈련 경험		
	있다	없다	전체
전체	136(34.0)	264(66.0)	400(100.0)
일자리 희망여부			
원함	93(35.9)	166(64.1)	259(100.0)
원치않음	43(30.5)	98(69.5)	141(100.0)

다음 <표 Ⅳ-41>는 비취업자 중에서 일자리 희망자의 직업훈련 수강 비중을 특성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30대 이상 연령층(40.7%)과 정부지원을 받는 그룹(38.9%)에서 일자리 희망자의 직업훈련 수강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를 이 집단의 취업 열망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한다면, 이 집단에 집중적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취업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41〉 비취업자 중 일자리 희망자 직업훈련 수강 여부

(단위: 명, %)

	직훈수강	직훈 비수강	전체	x^2(df)
전체	93(35.9)	166(64.1)	259(100.0)	
연령대				
10대	14(23.3)	46(76.7)	60(100.0)	5.4(2)*
20대	55(39.3)	85(60.7)	140(100.0)	
30대 이상	24(40.7)	35(59.3)	59(100.0)	

	직훈수강	직훈 비수강	전체	x^2(df)
자녀연령				
만2세 이하	59(33.7)	116(66.3)	175(100.0)	
만3~5세	29(44.6)	36(55.4)	65(100.0)	-
만6~11세	4(25.0)	12(75.0)	16(100.0)	
만12세 이상	1(33.3)	2(66.7)	3(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받음	88(38.9)	138(61.1)	226(100.0)	7.1(1)***
지원받지 않음	5(15.2)	28(84.8)	33(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4. 차별경험

우선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직장, 관공서, 자녀학교생활 등의 영역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Ⅳ-42>과 같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에 응답한 케이스를 모두 결측처리 한 다음[13] 각 응답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전혀 차별이 없다가 1점, 매우 심각한 차별이 있다가 4점인 4첨척도를 이용했으므로 뚜렷하게 차별이 있다고 응답자가 느끼는 영역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6가지 영역들 중에서 가장 차별이나 편견을 덜 느끼는 영역은 친구관계 영역이며, '관공서 등에서 관련 업무를 볼 때'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웃관계, 직장, 자녀 학교생활 등도 평균 2.5점이 넘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쪽으로 응답분포가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13)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제시되는 평균값들은 해당자(즉 직장이 있는 사람,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에만 국한된 값들이다.

〈표 Ⅳ-42〉 전반적 영역별 차별 경험 정도

(단위: 명)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직장	관공서	자녀학교생활
전체						
유효	657	679	659	521	620	416
결측	70	48	68	206	107	311
평균	2.27	2.17	2.58	2.56	2.82	2.63
표준편차	0.998	0.878	0.894	0.961	0.962	0.911

차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이웃관계, 직장, 관공서, 자녀학교생활 영역에 대해 특정 집단별로 차별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이웃관계 영역에서의 차별인식 차이는 다음 <표 Ⅳ-43>와 같다.

〈표 Ⅳ-43〉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이웃관계에서의 차별)

(단위: 명)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659	2.58	.894	-	
연령대					
10대	92	2.49	.883		1.519
20대	335	2.56	.910		
30대 이상	232	2.66	.873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82	2.35	.948	-	2.880
고졸 및 재학	311	2.61	.898	-	
대졸 및 재학	188	2.60	.825	-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571	2.61	.894	-	3.844**
지원받지 않음	88	2.41	.879	-	
취업여부					
취업	300	2.66	.864	-	4.501**
비취업	359	2.52	.915	-	
거주특성					
재가	405	2.65	.868	-	5.454**
시설	254	2.48	.927	-	

주: * $p < .05$, ** $p < .01$, *** $p < .001$

취업자, 재가, 25세 이상, 정부지원 수혜자 그룹에서 이웃관계에서 차별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에 대한 이웃 공동체의 낙인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정부지원 수혜자가 지역 공동체에서 수혜 사실이 노출되어 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장에서의 차별 인지도의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면(<표 Ⅳ-44>) 재가, 2·30대, 대재 이상의 고학력 그룹에서 차별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수혜를 받는 그룹의 직장 차별 경험은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취업한 재가 미혼모들은 이웃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직장에서의 차별)

(단위: 명)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521	2.56	0.961		
연령대					
10대	64	2.30	0.920	3	2.830*
20대	269	2.61	0.988	1	
30대 이상	188	2.56	0.926	1	
연령대					
24세 이하	200	2.49	0.977	-	1.561
25세 이상	321	2.60	0.951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55	2.15	0.931	3	5.679***
고졸 및 재학	256	2.61	0.964	1	
대졸 및 재학	149	2.62	0.977	1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447	2.58	0.971	-	1.772
지원받지 않음	74	2.42	0.891	-	
거주특성					
재가	303	2.63	0.944	-	3.910**
시설	218	2.46	0.979	-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직장차별의 내용은 대단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혼모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라고 하고, 면접보고... 했는데도 이제 안되는 거에요. 혼자애기 키우는데... 애기가 아프면 나올 수가 없냐? 없다고 하면서... 네...힘들어요.
> --네 알아요, 근데 이쪽 병원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다른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있었거든요, 좀 나쁘게 보는거죠. 그런것 때문에 못참고 그냥 제가, 계속 나오는...것도 많았구요. 저는 시설에서 살고. (사례2)

> 저 같은 경우엔 다시 다른 일을 구한다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뭐 그쪽에서 사생활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사정을...예를 들어 아까전 처럼, 수급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거...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거 는 편해요, 얘기할 수 있어, 왜 얘기를 못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미혼모다, 나 그렇기 때문에 수급신청을 했었고, 받고 있고... 내가 여기 직장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내가 경력이 안 되니까...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뭐,, 구구절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받아 들이는게 문제인거죠, 너 수급...너...너 미혼모야?, 아, 수급자 이런거 다 재껴 놓고, 너 미혼모야-- 중략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수근수근수근 대가지고...그리고 또, 나한테... 나를 되게 무섭게 봤던 남자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나를 되게 쉽게 보는 거에요. (사례3)

> 왜냐면.. 몸이 무거워서 힘든게 아니라, 애들이, '선생님, 임산부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것도 저는 상처인 거에요. (사례1)

전체 평균에서 가장 차별 인지 정도가 높았던 영역인 관공서에서의 차별을 살펴보면(<표 Ⅳ-45>),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시설거주자 보다는 재가 그룹이, 10대보다는 2・30대 이상 연령층이, 중학교 재학 이하 보다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상대적 고학력층이 각각 관공서에서의 차별 경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그룹이 상대적으로 관공서 출입 빈도가 잦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분석 결과는 관공서 출입 자체가 양육미혼모들에게는 스티그마라고 보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관공서에서의 차별인식 정도가 정부지원 수혜집단이나 비수혜집단이나 차이 없이 2.8이상으로 차별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도 이런 해석을 더욱 지지한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태도 및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표 Ⅳ-45〉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관공서에서의 차별)

(단위: 명)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620	2.82	.962	-	
연령대					
10대	74	2.51	.969	3	4.884***
20대	318	2.83	.945	1	
30대 이상	228	2.91	.967	1	
연령대					
24세 이하	232	2.63	.945	-	16.028***
25세 이상	388	2.94	.953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66	2.47	1.041	3	5.333***
고졸 및 재학	294	2.81	.936	1	
대졸 및 재학	183	2.92	.960	1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537	2.83	.963	-	0.078
지원받지 않음	83	2.80	.960	-	
취업여부					
취업	297	2.91	.957	-	4.284**
비취업	323	2.75	.961	-	
거주특성					
재가	382	2.91	.993	-	8.01***
시설	238	2.68	.894	-	

주: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자녀 학교생활에서 차별 인지 정도의 집단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위의 <표 Ⅳ-46>과 같다. 30대 이상 혹은 25세 이상 연령층에서 차별인식의 정도가 높고, 고학력층에서도 차별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계층별 차이는 5% 유의수준에의 유의하기는 하지만 사후검정에서 각 계층별 서열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6〉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자녀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단위: 명)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F
전체	416	2.63	.911	-	
연령대					
10대	57	2.33	.951	2	3.763**
20대	216	2.66	.937	2	
30대 이상	143	2.71	.836	1	
연령대					
24세 이하	176	2.53	.962	-	3.986**
25세 이상	240	2.71	.867	-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51	2.35	.996	-	3.087**
고졸 및 재학	203	2.64	.925	-	
대졸 및 재학	111	2.74	.881	-	
취업여부					
취업	220	2.70	.855	-	2.593
비취업	196	2.56	.967	-	
정부지원여부					
지원받음	358	2.66	.917	-	2.757
지원받지 않음	58	2.45	.862	-	
거주특성					
재가	239	2.58	.908	-	1.736
시설	177	2.70	.914	-	

주: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인 삶의 영역들 중에서 양육미혼모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두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비중이 51.7%, 별로 없다는 응답이 24.6%로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대세를 이루었다(<표 Ⅳ-47>). 그러나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및 졸업 이상의 고학력 그룹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유무간 차이가 가장 현격해서 일자리가 있는 그룹에서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8.2%(전혀없다 39.8%, 별로없

다 28.4%)밖에 되지 않은 반면 일자리가 없는 그룹에서는 83%나 되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고학력 취업자 그룹에서는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47〉 집단별 차별경험 분포

(단위: 명, %)

	많이 있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체	x^2(df)
전체	37(5.1)	135(18.6)	179(24.6)	376(51.7)	727(100.0)	
연령대						
10대	4(4.0)	15(15.2)	19(19.2)	61(61.6)	99(100.0)	-
20대	19(5.1)	74(19.8)	96(25.7)	185(49.5)	374(100.0)	
30대 이상	14(5.5)	46(18.1)	64(25.2)	130(51.2)	254(100.0)	
교육수준						
중졸 및 재학 이하	5(5.6)	15(16.7)	14(15.6)	56(62.2)	90(100.0)	
고졸 및 재학	18(5.3)	53(15.6)	84(24.7)	185(54.4)	340(100.0)	14.2(6)**
대졸 및 재학	9(4.4)	48(23.4)	59(28.8)	89(43.4)	205(100.0)	
취업여부						
취업	18(5.5)	86(26.3)	93(28.4)	130(39.8)	327(100.0)	39.3(3)***
비취업	19(4.8)	49(12.3)	86(21.5)	246(61.5)	400(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다음 <표 Ⅳ-48>에서 보듯이, 비록 무응답 비중이 높아서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이긴 하나, 학교에서 주로 차별을 가하는 가해자는 동료 학생들의 비중(26.8%)이 가장 높고(다른 학생들: 19.2%,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7.6%) 그 다음이 교사 및 교수(20.9%)인 것으로 나타났다(담임교사 혹은 지도교수: 11.0%, 다른 교사 혹은 교수: 6.4%, 교장 혹은 교감선생님: 3.5%). 직장에서는 같은 직원인 경우가 가장 많고(55.8%), 그 다음으로는 인사담당자였다(18.0%).

〈표 Ⅳ-48〉 학교 혹은 직장에서의 차별 가해자

(단위: 명, %)

학교에서 가해자	다른 학생들	담임교사, 지도교수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들	다른 교사나 교수	교장 혹은 교감선생님	기타	무응답	전체
	33(19.2)	19(11.0)	13(7.6)	11(6.4)	6(3.5)	9(5.2)	106(61.6)	172(100.0)
직장에서 가해자	직장의 일반 직원	직장의 인사 담당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기타	무응답	전체
	76(44.2)	31(18.0)		20(11.6)		17(9.9)	50(29.1)	172(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5. 요약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양육미혼모 집단의 자립기반이 얼마나 튼실한가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지망, 그들의 일자리 경험 및 차별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양육 미혼모들의 정규학력을 살펴보면 고교 재학 및 졸업자 비중이 가장 높으나 대학 재학 및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그룹의 비중도 32.3%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중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15.8%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현재 학령층인 10대와 20대 초반에서 학업 포기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업 중단자 중에서는 수치심이나 학교측의 강요 등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가 반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미혼모가 정규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더욱이 양육미혼모들의 64.5%가 자립의 조건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학업 중단자이든 아니든 양육미혼모들 학업 지속 욕구는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미혼모의 부친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단순노무직이 많았으나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경우는 관리직 및 전문직(14.1%)이었다. 특히 10대 연령층에서 관리직및 전문직 부친을 둔 경우가 많았다(17.1%). 이는 양육미혼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직업훈련 수강 경험은 35.6%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수강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직업훈련이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추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9%나 되는 등 양육미혼모들의 직업훈련 요구와 참여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재가 거주 집단에서 직업훈련 수강 경험자 비중이 평균에 비해 많이 낮고, 저학력 집단,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집단, 공동생활시설 및 모자원 거주자 집단에서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이 낮았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수강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역시 훈련시간 중 자녀 돌봄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47.9%)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시간부족을,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관련 정보의 부족(14.7%)을 들었다. 재가 집단 중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시간부족 응답비중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이들 집단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10대, 저학력 층, 시군구 거주층 중에서 정보부족 응답비중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직훈에 대한 홍보 강화에 있어서 주로 이들 집단을 타겟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미혼모의 주거 실태는 자가나 전세 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형태의 비중이 매우 낮고 월세나 기타와 같이 불안정적인 주거 형태의 비중이 33.8%와 47.6%로 매우 높았다. 46%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1,300만원 정도였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커지고 부채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미루어, 양육미혼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에 취약해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1%는 저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저축을 하는 사람들 중 월평균 저축액 규모는 31만원 정도였다.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총소득은 78만5천원 선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일자리가 없는 양육미혼모들의 월평균 비근로소득(이전 소득)은 41만2천원에 불과했다. 일자리가 있는 대재 이상 고학력 양육미혼모들의 총소득은 99만원 정도로서, 비근로소득을 합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의 동일 학력 소지자의 근로소득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양육한부모의 총소득은 정부지원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그룹의 총소득보다 월등히 낮아, 정부의 소득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양육미혼모의 자립 여건의 또다른 중요한 차원은 양육미혼모가 얼마나 사회적

지지망 속에 잘 통합되어있는가이다. 사회적 지지망을 정부로부터 지지, 부모로부터 지지, 일상생활에서 지지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중 한가지 이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혜액은 월평균 34만원 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미혼모 응답자 중에서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61.5%였으며,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가 10.2%나 되었다. 부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 중에서 부친과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22.4%, 모친과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 경우는 모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의 12.8%나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영역을 크게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로 나누었을 때, 양육미혼모들은 각 경우에서 평균 1인 이상의 조력자를 동원할 수 있는 지지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력자를 동원할 수 있는 영역은 자녀에게 긴급상황 발생시로서 평균 1.36명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력자를 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로서 평균 1.1명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각 영역 별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 생존한 부모와 아무런 접촉이 없는 그룹,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룹을 각각 정부지원으로부터 고립자, 부모로부터 고립자,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자로 정의하면, 정부로부터 고립자는 전체 응답자의 22.4%, 부모로부터 고립자는 부모가 생존한 전체 응답자의 9.0%,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자는 전체 응답자의 13.2%에 달했다. 따라서 이들 고립자 그룹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이 돌보미나 가사돌보미 금융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건은 취업여부라고 할 수 있다. 양육미혼모 여성들 중 일자리가 있는 여성은 전체의 45%로서, 전체 여성 취업률인 47.3%를 밑돌았다. 양육미혼모의 자립 여부가 취업이라는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육미혼모의 평균 취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특히, 자녀 연령이 만 2세 이하인 집단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24%로 가

장 낮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 집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취업자 중에서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직이 가장 많고(35.3%), 사무직이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24.5%), 관리직 및 전문직(19%), 단순노무직(15%)순이었다.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서비스및 판매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전일제 일자리 취업자의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도 39.8%나 되었다. 20대 이하 젊은층 혹은 중재 이하 저학력그룹에서는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간제나 서비스 판매직과 같은 한계적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저학력, 젊은층 양육미혼모 그룹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6시간, 평균 근로소득은 월 105.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중에서 특별히 평균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은 시설 거주자, 20대 이하 젊은 층 및 고교 이하 저학력 그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비중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30.6% 대 18%).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24.5%)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저임금과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꼽은 사람들도 각각 21.4%, 20.2%나 되었다.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그런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45.3%는 비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54.7%가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10대와 20대에서는 비관적 응답비중이 높았다(54.6%, 49.1%).

한편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과반수 이상인 64.8%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그 중 73.4%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지원 수혜자나 비수혜자 사이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미혼모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65.1% 대 62.3%), 정부의 생활비지원이 취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크게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재학 이하의 저학력층, 정부지원 비수혜 집단, 거점기관 거주자 중에서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단념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현격히 높아(저학력층

35%, 정부지원 비수혜 집단 30.3%, 거점기관 거주자 32.1%, 이 집단들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취업자로서 현재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35.9%이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30.5%에 달한다. 이는 양육미혼모들 사이에서는 일자리가 있든 없든 일자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업훈련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여타 여성집단에 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양육미혼모들이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비교적 많이 느끼는 영역은 '관공서 등에서 관련 업무를 볼 때'였으며, 이웃관계, 직장, 자녀 학교생활 등도 평균 2.5점이 넘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쪽으로 응답분포가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재가, 25세 이상, 정부지원 수혜자 그룹에서 이웃관계에서 차별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에 대한 이웃 공동체의 낙인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정부지원 수혜자가 지역 공동체에서 수혜 사실이 노출되어 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체 평균에서 가장 차별 인지 정도가 높았던 영역인 관공서에서의 차별을 살펴보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시설거주자 보다는 재가 그룹이, 10대보다는 2·30대 이상 연령층이, 중재 이하 보다는 고재 이상의 상대적 고학력층이 각각 관공서에서의 차별 경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그룹이 상대적으로 관공서 출입 빈도가 잦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분석 결과는 관공서 출입 자체가 양육미혼모들에게는 스티그마라고 보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비중이 51.7%, 별로 없다는 응답이 24.6%로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고학력자 그룹과 취업자 그룹에서는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앞에서 요약한 조사 결과는 양육미혼모의 자립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시사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한계적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양육미혼모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관건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육미혼모의 자립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일 것이다. 일자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자립 수단이며,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를 구하는 양육미혼모들에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확보 수단이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양육미혼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종 전달체계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일반 대상집단을 겨냥한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인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 등을 통해 양육미혼모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다시 다음의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양육미혼모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기존의 일반적 취업서비스를 양육미혼모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혼모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다른 취업지원 정책 수단들과는 달리, 양육미혼모라는 타겟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의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책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수혜자에게 스티그마가 되는 상황에서는 수혜집단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미혼모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육미혼모가 자신의 미혼모로서의 지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반 범주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들을 보다 더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양육미혼모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양육미혼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명시적으로 양육미혼모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전달체계(읍면동사무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명시적 양육미혼모 대상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지원들에는 취업지원서비스가 극히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한부모 대상 및 미혼모 대상 지원서비스들 중에 취업지원서비스의 비중을 높이고 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양육미혼모 그룹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일반인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들을 리뷰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미혼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들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다. 취업지원서비

스를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공공서비스로 이해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청년 구직자, 재직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대부분이 양육미혼모 그룹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가 될 것이다. 차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재직자 중에서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수강 비용을 지원하는 수강지원금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급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구직자 중에서 고용보험 비가입자에게도 훈련비를 지급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고용촉진훈련,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양육미혼모 친화적 취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취업지원서비스의 최종 전달체계는 예외없이 고용지원센터이다(고용촉진훈련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청년 여성, 한무모가족대상 고용지원 및 직업훈련서비스들 역시 양육미혼모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새일센터의 각종 경력단절 여성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각종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한부모가족대상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사업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의 최종 전달체계는 새일센터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서비스와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의 최종 전달체계는 읍면동사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를 통해 제공되는 일반 취업지원서비스들 중에 양육미혼모를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들이 이들 일반인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앞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듯이, 보육관련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인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들이 양육미혼모친화적으로 개편되려면 가장 급선무는 각 취업지원서비스 패키지 내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수강자들을 위한 보육지원서비스를 함께 장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만을 골라내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앞서

밝힌 바 대로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나 스티그마로 작용할 수 있으며, 모든 취업지원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한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인 읍면동사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미혼모에 한해 보육수당 혹은 보육료환급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보미서비스의 우선이용권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전달되는 한부모지원서비스에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으로는 이들 최종 전달체계 내에 자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미혼모 집단에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말단과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양육미혼모의 관리 및 지원서비스 제공이 주로 읍면동사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고용지원센터와 새일센터 등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조사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보의 부족을 꼽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한부모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자체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추가나 강화가 불가능하다면, 전달체계간 연계와 정보공유시스템의 확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양육미혼모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 등과 연계해주고 이들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링킹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담당 인력에게 관내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의 정보를 주지시키고, 취업 희망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링킹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안에 미혼모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역시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V 미혼모의 정책욕구

1.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135
2. 미혼모시설의 이용경험 145
3. 양육미혼모의 지원정책 욕구 151
4. 요약 및 논의 173

1.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1) 전반적 미혼모지원정책 인지도

미혼모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해 보면,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생계비수급과 거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다른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의 미혼모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 정책별 인지도

(단위: 명, %)

	모자 보호 시설	기초 생계비 수급	거점기관	저소득 미혼모 가족지원	아동 보육 지원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보건 및 영양 관련 지원	응답자 수
인지도	505 (69.5)	431 (59.3)	387 (53.2)	340 (46.8)	317 (43.6)	283 (38.9)	295 (40.6)	260 (35.8)	727 (100.0)

우선,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모(부)자 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는 69.5%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세 이하(74.0%)이고 시설에 거주하며(82.7%)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70.8%)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거주특성으로서, 재가미혼모의 경우 61.2% 수준으로 시설미혼모의 82.7%보다 20%p 이상 인지도 차이를 보였다.

〈표 Ⅴ-2〉 모자보호시설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505(69.5)	222(30.5)	727(100.0)	
연령대				2.660(2)
10대	75(75.8)	24(24.2)	99(100.0)	
20대	252(67.4)	122(32.6)	374(100.0)	
30대 이상	178(70.1)	76(29.9)	254(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198(69.0)	89(31.0)	287(100.0)	0.050(1)
25세 이상	307(69.8)	133(30.2)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8(64.4)	32(35.6)	90(100.0)	1.519(2)
고졸 및 재학	242(71.2)	98(28.8)	340(100.0)	
대졸 및 재학	143(69.8)	62(30.2)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71(74.0)	95(26.0)	366(100.0)	7.817(2)*
만3~5세	156(66.1)	80(33.9)	236(100.0)	
만6세 이상	78(62.4)	47(37.6)	125(100.0)	
취업여부				
취업	223(68.2)	104(31.8)	327(100.0)	0.450(1)
비취업	282(70.5)	118(29.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444(70.8)	183(29.2)	627(100.0)	3.916(1)*
비지원	61(61.0)	39(39.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75(61.2)	174(38.8)	449(100.0)	37.369(1)***
시설	230(82.7)	48(17.3)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자시설에서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안다는 대답이 59.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이 높고(30대 62.2%, 25세 이상 61.6%)이고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으며(만 2세 이하 60.4%, 만 3~5세 61.0%)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60.6%),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75.2%)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항목에서도 재가미혼모의 인지도는 절반 이하에 머물러 시설미혼모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Ⅴ-3〉 기초생계비 수급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431(59.3)	296(40.7)	727(100.0)	
연령대				
10대	57(57.6)	42(42.4)	99(100.0)	1.380(2)
20대	216(57.8)	158(42.2)	374(100.0)	
30대 이상	158(62.2)	96(37.8)	254(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160(55.7)	127(44.3)	287(100.0)	2.456(1)
25세 이상	271(61.6)	169(38.4)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57.8)	38(42.2)	90(100.0)	1.328(2)
고졸 및 재학	210(61.8)	130(38.2)	340(100.0)	
대졸 및 재학	117(57.1)	88(42.9)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21(60.4)	145(39.6)	366(100.0)	2.654(2)
만3~5세	144(61.0)	92(39.0)	236(100.0)	
만6세 이상	66(52.8)	59(47.2)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91(58.4)	136(41.6)	327(100.0)	0.188(1)
비취업	240(60.0)	160(40.0)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380(60.6)	247(39.4)	627(100.0)	3.297(1)
비지원	51(51.0)	49(49.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22(49.4)	227(50.6)	449(100.0)	47.115(1)***
시설	209(75.2)	69(24.8)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3.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30대(63.0%) 또는 25세 이상(58.9%),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54.2%)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거점기관은 주로 재가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설거주 미혼모(44.6%)보다 재가미혼모(58.6%)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Ⅴ-4〉 거점기관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 체	387(53.2)	340(46.8)	727(100.0)	
연령대				
10대	48(48.5)	51(51.5)	99(100.0)	14.949(2)**
20대	179(47.9)	195(52.1)	374(100.0)	
30대 이상	160(63.0)	94(37.0)	254(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128(44.6)	159(55.4)	287(100.0)	14.197(1)***
25세 이상	259(58.9)	181(41.1)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9(54.4)	41(45.6)	90(100.0)	3.266(2)
고졸 및 재학	169(49.7)	171(50.3)	340(100.0)	
대졸 및 재학	118(57.6)	87(42.4)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94(53.0)	172(47.0)	366(100.0)	10.823(2)**
만3~5세	141(59.7)	95(40.3)	236(100.0)	
만6세 이상	52(41.6)	73(58.4)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73(52.9)	154(47.1)	327(100.0)	0.026(1)
비취업	214(53.5)	186(46.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340(54.2)	287(45.8)	627(100.0)	1.809(1)
비지원	47(47.0)	53(53.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63(58.6)	186(41.4)	449(100.0)	13.460(1)***
시설	124(44.6)	154(55.4)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못미치는 46.8%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30대(56.7%), 대졸(51.7%), 만 6세이상 큰 아동이 있는 경우(56.0%), 취업한 여성(49.2%),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47.5%), 재가미혼모(48.3%)였다.

〈표 Ⅴ-5〉 저소득 미혼모가족지원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340(46.8)	387(53.2)	727(100.0)	
연령대				
10대	47(47.5)	52(52.5)	99(100.0)	17.281(2)***
20대	149(39.8)	225(60.2)	374(100.0)	
30대 이상	144(56.7)	110(43.3)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23(42.9)	164(57.1)	287(100.0)	2.913(1)
25세 이상	217(49.3)	223(50.7)	440(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46.7)	48(53.3)	90(100.0)	4.236(2)
고졸 및 재학	145(42.6)	195(57.4)	340(100.0)	
대졸 및 재학	106(51.7)	99(48.3)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60(43.7)	206(56.3)	366(100.0)	5.651(2)
만3~5세	110(46.6)	126(53.4)	236(100.0)	
만6세 이상	70(56.0)	55(44.0)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61(49.2)	166(50.8)	327(100.0)	1.454(1)
비취업	179(44.8)	221(55.3)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98(47.5)	329(52.5)	627(100.0)	1.059(1)
비지원	42(42.0)	58(58.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17(48.3)	232(51.7)	449(100.0)	1.151(1)
시설	123(44.2)	155(55.8)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도 과반수에 못미치는 4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들(44.2%)의 인지도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미혼모들(40.0%)보다 약간 높았다.

〈표 Ⅴ-6〉 아동보육지원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317(43.6)	410(56.4)	727(100.0)	
연령대				
10대	49(49.5)	50(50.5)	99(100.0)	4.098(2)
20대	150(40.1)	224(59.9)	374(100.0)	
30대 이상	118(46.5)	136(53.5)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27(44.3)	160(55.7)	287(100.0)	0.081(1)
25세 이상	190(43.2)	250(56.8)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4(48.9)	46(51.1)	90(100.0)	4.693(2)
고졸 및 재학	138(40.6)	202(59.4)	340(100.0)	
대졸 및 재학	101(49.3)	104(50.7)	205(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48(40.4)	218(59.6)	366(100.0)	3.017(2)
만3~5세	110(46.6)	126(53.4)	236(100.0)	
만6세이상	59(47.2)	66(52.8)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45(44.3)	182(55.7)	327(100.0)	0.132(1)
비취업	172(43.0)	228(57.0)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77(44.2)	350(55.8)	627(100.0)	0.062(1)
비지원	40(40.0)	60(60.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98(44.1)	251(55.9)	449(100.0)	0.117(1)
시설	119(42.8)	159(57.2)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양육비 이행청구소송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38.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45.5%)의 인지도가 다소 높았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들(40.4%)이 그렇지 않은 미혼모들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특히 시설 미혼모들은 대다수(50.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하여 재가 미혼모들은 1/3(31.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7〉 양육비이행청구소송비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283(38.9)	444(61.1)	727(100.0)	
연령대				
10대	45(45.5)	54(54.5)	99(100.0)	4.178(2)
20대	133(35.6)	241(64.4)	374(100.0)	
30대 이상	105(41.3)	149(58.7)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19(41.5)	168(58.5)	287(100.0)	1.283(1)
25세 이상	164(37.3)	276(62.7)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8(42.2)	52(57.8)	90(100.0)	1.442(2)
고졸 및 재학	125(36.8)	215(63.2)	340(100.0)	
대졸 및 재학	84(41.0)	121(59.0)	205(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64(44.8)	202(55.2)	366(100.0)	11.254(2)**
만3~5세	81(34.3)	155(65.7)	236(100.0)	
만6세 이상	38(30.4)	87(69.6)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25(38.2)	202(61.8)	327(100.0)	0.123(1)
비취업	158(39.5)	242(60.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53(40.4)	374(59.6)	627(100.0)	3.887(1)*
비지원	30(30.0)	70(70.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42(31.6)	307(68.4)	449(100.0)	26.329(1)***
시설	141(50.7)	137(49.3)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40.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지원대상인 24세 이하(50.9%)의 인지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자녀연령도 어릴수록 인지도가 높아 만 2세 이하는 과반수(49.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여부로는 비취업 미혼모(43.5%), 정부지원여부로는 정부지원받는 미혼모(41.9%)의 인지도가 높았다. 거주특성별로는 시설거주 미혼모는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51.4%)고 응답한 반면, 재가 미혼모들은 1/3(33.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재가 미혼모들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295(40.6)	432(59.4)	727(100.0)	
연령대				
10대	54(54.5)	45(45.5)	99(100.0)	10.805(2)**
20대	151(40.4)	223(59.6)	374(100.0)	
30대 이상	90(35.4)	164(64.6)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46(50.9)	141(49.1)	287(100.0)	20.837(1)***
25세 이상	149(33.9)	291(66.1)	440(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교육수준				
중졸 이하	41(45.6)	49(54.4)	90(100.0)	1.114(2)
고졸 및 재학	141(41.5)	199(58.5)	340(100.0)	
대졸 및 재학	80(39.0)	125(61.0)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82(49.7)	184(50.3)	366(100.0)	27.493(2)***
만3~5세	80(33.9)	156(66.1)	236(100.0)	
만6세 이상	33(26.4)	92(73.6)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21(37.0)	206(63.0)	327(100.0)	3.150(1)
비취업	174(43.5)	226(56.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63(41.9)	364(58.1)	627(100.0)	3.538(1)
비지원	32(32.0)	68(68.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52(33.9)	297(66.1)	449(100.0)	22.021(1)***
시설	143(51.4)	135(48.6)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보건 및 영양과 관련된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3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졸업 이상(39.0%), 만 2세 이하 아동이 있을 경우(39.9%), 비취업미혼모(38.3%), 정부지원받는 미혼모(37.6%)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거주특성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컸는데, 시설 미혼모는 4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재가 미혼모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31.2%에 불과하였다.

〈표 Ⅴ-9〉 보건 및 영양 관련지원 인지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 체	260(35.8)	467(64.2)	727(100.0)	
연령대				
10대	43(43.4)	56(56.6)	99(100.0)	10.518(2)**
20대	113(30.2)	261(69.8)	374(100.0)	
30대 이상	104(40.9)	150(59.1)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06(36.9)	181(63.1)	287(100.0)	0.283(1)
25세 이상	154(35.0)	286(65.0)	440(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34.4)	59(65.6)	90(100.0)	1.140(2)
고졸 및 재학	119(35.0)	221(65.0)	340(100.0)	
대졸 및 재학	80(39.0)	125(61.0)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46(39.9)	220(60.1)	366(100.0)	9.290(2)*
만3~5세	83(35.2)	153(64.8)	236(100.0)	
만6세 이상	31(24.8)	94(75.2)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07(32.7)	220(67.3)	327(100.0)	2.393(1)
비취업	153(38.3)	247(61.8)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36(37.6)	391(62.4)	627(100.0)	6.984(1)**
비지원	24(24.0)	76(76.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40(31.2)	309(68.8)	449(100.0)	10.735(1)**
시설	120(43.2)	158(56.8)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미혼모지원정책 전달체계 경험

출생신고 당시 동사무소(구청) 담당자가 미혼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설명해 주었는가에 대해 대다수(82.4%)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특히 25세 이상 성인(85.5%)이고 자녀가 3세 이상이며(3~5세 86.9%, 6세 이상 85.6%)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미혼모들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어리고 자녀도 어린 미혼모들이 설명을 들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현장 공무원의 설명이 나아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아직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표 Ⅴ-10〉 출생신고시 담당공무원 설명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128(17.6)	599(82.4)	727(100.0)	
연령대				
10대	22(22.2)	77(77.8)	99(100.0)	3.836(2)
20대	70(18.7)	304(81.3)	374(100.0)	
30대 이상	36(14.2)	218(85.8)	254(100.0)	

	예	아니오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64(22.3)	223(77.7)	287(100.0)	7.200(1)**
25세 이상	64(14.5)	376(85.5)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27.8)	65(72.2)	90(100.0)	8.485(2)*
고졸 및 재학	56(16.5))	284(83.5)	340(100.0)	
대졸 및 재학	29(14.1)	187(85.9)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79(21.6)	287(78.4)	366(100.0)	8.131(2)*
만3~5세	31(13.1)	205(86.9)	236(100.0)	
만6세 이상	18(14.4)	107(85.6)	125(100.0)	
취업여부				
취업	44(13.5)	283(86.5)	327(100.0)	7.059(1)**
비취업	84(21.0)	316(79.0)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115(18.3)	512(81.7)	627(100.0)	1.696(1)
비지원	13(13.0)	87(87.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74(16.5)	375(83.5)	449(100.0)	1.025(1)
시설	54(19.4)	224(80.6)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 지원서비스 이용시 불편했던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절차의 복잡함(30.7%), 정보의 부족(20.6%), 지원서비스 부실(17.2.%), 공무원의 태도(15.5%)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지적되었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복잡한 절차의 문제를(30.7%), 성인미혼모들은 정보의 부족(30.5%)과 공무원태도(24.7%)를 더 큰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거주특성별로는 재가미혼모의 경우 정보의 부족(27.4%) 문제를, 시설미혼모의 경우 절차의 복잡함(29.4%)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연령이 높은 재가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 문제를, 연령이 낮고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절차의 복잡함 문제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명, %)

	정보의 부족	절차의 복잡함	공무원의 태도	지원 서비스 부실	지원 기관 미비	일반인의 따가운 시선	기타	전체	x^2(df)
전체	165(20.6)	158(30.7)	131(15.5)	85(17.2)	27(5.0)	24(4.2)	28(6.7)	618(100.0)	
연령대									
10대	14(17.7)	5(6.3)	23(29.1)	15(19.0)	6(7.6)	9(11.4)	7(8.9)	79(100.0)	21.676(12)*
20대	88(27.8)	11(3.5)	84(26.5)	47(14.8)	9(2.8)	67(21.1)	11(3.5)	317(100.0)	
30대 이상	63(28.4)	11(5.0)	51(23.0)	23(10.4)	9(4.1)	55(24.8)	10(4.5)	222(100.0)	
연령대									
24세 이하	49(20.6)	73(30.7)	37(15.5)	41(17.2)	12(5.0)	10(4.2)	16(6.7)	238(100.0)	23.193(6)**
25세 이상	116(30.5)	85(22.4)	94(24.7)	44(11.6)	15(3.9)	14(3.7)	12(3.2)	38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24.3)	19(25.7)	9(12.2)	15(20.3)	3(4.1)	4(5.4)	6(8.1)	74(100.0)	14.467(12)
고졸 및 재학	75(25.4)	78(26.4)	61(20.7)	41(13.9)	14(4.7)	12(4.1)	14(4.7)	295(100.0)	
대졸 및 재학	48(28.1)	46(26.9)	44(25.7)	18(10.5)	4(2.3)	7(4.1)	4(2.3)	171(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81(27.7)	79(27.1)	47(16.1)	34(11.6)	14(4.8)	17(5.8)	20(6.8)	292(100.0)	29.327(12)**
만3~5세	62(29.4)	45(21.3)	50(23.7)	36(17.1)	7(3.3)	5(2.4)	6(2.8)	211(100.0)	
만6세 이상	22(19.1)	34(29.6)	34(29.6)	15(13.0)	6(5.2)	2(1.7)	2(1.7)	115(100.0)	
취업여부									
취업	78(26.9)	75(25.9)	67(23.1)	40(13.8)	17(5.9)	7(2.4)	6(2.1)	290(100.0)	14.100(6)*
비취업	87(26.5)	83(25.3)	64(19.5)	45(13.7)	10(3.0)	17(5.2)	22(6.7)	328(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146(26.1)	143(25.5)	124(22.1)	75(13.4)	25(4.5)	24(4.3)	23(4.1)	560(100.0)	8.938(6)
비지원	19(34.5)	15(27.3)	4(7.3)	10(18.2)	2(3.6)	0(0.0)	5(9.1)	55(100.0)	
거주특성									
재가	106(27.4)	90(23.3)	79(20.4)	63(16.3)	18(4.7)	12(3.1)	19(4.9)	387(100.0)	9.597(6)
시설	59(25.5)	68(29.4)	52(22.5)	22(9.5)	9(3.9)	12(5.2)	9(3.9)	231(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미혼모시설의 이용경험

1) 시설 이용여부 및 이유

모자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 미혼모의 32.3%가 현재 생활하고 있다. 29.4%가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8.2%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험한 바가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30대 42.9%, 25세 이상 41.1%), 교육수준이 높으며(대졸 이상 44.9%), 아동이 크고(만 6세이상, 49.6%), 취업했으며(41.6%),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53.0%) 경우에 많았다. 즉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하여 현재 자립가능성이 높은 미혼모들은 시설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가미혼모의 과반수 이상(59.9%)이 모자관련 시설 입소를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고 응답하여, 재가 양육 미혼모들에게 시설입소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Ⅴ-12〉 시설 경험 여부

(단위: 명, %)

	현재 생활하고 있다	생활한 경험이 있다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	전체	x^2(df)
전체	235(32.3)	214(29.4)	278(38.2)	727(100.0)	
연령대					
10대	47(47.5)	28(28.3)	24(24.2)	99(100.0)	15.767(4)**
20대	119(31.8)	110(29.4)	145(38.8)	374(100.0)	
30대이상	69(27.2)	76(29.9)	109(42.9)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04(36.2)	86(30.0)	97(33.8)	287(100.0)	4.737(2)
25세 이상	131(29.8)	128(29.1)	181(41.1)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37.8)	23(25.6)	33(36.7)	90(100.0)	10.862(4)*
고졸 및 재학	127(37.4)	101(29.7)	112(32.9)	340(100.0)	
대졸 및 재학	53(25.9)	60(29.3)	92(44.9)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67(45.6)	84(23.0)	115(31.4)	366(100.0)	61.896(4)***
만3~5세	45(19.1)	90(38.1)	101(42.8)	236(100.0)	
만6세 이상	23(18.4)	40(32.0)	62(49.6)	125(100.0)	
취업여부					
취업	80(24.5)	111(33.9)	136(41.6)	327(100.0)	17.208(2)***
비취업	155(38.8)	103(25.8)	142(35.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10(33.5)	192(30.6)	225(35.9)	627(100.0)	10.709(2)**
비지원	25(25.0)	22(22.0)	53(53.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2(4.9)	158(35.2)	269(59.9)	449(100.0)	430.623(2)***
시설	213(76.6)	56(20.1)	9(3.2)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모자관련 시설 입소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9.2%가 출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35.0%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 진로교육(8.0%),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5.3%),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4.0%) 등의 순이었다. 즉 출산지원, 취업진로교육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갈 곳이 마땅하지 않거나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고(25세 이상, 39.4%) 취업상태인(41.4%) 자립할 여건이 갖추어진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들에게 시설 이외의 일반적 거주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들의 43.1%가 갈 곳이 없어서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시설거주 미혼모들의 탈시설 욕구가 부각되고 있었다.

〈표 Ⅴ-13〉 시설이용 이유

(단위: 명, %)

	출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갈 곳이 없어서	취업·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기타	전체	x^2(df)
전체	176(39.2)	157(35.0)	36(8.0)	24(5.3)	18(4.0)	8(1.8)	30(6.7)	449(100.0)	
연령대									
10대	35(46.7)	19(25.3)	6(8.0)	3(4.0)	5(6.7)	2(2.7)	5(6.7)	75(100.0)	9.788(12)
20대	92(40.2)	78(34.1)	18(7.9)	13(5.7)	10(4.4)	4(1.7)	14(6.1)	229(100.0)	
30대 이상	49(33.8)	60(41.4)	12(8.3)	8(5.5)	3(2.1)	2(1.4)	11(7.6)	145(100.0)	
연령대									
24세 이하	82(43.2)	55(28.9)	13(6.8)	11(5.8)	14(7.4)	3(1.6)	12(6.3)	190(100.0)	14.835(6)*
25세 이상	94(36.3)	102(39.4)	23(8.9)	13(5.0)	4(1.5)	5(1.9)	18(6.9)	259(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9(50.9)	16(28.1)	4(7.0)	3(5.3)	1(1.8)	2(3.5)	2(3.5)	57(100.0)	10.202(12)
고졸 및 재학	90(39.5)	82(36.0)	19(8.3)	10(4.4)	10(4.4)	3(1.3)	14(6.1)	228(100.0)	
대졸 및 재학	42(37.2)	33(29.2)	10(8.8)	8(7.1)	5(4.4)	3(2.7)	12(10.6)	113(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03(41.0)	74(29.5)	26(10.4)	13(5.2)	11(4.4)	4(1.6)	20(8.0)	251(100.0)	18.510(12)
만3~5세	46(34.1)	60(44.4)	7(5.2)	8(5.9)	7(5.2)	3(2.2)	4(3.0)	135(100.0)	
만6세 이상	27(42.9)	23(36.5)	3(4.8)	3(4.8)	0(0.0)	1(1.6)	6(9.5)	63(100.0)	
취업여부									
취업	70(36.6)	79(41.4)	13(6.8)	11(5.8)	5(2.6)	3(1.6)	10(5.2)	191(100.0)	7.881(6)
비취업	106(41.1)	78(30.2)	23(8.9)	13(5.0)	13(5.0)	5(1.9)	20(7.8)	258(100.0)	

	출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갈 곳이 없어서	취업·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기타	전체	x^2(df)
정부지원유무									
지원	151(37.6)	146(36.3)	36(9.0)	21(5.2)	16(4.0)	5(1.2)	27(6.7)	402(100.0)	15.197(6)*
비지원	25(53.2)	11(23.4)	0(0.0)	3(6.4)	2(4.3)	3(6.4)	3(6.4)	47(100.0)	
거주특성									
재가	97(53.9)	41(22.8)	7(3.9)	6(3.3)	12(6.7)	6(3.3)	11(6.1)	180(100.0)	47.470(6)***
시설	79(29.4)	116(43.1)	29(10.8)	18(6.7)	6(2.2)	2(0.7)	19(7.1)	269(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이용평가

시설에 대한 평가 응답을 살펴보면, 공간 규모나 단체생활 규칙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프라이버시 존중의 측면이나 양육 및 입양 미혼모, 다양한 연령층 등 다양한 미혼모의 동거가 도움이 되는지와 과련하여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공간규모와 비교적 부정적 평가를 받은 다양한 연령층 거주 항목은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Ⅴ-14〉 미혼모시설 평가

(단위: 명, %)

구분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		단체생활 규칙이 합리적		프라이버시 존중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전체	3.16(0.8)		2.97(0.8)		2.65(1.0)	
연령대						
10대	3.36(0.7)	4.155*	2.95(0.8)	0.311	2.81(0.9)	2.007
20대	3.17(0.8)		3.00(0.8)		2.56(1.0)	
30대 이상	3.03(0.8)		2.94(0.8)		2.69(1.0)	
연령대						
24세 이하	3.25(0.8)	4.297*	2.98(0.8)	0.091	2.69(1.0)	0.758
25세 이상	3.09(0.8)		2.96(0.8)		2.61(1.0)	
교육수준						
중졸이하	3.11(0.8)	2.107	3.00(0.9)	0.671	2.77(1.1)	1.091
고졸 및 재학	3.20(0.8)		3.00(0.8)		2.69(1.0)	
대졸 및 재학	3.02(0.8)		2.97(0.7)		2.52(0.9)	

구분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		단체생활 규칙이 합리적		프라이버시 존중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30(0.7)	10.656***	3.03(0.8)	1.665	2.73(1.0)	2.405
만3~5세	3.01(0.9)		2.89(0.8)		2.55(1.0)	
만6세 이상	2.87(0.8)		2.89(0.8)		2.49(1.0)	
취업여부						
취업	3.06(0.8)	4.487*	2.97(0.8)	0.003	2.63(1.0)	0.039
비취업	3.22(0.8)		2.97(0.8)		2.65(1.0)	
정부지원여부						
지원	3.16(0.8)	0.067	2.97(0.8)	0.068	2.65(1.0)	0.072
비지원	3.13(0.7)		3.00(0.6)		2.61(0.9)	
거주특성						
재가	2.85(0.9)	48.420***	2.67(0.8)	46.776***	2.30(0.9)	39.378***
시설	3.36(0.7)		3.17(0.7)		2.87(0.9)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25세 이상(특히 30대 이상)이고 만 3세 이상 아동이 있으며 취업상태인 재가 미혼모들은 공간충분성과 다양한 연령층 거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재가미혼모들은 시설미혼모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공간의 충분성, 단체생활규칙의 합리성, 프라이버시 존중,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 다양한 연령층 거주에 대해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분명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Ⅴ-14-1〉 미혼모시설 평가(계속)

(단위: 명, %)

구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가 경험		양육 및 입양미혼모 동거가 좋음		다양한 연령층 거주가 도움이 됨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전체	2.70(0.9)		1.97(1.0)		2.68(0.9)	
연령대						
10대	2.80(1.0)	1.936	1.95(0.8)	0.027	2.92(0.8)	4.698**
20대	2.75(0.9)		1.97(1.0)		2.70(1.0)	
30대 이상	2.58(1.0)		1.98(1.0)		2.51(1.0)	

구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가 경험		양육 및 입양미혼모 동거가 좋음		다양한 연령층 거주가 도움이 됨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연령대						
24세 이하	2.76(1.0)	1.060	1.96(0.9)	0.038	2.85(0.9)	10.727**
25세 이상	2.66(0.9)		1.98(1.0)		2.55(1.0)	
교육수준						
중졸이하	2.86(1.1)	1.144	1.91(1.0)	0.705	2.79(1.0)	0.344
고졸 및 재학	2.67(0.9)		1.92(0.9)		2.67(1.0)	
대졸 및 재학	2.76(0.9)		2.05(1.0)		2.68(0.9)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73(1.0)	0.337	1.93(0.9)	2.619	2.80(0.9)	4.750**
만3~5세	2.68(0.9)		1.92(1.0)		2.56(0.9)	
만6세 이상	2.63(0.8)		2.23(1.1)		2.45(1.0)	
취업여부						
취업	2.78(0.9)	2.081	1.97(1.0)	0.000	2.64(0.9)	0.430
비취업	2.65(0.9)		1.97(1.0)		2.70(1.0)	
정부지원여부						
지원	2.70(0.9)	0.081	1.95(1.0)	1.435	2.67(0.9)	0.395
비지원	2.74(1.0)		2.13(0.9)		2.76(0.9)	
거주특성						
재가	2.87(0.8)	9.700**	1.97(1.0)	0.003	2.41(1.0)	23.816***
시설	2.59(1.0)		1.97(1.0)		2.85(0.8)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미혼모시설을 권유하겠다는 의향에 대해서는 대다수(8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부정적인 응답도 16.4%가 있었다. 부정적 응답은 연령이 어린 미혼모(10대 20.5%, 24세 이하 18.1%), 아동이 유아기 이상일 때(만 3~5세 18.2%, 만 6세 이상 21.0%),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때(19.6%) 높았고 재가미혼모의 경우 1/4에 가까운 24.7%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시설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5〉 시설추천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x^2(df)
전체	371(83.6)	73(16.4)	444(100.0)	
연령대				
10대	58(79.5)	15(20.5)	73(100.0)	1.083(2)
20대	192(84.2)	36(15.8)	228(100.0)	
30대 이상	121(84.6)	22(15.4)	143(100.0)	
연령대				
24세 이하	154(81.9)	34(18.1)	188(100.0)	0.641(1)
25세 이상	217(84.8)	22(15.2)	256(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82.5)	10(17.5)	57(100.0)	1.479(2)
고졸 및 재학	192(85.3)	33(14.7)	225(100.0)	
대졸 및 재학	89(80.2)	22(19.8)	111(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14(85.6)	36(14.4)	250(100.0)	1.974(2)
만3~5세	108(81.8)	24(18.2)	132(100.0)	
만6세 이상	49(79.0)	13(21.0)	62(100.0)	
취업여부				
취업	158(84.0)	30(16.0)	188(100.0)	0.056(1)
비취업	213(83.2)	43(16.8)	256(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334(83.9)	64(16.1)	398(100.0)	0.364(1)
비지원	37(80.4)	9(19.6)	46(100.0)	
거주특성				
재가	134(75.3)	44(24.7)	178(100.0)	14.819(1)***
시설	237(89.1)	29(10.9)	266(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양육미혼모의 지원정책 욕구

1) 서비스종류별 인지도 및 수급경험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종류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의 인지도는 93.5%에 달했고, 그 외 아동양육비, 보육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인지도가 80%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 학습지원, 자산형성

계좌 지원, 자녀양육비지급이행 소송지원 등의 순서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비, 아동양육비, 보육료,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경험이 있는 미혼모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자산형성계좌지원, 학습지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와 수혜율을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양육비, 보육료지원, 의료비지원은 미혼모정책에서 가장 인지도도 높고 수혜율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응답한 미혼모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인지도는 가장 낮은 반면 수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 등 주거지제공과 친자확인・양육비지급이행소송지원은 수혜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그에 비해 정책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Ⅴ-16〉 정책별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기초 생활 수급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의료비 지원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학습 지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	친자확인· 양육비 지급이행 소송지원	자산형성 계좌 지원	응답자 수
인지도	680 (93.5)	603 (82.9)	636 (87.5)	599 (82.4)	327 (45.0)	405 (55.7)	522 (71.8)	383 (52.7)	392 (53.9)	727 (100.0)
수혜율	453 (62.3)	370 (50.9)	479 (65.9)	473 (65.1)	195 (26.8)	107 (14.7)	103 (14.2)	19 (2.6)	111 (15.3)	727 (100.0)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의 경우 인지율은 93.5%, 수혜율은 62.3%였다. 알고있다는 응답은 20대 이상(20대 92,8%, 30대 96.1%), 대졸 이상(94.6%), 정부지원(94.1%), 시설거주(95.0%)의 경우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수혜율도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대체로 높아 25세이상(64.1%), 자녀가 만 3세이상(만 3~5세 70.7%, 만 6세 이상 71.2%),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69.1%),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65.5%) 높았다. 즉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율은 자녀가 큰 경우에 높았다.

〈표 Ⅴ-17〉 기초생활수급비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680(93.5)	47(6.5)		453(62.3)	274(37.7)		727(100.0)
연령대							
10대	89(89.9)	10(10.1)	5.201(2)	53(53.5)	46(46.5)	5.224(2)	99(100.0)
20대	347(92.8)	27(7.2)		231(61.8)	143(38.2)		374(100.0)
30대 이상	244(96.1)	10(3.9)		169(66.5)	85(33.5)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265(92.3)	22(7.7)	1.130(1)	171(59.6)	116(40.4)	1.504(1)	287(100.0)
25세 이상	415(94.3)	25(5.7)		282(64.1)	158(35.9)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84(93.3)	6(6.7)	0.236(2)	53(58.9)	37(41.1)	5.908(2)	90(100.0)
고졸 및 재학	319(93.8)	21(6.2)		225(66.2)	115(33.8)		340(100.0)
대졸 및 재학	194(94.6)	11(5.4)		115(56.1)	90(43.99)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41(93.2)	25(6.8)	0.193(2)	197(53.8)	169(46.2)	22.607(2)***	366(100.0)
만3~5세	222(94.1)	14(5.9)		167(70.8)	69(29.2)		236(100.0)
만6세 이상	117(93.6)	8(6.4)		89(71.2)	36(28.8)		125(100.0)
취업여부							
취업	307(93.9)	20(6.1)	0.120(1)	203(62.1)	124(38.0)	0.014(1)	327(100.0)
비취업	373(93.3)	27(6.8)		250(62.5)	150(37.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590(94.1)	37(5.9)	2.396(1)	433(69.1)	194(31.0)	83.387(1)***	627(100.0)
비지원	90(90.0)	10(10.0)		20(20.0)	80(80.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416(92.7)	33(7.3)	1.520(1)	271(60.4)	178(39.6)	1.910(1)	449(100.0)
시설	264(95.0)	14(5.0)		182(65.5)	96(34.5)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인지도가 82.9%였고 수혜여부는 50.9%였다. 집단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수혜율의 경우에는 특히 취업하지 않은 미혼모들의 수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특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동양육비지원은 재가미혼모가 시설미혼모보다 수급율이 높은 유일한 항목이었다.

〈표 Ⅴ-18〉 아동양육비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603(82.9)	124(17.1)		370(50.9)	357(49.1)		727(100.0)
연령대							
10대	83(83.8)	16(16.2)	1.573(2)	50(50.5)	49(49.5)	2.883(2)	99(100.0)
20대	304(81.3)	70(18.7)		201(53.7)	173(46.3)		374(100.0)
30대 이상	216(85.0)	38(15.0)		119(46.9)	135(53.1)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239(83.3)	48(16.7)	0.037(1)	156(54.4)	131(45.6)	2.273(1)	287(100.0)
25세 이상	364(82.7)	76(17.3)		214(48.6)	226(51.3)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78.9)	19(21.1)	2.727(2)	49(54.4)	41(45.5)	0.724(2)	90(100.0)
고졸 및 재학	281(82.6)	59(17.4)		176(51.8)	164(48.2)		340(100.0)
대졸 및 재학	177(86.3)	28(13.7)		101(49.3)	104(50.7)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06(83.6)	60(16.4)	0.522(2)	184(50.3)	182(49.7)	1.647(2)	366(100.0)
만3~5세	196(83.1)	40(16.9)		116(49.2)	120(51)		236(100.0)
만6세 이상	101(80.8)	24(19.2)		70(56.0)	55(44.0)		125(100.0)
취업여부							
취업	277(84.7)	50(15.3)	1.310(1)	189(57.8)	138(42.2)	11.335(1)**	327(100.0)
비취업	326(81.5)	74(18.5)		181(45.3)	219(54.8)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529(84.4)	98(15.6)	6.556(1)	342(54.5)	285(45.4)	24.317(1)***	627(100.0)
비지원	74(74.0)	26(26.0)		28(28.0)	72(72)		100(100.0)
거주특성							
재가	367(81.7)	82(18.3)	1.208(1)	232(51.7)	217(48.4)	0.283(1)	449(100.0)
시설	236(84.9)	42(15.1)		138(49.6)	140(50.4)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보육료지원의 경우 미혼모 전체의 제도 인지도는 87.5%였고, 수혜율은 65.9%로 비교적 높았다. 보육료지원은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인지도는 30대(92.9%) 또는 25세 이상(90.0%), 고졸 이상(고졸 88.9%, 대졸 89.8%), 만 3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만 3~5세 92.4%, 만 6세 이상 91.2%), 취업한 미혼모(92.0%),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89.3%)의 경우 높았다. 수혜율도 동일한 집단인 25세 이상(70.9%), 고졸 이상(68.8%), 만 3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미혼모(만 3~5세 81.8%, 만 6세 이상 84.8%), 취업한 미혼모(84.4%),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69.1%), 시설미혼모(69.8%)에서 높았다.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고 자녀가 비교적 크며 취업여성인 경우, 즉 노동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되는 미혼모의 경우 제도 인지도와 수혜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9〉 보육료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636(87.5)	91(12.5)		479(65.9)	248(34.2)		727(100.0)
연령대							
10대	76(76.8)	23(23.2)	17.469(2)***	46(46.5)	53(53.5)	21.549(2)***	99(100.0)
20대	324(86.6)	50(13.4)		249(66.6)	125(33.4)		374(100.0)
30대 이상	236(92.9)	18(7.1)		184(72.4)	70(27.6)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240(83.6)	47(16.4)	6.449(1)*	167(58.2)	120(41.8)	12.506(1)***	287(100.0)
25세 이상	396(90.0)	44(10.0)		312(70.9)	128(29.1)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2(80.0)	18(20.0)	6.206(2)*	48(53.3)	42(46.6)	8.317(2)	90(100.0)
고졸 및 재학	302(88.8)	38(11.2)		234(68.8)	106(31.2)		340(100.0)
대졸 및 재학	184(89.8)	21(10.2)		141(68.8)	64(31.2)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04(83.1)	62(16.9)	13.269(2)***	180(49.2)	186(50.8)	91.865(2)***	366(100.0)
만3~5세	218(92.4)	18(7.6)		193(81.8)	43(18.2)		236(100.0)
만6세 이상	114(91.2)	11(8.8)		106(84.8)	19(15.2)		125(100.0)
취업여부							
취업	301(92.0)	26(8.0)	11.316(2)**	276(84.4)	51(15.6)	90.661(1)***	327(100.0)
비취업	335(83.8)	65(16.3)		203(50.8)	197(49.3)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560(89.3)	67(10.7)	13.962(1)***	433(69.1)	194(30.9)	20.403(1)***	627(100.0)
비지원	76(76.0)	24(24.0)		46(46.0)	54(54)		100(100.0)
거주특성							
재가	391(87.1)	58(12.9)	0.172(1)	285(63.5)	164(36.5)	3.041(1)	449(100.0)
시설	245(88.1)	33(11.9)		194(69.8)	84(30.2)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의료비지원의 경우 전체적인 인지율은 82.4%, 수혜율은 65.1%로 인지율과 수혜율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에도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인지율이 높은 집단은 만 3세 이상 아동이 있을 때(만 3~5세 86.0%, 만 6

세이상 86.4%), 취업한 미혼모(83.8%), 정부지원을 받은 미혼모(85.5%), 시설미혼모(87.1%)의 경우에 높았다. 수혜율도 유사한 집단에서 높았는데, 25세 이상(68.0%), 만 3세 이상 아동이 있을 때(만 3~5세 74.2%, 만 6세 이상 73.6%), 취업중인 미혼모(72.5%),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71.3%), 시설미혼모(70.9%)의 경우 높았다. 의료비지원제도를 인지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은 연령대가 높고 자녀도 유아 이상이며 취업상태로서 자립환경이 비교적 갖추어진 미혼모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Ⅴ-20〉 의료비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599(82.4)	128(17.6)		473(65.1)	254(34.9)		727(100.0)
연령대							
10대	76(76.8)	23(23.2)	4.407(2)	51(51.5)	48(48.5)	9.795(2)**	99(100.0)
20대	305(81.6)	69(18.4)		247(66.0)	127(34.0)		374(100.0)
30대 이상	218(85.8)	36(14.2)		175(68.9)	79(31.1)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230(80.1)	57(19.9)	1.661(1)	174(60.6)	113(39.4)	4.103(1)*	287(100.0)
25세 이상	369(83.9)	71(16.1)		299(68.0)	141(32.0)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78.9)	19(21.1)	2.293(2)	56(62.2)	34(37.8)	1.713(2)	90(100.0)
고졸 및 재학	288(84.7)	52(15.3)		230(67.6)	110(32.4)		340(100.0)
대졸 및 재학	166(81.0)	39(19.0)		129(62.9)	76(37.1)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88(78.7)	78(21.3)	6..982(2)*	206(56.3)	160(43.7)	24.994(2)***	366(100.0)
만3~5세	203(86.0)	33(14.0)		175(74.2)	61(25.8)		236(100.0)
만6세 이상	108(86.4)	17(13.6)		92(73.6)	33(26.4)		125(100.0)
취업여부							
취업	274(83.8)	53(16.2)	0.801(1)	237(72.5)	90(27.5)	14.376(1)***	327(100.0)
비취업	325(81.3)	75(18.8)		236(59.0)	164(41.0)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536(85.5)	91(14.5)	30.061(1)***	447(71.3)	180(28.7)	77.830(1)***	627(100.0)
비지원	63(63.0)	37(37.0)		26(26.0)	74(74.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357(79.5)	92(20.5)	6.729(1)**	276(61.5)	173(38.5)	6.665(1)*	449(100.0)
시설	242(87.1)	36(12.9)		197(70.9)	81(29.2)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경우, 수혜율은 26.8%로 다른 제도에 비해 특별히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인지도는 45.0%로 가장 낮게 나타고 있었다. 부모교육의 경우 인지도와 수혜도에서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차이가 발견된 항목은 정부지원유무와 거주특성으로서, 정부지원을 받는 미혼모들의 인지율과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미혼모들의 수혜율(41.4%)이 재가미혼모의 수혜율(17.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원서비스의 경우 재가미혼모들까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Ⅴ-21〉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327(45.0)	400(55.0)		195(26.8)	532(73.2)		727(100.0)
연령대							
10대	45(45.5)	54(54.5)	7.678(2)*	25(25.3)	74(74.7)	1.910(2)	99(100.0)
20대	151(40.4)	223(59.6)		94(25.1)	280(74.9)		374(100.0)
30대 이상	131(51.6)	123(48.4)		76(29.9)	178(70.1)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22(42.5)	165(57.5)	1.170(1)	70(24.4)	217(75.6)	1.429(1)	287(100.0)
25세 이상	205(46.6)	235(53.4)		125(28.4)	315(71.6)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3(47.8)	47(52.2)	2.415(2)	25(27.8)	65(72.2)	0.807(2)	90(100.0)
고졸 및 재학	144(42.4)	196(57.6)		85(25.0)	255(75.0)		340(100.0)
대졸 및 재학	100(48.8)	105(51.2)		58(28.3)	147(71.7)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172(47.0)	194(53.0)	1.562(2)	101(27.6)	265(72.4)	2.144(2)	366(100.0)
만3~5세	104(44.1)	132(55.9)		67(28.4)	169(71.6)		236(100.0)
만6세 이상	51(40.8)	74(59.2)		27(21.6)	98(78.4)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52(46.5)	175(53.5)	0.543(1)	92(28.1)	235(71.9)	0.521(1)	327(100.0)
비취업	175(43.8)	225(56.3)		103(25.8)	297(74.3)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291(46.4)	336(53.6)	58.736(1)***	179(28.5)	448(71.5)	6.919(1)**	627(100.0)
비지원	36(36.0)	64(64.0)		16(16.0)	84(84.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52(33.9)	297(66.1)	1.429(1)	80(17.8)	369(82.2)	48.511(1)***	449(100.0)
시설	175(62.9)	103(37.1)		115(41.4)	163(58.6)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학습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5.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혜율은 14.7% 수준이었다. 학습지원제도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와 교육수준이 낮은 미혼모들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만큼 정책의 인지율과 수혜율이 높았다. 24세 이하 미혼모들의 제도 인지율은 67.2%, 수혜율은 19.9%였으며 중졸 이하 미혼모들의 인지도는 68.9%, 수혜도는 28.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아동이 어리고 비취업상태이며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표 Ⅴ-22〉 학습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405(55.7)	322(44.3)		107(14.7)	620(85.3)		727(100.0)
연령대							
10대	74(74.7)	25(25.3)	17.762(2)***	33(33.3)	66(66.7)	32.994(2)***	99(100.0)
20대	203(54.3)	171(45.7)		39(10.4)	335(89.6)		374(100.0)
30대 이상	128(50.4)	126(49.6)		35(13.8)	219(86.2)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93(67.2)	94(32.8)	25.589(1)***	57(19.9)	230(80.1)	9.991(1)**	287(100.0)
25세 이상	212(48.2)	228(51.8)		50(11.4)	390(88.6)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62(68.9)	28(31.1)	11.157(2)**	26(28.9)	64(71.1)	17.498(2)***	90(100.0)
고졸 및 재학	194(57.1)	146(42.9)		48(14.1)	292(85.9)		340(100.0)
대졸 및 재학	99(48.3)	106(51.7)		21(10.2)	184(89.8)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47(67.5)	119(32.5)	43.055(2)***	56(15.3)	310(84.7)	0.733(2)	366(100.0)
만3~5세	109(46.2)	127(53.8)		31(13.1)	205(86.9)		236(100.0)
만6세 이상	49(39.2)	76(60.8)		20(16.0)	105(84.0)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59(48.6)	168(51.4)	12.089(1)**	49(15.0)	278(85.0)	0.034(1)	327(100.0)
비취업	246(61.5)	154(38.5)		58(14.5)	342(85.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368(58.7)	259(41.3)	16.447(1)***	104(16.6)	523(83.4)	12.684(1)***	627(100.0)
비지원	37(37.0)	63(63.0)		3(3.0)	97(97.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00(44.5)	249(55.5)	59.321(1)***	46(10.2)	403(89.8)	18.717(1)***	449(100.0)
시설	205(73.7)	73(26.3)		61(21.9)	217(78.1)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임대주택 등 주거지제공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1.8%로 매우 높은 반면 실제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14.2%에 불과하였다. 주거제공정책의 인지율이나 수혜율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분명하게 발견되었는데,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녀가 비교적 큰 집단의 제도 인지도가 높아 자립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집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혜율의 경우에도 연령이 높고 자녀가 크며 취업상태인 미혼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3〉 임대주택 등 주거지제공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522(71.8)	205(28.2)		103(14.2)	624(85.8)		727(100.0)
연령대							
10대	51(51.5)	48(48.5)	32.140(2)***	6(6.1)	93(93.9)	11.381(2)**	99(100.0)
20대	265(70.9)	109(29.1)		48(12.8)	326(87.2)		374(100.0)
30대 이상	206(81.1)	48(18.9)		49(19.3)	205(80.7)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80(62.7)	107(37.3)	19.328(1)***	26(9.1)	261(90.9)	10.177(1)**	287(100.0)
25세 이상	342(77.7)	98(22.3)		77(17.5)	363(82.5)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3(58.9)	37(41.1)	15.599(2)***	10(11.1)	80(88.9)	3.052(2)	90(100.0)
고졸 및 재학	238(70.0)	102(30.0)		44(12.9)	296(87.1)		340(100.0)
대졸 및 재학	165(80.5)	40(19.5)		36(17.6)	169(82.4)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40(65.6)	126(34.4)	14.801(2)**	41(11.2)	325(88.8)	14.474(2)**	366(100.0)
만3~5세	181(76.7)	55(23.3)		31(13.1)	205(86.9)		236(100.0)
만6세 이상	101(80.8)	24(19.2)		31(24.8)	94(75.2)		125(100.0)
취업여부							
취업	243(74.3)	84(25.7)	1.849(1)	57(17.4)	270(82.6)	5.205(1)*	327(100.0)
비취업	279(69.8)	121(30.3)		46(11.5)	354(88.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461(73.5)	166(26.5)	6.682(1)	93(14.8)	534(85.2)	1.656(1)	627(100.0)
비지원	61(61.0)	39(39.0)		10(10.0)	90(90.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315(70.2)	134(29.8)	1.571(1)	51(11.4)	398(88.6)	7.620(1)**	449(100.0)
시설	207(74.5)	71(25.5)		52(18.7)	226(81.3)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친자확인·양육비지급이행소송지원제도의 경우 인지도는 52.7%로 절반을 상회하는 반면 실제 제도수혜율은 2.6%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정책인지도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이 있고(59.8%), 시설에 거주하는(68.3%) 미혼모들의 제도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혜율의 경우는 집단에 관계없이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Ⅴ-24〉 친자확인·양육비지급이행소송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383(52.7)	344(47.3)		19(2.6)	708(97.4)		727(100.0)
연령대							
10대	61(61.6)	38(38.4)	6.742(2)*	2(2.0)	97(98.0)	2.307(2)	99(100.0)
20대	181(48.4)	193(51.6)		13(3.5)	361(96.5)		374(100.0)
30대 이상	141(55.5)	113(44.5)		4(1.6)	250(98.4)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163(56.8)	124(43.2)	3.217(1)	8(2.8)	279(97.2)	0.056(1)	287(100.0)
25세 이상	220(50.0)	220(50.0)		11(2.5)	429(97.5)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5(50.0)	45(50.0)	0.485(2)	2(2.2)	88(97.8)	0.122(2)	90(100.0)
고졸 및 재학	184(54.1)	156(45.9)		9(2.6)	331(97.4)		340(100.0)
대졸 및 재학	109(53.2)	96(46.8)		6(2.9)	199(97.1)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19(59.8)	147(40.2)	19.834(2)***	6(1.6)	360(98.4)	5.750(2)	366(100.0)
만3~5세	117(49.6)	119(50.4)		6(2.5)	230(97.5)		236(100.0)
만6세 이상	47(37.6)	78(62.4)		7(5.6)	118(94.4)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65(50.5)	162(49.5)	1.179(1)	13(4.0)	314(96.0)	4.332(1)*	327(100.0)
비취업	218(54.5)	182(45.5)		6(1.5)	394(98.5)		400(100.0)
정부지원유무							
지원	344(54.9)	283(45.1)	8.708(1)**	17(2.7)	610(97.3)	0.171(1)	627(100.0)
비지원	39(39.0)	61(61.0)		2(2.0)	98(98.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193(43.0)	256(57.0)	44.299(1)***	6(1.3)	443(98.7)	7.525(1)**	449(100.0)
시설	190(68.3)	88(31.7)		13(4.7)	265(95.3)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자산형성계좌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못미치는 46.1%의 응답자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15.3%가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산형성계좌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만큼 그 대상이 되는 24세 이하 미혼모들의 인지율(71.8%)이 25세 이상의 미혼모들(42.3%)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한 24세 이하 청소년미혼모의 1/3에 해당하는 31.7%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미혼모들이 관심을 두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또한 자산형성계좌지원제도가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어리며 비취업 상태의 자립환경이 되지 않는 미혼모들에게서 인지도와 수혜율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미혼모의 65.3%가 제도를 알고 있고 19.4%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취업미혼모의 인지율은 60.8%, 수혜율은 17.5%였다.

〈표 Ⅴ-25〉 자산형성계좌지원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전체	392(53.9)	335(46.1)		111(15.3)	616(84.7)		727(100.0)
연령대							
10대	73(73.7)	26(26.3)	27.742(2)***	30(30.3)	69(69.7)	53.937(2)***	99(100.0)
20대	209(55.9)	165(44.1)		74(19.8)	300(80.2)		374(100.0)
30대 이상	110(43.3)	144(56.7)		7(2.8)	247(97.2)		254(100.0)
연령대							
24세 이하	206(71.8)	81(28.2)	60.857(1)***	91(31.7)	196(68.3)	99.057(1)***	287(100.0)
25세 이상	186(42.3)	254(57.7)		20(4.5)	420(95.5)		44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6(62.2)	34(37.8)	4.759(2)	18(20.0)	72(80.0)	14.892(2)**	90(100.0)
고졸 및 재학	186(54.7)	154(45.3)		64(18.8)	276(81.2)		340(100.0)
대졸 및 재학	100(48.8)	105(51.2)		15(7.3)	190(92.7)		205(100.0)
자녀연령							
만2세 이하	239(65.3)	127(34.7)	48.043(2)***	71(19.4)	295(80.6)	11.124(2)**	366(100.0)
만3~5세	114(48.3)	122(51.7)		30(12.7)	206(87.3)		236(100.0)
만6세 이상	39(31.2)	86(68.8)		10(8.0)	115(92.0)		125(100.0)
취업여부							
취업	149(45.6)	178(54.4)	16.695(1)***	41(12.5)	286(87.5)	3.424(1)	327(100.0)
비취업	243(60.8)	157(39.3)		70(17.5)	330(82.5)		400(100.0)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예	아니오	x^2(df)	예	아니오	x^2(df)	
정부지원유무							
지원	358(57.1)	269(42.9)	18.518(1)***	110(17.5)	517(82.5)	18.246(1)***	627(100.0)
비지원	34(34.0)	66(66.0)		1(1.0)	99(99.0)		100(100.0)
거주특성							
재가	206(45.9)	243(54.1)	30.552(1)***	64(14.3)	385(85.7)	0.934(1)	449(100.0)
시설	186(66.9)	92(33.1)		47(16.9)	231(83.1)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6.1%가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을 꼽았는데, 이는 이 항목의 수혜율이 14.2%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거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지원욕구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과 자산형성 계좌지원이 지목되었는데, 자산형성계좌지원의 경우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는 인지도나 수혜율이 높지 않은 제도여서 지원욕구가 부각되고 있다. 미혼모 특징별로는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녀도 비교적 크고 취업한 미혼모들, 즉 자립할 여건이 갖추어진 미혼모들이 주거지 제공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주었으며 기초생활수급비나 자산형성계좌지원의 경우에는 연령이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만 2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비취업 여성들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자립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생활비 및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6〉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	자산형성계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친자확인·양육비 지급이행 소송 지원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학습 지원	전체	x^2(df)
전체	315(46.1)	162(23.7)	93(13.6)	30(4.4)	27(4.0)	21(3.1)	15(2.2)	10(1.5)	10(1.5)	683(100.0)	
연령대											
10대	22(24.4)	29(32.2)	22(24.4)	5(5.6)	4(4.4)	6(6.7)	0(0.0)	1(1.1)	1(1.1)	99(100.0)	44.803 (16)***
20대	168(46.9)	92(25.7)	39(10.9)	10(2.8)	17(4.7)	9(2.5)	12(3.4)	5(1.4)	6(1.7)	374(100.0)	
30대 이상	125(53.2)	41(17.4)	32(13.6)	15(6.4)	6(2.6)	6(2.6)	3(1.3)	4(1.7)	3(1.3)	254(100.0)	

구분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	자산형 성계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친자확인·양육비 지급이행 소송지원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학습지원	전체	x^2(df)
연령대											
24세 이하	100(36.6)	81(29.7)	42(15.4)	11(4.0)	11(4.0)	12(4.4)	9(3.3)	4(1.5)	3(1.1)	273(100.0)	22.362
25세 이상	215(52.4)	81(19.8)	51(12.4)	19(4.6)	16(3.9)	9(2.2)	6(1.5)	6(1.5)	7(1.7)	410(100.0)	(8)**
교육수준											
중졸이하	28(33.7)	29(34.9)	15(18.1)	3(3.6)	1(1.2)	4(4.8)	1(1.2)	1(1.2)	1(1.2)	83(100.0)	18.286
고졸 및 재학	154(48.0)	76(23.7)	39(12.1)	14(4.4)	15(4.7)	10(3.1)	8(2.5)	3(0.9)	2(0.6)	321(100.0)	(16)
대졸 및 재학	92(48.2)	37(19.4)	28(14.7)	11(5.8)	8(4.2)	4(2.1)	4(2.1)	5(2.6)	2(1.0)	191(100.0)	
자녀연령											
만2세이하	136(39.2)	94(27.1)	54(15.6)	17(4.9)	18(5.2)	14(4.0)	8(2.3)	6(1.7)	-	347(100.0)	38.643
만3~5세	127(57.2)	44(19.8)	23(10.4)	6(2.7)	6(2.7)	3(1.4)	6(2.7)	2(0.9)	5(2.3)	222(100.0)	(16)**
만6세 이상	52(45.6)	24(21.1)	16(14.0)	7(6.1)	3(2.6)	4(3.5)	1(0.9)	2(1.8)	5(4.4)	114(100.0)	
취업여부											
취업	160(52.1)	55(17.9)	44(14.3)	14(4.6)	12(3.9)	6(2.0)	8(2.6)	2(0.7)	6(2.0)	307(100.0)	18.650
비취업	155(41.2)	107(28.5)	49(13.0)	16(4.3)	15(4.0)	15(4.0)	7(1.9)	8(2.1)	4(1.1)	376(100.0)	(8)*
정부지원여부											
지원	285(48.5)	133(22.6)	77(13.1)	20(3.4)	26(4.4)	18(3.1)	14(2.4)	7(1.2)	8(1.4)	588(100.0)	22.991
비지원	30(31.6)	29(30.5)	16(16.8)	10(10.5)	1(1.1)	3(3.2)	1(1.1)	3(3.2)	2(2.1)	95(100.0)	(8)**
거주특성											
재가	189(44.8)	97(23.0)	61(14.5)	21(5.0)	15(3.6)	13(3.1)	10(2.4)	8(1.9)	8(1.9)	422(100.0)	5.509
시설	126(48.3)	65(24.9)	32(12.3)	9(3.4)	12(4.6)	8(3.1)	5(1.9)	2(0.8)	2(0.8)	261(100.0)	(8)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서비스종류별 지원욕구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는 자녀양육비 지원과 생계비지원이 지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과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다음으로는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청소년미혼한부모진학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이 지목되었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서비스는 미혼한부모지원시설, 보호시설 및 공동주거시설 확충과 상담서비스였다.

생계비 또는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항목만 살펴보면, 자녀양육비지원에 대한 필요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미혼부양육비지급강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다.

자녀돌봄및 보육지원 항목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미혼모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자녀연령도 높은 집단, 즉 자립환경이 갖추어진 미혼모들에게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미혼부양육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연령이 높고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시설 및 아파트입주권 등 주거지원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미혼한부모지원시설 입소기회제공, 임대아파트입주권, 보호시설 및 공동주거시설 확충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항목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특히 자녀가 만 3세 이상 또는 만 6세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혼한부모지원시설 입소기회제공이라는 응답은 30대 이상 또는 25세 이상이면서 자녀가 어린 미혼모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시설 및 공동주거시설 확충 항목에서도 아동이 어리고 시설에 거주할수록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 Ⅴ-27〉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생계비지원		자녀양육비지원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미혼부양육비 지급강화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95(0.2)		3.98(0.2)		3.93(0.3)		3.80(0.5)	
연령대								
10대	3.97(0.2)	0.351	3.98(0.1)	0.135	3.87(0.3)	6.333**	3.72(0.6)	3.391*
20대	3.95(0.2)		3.98(0.1)		3.91(0.3)		3.77(0.6)	
30대 이상	3.96(0.2)		3.97(0.2)		3.97(0.2)		3.86(0.4)	
연령대								
24세 이하	3.96(0.2)	0.492	3.98(0.1)	0.113	3.90(0.3)	3.811	3.75(0.6)	3.416
25세 이상	3.95(0.2)		3.98(0.2)		3.94(0.3)		3.83(0.5)	
교육수준								
중졸이하	3.99(0.1)	2.460	3.99(0.1)	0.977	3.84(0.4)	3.242*	3.69(0.7)	2.040
고졸 및 재학	3.96(0.2)		3.98(0.1)		3.93(0.3)		3.81(0.5)	
대졸 및 재학	3.92(0.3)		3.96(0.2)		3.95(0.2)		3.84(0.4)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96(0.2)	0.173	3.98(0.1)	0.711	3.90(0.3)	4.082*	3.76(0.6)	2.331
만3~5세	3.96(0.2)		3.97(0.2)		3.95(0.3)		3.85(0.5)	
만6세 이상	3.94(0.3)		3.97(0.2)		3.97(0.2)		3.82(0.5)	

구분	생계비지원		자녀양육비지원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미혼부양육비 지급강화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취업여부								
취업	3.95(0.2)	0.518	3.97(0.2)	2.444	3.94(0.2)	1.715	3.82(0.5)	0.746
비취업	3.96(0.2)		3.99(0.1)		3.92(0.3)		3.78(0.6)	
정부지원여부								
지원	3.96(0.2)	9.990**	3.98(0.2)	0.198	3.94(0.2)	5.005*	3.79(0.5)	1.162
비지원	3.89(0.3)		3.97(0.2)		3.87(0.4)		3.85(0.4)	
거주특성								
재가	3.94(0.2)	3.797	3.97(0.2)	0.512	3.93(0.3)	0.573	3.84(0.5)	9.231**
시설	3.97(0.2)		3.98(0.2)		3.92(0.3)		3.72(0.6)	

주1)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매우 필요하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표 Ⅴ-27-1〉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계속)

(단위: 명, %)

구분	미혼한부모지원시설 입소기회제공		임대아파트입주권		보호시설 및 공동주거시설 확충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전체	3.61(0.6)		3.93(0.3)		3.68(0.6)	
연령대						
10대	3.54(0.7)	4.624*	3.90(0.3)	0.632	3.68(0.6)	1.116
20대	3.56(0.7)		3.93(0.3)		3.65(0.6)	
30대 이상	3.71(0.6)		3.93(0.3)		3.72(0.6)	
연령대						
24세 이하	3.55(0.7)	4.730*	3.93(0.3)	0.017	3.66(0.6)	0.415
25세 이상	3.65(0.6)		3.92(0.3)		3.69(0.6)	
교육수준						
중졸이하	3.52(0.7)	0.640	3.90(0.3)	0.509	3.62(0.6)	0.451
고졸 및 재학	3.62(0.6)		3.93(0.3)		3.70(0.6)	
대졸 및 재학	3.63(0.6)		3.94(0.3)		3.66(0.6)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63(0.6)	3.579*	3.90(0.3)	3.641*	3.73(0.5)	4.501*
만3~5세	3.66(0.6)		3.95(0.3)		3.67(0.6)	
만6세 이상	3.47(0.8)		3.97(0.2)		3.54(0.8)	
취업여부						
취업	3.65(0.6)	2.270	3.94(0.2)	1.378	3.65(0.7)	1.267
비취업	3.58(0.7)		3.92(0.3)		3.70(0.6)	

구분	미혼한부모지원시설 입소기회제공		임대아파트입주권		보호시설 및 공동주거시설 확충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정부지원여부						
지원	3.61(0.7)	0.112	3.94(0.2)	9.249**	3.68(0.6)	0.959
비지원	3.59(0.6)		3.85(0.4)		3.62(0.6)	
거주특성						
재가	3.50(0.7)	35.408***	3.91(0.3)	2.654	3.60(0.7)	16.360***
시설	3.79(0.5)		3.95(0.2)		3.79(0.5)	

주1)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매우 필요하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그 외의 서비스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진학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25세 이상의 성인 미혼모들이 오히려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은 미혼모들은 상담서비스나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도 청소년미혼모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직업능력 및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혼모들이 진학보다는 노동시장진출을 목표로 하여 더 크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7-2〉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계속)

(단위: 명, %)

구분	청소년미혼한부모진학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상담서비스		사회적인식 개선사업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82(0.5)		3.80(0.5)		3.66(0.6)		3.84(0.4)	
연령대								
10대	3.74(0.5)	4.262*	3.78(0.4)	1.063	3.56(0.6)	7.234**	3.79(0.5)	4.007*
20대	3.80(0.5)		3.79(0.5)		3.61(0.6)		3.82(0.5)	
30대 이상	3.88(0.4)		3.84(0.4)		3.76(0.5)		3.90(0.3)	
연령대								
24세 이하	3.77(0.5)	5.093*	3.79(0.5)	0.410	3.59(0.6)	7.295**	3.82(0.5)	1.598
25세 이상	3.85(0.4)		3.81(0.4)		3.70(0.5)		3.86(0.4)	
교육수준								
중졸이하	3.76(0.5)	1.055	3.67(0.6)	3.137*	3.58(0.5)	0.760	3.73(0.5)	2.406
고졸 및 재학	3.81(0.4)		3.82(0.4)		3.66(0.6)		3.85(0.4)	
대졸 및 재학	3.85(0.4)		3.83(0.4)		3.68(0.6)		3.86(0.4)	

구분	청소년미혼한부모진학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상담서비스		사회적인식 개선사업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자녀연령								
만2세 이하	3.78(0.5)	1.998	3.79(0.5)	1.594	3.62(0.6)	2.247	3.83(0.4)	0.877
만3~5세	3.85(0.4)		3.85(0.4)		3.72(0.5)		3.87(0.4)	
만6세 이상	3.86(0.4)		3.77(0.5)		3.66(0.6)		3.83(0.5)	
취업여부								
취업	3.84(0.4)	2.156	3.79(0.5)	0.673	3.67(0.5)	0.112	3.83(0.4)	0.436
비취업	3.79(0.5)		3.82(0.4)		3.65(0.6)		3.85(0.4)	
정부지원여부								
지원	3.82(0.5)	0.406	3.82(0.4)	3.067	3.66(0.6)	0.045	3.84(0.4)	0.185
비지원	3.79(0.5)		3.73(0.6)		3.67(0.6)		3.86(0.4)	
거주특성								
재가	3.82(0.5)	0.002	3.81(0.5)	0.191	3.68(0.6)	1.209	3.84(0.4)	0.222
시설	3.82(0.4)		3.79(0.5)		3.63(0.6)		3.85(0.4)	

주1)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매우 필요하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가장 시급한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생계비 지원제도(36.2%)와 임대아파트 입주권(32.7%)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 선정한 제도들 중에서도 생계비지원(22.8%), 임대아파트 입주권(19.9%), 그리고 자녀양육비지원(19.9%)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서로는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에서 동일하게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미혼부 양육비지급강화,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 미만 미혼모들의 경우 생계비지원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5세 이상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1순위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Ⅴ-28〉 시급한 서비스(연령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연령		전체	x^2(df)	연령		전체	x^2(df)
	24세 이하	25세 이상			24세 이하	25세 이상		
전체	283(100.0)	418(100.0)	701(100.0)		282(100.0)	415(100.0)	697(100.0)	
생계비지원	128(45.2)	126(30.1)	254(36.2)	36.253 (10)***	70(24.8)	89(21.4)	159(22.8)	36.341 (10)***
임대아파트 입주권	63(22.3)	166(39.7)	229(32.7)		64(22.7)	75(18.1)	139(19.9)	
자녀양육비 지원	31(11.0)	36(8.6)	67(9.6)		59(20.9)	80(19.3)	139(19.9)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13(4.6)	35(8.4)	48(6.8)		31(11.0)	60(14.5)	91(13.1)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8(6.4)	24(5.7)	42(6.0)		13(4.6)	31(7.5)	44(6.3)	
미혼부 양육비지급강화	13(4.6)	13(3.1)	26(3.7)		16(5.7)	27(6.5)	43(6.2)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7(2.5)	9(2.2)	16(2.3)		5(1.8)	31(7.5)	36(5.2)	
청소년미혼한부모 진학지원	6(2.1)	3(0.7)	9(1.3)		14(5.0)	1(0.2)	15(2.2)	
보호·공동주거시설 확충	2(0.7)	4(1.0)	6(0.9)		3(1.1)	9(2.2)	12(1.7)	
미혼한부모지원시설	2(0.7)	1(0.2)	3(0.4)		5(1.8)	7(1.7)	12(1.7)	
상담서비스	-	1(0.2)	1(0.1)		2(0.7)	5(1.2)	7(1.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미혼모들의 과반수 이상(51.2%)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계비지원을 지목하였으며, 대졸 및 대학재학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1순위로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38.1%). 이러한 경향은 2순위로 시급한 정책에 대한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여성들이 생계비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7.4%, 대졸 여성들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응답한 비율은 21.0%였다. 한편 대졸이상 미혼모들은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도 1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Ⅴ-29〉 시급한 서비스(교육수준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교육수준			전체	x^2(df)	교육수준			전체	x^2(df)
	중졸 이하	고졸 및 재학	대졸 및 재학			중졸 이하	고졸 및 재학	대졸 및 재학		
전체	86(100.0)	328(100.0)	197(100.0)	611(100.0)		84(100.0)	328(100.0)	195(100.0)	607(100.0)	
생계비지원	44(51.2)	134(40.9)	44(22.3)	222(36.3)		23(27.4)	80(24.4)	39(20.0)	142(23.4)	
임대아파트 입주권	17(19.8)	105(32.0)	75(38.1)	197(32.2)		12(14.3)	70(21.3)	41(21.0)	123(20.3)	
자녀양육비 지원	14(16.3)	27(8.2)	20(10.2)	61(10.0)		17(20.2)	71(21.6)	32(16.4)	120(19.8)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2(2.3)	18(5.5)	24(12.2)	44(7.2)		12(14.3)	37(11.3)	34(17.4)	83(13.7)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4(4.7)	17(5.2)	13(6.6)	34(5.6)		3(3.6)	22(6.7)	11(5.6)	36(5.9)	
미혼부 양육비 지급강화	2(2.3)	12(3.7)	10(5.1)	24(3.9)	48.852 (20)**	8(9.5)	19(5.8)	9(4.6)	36(5.9)	40.681 (20)**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2.3)	7(2.1)	6(3.0)	15(2.5)		-	9(2.7)	15(7.7)	24(4.0)	
청소년미혼한 부모 진학 지원	1(1.2)	4(1.2)	1(0.5)	6(1.0)		6(7.1)	7(2.1)	1(0.5)	14(2.3)	
보호·공동주거 시설 확충	-	2(0.6)	2(1.0)	4(0.7)		1(1.2)	6(1.8)	4(2.1)	11(1.8)	
미혼한부모지원 시설	-	2(0.6)	1(0.5)	3(0.5)		1(1.2)	6(1.8)	4(2.1)	11(1.8)	
상담서비스	-	-	1(0.5)	1(0.2)		1(1.2)	1(0.3)	5(2.6)	7(1.2)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자녀연령별로는 만 2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계비지원을 응답한 반면(41.4%), 만 3세 이상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만 3~5세 43.3%, 만 6세 이상 35.0%). 2순위 응답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미혼모의 22.9%가 생계비지원을, 만 3~5세 아동을 둔 미혼모의 22.0%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시급한 정책의 2순위로 응답하였다. 또한 만 6세 이상의 미혼모들이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을 꼽은 경우도 13.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한 미혼모의 경우 39.4%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보았으며, 비취업 미혼모의 경우에는 42.7%가 생계비지원을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순위로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취업과 비취업 모두 생계비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표 Ⅴ-30〉 시급한 서비스(자녀연령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자녀연령			전체	x^2(df)	자녀연령			전체	x^2(df)
	만 2세 이하	만 3~5세	만 6세 이상			만 2세 이하	만 3~5세	만 6세 이상		
전체	360(100.0)	224(100.0)	117(100.0)	701(100.0)		358(100.0)	223(100.0)	116(100.0)	697(100.0)	
생계비지원	148(41.1)	71(31.7)	35(29.9)	254(36.2)	51.001 (20)***	82(22.9)	44(19.7)	33(28.4)	159(22.8)	35.067 (20)*
임대아파트 입주권	91(25.3)	97(43.3)	41(35.0)	229(32.7)		69(19.3)	49(22.0)	21(18.1)	139(19.9)	
자녀양육비 지원	38(10.6)	15(6.7)	14(12.0)	67(9.6)		82(22.9)	41(18.4)	16(13.8)	139(19.9)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22(6.1)	10(4.5)	16(13.7)	48(6.8)		43(12.0)	31(13.9)	17(14.7)	91(13.1)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21(5.8)	12(5.4)	9(7.7)	42(6.0)		15(4.2)	15(6.7)	14(12.1)	44(6.3)	
미혼부 양육비 지급강화	18(5.0)	7(3.1)	1(0.9)	26(3.7)		21(5.9)	17(7.6)	5(4.3)	43(6.2)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9(2.5)	7(3.1)	-	16(2.3)		16(4.5)	12(5.4)	8(6.9)	36(5.2)	
청소년미혼한부모 진학 지원	6(1.7)	3(1.3)	-	9(1.3)		9(2.5)	5(2.2)	1(0.9)	15(2.2)	
보호·공동 주거시설 확충	6(1.7)	-	-	6(0.9)		5(1.4)	6(2.7)	1(0.9)	12(1.7)	
미혼한부모 지원시설	1(0.3)	1(0.4)	1(0.9)	3(0.4)		12(3.4)	-	-	12(1.7)	
상담서비스	-	1(0.4)	-	1(0.1)		4(1.1)	3(1.3)	-	7(1.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Ⅴ-31〉 시급한 서비스(취업여부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취업여부		전체	x^2(df)	취업여부		전체	x^2(df)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전체	312(100.0)	389(100.0)	701(100.0)		310(100.0)	387(100.0)	697(100.0)	
생계비지원	88(28.2)	166(42.7)	254(36.2)	34.306 (10)***	72(23.2)	87(22.5)	159(22.8)	11.553 (10)
임대아파트 입주권	123(39.4)	106(27.2)	229(32.7)		66(21.3)	73(18.9)	139(19.9)	
자녀양육비 지원	26(8.3)	41(10.5)	67(9.6)		53(17.1)	86(22.2)	139(19.9)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27(8.7)	21(5.4)	48(6.8)		47(15.2)	44(11.4)	91(13.1)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22(7.1)	20(5.1)	42(6.0)		23(7.4)	21(5.4)	44(6.3)	
미혼부 양육비지급강화	14(4.5)	12(3.1)	26(3.7)		18(5.8)	25(6.5)	43(6.2)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8(2.6)	8(2.1)	16(2.3)		16(5.2)	20(5.2)	36(5.2)	

구분	1순위				2순위			
	취업여부		전체	x^2(df)	취업여부		전체	x^2(df)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청소년미혼한부모 진학 지원	1(0.3)	8(2.1)	9(1.3)		3(1.0)	12(3.1)	15(2.2)	
보호·공동주거시설 확충	-	6(1.5)	6(0.9)		6(1.9)	6(1.6)	12(1.7)	
미혼한부모지원시설	2(0.6)	1(0.3)	3(0.4)		3(1.0)	9(2.3)	12(1.7)	
상담서비스	1(0.3)	-	1(0.1)		3(1.0)	4(1.0)	7(1.0)	

주: * p < .05, ** p < .01, *** p < .001

정부지원여부별로는 모든 미혼모가 생계비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미혼모들은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16.2%) 및 자녀양육비 지원(12.1%)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시급한 정책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미혼모들이 자녀양육비 지원에 26.8%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다른 변수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 발견되었다. 즉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녀양육비지원이 비지원 계층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32〉 시급한 서비스(정부지원여부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정부지원여부		전체	x^2(df)	정부지원여부		전체	x^2(df)
	지원	비지원			지원	비지원		
전체	602(100.0)	99(100.0)	701(100.0)		600(100.0)	97(100.0)	697(100.0)	
생계비지원	223(37.0)	31(31.3)	254(36.2)	24.912 (10)**	142(23.7)	17(17.5)	159(22.8)	12.648 (10)
임대아파트 입주권	203(33.7)	26(26.3)	229(32.7)		123(20.5)	16(16.5)	139(19.9)	
자녀양육비 지원	55(9.1)	12(12.1)	67(9.6)		113(18.8)	26(26.8)	139(19.9)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32(5.3)	16(16.2)	48(6.8)		80(13.3)	11(11.3)	91(13.1)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2(5.3)	10(10.1)	42(6.0)		35(5.8)	9(9.3)	44(6.3)	
미혼부 양육비지급강화	24(4.0)	2(2.0)	26(3.7)		39(6.5)	4(4.1)	43(6.2)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14(2.3)	2(2.0)	16(2.3)		32(5.3)	4(4.1)	36(5.2)	
청소년미혼한부모 진학 지원	9(1.5)	-	9(1.3)		13(2.2)	2(2.1)	15(2.2)	
보호·공동주거시설 확충	6(1.0)	-	6(0.9)		8(1.3)	4(4.1)	12(1.7)	
미혼한부모지원시설	3(0.5)	-	3(0.4)		10(1.7)	2(2.1)	12(1.7)	
상담서비스	1(0.2)	-	1(0.1)		5(0.8)	2(2.1)	7(1.0)	

주: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거주특성별로는 재가미혼모와 시설미혼모 모두 생계비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지목하였다. 재가미혼모와 시설미혼모 간에는 시급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Ⅴ-33〉 시급한 서비스(거주특성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거주특성		전체	x^2(df)	거주특성		전체	x^2(df)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전체	433(100.0)	268(100.0)	701(100.0)		430(100.0)	267(100.0)	697(100.0)	
생계비지원	160(37.0)	94(35.1)	254(36.2)	14.211 (10)	90(20.9)	69(25.8)	159(22.8)	18.270 (10)
임대아파트 입주권	139(32.1)	90(33.6)	229(32.7)		85(19.8)	54(20.2)	139(19.9)	
자녀양육비 지원	43(9.9)	24(9.0)	67(9.6)		79(18.4)	60(22.5)	139(19.9)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	31(7.2)	17(6.3)	48(6.8)		61(14.2)	30(11.2)	91(13.1)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27(6.2)	15(5.6)	42(6.0)		31(7.2)	13(4.9)	44(6.3)	
미혼부 양육비지급강화	15(3.5)	11(4.1)	26(3.7)		29(6.7)	14(5.2)	43(6.2)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10(2.3)	6(2.2)	16(2.3)		26(6.0)	10(3.7)	36(5.2)	
청소년미혼한부모 진학 지원	7(1.6)	2(0.7)	9(1.3)		11(2.6)	4(1.5)	15(2.2)	
보호·공동주거시설 확충	-	6(2.2)	6(0.9)		9(2.1)	3(1.1)	12(1.7)	
미혼한부모지원시설	1(0.2)	2(0.7)	3(0.4)		3(0.7)	9(3.4)	12(1.7)	
상담서비스	-	1(0.4)	1(0.1)		6(1.4)	1(0.4)	7(1.0)	

주: * $p < .05$, ** $p < .01$, *** $p < .001$

결국 연령대와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녀가 비교적 크고 취업상태인 미혼모들, 즉 자립할 환경이 되는 미혼모들일수록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보고 있어 이들의 주거형태를 시설의 형태가 아닌 일반적 주거 형태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연령대와 교육수준이 낮고 어린 자녀가 있는 비취업미혼모들, 즉 자립능력이 현재 그리 높지 않은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생계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욕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요약 및 논의

본 장에서 발견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미혼모들의 정책욕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집단이 발견되었다. 한 집단은 주로 24세 이하의 연령이 어린 청소년미혼모로서,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학력수준도 낮으며 현재 비취업중이고 시설에 머무르는 집단이다. 이들 집단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혼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집단은 25세 이상의 성인 미혼모들로서 자녀도 3세 이상으로 비교적 크고, 교육수준도 고졸 또는 대졸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취업중인 경우가 많고 시설보다는 재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집단은 연령이나 학력, 노동시장참여 등의 측면에서 자립환경이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고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한부모와 큰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보인다.

둘째, 전반적인 미혼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낮고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으며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자립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에서 출산을 경험한 이후에도 퇴소하지 않고 생활하는 미혼모들로서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고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시설경험이 없는 재가미혼모들의 경우에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재 미혼모 정책은 미혼모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설을 거치지 않는 미혼모의 규모나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가미혼모의 과반수 이상이 입소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입소경험이 없는 재가 미혼모가 실제로는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 중에서도 연령이 높고 취업상태로서 자립환경이 되는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어서' 시설에 남아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이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경향은 보다 일반적 거주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향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양육미혼모과 관련된 정책욕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생계비지

원, 아동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 등은 잘 알려져 있고 수혜율도 높으면서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에는 생계비지원과 관련하여 그 수혜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집단별로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크게 청소년미혼모와 성인미혼모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미혼모들의 경우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지원제도와 자산형성계좌제도에 대해서 2/3정도가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1/3이 수혜를 받고 있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일반적 주거형태에 대한 정책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자녀돌봄 및 보육지원제도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Ⅵ 미혼모 정책동향 및 지원서비스

1. 한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현황 177
2.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196
3. 정책 제언 및 과제 228

1. 한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현황

미혼모 지원 정책은 미혼모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정책과 소득 및 자녀연령에 따른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적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이, 후자에는 기초생계급여나 아동보육비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해당된다. 이처럼 미혼모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주체 및 서비스 간 조율과 협조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미혼모의 생계급여, 주거관련 정책,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보건 및 영양 서비스, 청소년 미혼모 자립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14)]

1) 기초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특정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생계급여는 뜻하지 않게 임신과 출산 이후 근로활동을 중단하고 홀로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미혼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계급여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가장 주요한 혜택으로서 이를 받기위한 수혜 자격은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양육미혼모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되며,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많은 미혼모들이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양육미혼모들은 임신, 출산, 자녀양육 초기에 원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임신과 출산 초기에 미혼모 가족의 대다수는 낙태나 입양을 권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면 원가족은 정서적・경제적으로 미혼모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양육미혼모가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혼모들은 기초생계 수급 자격에서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

14) 본 절의 내용은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양육미혼모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보고서의 Ⅲ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표 Ⅵ-1〉 기초생활보장 개요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①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09(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2,172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없음:수급자선정/ 부양능력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제외)

-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내용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5, pp.65-66.

기초생계를 위한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단,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해산급여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 임산부는 기초생계수급자로 선정되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혼모시설에서 출산하는 미혼모 모두가 해산급여를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 미혼모가 출산을 앞두고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지역사회에서 급여를 받는 일반수급자,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받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있다. 미혼모자시설이나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보장시설수급자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시설에 입소했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일반수급자와 비교해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고 한다. 미혼모로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15]

2) 주거관련 지원 정책

주거는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주거확보의 어려움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여기서는 정부에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중 주거확보와 관련된 서비스로는 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시설이 있다. 출산 전에 입소하는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부자보호시설이 그것이다. 그 중 미혼모자시설은 출산에 임박한 미혼모에게 출산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극심한 편견과 입양선호의 경향으로 오랫동안 미혼모자시설은 양육의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다가 최근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미혼모자시설은 점차 이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양육미혼모 관련 시설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양육미혼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은 모자보호시설(미혼모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중간의집),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이다.

---

15)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재가미혼모의 경우 역시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과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특례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Ⅵ-2〉 미혼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번호	시설별	제공 서비스
1	미혼모자시설	- 숙식 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의료급여대상자,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제공,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급, 미숙아 분만시 의료비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장제급여 등 지급가능) - 자립지원: 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2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및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한함) - 숙식무료제공 - 만4세이하 자녀를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포함시켜 보육료 100% 지원(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한함) - 자립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3	모·부자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에 한함)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132-146.

출산을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은 2000년 중반 이후 시설 수와 정원이 증가하였고, 미혼모 양육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미혼모시설'로 불리는 미혼모자시설에서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시설 자체의 자원과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표 Ⅵ-2>를 통해서 각각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각 시설에서는 무료숙식 혹은 무료로 주거공간이 제공되는데, 시설에 거주하면서 기초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계의 경우 시설에서 제공되는 주거비와 식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여 시설자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게 된다. <표 Ⅵ-3>에는 각 시설의 수혜 대상과 거주기간, 입소정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 Ⅵ-4>를 통해서 미혼모 관련 시설이 2004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시기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한부모를 위한 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미혼모자시설은 2004년 12개소에서 2009년 3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9개소에서

23개소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2000년 중후반 관련 시설의 확대는 미혼모의 산전후지원과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Ⅵ-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2010. 01. 01 현재)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 (연장가능 기간)	입소정원
1	모자 보호시설	4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	1,062세대
2	부자 보호시설	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 (2년)	20세대
3	모자 자립시설	3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 (2년)	41세대
4	모자일시 보호시설	16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 (6월)	528명
5	미혼모자 시설	32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 (6월)	768명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3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 (1년)	174세대
7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	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 (6월)	10명
8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1 (모자)		2년 (1년)	9세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0.

〈표 Ⅵ-4〉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수

(단위: 개소)

시설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9	85	95	100	107	118
모자보호시설	40	40	41	41	41	41
부자보소시설	-	-	-	1	1	1
모자자립시설	4	4	4	4	3	3
모자일시보호시설	14	14	14	14	14	16
미혼모자시설	12	18	20	25	27	32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9	9	16	15	19	23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	-	-	2	1
모・부자공동생활가정						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0.

이처럼 미혼모시설의 확대로 정책적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미혼모시설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을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 시설의 자립지원이 강조되면서 미혼모를 위한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외에도 시설 내부나 외부의 직업교육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직후의 미혼모에게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미혼모 시설은 입양 보내는 미혼모와 양육미혼모가 함께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에는 자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16]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시설에서 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단체생활 규칙에 따라서 입소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셋째, 시설에 거주하면서 출산전후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생활 규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직장생활을 허용하지 않은 시설이 많기에 시설 입소 미혼모들은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17] 미혼모 시설의 이러한 규정으로 미혼모의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넷째, 임산부나 미혼모가 처한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의 열악함이다. 미혼모들은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시설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시설 내 10대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를 구분하여 상이한 규칙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미혼모시설 퇴소 후 거주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곳인데, 교육훈련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

16) 여기서 기술하는 시설 내부 생활에 관한 내용은 미혼모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미혼모 대상 인터뷰에서 수집한 것이다.

17) 한 양육미혼모는 임신6개월에 집에서 나와 시설에 입소하려고 문의했는데, 입소를 할 경우 직장을 다닐 수 없다고 하여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 아는 사람 집에서 기거하였고 출산 직전에 입소하여 시설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 미혼모는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하여도 직업이나 학업의 지속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프로그램 참여를 시키기 위해 입소한 사람들에게 학교와 직장을 쉬게 한다고 주장했다(6세 아들을 양육하는 38세의 미혼모사례, 『양육미혼모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이미정 외,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참조하라).

기능한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가족이나 친구의 집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던 양육미혼모들에게 안정된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희망하는 사람 중 소수만 입소할 수 있다. 또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야 하기에 사적 영역의 확보가 제한적이다. 부엌을 공유하며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불편함으로 지적된다.

여섯째, 흔히 모자원으로 불리는 모자보호시설은 저소득 모자가족이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혼모자시설이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과 비교하여 개별 가족이 독립된 부엌을 사용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이다. 2010년 전국 41개소에서 1,06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주거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 입소하려는 세대가 많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미혼가족의 입주 비율이 높지 않고, 입주하려는 양육미혼모들은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양육미혼모를 위해 더 많은 모자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소득층 미혼모를 위한 주택정책[18)]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의 거주기간은 1년에서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육미혼모에게 일시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밖에 없다. 미혼모가 시설에서 나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공간 확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주거정책은 이들의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 저소득 미혼모가 고려할 수 있는 주택형태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국기주택기금에서 2%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준다. 입주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7천여만원 가량의 주택을 스스로 물색하고 입주시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낸다. 2009년에 7천여 가구의 전세임대가 LH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매입임대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16개 광역시

18)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 서대문구청 임대주택 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팀, 공급팀 담장자, 한국미혼모협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내용이다.

도에 매입임대(기존주택매입임대)에 해당되는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1호당 7천여 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호당 차이가 나는 가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650호 정도의 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하였는데, 구입과 배분은 SH에서 담당하며 공고는 매년 3월과 9·10월에 시행한다. 매입임대는 규모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주택으로 제공된다.

영구임대 주택은 1987년과 1993년 노태우 정부시절 임대 20만호 건설을 통해서 확보된 것으로 서울에 4만 5천호가 있는데, 노원구·강남구·강서구·마포구에 있다. 여기서 영구라는 의미는 관리 주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입주자 사용기간은 20년이다. 국민임대는 국민정부 때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입주기한은 역시 20년이다.

전국적 차원에서 매입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한토지주택공사(LH)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택의 매입과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입팀은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공고를 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실사를 거쳐, 감정평가의뢰를 한다. 매입팀에 의해서 확보된 물량은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지자체로 보내져 입주자를 모집한다. 2010년 서울시는 1,284세대를 경기북부지역은 427세대를 매입입대 주택 공급을 위해 선정하였다. 입주자 모집 시점에서는 실제 공급된 물량의 1.5배에 해당되는 세대주를 모집하며, 이들은 순번에 따라서 입주기회가 제공되며 순번이 늦은 사람들은 5-6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서 입주기회를 얻게 된다.

입주의 우선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수요에 비해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이들 중 일부만이 공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10년 말 서대문구는 12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하였는데 149가구가 신청하여 수요가 공급을 큰 폭으로 앞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다.[19] 그러

19) 여타 한부모 가족에 비해서 미혼모는 부양가족수가 적고,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짧으며, 미혼모가 되기 전에는 수급자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고, 출산이라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청약저축납입 횟수도 적다. 자활사업은 20-30대의 양육미혼모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나 동일 순위에 있는 여타 집단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미혼모들은 대체로 자활사업 프로그램, 부양가족수,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납입 횟수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정된 주거공간이 절박한 양육미혼모를 위해 이러한 선정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

〈표 Ⅵ-5〉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자활사업 참여기간(3점~7점), 당해지역 연속거주기간(1점-3점), 부양가족수(1점-3점), 청약저축납입횟 수(1점~3점), 최저주거기준미달(3점-4점)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16.

저소득층을 위한 또 다른 주거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모부자가정이고, 2순위는 장애인등증교부자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연 2%의 이율로 제공되는 저소득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다.[20]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되지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애로사항은 전세임대 거주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면 전세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21] 미혼모 기초생계급여 지급 기간은 장애인이나 노인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기에 전세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다. 즉 명목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통해 미혼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의 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양육미혼모는 여타 한부모가족 입주자격을 취득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은 낮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1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지원 정책이 요구되며, 저출산

20) 이 경우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1) 이것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수입금의 50%를 저축하면 전세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시대 아동양육에 대해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정부는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자녀양육 지원

(1)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복지급여를 제공한다.[22]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로, 2인 가족 기준으로 2010년 월 수입이 111만6천여원 이하이면 해당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d).[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자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양육미혼모 원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복지급여 중 어린자녀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양육수당 5만원이다. 점차적으로 수혜대상 아동의 연령층이 확대되어 2010년에는 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 아동 연령층은 확대되었지만, 수당 5만원은 증가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동양육비로 그 수혜대상 아동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

22)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때는 22세 미만까지 포함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d).

23) 어린자녀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의 연령층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일을 할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는 가족이나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양육이나 생계와 관련하여 현물이나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정하는 소득 수준을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인 150%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확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한부모지원활동가 자문에 기초한 내용이다).

〈표 Ⅵ-6〉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기준일: 2010.1.1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000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61.

〈표 Ⅵ-7〉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2,257	13,618	10,646	197	30,963	26,831	83,866	40,64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표 Ⅵ-7>의 아동양육비 지원현황에 의하면 2009년 42,257명의 아동에게 136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수혜아동 규모는 모든 한부모가족 아동을 통합한 것으로, 이중 양육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우리사회 미혼모의 독특한 역사를 고려할 때, 양육미혼모 가정의 양육수당은 더 높아져야 한다. 미혼모 양육지원과 관련된 복지체계가 부족하여 이들 아동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었고 한국은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미혼모 자녀에게 입양된 아동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입양가정의 경우는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양된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24] 국가 간 아동입양에 대한 1993년 헤이그협약에서도 입양에 앞서서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직접 키우면 저소득 가정에 한하여 5만원 양육수당을 제공하지만, 어머니와 헤어져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키워지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리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양육수당은 입양가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있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직업과 소득의 기회를 포기하는데 양육미혼모의 경우도 그러하다.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집중적

24) 입양된 아동은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고 있다.

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들이 향후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 가능성은 높아진다.

(2) 아동보육 지원

2000년 이후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아동보육과 관련된 정부 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 초반 양육미혼모 연구에서 홀로 어린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이 꼽혔다.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높아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지원은 양육미혼모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표 Ⅵ-8〉 영유아보육법: 아동보육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 차등보육료: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보육료: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정부 미지원시설은 수납한도액)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40%-70% 지원 ○ 방과후 보육료: 만5세아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6.장애아무상보육료'에서 정한 단가)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야간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24시간 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 휴일보육 : 일보육료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 지원방식: ○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p.249.

정부는 아동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0세에서 4세까지는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연령별로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정규근로 시간과 관련된 보육뿐만 아니라 야간과 24시간 보육과 관련하

여서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b). 이외에도 양육미혼모는 취학전 만 5세 아동의 보육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2000년 초반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기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우유비용과 견학비용을, 유치원은 교육비・급식비・교재비・견학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 양육미혼모에게 부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제공되는 영어・음악・체육 등의 특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만 빠지게 할 수 없다는 고충에 직면하여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외에도 부모가 직접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양육미혼모 가구소득이 차상위 이하일 때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표 Ⅵ-9〉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월령 23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일할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보육료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수당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가구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금액: 월 1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pp.269-27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1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p.16.

〈표 Ⅵ-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 이상)~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 0세아 정기돌봄사업
  -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양육중심의 양육돌봄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 돌보미 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 제공(2010 신규)
- 서비스 연계원칙
  - 예약 가정 비 경합시 신청순으로 서비스 연계
  - 예약가정이 동시에 서비스 신청하거나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저소득 한부모가정)
    ② 그 외 한부모 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③ 맞벌이 가정
    ④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 예산: 총 30,849백만원(국비 19,705백만원, 지방비 11,144백만원)
-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기본가격: 시간당 5,000원(주말·심야 6,000원)

아동수	기본가격	심야(주말)가격
1명	5,000원	6,000원
2명	7,500원	9,000원

* 심야: PM 9:00~AM 8:00, 주말: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료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이용요금 80%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100%(이용요금 20%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안내」, pp.4-5, pp.18-19, p.22, pp.25-27.

정부는 가구평균소득 이하이면서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그 외 한부모가정에게 서비스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근로 및 학업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한 양육미혼모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관련 예산 감축으로 관련 이용시간이 감소하고 추가요금도 증가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다.

보육지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회식문화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양육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란 쉽지 않다. 유치원에서 종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전일제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가 종일반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데리러 가기는 쉽지 않다. 야근과 회식을 피하기 어려운 우리의 직장문화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같은 유연한 아동보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양육지원 제도는 미혼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에 관련 예산을 감축하기보다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미혼부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 청구절차와 양육비 청구와 지급절차를 밟을 수 있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와도 미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2009년 11월 9일 이후 개정되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을 통한 이행명령이 가능하게 하였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그러나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이혼의사 확인절차에 포함되어 있어 미혼모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표 Ⅵ-11〉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기간: 2010.1-12 ▪ 지원대상사건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 지원한도: 1인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한도액 없음, 단, 2010년도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 ▪ 사업비: 총 325백만원(100% 국비보조) ▪ 사업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68-69.

〈표 Ⅵ-12〉 여성가족부 지원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 현황

(단위: 건, %)

	연도	자녀양육비청구			자녀 인지청구			자녀양육비이행확보		
		종료	승소	승소율	종료	승소	승소율	종료	승소	승소율
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63	44	74.6	4	3	75.2	114	109	96.5
	2008	193	134	99.4	10	9	100	190	162	97.7
	2009	191	111	98.8	15	6	100	207	182	97.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	42	27	96	4	2	100	2	2	100
	2008	23	9	91	1	0	100	0	0	-
	2009	55	28	95	3	2	100	3	3	100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강지원, 2010에서 재인용).
주: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임.
승소율: (승소+화해)/(승소+화해+패소+각하)*100

2007년부터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2008년에는 기초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만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수혜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 정부가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비를 지원은 하지만 소송을 하고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양육비 청구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크게 반기지 않는 양육미혼모들도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육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가 되기까지 아기 아빠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기에 소송이라는 과정에서 상대와 접촉하고 싶지 않거나 아이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혹은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양육비 청구 때문에 아이아빠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양육미혼모를 위해 양육비 청구와 집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기관에서 비동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독일과 한국에서는 양육비 징수가 개인이 처리하는 일로 규정되고 있다(강지원, 20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는 아동양육비이행강제기관(OCSE)이 법원 명령에 따라 양육비 징수와 전달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동거 부모의 소득과 재산 파악을 위해 국세청이 협조하고 주소불명・연락두절과 관련하여 연방부모위치확인서비스나 연방부모소재탐지서비스가 아동양육비이행강제기관(OCSE)과 협조하고 있다(강지원, 2010). 독일

의 경우에는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비동거부모가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비동거 부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후에 이를 징수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강지원, 2010; 박영미, 2010).[25]

4) 보건과 영양 서비스

출산 전후의 보건서비스 지원은 미혼모자시설 뿐만 아니라 미혼부모 거점기관, 기초생활보장의 출산급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보건소에서는 산전후 진료나 아동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전 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X-선 촬영・초음파 검사와 임신 중 초음파검사・풍진검사・기형아 검사뿐만 아니라 영유아 대상의 결핵・디프테리아・소아마비・장티푸스・수두 등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2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1인당 3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27] 고운맘 카드의 1일 사용 한도액은 4만원인데, 진료비가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일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보건소는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신청은 출산예정 2개월 전에서 출산후 20일 사이에 주거지 보건소에서 하며, 해당 서비스는 2주간 받을 수 있고[28]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29]

산전후 보건서비스 지원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30] 수혜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에 영양

---

25)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6월 '양육비대지급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여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양육부모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육비대지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대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권자인 양육부모에게 통지하고,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대지급을 중지한다. 정부는 양육비를 대지급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 http://health.sdm.go.kr/main/index.jsp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27) http://www.gounmom.co.kr/voucher_voucher_system/voucher_system02.asp

28) 해산급여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29) http://health.sdm.go.kr/main/index.jsp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교육과 영양상담을 제공하고 수혜대상의 영양상태에 따라 처방된 식품 패키지가 제공되는데 쌀・감자・달걀・우유・검정콩・미역・당금・참치통조림・귤・오렌지 주스 등의 식품이 가정으로 배달된다.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 영양이나 의학적인 면에서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영유아나 임산부, 수유부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영양이나 의학적 측면 외에 추가로 고려되는 사항은 소득수준, 1~2세 아동, 조손·한부모·미혼모 가정 여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면접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보건소의 보건 및 영양서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나 영양 관련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양육미혼모에게 이러한 보건소의 서비스가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표 Ⅵ-13〉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개요
  -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 사업수행 보건소 :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
- 지원대상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유산 및 사산한 여성도 포함), 수유부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적용

구분	설명
우선순위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2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7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30) 서대문보건소의 경우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에서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아동의 키, 몸무게, 빈혈상태, 영양섭취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보충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년도 사업안내 영양플러스+」, pp.4-6, pp.10-11, p.35.

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2010년에 신설되었는데, 명칭은 청소년한부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다. 주요 특징은 수혜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로 확대하였고 아동 양육비수당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수당의 두 배인 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의료비와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청소년 임신과 출산을 비행과 사회문제로 보던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다. 청소년미혼모의 부모자격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청소년기 혼외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원치않는데 자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과 양육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의 한계는 24세 이하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나 통계 자료 분석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비율은 10대보다 20대 후반이나 30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면 모든 양육미혼모에게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미혼모는 정서적인 면에서 성인미혼모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녀양육수당이나 의료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자녀양육수당이나 의료비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양육미혼모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의지가 높은 20대 후반이나 30대 미혼모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표 Ⅵ-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2010 신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저연령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14,700여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최저생계비 100%이하와 150%이하로 구분)
  ※ 가구의 역량에 따라 자율참여 방식의 지원 적용(검정고시 및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 지원연령 및 기간: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월10만원	월24천원	'10년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 이하: 기초수급권자 - 20만원이하: 최저생계비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전체
지원계획	계좌입금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 신설 후 은행입금	검사기관 입금

▪ 지원예산액: 아동양육비・의료비, 자산형성, 검정고시 지원 등 국비 121억원

구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지원	가구자산지원	기타(친자 및 연구비)	총계
계	2,477,616	594,623	7,258,638	5,681,512	393,200	16,405,589
국고	1,808,130	433,951	5,298,063	4,146,656	393,200	12,080,000
지방비	669,486	160,672	1,960,575	1,534,856	0	4,325,589

▪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한하여 2010년 4월부터 지원(예정)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운영 안내」, pp.7-9.

2.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이때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를 의미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참조). 이때 모자가족은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를, 부자가족은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를 지

칭하는 것이며[31],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일 때에 한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자'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육' 대상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취업을 통한 자립이 가능해질 때가 이들이 한부모가족의 분류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개념정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개입지점은 바로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의 능력여부임을 알 수 있다.[32] 여기서는 한부모가족, 그 중에서도 미혼모부자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정책 및 제도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수당・급여・주거지원 등)를 제외한 미혼모가 거주하는 시설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국내에서 양육 미혼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미혼모가 거주하는 시설,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이 있다.

(1) 양육미혼모가 거주하는 시설에서 실시・운영되는 프로그램

(가) 미혼모 생활시설

지금까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주로 미혼모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제공되어 왔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김만지, 2000; 김혜숙, 2001; 김지혜, 2002; 최유리, 2002; 김혜련, 2002; 김귀경, 2003; 전은희, 2004). 그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 집단미술치료,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음악활동, 진로교육, 산전교육, 사이코드라마 등 다양하다.

미혼모가 생활하는 시설은 한부모가족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모(부)자 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이 중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입소대상이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한정되어 있다. 서울 지역의 미혼모자시설 4개소에서 운

31)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32) 청소년 미혼모/부자 가족의 경우는 여기에 미혼모, 미혼부의 교육 문제가 추가된다.

영하고 있는 양육미혼모 대상 프로그램은 아래 <표 Ⅵ-15>과 같다.

〈표 Ⅵ-15〉 서울 지역 미혼모자시설 양육미혼모 프로그램

시설명	사업	내용
구세군 여자관	생활지원 공동체지지	산후도우미지원, 산전관리, 산전교육, 무료분만서비스, 의료서비스, 산후관리, 새식구 적응훈련
	자립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교육 지원, 바리스타 취업연계
	양육지원	부모교육, 아기양육교육, 예방접종, 물품지원(분유, 기저귀, 유모차 등), 백일잔치, 백일 및 돌 기념사진
	사회교육	풍선아트, 수공예, 퀼트, 뜨개인형 만들기, 태교 프로그램, 예절 프로그램
	상담	가족상담, 산모집단 및 개별상담, 심리검사, 정신건강검사
애란원	생활지원 공동체지지	산호체조, 산전체조, 성교육, 산전・후 관리 교육, 신앙교육, 의료특강, 멘토링, 자치회의
	자립지원	자립준비 프로그램, 진로검사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양육지원	부모교육, 아기장래결정 집단 상담
	사회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리본공예, 선물포장, 독서토론교실
	상담	개별상담, 새식구집단상담, 심리검사, 정신과 상담
열린집	생활지원 공동체지지	의료지원, 산전관리, 산후관리
	자립지원	진로상담
	양육지원	
	사회교육	문화공연 관람, 유적지 답사, 야외캠프, 비즈공예, 가죽공계, 시화, 한지공예, 크리스털플라워, 신나는 요리, 노래방,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인터넷상담, 자아성장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마음자리	생활지원 공동체지지	산전체조, 산후체조, 성교육, 월문화행사, 봄가을나들이, 여름겨울캠프, 의료지원, 생일잔치, 성탄잔치, 송년잔치
	자립지원	취업준비교육, 검정고시준비
	양육지원	육아교육, 생명윤리교육, 백일잔치
	사회교육	다이어트 댄스, 태교바느질, 태교뜨개질, 요리교실, 미술치료, 연극치료, 다도
	상담	일반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프로그램 참가

자료: 김미령(2010) 참조.

서울 지역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개소에서 운영 중인 양육미혼모 대상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 <표 Ⅵ-16>과 같다.

〈표 Ⅵ-16〉 서울 지역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양육미혼모 프로그램

시설명	사업	내용
애란모자의집	생활지원 공동체지지	의료・건강관리, 가정경영기술교육(식단관리, 저축계획), 법률강연, 하계캠프, 수련회, 경제지원사업(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퇴소자 정착금 및 후원물품 지원), 사후관리, 자치회의
	자립지원	직업멘토링, 진로워크샵, 전문기술교육(전문학원연계, 심화교육지원, 수강료, 교재교구비, 교육식사비, 응시료 지원), 학력취득교육(고입・대입 검정고시 학원연계, 인터넷 동영상강의 수강, 과목별 학습자원봉사자 지원, 정규학교연계)
	양육지원	아동발달검사, 부모교육, 양육비지원, 백일・돌잔치
	사회교육	문화체험, 취미활동
	상담	상담, 양육상담, 사후상담
달빛둥지	생활지원 공동체지지	숙식보호, 생계비지원, 기념일행사, 집단활동, 나들이
	자립지원	자립기술훈련(건강, 안전, 요리, 세탁, 청소), 학력취득지도 교육, 직업교육지원사업(외부교육-피부미용, 미용, 컴퓨터, 외국어, 요리 등)
	양육지원	부모교육, 양육물품 지원
	사회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자료: 김미령(2010) 참조.

이와 같이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많이 있고, 특히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양육지원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시행율은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시설기반의 프로그램은 양육미혼모 가족의 수에 비해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육미혼모의 수가 적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은 외부 자원의 연계나 교육의 기회가 많은 편이나 그 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역간 편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미혼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생기고 있

다. 대부분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운영 중인데, 2010년 8월 현재 전국에 7곳의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다.

〈표 Ⅵ-17〉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010년 11월 현재)

지역	시설명	학교명
서울	애란원	나래학교
경기	고운뜰	홀트고운학교
	에스더의집	동방누리학교
인천	인천 자모원	바다의 별
강원	마리아의 집	미정
부산	마리아 모성원	미정
	사랑샘	미정

대부분의 미혼모 학생들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교 선도규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퇴를 결정한 미혼모 학생들은 출산 후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곤 한다. 출산 전후로 학업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미혼모가 되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서울 애란원에서 운영 중인 나래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후 1년 6개월 가량의 위탁 교육과정을 거쳐 출산 이후에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설사 자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재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래중고등학교의 수업 구성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가 40%, 미혼모를 위한 특성화 교육이 포함된 대안교과 과목이 60%로 이루어져 있다. 대안교과 과목은 부모교육, 건강교육, 인문학 교육을 비롯해 각종 진로직업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미혼모 학생들은 정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크게 정체성, 가족관, 자기진로, 부모관 등의 4가지 분야를 배우게 되는데, 미혼모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나 가정생활에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나래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미혼모 공동생활가정과 미혼모 자립시설을 통해 최장 5년 동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미혼모 학

생이 원할 경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준비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혼모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미혼모는 출산을 거쳐 사회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된다.[33]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의 주도하에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 미혼모 교육기관인 시민중고등학교와 미혼모 공동생활시설인 물푸레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소년 미혼모가 이들 2개 기관과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임신하더라도 퇴학시키지 않도록 학교 생활규정을 바꾸고, 학생이 출산을 원하면 미혼모 대안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34]

(2) 미혼모부자거점기관에서 실시 · 운영되는 프로그램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2010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시 응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Ⅵ-18〉 전국 미혼모부자거점기관

(2010. 12. 31. 현재)

연번	지역	운영기관명
1	서울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	서울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3	부산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4	인천	인천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5	대구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6	대전	대구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7	울산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8	광주	광주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9	경기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0	강원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3)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2010년 8월 16일. <10대 미혼모, "우리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34) 연합뉴스. 2010년 10월 21일. <울산교육청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설립>.

연번	지역	운영기관명
11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2	충북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3	경남	경남 건강가정지원센터
14	경북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15	전남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6	전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7	제주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직업교육 및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 연계 및 정보 제공 포함),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 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기능 수행,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미혼모·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미혼모·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 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제공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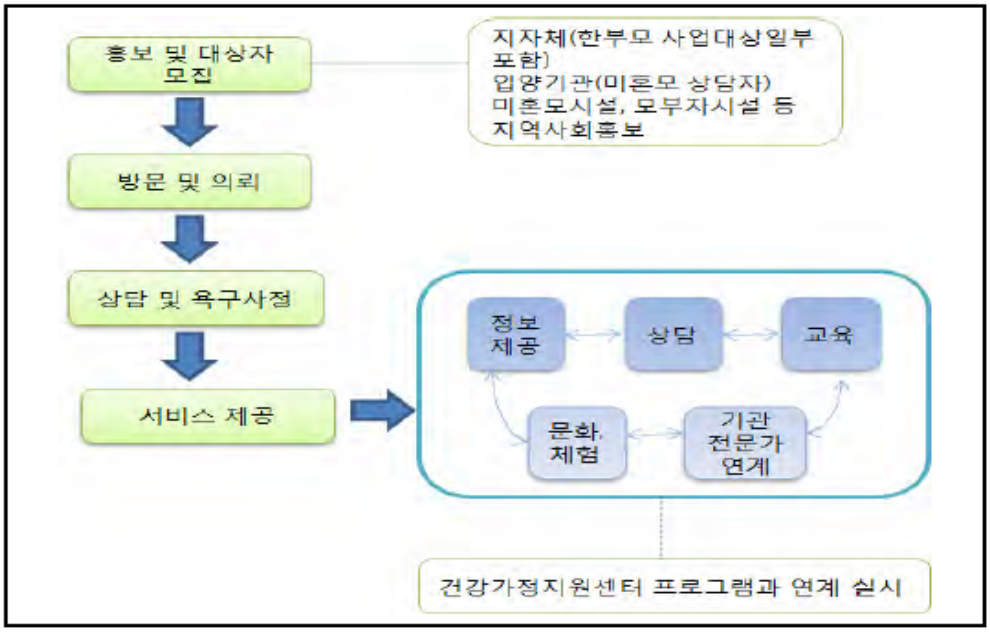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84.

〈그림 Ⅵ-1〉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업무 흐름도

2010년 한 해 동안 미혼모부자거점기관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9〉 미혼모부자거점기관별 시행 프로그램의 예시

운영기관명	프로그램명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와 미혼모를 위한 취업특강(1회 5시간)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이력서작성법, 자기소개서쓰기, 면접기술향상하기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 부모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교실-"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요"> (회기당 2시간, 8회기) <오감발달 부모교육> (2회기)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가족지원 프로그램(1박 2일 가족 캠프>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경남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전! 아름다운 나의 인생>(회기당 2시간, 2회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 탐색 -홀랜드적성탐색검사 실시 및 해석 미혼모 자조모임 <룰루랄라, 우리는 엄마다> -예방접종의 중요성

※ 이밖에 17개소의 거점기관에서는 연중으로 자조모임, 생계 및 위기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현재 전국에 17개소로 확대되어 부모교육, 직업교육, 가족캠프(문화체험), 자조모임, 생계 및 위기지원사업 등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의 문제로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점기관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담신청을 한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 및 교육, 지원, 자조모임, 취약가족역량강화 등으로 연계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력구조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재가미혼모의 발굴이나 적극적인 아웃리치 서비스와 사례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층인터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하듯, 거점기관에 대한 재가미혼모들의 만족도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기관의 인력보강과 함께 지원서비스의 확대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3) 기타

(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미혼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미혼모가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 행복지수 높이기Ⅲ” (연차별 프로젝트)
-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12회기)
  “한부모가정 정서적지원 프로그램” (4회기)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계속 운영)

(나) 미혼모 옹호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한국 내 미혼모 옹호 단체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현재는 활동가들 위주로 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미혼모들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워크샵 및 연구 활동, 미혼모를 위한 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 제공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유쾌한 미스맘마미아 프로젝트 Ⅰ”
- 미혼모 지원 해외입양인 모임 ‘track’: “미혼모 인식 개선 및 해외입양반대 거리 캠페인”
- 수양부모협회: “미혼모-보이스 세라피” 프로그램

2) 양육 미혼모지원를 위한 해외 프로그램

(1) 미국

미혼모에 대해 한국만큼이나 보수적인 미국의 미혼모 정책은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성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 및 대인 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공공 건강 및 과학부(Office of Public Health and Science) 내에 청소년 임신 담당 프로그램 부서(Office of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OAPP)를 두어, 청소년의 성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 있다. OAPP는 지난 25년간 공공건강서비스법 제 20조에 의거, 청소년 가족 생활(Adolescence Family Life: AFL)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 OAPP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35]

① 예방(prevention):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남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절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험한 행동을 삼갈 수 있도록 학교 커리큘럼,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확대가족, 후견인에 대한 지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② 보호(Care): 임신 중인 혹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10대 아빠/남성 파트너, 유아, 부모, 확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연구(Research): 청소년의 성적 건강과 복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청소년 혼전 성적 관계의 원인과 결과, 청소년 임신과 양육 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OAPP에서는 전국의 기관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들이 존재한다. 주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 OAPP 프로그램 외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성인기와 청소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5) 미국 건강 및 대인 서비스국 OAPP 안내 자료.
www.hhs.gov/opa/familylife/.../whoisoapp_v2.pdf 참조.

(가) 성인기 미혼모를 위한 일반 지원 프로그램

성인이 된 미혼모는 저소득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single parent)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중 미혼모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영양 플러스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혹은 모유수유 중인 저소득 여성과 유아, 그리고 5세까지의 아동에게 영양가가 높은 음식과 영양 교육, 건강 관련 혹은 다른 사회서비스로의 의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기준과 주에서 정한 주거 기준, 건강 전문가에 의해 '영양 위험' 상태에 있다고 개별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WIC은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정 금액을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50개 주, 34개 인디언 부족 조직, 사모아, 콜롬비아지구, 괌, 북마리아나 연방,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에서 시행되며 90개의 주(州)단위 WIC 프로그램 기관들이 2,200개의 지역 기관 및 9,000개의 병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36]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취학 전 빈곤 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로 0~5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 학습기술,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을 향상시키는데 여타 아동보육이나 유치원체계와는 확연히 구분되게 지역사회에 기초한 기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포괄적인 건강 및 발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 중인 조기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의 임산부와 3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발달과 아동 건강을 강화하는 목적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임산부나 영아가 있는 가족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다(이진숙・신지연・윤나리, 2010). 한국도 드림 스타트 사업 내에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개입을 보다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37] 또한 양육미혼모의 경우 초기정착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감

36) 미국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프로그램 소개 www.fns.usda.gov/wic/ 참조.

37) 한국도 2007년부터 '드림 스타트' 사업을 시행 중인데, 지역에 따라 인근 미혼모시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2009년 7월~12월 '대구 달서구 드림스타트 센터'와 미혼모 쉼터 '홀트 사랑뜰' 이 연계하여 <프리티워킹맘> 사업 실시 등), 개별 미혼모가정

안할 때, 한국도 이미 시행 중인 드림 스타트 사업 내에 조기 개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기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의 추진을 검토해볼만하다.

이외에 미국 코네티컷 주(2008년 기준)의 미혼모, 이혼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현금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위험군 가족에게 가족 기능 및 양육기술을 증진하고 자활 및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in-home)인 부모 지원 프로그램(Parent Aide Programs), 원가족과의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가족 재통합서비스(Family Reunification Service/Family Centers),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을 낮추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된 부모(Planned Parenthood)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한 허스키 프로그램(HUSKY program)은 코네티컷 주에 살고 있는 아동 및 성인 양육자의 건강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8]

코네티컷 주의 예는 WIC이나 HEAD START와 같은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 외에 개별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지역 내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10대 미혼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TAP/TAPP 프로그램, 주 지원 학교 기반 서비스인 LEAP, 대안학교,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① TAP/TAPP - 학교 기반 프로그램

TAP(Teen Parenting Program)/TAPP(TeenAge Parenting Program)은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10대와 아기,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대를 위한 부모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려는 미혼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학교 안에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 학급과 아동을 위한 탁아시

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2010. 4. 24. 광주 동구청 드림스타트 사업단에서 제공한 미혼모 가정 집수리 및 도배 사례 등)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미혼모부자 가정의 이용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38) OLR Research Report <State Spending on Unwed Mothers>. 2008.3.7. 참조.

설을 함께 운영하여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김유순・김은영, 2008).

대표적인 TAPP 중 하나로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 고등학교의 4T 프로젝트(Teaching Teens and Tots Together)가 있다.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해리슨버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녀 양육・부모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5년 하반기에 이 학교 교사 베스 빔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시민들과 교사들은 고등학교의 탁아실이라는 시설이 일반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10대들의 임신을 오히려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10대 미혼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빔 교사는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39]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TAPP은 7~8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T-RAPP: Teenage Resources to Achieve Pregnancy Prevention)과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에 대한 남학생의 책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TTCB(Together Taking Care of Business)로 구분되어 운영 중인 점이 특징적이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TAPP는 사례관리자가 십대들의 성장과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AFLP(Adolescent Family Life Program)와 임신한 십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Cal-Learn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졸업을 위해 학교 출석과 학점 취득을 의무화하고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보상을 지급한다(홍순혜 외, 2007).

플로리다 주의 피넬라스 카운티는 가장 적극적으로 TP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573명의 학생들이 TPP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는 같은 주의 마이애미-데이드의 71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피넬라스 카운티의 TAP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인 점은 카운티 내 10개 고등학교에 TPP 담당 전문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건강 서비스, 학습 지원, 사회서비스, 상담, 아동 발달, 양육 기술, 유아 발달, 출장 아동 보호 서비스,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0] 이외

39) 오마이뉴스. 2008. 10. 18.

에 Citrus County의 TPP 프로그램 역시 교육과정, 아동보호, 사회복지서비스,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41]

② LEAP/GRADS -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오하이오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LEAP(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프로그램은 미혼모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등록하거나 혹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20대 미만의 미혼모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재정 인센티브, 사례 관리, 아동 보호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이 있다. 재정 인센티브는 학교 또는 GED(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복지급여 외에 62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10대 미혼모들이 출석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이 인센티브는 삭감된다. 10대 미혼모들은 사례 관리자들에게 배정되며, 사례관리자들은 학습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홍순혜 외, 2007).

LEAP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GRADS (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 프로그램이 있다. GRADS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하고, 건강 보호 서비스 및 직업 목표를 갖도록 돕고, 둘째 임신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7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자・여자 청소년들은 모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을 관리하는 차원의 LEAP 프로그램과 달리 GRADS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가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여 임신 전후의 건강과 아동 발달,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통해 가족・지역사회 내 기관 및 조직에 개입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필요로 한다. GRADS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소년들은 임신 기간 중, 그리고 출산 후에 학교에 남아 있는 비율이 높고, 초기 임신 보호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며 저체중 아기 출산율이 낮고 긍정적인 자녀양육실천 기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째 임신율도 낮아 학교에 머무는 확률도 높았다. GRADS 프로그램은 교육부로부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른 16개 주의 모델이 되고 있다.[42]

---

40) http://www.pinellas.k12.fl.us/SocialWork/과 <2010 Parent's Guide - Pinellas County Schools> 참조.

41) http://www.citrus.k12.fl.us/news/teen_parent.pdf <Teen Parent Program> 참조.

③ 특별 학급 및 대안 학교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은 학교 내의 학교(School within School)로서 임신한 10대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특별 수업을 통해 이들의 학업 성취와 졸업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나 미혼부의 아동이 학교 내 보육시설에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생활과 아동양육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부모교육, 아동발달, 건강향상 등에 도움을 제공한다(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7). 예를 들어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시드니 라니에르 공립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교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10대 미혼모들은 대안 학교를 찾아야만 한다.

대안학교 모델은 TAP/TAPP와 달리 미혼모 발생 비율이 낮아 낙인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활용된다. 플로리다 주의 COPE(Continuing Opportunities for Purposeful Education)의 경우 주와 시의 공동 교육 기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미혼모 아동은 대안학교와 연결된 탁아서비스 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미혼모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다. 덴버시의 Florence Crittenton School은 10대모를 위한 비영리기관인 Parent Pathways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교과, 부모교육, 직업교육, 일상생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허남순・노충래, 2005).

이외에 미국 10대 미혼모 정보 싸이트인 Pregnant Teen Help에서는 홈스쿨(home-school),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 챠터 스쿨(charter school)[43], 시설형 프로그램(residential treatment center or program)을 기존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학교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바 있다.[44]

④ 민간 조직 중심: 대학・병원・비영리기관

이외에도 미국의 대학・병원・비영리기관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 http://www.oatfacs.org/GRADS/GRADS%20program%20information.pdf. <GRADS program information>.

43) 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부모·지역 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네이버 영어 사전)

44) http://www.pregnantteenhelp.org/help/alternative-schools-for-pregnant-teens/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메인(Maine) 주에 위치한 메인 대학(University of Maine)에서는 인근 Knox, Lincoln, Sagadahoc 카운티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Teen and Young Parent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내용에는 아버지 놀이 집단, 월별 놀이 집단, 유아 수영이나 아기를 위한 요리 직접 만들기 등의 집단 활동,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를 통과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통수단 제공, 지역사회 지지 시스템 연계, 가정방문 등이 있다. 특히 새롭게 프로그램에 등록한 미혼모나 앞으로 등록 예정인 미혼모들에게는 “Parents As Teachers” 커리큘럼을 사용한다. “Parents As Teachers”는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다. 부모들에게는 임신, 유아 및 초기 아동기 발달, 언어 및 지적・사회적・운동 발달에 유익한 부모-자녀 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다.[45]

미국 동부 뉴욕의 Mount Sinai 병원은 지난 1980년부터 20년간 Teen Mom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3세에서 21세 사이의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만나 애착・유대・발달적 주요단계, 모성의 실체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한 단기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the Summe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을 통해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미혼모 중 84%가 성공적으로 고용되었으며 단지 1명만이 공적 부조를 아직도 받고 있었다. 33%가 대학 교육을 마쳤으며 이는 일반적인 미혼모들이 대학을 마치는 기준인 3%를 훨씬 웃도는 기록이다.[46]

이외에 미혼모들을 돕고 있는 대표적 비영리기관으로는 의뢰된 모든 미혼모에게 20시간의 건강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리조나 지역의 TOPS(Teen Outreach Pregnancy Services), 미국 뉴저지 뉴왁 지역 14세~23세 미혼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Two of You, inc., 직원 40명, 자원봉사자 33명을 갖추고 있는 올랜도 지역 최대 규모의 미혼모 지원 기관인 Insights: Teen Parent Program, 1983년에 설립된 이래 미국 북서 시카고 지역에서 수 천 명의 10대 미혼모 및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ewmom 등이 있다. 이외

45) http://umaine.edu/parenting/parents-as-teachers/teen-parent-program/
46) http://www.mountsinai.org/about-us/newsroom/press-releases/mount-sinais-teen-mom-program-celebrates-20-years-of-helping-teen-mothers

에 미국 버몬트 지역의 부모자녀센터에 대한 소개는 각 나라 사례가 소개된 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2) 영국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높아 미혼모의 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정책과 함께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어린이는 소중하다(Every Child Matters)"는 기치 아래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건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영국 정부는 10대 미혼부부가 출산한 자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10대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10대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대 청소년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아이의 아버지의 보육 참여를 권장하고 출산 전후의 학교 출석을 인정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가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Care to Learn)에서는 출산 후 학습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20세 미만의 부모들에게는 학교를 다닐 동안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런던의 경우 자녀 1인당 1주일에 160파운드(약 342,000원)을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가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등록 보육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47]

(가)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

10대 미혼모를 위한 종합 전문 서비스로 슈어 스타트 플러스(Sure Start Plus) 프로그램이 있다. 슈어 스타트 플러스는 2001년에 18세 미만의 임신한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호 조정된(co-ordinated) 지원을 통해 10대 청소년 임신으

47) 경기여성정보종합 웹진 WoORI>오색시선>해외여성정책.

로 인한 장기적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임신한 10대들에게 부정적 편견 없이 일대일로 슈어 스타트 플러스 조언자(sure start plus advisers)를 배치, 미혼모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여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계획하게 하는 서비스로 주거, 양육기술, 피임정보제공을 통한 재임신 방지, 보건의료서비스, 놀이, 교육 및 탁아, 직업훈련 및 고용으로의 복귀 등 포괄적인 원조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방대한 프로젝트이다.[48]

둘째,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다양성(diversity)'으로 특성화된다. 프로그램 내에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의 강점이며 그렇기에 지역사회의 욕구와 상황-서비스가 욕구 중심인지 타겟 중심인지에 따라, 그 지역의 임신한 10대 청소년들의 비율에 따라 다른 영역 기관과의 관계의 질과 특성 등-에 따라 조정된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mainstream service)를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접근하기 쉽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의 또하나의 특성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기관 및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임신한 10대 청소년과 10대 미혼부모들의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팀은 조언자(advisor)의 일반적인 지원과 전문화된 영역, 예를 들어, 모유수유・금연・임신에 따른 선택사항들, 학교재입학, 10대 아빠들에 대한 개입 등에서 지원이 결합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Wiggins et al., 2005).

Wiggins 등(2005)의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 평가보고서"는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35개 지역과 실시하지 않은 35개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임신한 10대 청소년과 10대 미혼모들에 대한 위기 개입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원이 증가하였고 가정폭력 사건의 빈도가 줄어드는 등 10대 여성들의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주거환경이 향상되었고, 16세 이하 청

48)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8). <2008 늘푸른 포럼: 청소년 양육 미혼모의 삶과 미래> 참조.

소년들의 교육 참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몇몇 개별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특정 건강 목적(예를 들어, 흡연을 줄이고 모유수유를 증가시키는 것)이나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는 눈에 띄는 영향을 덜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부(父)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10대 아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전략이 부족했다. 직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거나 전문가 지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10대 아빠들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under resourced) 평가되었다. 더 많은 재정이 있어야 더 많은 조언자(adviser)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고, 그래야 10대 모에게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 가능하며, 10대 부를 위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대기자 명단도 줄어들고, 장기적인 건강과 발달 이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위기 개입과 지역사회 내 협력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혼부에 대한 개입이나 건강이나 발달과 관련된 장기적인 이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한국의 미혼모 프로그램 개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썬더랜드의 '젊은 부모 프로젝트(Young Parent's Project)'

이 프로그램은 썬더랜드에 살고 있는 젊은 부모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와 16세 이상의 미혼모를 구별하여 각각의 욕구에 맞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주 3회 수업을 제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건 방문자(health visitor)가 1주일에 1번, 1시간씩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미 아이를 출산한 경우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도 받지만 학교복귀가 어려운 경우는 현장교육프로그램(the onsite education provision)에 등록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들을 주 3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간 동안 미혼모들이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공예, 요리, 부모교육, 개인위생 및 여가, 놀이, 활동, 안전 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탁아소가 문을 닫는 이틀 간은 부모들이 아동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센터(Drop-in Center)에서는 부모들이 친구들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 주택, 경력,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방문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경력 연결 조언자(Link Career Advisor)가 일주일에 한 번 부모에게 정보를 주는데, 여기에는 취업정보 및 면접기술 등이 포함된다.

그 결과 16세 미만의 많은 미혼모들이 검정고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에 남아있기를 희망한 미혼모가 많았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미혼모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미혼모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욕구를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 있다(홍순혜 외, 2007).

(3) 호주

호주에서 미혼모들은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우선 호주 연방 정부는 미혼모에게 매달 1천 호주 달러(100만원 상당)의 생활비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미혼모가 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다양한 경로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각 카운슬(지방자치단체)도 '커뮤니티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미혼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용하기보다는 관련 사회단체들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49]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파워 프로그램

호주의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파워 프로그램(Power Program: Parents Overcoming Work and Education Restrictions)'은 2001년 재키 그로징어(Jackie Grozinger)씨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키 그로징어

---

49) 이하 내용은 김민정(2007), 연합뉴스 2010. 7. 12. <'미혼모의 천국' 호주..생활비만 월 100만원> 참조.

씨는 15세 때 미혼모가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10대 미혼모들이 당당히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파워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뒤, 이것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파워 프로그램은 공립 중·고교 일부 시설을 빌려 출산을 전후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미혼모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교까지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미혼모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일부 고교에서는 미혼모들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개설해 두고 있다. 시드니 시내 '시드니 디스턴스 에듀케이션 고교'의 경우 미혼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1년에 3~4차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학업 진도 등을 의논하기도 한다. 시드니 서부 마운틴드루이트에도 미혼모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나) CCCares 프로그램[50]

호주의 캔버라 대학(Canberra College)에서 시행 중인 CCCares 프로그램은 임신한,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실천 모델로 꼽힌다. CCCares는 정규 교육을 받기 힘든 청소년에게 통합적 건강,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CCCares 프로그램은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ACT)의 교육 및 훈련국, 건강 및 주요 정부 기관과 비정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어 "협력을 통한 힘(Power Through Partnership)"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09년 School First National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CCCares 프로그램은 총책임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협력 담당자 1명, 교사 3명, 행정직원 2명(1명은 운전기사), 진학 상담사, e-learning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CCCares 프로그램은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교실, 주방, 놀이방, 수면방, 탈의실, 의료실, 체육관, 외부 놀이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학생들과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통학하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

50) www.canberrac.act.edu.au/.../cccares와 <CCCares at Canberra College> www.schoolsfirst.edu.au/.../peter-clayden-speech-notes-2010-sf-conference.pdf 참조.

다. CCCares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소년들은 11・12 학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하에 간호사 방문, 지역사회 학습 프로그램 이용, 각종 옹호 및 지원 프로그램(약물 및 알콜 중독 프로그램, 가정폭력 프로그램, 이민자 지원, 아동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4명으로 시작한 학생 수는 2010년 현재 1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9명은 임신 혹은 자녀양육 중이고, 이들 88명의 자녀들 대부분은 5세 이하 유아들이다.

CCCares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에서 시작했으나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호주 청소년 미혼모 네트워크(Australian Young Pregnant and Parenting Network)'의 설립을 통해 이제 전국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 청소년 미혼모 네트워크'는 임신 중인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수집,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벤치마킹하기 위한 기초 작업,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로비, 서비스 제공자, 연구자, 정책입안자 간의 의사소통 향상, 청소년 미혼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효과적인 실천 모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 기타

각 사회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혼모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싱글위드칠드런'은 2005년 10월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NPO)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를 위한 교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단체는 미혼모나 미혼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내 및 야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한다. 이 단체에 소속된 미혼모들은 2개월마다 단체 소식지를 받는 것은 물론 매주 인터넷을 통해 모임 등 새 소식을 파악할 수 있다. 미혼모 아이들을 위한 모임에 비용이 들어가면 이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각 종교단체도 미혼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교회 산하 각 교회와 웨슬리미션 등 종교 관련 단체들은 미혼모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적응 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도움을 준다. 또한 호주 정부와 각 사회단체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학업도 마치게 되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용,

요리 등 다양한 취업훈련도 시키고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다.

이 외에 미혼모 학생들에게 교육 및 생활비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안학교 형식의 파라웨스트 학교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점차 미혼모를 위한 학교를 늘릴 계획이다.[51]

(4) 일본

일본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미혼모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혼모만을 위한 특화된 법이나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자가정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모자가정 등에 대해 육아·생활지원책, 취업지원책, 양육비 확보책, 경제적 지원책의 4가지 종합적인 모자가정 자립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2008년도에는 <모자 및 미망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기본방침을 새롭게 정하고 취업지원책을 보다 확충하는 것을 계획한 바 있다(이미정 외, 2009). 여기서는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여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5개의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 한부모여성(single mother)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5개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Zhou, 2009).

첫 번째 프로그램인 GHT(Grants for highly-skilled job training)은 미혼모들이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과 자격(예를 들어, 간호)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격조건에 맞는 지원자들이 2년 과정 이상의 훈련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체 커리큘럼의 첫 2/3를 마쳐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의 마지막 1/3 동안에 월 103,000엔을 제공한다. 간호 학교 과정(2년)의 경우, 지원자들은 첫 16개월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하고, 이후 17개월부터 24개월의 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SPT(Subsidy for Basic or Medium-leve job training)은 시간이나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는 기본 혹은 중간 수준의 전문적 기술을 획득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미혼모는 요리,

---

51)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외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어떤가> 내용 참조.

회계, 가사도우미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수업료의 20%를 지원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AJM(Intensive Assistance for Job Matching)은 일대일 직업 매칭 상담 서비스이다. 상담가는 미혼모를 일대일로 인터뷰하고 어떤 종류의 직업에 지원할지, 필요하다면 더 나은 직업 매칭을 위해 유용한 전문적 훈련은 무엇이 있는지 등 직업 검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일반적인 공공 직업 매칭 서비스에 비교해볼 때, AJM의 서비스는 더 사용자 맞춤의 심화된 내용이다. AJM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2006년 4월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중앙 정부에 의해 100% 보조를 받는다.

네 번째 프로그램인 CWR(Center for Work Resources and Life Support)은 센터에서 여성가장을 위한 모든 종류의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여러 개의 센터가 있음)는 직업 상담, 업무기술 세미나, 정신건강상담, 자녀양육정보, 아동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인 SE(Subsidy to Employers for Provideing Full-time Jobs)는 미혼모를 고용한 고용주가 파트타임 계약에서 풀타임 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례당 300,000엔을 받는데, 고용주는 반드시 지방 정부에 훈련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 파트타임 고용자에게 현직 혹은 비현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보조금은 훈련된 미혼모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풀타임 고용했을 때 제공된다.

(5) 기타

지금까지 소개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Moose Jaw 지역에 비영리기관 Family Service Bureau는 13세에서 24세 부모들이 독립생활과 양육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된 TYPP(The Teen and Young Parent Program)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서비스국과 사스켓추완(Saskatchewan)의 가족 보호 기관과의 협력 하에 개발되었다. 주요 목적은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을 증진하고, 젊은 엄마와 아빠의 양육 기술과 지식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활이라는 관점에서 젊은 부모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안정하고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다.[52]

뉴질랜드의 웰링턴 '해 화라히 타마리키'는 10대 미혼모들만을 위한 고등학교다. 뉴질랜드 내에 임산부 1000명당 35명이 10대일 정도로 미혼모 비율이 높으며 이는 OECE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미혼모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바로 옆 보육교사들이 보살핀다. '해 화라히 타마리키'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우리족 말로서 "아이들을 위한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업과 양육,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들을 위한 교육, 졸업 후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53]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없고 미혼모 가정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여 미혼모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김유경 외, 2007). 따라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아동이 있는 가족(families with chilren)'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미혼모 가족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이미정 외, 2009).

이와 유사하게 노르웨이도 미혼모 가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및 관련 서비스는 노르웨이 노동 및 복지서비스청(office of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 NAV)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기간 동안 미혼모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 수당(educational benefit) 외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전환 수당(transitional benefit), 일이나 학업을 하는 동안 자녀를 보호해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녀 보호 수당(child care benefit), 직업을 찾아 이사해야 할 때 지급되는 이사지원금(removal grant) 등의 현금 지원 외에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선지원(advance payment) 받을 수 있는데, 자산 조사를 통해 금액은 100%, 75%, 50% 등으로 조정된다. 이때 부모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정된 금액을 NAV office에 납부해야 한다.[54]

---

52) http://mjfsb.org/
53) 2010. 8. 20. MBC '김혜수의 W' <우리도 엄마예요-뉴질랜드 10대 미혼모 학교>
54) http://www.nav.no/English/Stay+in+Norway/ <benefits for single mothers or fathers>

3) 미국 버몬트 부모자녀센터(Parent/Child Center) 사례

여기서는 양육 미혼모를 위한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에디슨 카운티(Addison County)의 부모자녀센터(Parent/Child Center)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55] 에디슨 카운티 부모자녀센터는 버몬트 부모자녀센터 네트워크(Vermont Parent/Child Center Network)의 일원으로서 가족에게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올바른 출발(right start)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모자녀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다음의 목표들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 가족들의 역량강화(strengthen families)
- 어린 가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가족들이 겪는 주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
- 모든 어린이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10대 청소년들이 가족생활에 대한 책임감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
-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 활동을 고취시키는 것
-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
- 다른 지역사회 그룹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에디슨 카운티의 부모자녀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부모 훈련(Parent Training)
- 아동 양육(Child Care)
- 가정 방문
- 놀이집단
- 예방 활동
- 지역사회 개발

55) 이하 내용은 에디슨 카운티의 부모자녀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Dad Program)

부모 훈련 프로그램은 젊은 부모들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일주일에 21시간 동안 식사준비에서 자녀 발달과 적절한 훈육에 이르는 아동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부모들은 작은 급료를 벌 수 있는 직업-현장 아동 care, 식당, DAD's Detailing, 사무실 등-에 배정된다. 많은 부모들이 센터에서의 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이후 교육의 발판으로 삼는다.

또한 에디슨 카운티 부모자녀센터는 자녀와 살고 있는 젊은 아빠들에게 직업 훈련과 자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Dad 프로그램으로 국가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준비되기 전에 아버지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처음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직업 훈련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오지만 점차 직업적 초점만큼이나 부모 훈련과 관계 훈련에 가치를 두게 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센터 프로그램 내에서 성역할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갓난아기부터 3살 까지 아이 돌보기, DAD 자동차 부속 가게에서 일한다. 함께 메뉴를 짜고,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족의 밤" 행사의 게임과 활동을 준비한다.

기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상담
- 운전 교육
- 중등학교 졸업 프로그램(secondary school completion program)
- 교통수단 제공
- 영양 교육
- 정보제공과 의뢰
- 10대 미혼모 패널
- 위기 개입
- 양육 수업

버몬트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The 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 of Vermont: PIRC Vermont)는 버몬트 지역의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지원·정보·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버몬트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는 버몬트 부모 정보 센터(Vermont Parent Information Center: VPIC)와 미국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버몬트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PIRC Vermont)는 버몬트 부모 정보 센터(VPIC)와 16개 버몬트 부모 자녀센터 네트워크가 협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16개 버몬트 부모 자녀센터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관 목록은 아래와 같다.

- Addison County Parent/Child Center
- Champlain Islands Parent Child Center
- Early Education Services of Windham County
- Family Center of Northwestern Vermont
- The Family Center of Washington County
- The Family Place
- Lamoille Family Center
- Lund Family Center
- VNA/JANET S. Munt Family Room
- Milton Family Community Center
- NEKCA/Parent Child Center South
- NEKCA/Parent Child Center North
- Orange County Parent Child Center
- Rutland County Parent Child Center
- Springfield Area Parent Child Center
- Sunrise Family Resource Center

버몬트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의 목적은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부모들과 강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가족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Vermont Family Network: VFN)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56]

(1) 가족 지원 프로그램(Family Support Program)

① 가족 지원 상담 프로그램(family support consultant program)

가족 지원 상담 프로그램은 부모와 가족 성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혹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지원 상담원들은 모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욕구에 대해 상담해주도록 훈련받은 인력들이다.

- 가족들을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것
- 부모들에게 교육, 건강제도, 성인기 서비스로의 전환,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주는 것
-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이 진단 초기 단계나 아동이 가족에 불러일으키는 역동에 적응하는 동안 또는 또다른 변화, 도전, 전환의 시기에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
- 가족들이 학교, 법, 자녀에 대한 모임을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

② 발달 장애 프로그램(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gram)

발달장애프로그램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최신의 접근가능한 정보와 원조, 필요하다면 타 기관으로의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전문가는 가족과 개인들이 복잡한 보호 시스템 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질문에 답하고, 그들을 자원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시스템 변화를 위해 옹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과 개인들을 지원한다.
-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의 부모들이 함께 상호 지지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어 주거, 고용, 의료보호에 대한 정보를 얻

56) 이하 내용은 버몬트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 홈페이지(www. pircvermont. org)에서 소개된 프로그램 정보 내용에서 발췌

을 수 있도록 모임을 주선한다.

③ 가족 재정지원 프로그램(Family Fund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복리와 지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부모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지지 집단 펀드는 특정 지역에 지지 집단을 꾸리거나 진단별로 지지집단을 꾸릴 때 드는 초기 비용에 도움을 준다.
- 임시 펀드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학대예방 펀드, 건강과 인간 서비스, 버몬트 아동재단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된다.

④ 전환 자원(Transition Resource)

직원들은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의 부모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원조를 제공한다.

많은 부모들은 고등학교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것이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정보와 자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된다. VFN의 부모 전환 자원 상담가는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전환 자원 상담가는 Chittenden County에 있는 16세에서 21세의 심각한 정서적 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발굴(outreach)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www. getATstuff.com

이 웹싸이트는 온라인 상에 의료 장비, 차량, 지원기술(AT: Assistive Technology)를 분류하여 놓는 것이다. 누구라도 “해당 물품 사용 가능”이라고 써놓을 수 있고, “해당물품 필요함”이라고 써놓을 수 있다. 직접적 서비스를 위해 무료 전화인 888-827-2714에 전화할 수 있다.

⑥ 부모 매칭 프로그램(Parent Match Program)

부모 지원 상담가가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들 중 다른 부모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동료 부모들을 연

결시켜준다. 연결은 진단, 처방, 경험, 가족 상호작용, 기타 구체적 질문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⑦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Parent Training & Inforamtion Center)

VFN은 버몬트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Parent Trainig & Information Center: PTI)이다. VFN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돕는다.

(2) 교육 및 전문가 연수(Education & Professional Development)

① 출판, 워크샵, 훈련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는 워크샵, 발표, 부모·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행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전문가 모임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이 가족 중심의 보호와 부모 개입,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양육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② Family Faculty Program

가족들이 그들의 통찰력, 경험, 지식을 학생과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는데, 소집단 토론에서부터 대규모 패널 발표, 학생과 가정방문, 한 가족과 학생과의 40시간의 심화 경험 등이 방안들이 있다.

③ Vermont State Parent Information & Resource Center

VFN의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PIRC Vermont)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돕고 부모와 학교가 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PIRC Vermont는 16개 부모자녀센터를 지원한다.

(3) 자녀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초기 개입 프로그램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VFN)의 치텐든 카운티 아동 통합 서비스-초기개입 프로그램(Chittenden County Children's Integrated Service-Early Intervention Program: CIS-EI)은 버몬트 주 차원의 임신한 여성과 자녀를 위한 종합 서비스

시스템의 일환이다.

- 0~3세의 발달 지체나 발달지체가 따를 수 있는 건강 조건의 아이들을 돕는다.
- 집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초기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부모와 양육자의 능력을 놀이 기반의 발달적 개입에 통합시키도록 촉진한다. 이것은 흥미롭고 자녀와의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개입 방법이다.
- 안전, 교육, 자녀의 복리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족을 지역사회 자원에 연결시킨다.

(4) 옹호

① 가족 목소리(Family Voices)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VFN)은 시스템 변화를 옹호하고 가족들에게 건강 보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안인 가족 목소리의 버몬트 지부(the Vermont Chapter of Family Voices)를 맡고 있다. 이 법안은 특별한 건강 보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가족 중심, 지역사회기반, 포괄적・협력적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능한 건강 보호 서비스 옹호자들로 구성된 풀뿌리 가족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는 대중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모든 건강 보호 수준에서 의사결정자로서 포함되는 기회를 증진하고, 가족 리더십을 개발하고 가족과 전문가 간의 본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지한다.

② 시스템과 법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는 서비스, 재정지원,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주정부・연방 정부 기관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 가족들이 연방과 주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법률가와 정책입안자에게 연결시켜준다.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는 버몬트 장애 연합과 아동 연합과 같은 옹호 단체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인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

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버몬트 지역의 사례는 개별 센터가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면서도, 센터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정책 제언 및 과제

미혼모자시설이나 미혼모자 그룹홈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모든 미혼모자가족들이 입소하기는 힘들 뿐 만 아니라 모든 미혼한부모가 가족들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미혼모·부자 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혼모·부자 가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이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있는 것처럼, 미혼모·부자 가족 역시 “비정상가족”이 아닌, 수많은 가족 유형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개발·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사회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은 이제야 우리 사회가 미혼모자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낙태나 입양 결정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이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 역시 암묵적으로 당사자주의만을 내세워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유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 가족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지원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혼모가족지원을 몇가지 정책과제를 범주별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수준 확대

양육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수혜율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급자선정시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혼모들의 평균소득은 월 124만원 수준이었는데, 최저생계비의 13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은 2인가구 기준 111만원으로 평균적인 소득과 평균적인 자녀수(1명)을 가진 취업미혼모가구는 소득기준에서 탈락된다. 이에 따라 양육미혼모들의 근로동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50% 또는 180%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150%로 설정할 경우 129만원 수준으로 평균소득 수준의 취업양육미혼모들이 간신히 포함되며, 180%로 설정할 경우 155만원 수준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양육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 Ⅵ-20〉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2010년 기준)

(단위: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00%	858,747	1,110,919	1,363,091
130%	1,116,371	1,444,195	1,772,018
150%	1,288,121	1,666,379	2,044,637
180%	1,545,745	1,999,654	2,453,564

또한 양육미혼모들의 자녀양육비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입양보다 친부모의 양육을 우선시하는 헤이그협약 정신에 기반하여,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수당은 최소한 입양자녀에 대한 수당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행 5만원에서 최소 10만원 이상의 수당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1인당 자녀의 평균양육비의 산정액을 고려할 경우(<표 V-21> 참조), 자녀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인 식료품과 의복 비용을 합산하여 2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양하지만, 국가지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과 의복비에 대한 지원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2009년 자녀양육비를 계측한 연구에 따

르면, 아동 1인 양육시 식료품비는 월평균 15만 6천원, 의복·신발비로는 월평균 4만 4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비를 아동 1인당 20만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86만원(2인가구 기준)과 비교할 때 근소한 차이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한 미혼모가구에게 20만원은 충분한 수준의 생활보장이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동의 식료품과 의복비는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표 Ⅵ-21〉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단위: 만원)

	주거 및 광열 수도	가구 집기 가사 용품	교양 오락	교통 통산	기타 소비 지출	식료품	의복 신발	보건 의료	교육	사교육	전체
비용	5.5	1.3	2.6	11.2	20.4	15.6	4.4	1.6	15.3	23.0	100.9

자료: 김승권외(2009)에서 재구성

2) 아이돌보미서비스 긴급지원 확대

양육초기에 있는 미혼모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육미혼모들은 일반 한부모가족이나 맞벌이부부와는 달리 사회적 고립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임파워먼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초기의 미혼모에게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앞의 Ⅲ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이용률(7.5%)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 미혼모(11.3%)와 재가미혼모(0%)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한 집단의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여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만 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94.9%)이 매우 높았던 10대 미혼모 가정의 돌봄기관 이용 비율이 낮다는 점은 그간 보육 정책이 상당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함께 미혼모 자신의 자립을 위한 준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자녀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의 절반이상이 자녀를 돌봄기관에 보내고 있지 않은데, 이들이 돌봄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2세 이하를 맡아주는 곳이 없거나 시설이용료 부담, 시설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2/3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비취업 미혼모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또한 생계 활동이나 자립 준비를 위해 돌봄기관의 이용이 절실하지만, 아이돌봄의 문제로 취업훈련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응답 역시 45%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원칙적으로 시간제로 이용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0세아에 대해서 종일제로 이용가능한 제도가 신설되었다. 양육미혼모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도와 사회적 편견을 감안하여 종일제 돌보미제도를 만 2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아를 받지 않는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영아를 둔 미혼모들의 경우 특히 긴급상황시 아이돌봄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여 제도이용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양육미혼모들은 관공서 이용과 이웃관계에서 가장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이면서 이웃일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인식개선은 중요한 작업이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시 기본교육 커리큘럼 내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는 1회 포함되어 있는 바(아이돌보미사업안내 2010), 이러한 커리큘럼을 보강하여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해당 가구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양육미혼모 친화성 제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양육미혼모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미혼모들은 전체미혼모의 절반을 다소 넘는 수준이었고, 특히 만 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수급율은 절반이하로 매우 낮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양육미혼모에게 친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양육미혼모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방식에서 변화가 요청된다. 첫째, 부양의무자 규정에 미혼모 특례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그림 Ⅵ-2).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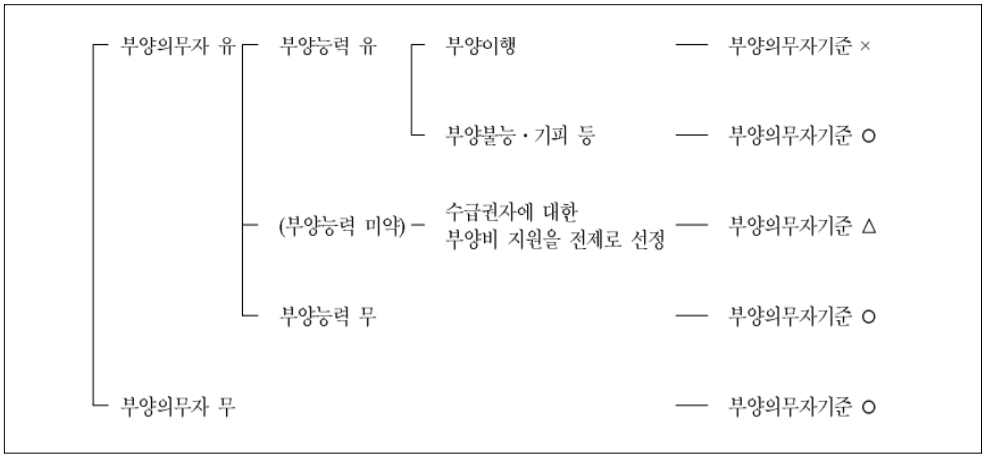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1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8.

〈그림 Ⅵ-2〉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도해

양육미혼모들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풍토와 원가족 자체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단절이 이루어지며, 결국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양육미혼모가 전체 양육미혼모의 79.4%나 되었으며,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따로 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양육미혼모의 경우에는 88.6%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미혼모들에게 부양의무자 유무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상의 절차로 인해 양육미혼모들이 생계비지원 신청 자체를 기피한다는 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단절이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미혼모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조사에서 예외조항임을 명시하여, 부양의무자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수급자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의 예시항목에 미혼모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미혼모에 대한 현장의 판단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

(중략)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1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9.

둘째,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개선의 움직임도 있으나(노대명 외, 2004; 여유진, 2005) 아직까지 통합급여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자활능력이 높으면서

각종 현물지원이 절실한 양육미혼모들의 경우에는 통합급여방식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자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 외의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 각종 혜택 등을 위해 빈곤선에 머무르는 '빈곤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양육미혼모들에 대한 제도친화성의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방식 또는 적어도 부분급여방식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요청된다.

4) 양육미혼모의 취업훈련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취업훈련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사도 미혼모들의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노동부에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우선선정직종훈련, 고용촉진훈련, 자활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계좌제) 등은 주로 여성가장 및 전업주부 대상 무료 직훈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육미혼모들의 이용이 용이하다.

(1)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을, 취업 성공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각각 지급. 지원대상은 4유형으로 구분.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자 탈북자,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이상 1유형: 15-64세),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이상 2유형: 15-29세), 50세 이상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구직자(이상 3유형: 18-64세),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등(이상 4유형: 18-64세)임. 이들에게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등의 단계로 취업지원함. 1단계에 진입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2단계에서는 생계유지수당, 3단계를 거쳐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을 각각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신청을 통해 이용.

(2) **우선선정직종훈련**: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혹은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가운데 비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일부를 지원. 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한함.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통해 적합한 수강과목과 훈련기관을 안내받아 해당 훈련기관에서 수강과목을 선택, 수강.

(3) **고용촉진훈련**: 주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주부,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시군구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가능. 거주지 시군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혜자를 선정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훈련 위탁하며, 이들에게는 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이 지원.

(4) **자활직업훈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에서 노동부 지정 훈련과목 이수. 훈련비 전액, 교통비 식비 자활수당 등 지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 후 센터에서 시행하는 직업적응훈련 이수 후 훈련기관과 훈련과정 선택하여 수강.

(5)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구직자(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음)에게 연 200만원 한도의 계좌를 발급하고 그 계좌에서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도록 함. 훈련비 부담은 정부와 개인의 자비부담으로 나누어지며 과정에 따라 자비부담 비율이 상이함(20%에서 40% 사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계좌발급 신청.

(6)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청년 여성, 한부모 가족 대상 고용지원 및 훈련 서비스: 새일센터의 각종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공모하는 직훈사업이 대부분 무료 직업훈련 사업들이며, 노동부 사업들과는 달리 새일센터에 직접 수강등록을 하고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수강함.

자료: http://www.moel.go.kr/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여성부 홈페이지

그러나 정작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육미혼모들의 직업훈련 욕구와 참여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수강시 발생하는 자녀돌봄 문제와 함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 및 '직업훈련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 연령이 2세 이하인 집단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양육미혼모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미혼모들에게는 고용지원관련 정보 제공,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못지않게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함께 이들에게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인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수강자들을 위한 보육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나, 취업훈련참여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취업지원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한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인 읍면동사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미혼모에 한해 보육수당 혹은 보육료 환급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보미 우선파견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양육미혼모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 등과 연계해주고, 이들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계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담당 인력에게 관내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의 정보를 주지시키고 취업 희망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링킹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

가족역량강화사업안에 미혼모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4장에서 이미 제안한 바 있다.

5)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확대

미혼모를 위한 주택정책은 기초생계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지자체 개발공사, 지자체가 협력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보 물량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아 대다수 신청자는 몇 차례 시도하다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기초생계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저소득 주택정책 대상 1순위이지만, 동일 순위의 지원자가 많은 상태에서 극히 일부의 양육미혼모 만이 주택정책의 혜택을 입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택 제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본고에서는 몇 가지 주거지원제도를 제안한다. 우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현재의 매입임대 형태로 모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린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양육미혼모나 여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주택을 여성가족부가 직접 매입하여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57] 모자원의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미혼모자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미혼모들간의 자조적인 형태의 삶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단계에서는 유용한 주거지원방안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현재 모자원의 운영방식이 시설별로 이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들이 지나치게 이들의 귀가시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운영방식의 차이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은 개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현재 모자원 입소자가 자녀를 키우는 책임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저축여부를 체크하거나 귀가시간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는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거나 미혼모자 가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57) 주택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와 업무 협조 가능하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확보가 필요하다.

6) 양육 미혼모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양육미혼모의 자립여건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취업 여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혼모에게는 직업훈련 및 일자리가, 한계적 일자리를 전전하는 미혼모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Ⅴ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육미혼모들의 직업훈련 욕구와 참여 정도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연령이 낮고,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으며, 시설에 있는 양육미혼모인 경우, 미혼모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시설에서 출산을 경험한 후 아직까지 퇴소하지 않았고, 자립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혼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 비해, 연령이 높고,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시설 경험이 없는 재가미혼모들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미혼모 집단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 입소 경험이 없는 재가미혼모는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미혼모들이 지역사회 내의 일반적 거주 형태로 살게 될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미혼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원활히 연결해줄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양육미혼모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서비스 전달 창구가 일반 대상 집단을 겨냥한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인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인 읍면동사무소와 건강가정센터(미혼모부자거점기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 중 양육미혼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양육미혼모들의 이용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전달체계인 동사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의 상호협력 및 고용, 교육, 의료, 보육, 상담 등과 관련된 일반인 대상 유관조직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양육미혼모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Ⅵ-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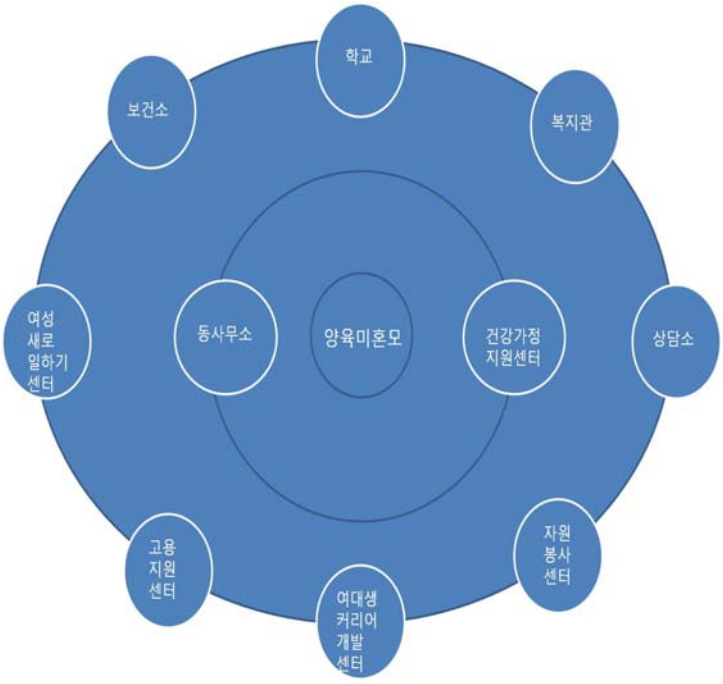

〈그림 Ⅵ-3〉 양육미혼모 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 예

이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한 양육미혼모에게 지역사회 내 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등의 이용자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수강자에 대한 보육지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육미혼모가 취업훈련이나 직업활동을 하는 동안 집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나, 지역사회 내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자녀를 돌보아주는 서비스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양육미혼모에게 최일선 전달체계는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담당인력이므로, 이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양육미혼모들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의 차원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간 네트워크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장기적 안

목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취업 특강, 부모교육 등 정보 제공으로만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의료지원, 미혼모의 학업지속, 미혼모가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제공-상담-학업지속-취업 지원-지속적 사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모시설을 기반으로 한 양육미혼모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한 시설 내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다보니, 각 양육미혼모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은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 또,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통해 일종의 사례관리 체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시설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도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개별화된 플랜 내에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7) 지역사회 내 단체, 기관, 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 내 단체, 기관, 사업장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혼모부자가족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미혼모들의 취업이 용이한 사업장 혹은 기업(제과제빵업종, 커피점 등)과의 긴밀한 연대 관계를 통해 “직업훈련-직업알선-직업유지”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미혼모를 풀타임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볼만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자녀 양육시 의료적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혼모부가 직업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울산시는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형성에 나서는 경우이다. 울산시 교육청이 청소년 양육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단지 인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미혼모 학생에게 퇴학 요청을 자제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이 꼭 나서지 않더라도 호주의 '싱글위드칠드런'이나 미국의 버몬트 지역의 '부모자녀센터'의 경우처럼, 미혼모부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역사회 내 단체, 기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미혼모부자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미혼모부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 미혼모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한부모가족으로서 동질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혼가정의 자녀, 사별가정의 자녀, 미혼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편견은 각기 다르며, 이들을 위한 세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각 가족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들은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한부모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양육을 결심하게 되면서 친정식구와 소원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도움이 절실하며,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이 양육 미혼모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
- 미혼부 프로그램: 지금까지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쪽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주로 미혼모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미혼부자지원시설이 2007년 인천에 처음으로 생기는 등 점차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미혼부는 원가족과의 밀착 정도가 높아 어느 정도 원조를 받고 있기는 하나, 양육과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는 오히려 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에디슨 카운티의 부모자녀센터에서 시행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미혼부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운영: 현재의 청소년 미혼모학습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전국 7곳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미혼모들의 생활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다. 향후 4T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미국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 고등학교나 10대 미혼모만을 위한 고등학교인 뉴질랜드의 '해 화라히 타마리키'와 같은 학교 기반의 청소년 미혼모 학교 운영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청소년 미혼모수가 많지 않은 현실임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실하다고 판단된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단기 기술훈련을 통해 취득가능한 자격 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정기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가능하므로 실제 미혼모의 자립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등의 세분화된 기준에 따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9) 미혼모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및 핵심 기관 육성

미국 버몬트 지역의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미혼모 지원 기관 및 시설에 유용한 정보 및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핵심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들이 정보 수집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업무까지 병행한다면 업무의 과중으로 실천의 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혼모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모 정보 및 자원 센터와 같은 핵심 기관에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조사 및 기존 정보를 계속 축적해나간다면, 일선 기관 및 시설이 보다 질높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효과적이리라 기대된다. 또한 핵심기관은 서비스 제공 기관 뿐 아니라 미혼모가 기관이나 시설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형 센터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미혼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 지원 기관 및 시설 내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한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적어도 미혼모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국의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의 조언자(advisor)와 같이 각 미혼모의 개별화된 욕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미혼모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이들 가족욕구 사정(assessment) 및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 나아가 원가족관계 회복이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연계에 전문인력 등 최소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10) 생애 주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재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소 기준인 초기 유아기 프로그램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양육 미혼모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이미정・김혜영・선보영, 2010). 양육미혼모가 직업을 가지고 자녀가 유아기가 지나면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서비스 욕구가 생기게 된다. 미국 버몬트 가족 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부모 전환 자원 상담가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발달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발달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생각해볼만하다. 영국의 슈어 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과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전자는 10대 미혼모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후자는 빈곤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동해서 시행되고 있다.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빈곤층 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각 지역의 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 주민센터, 병원, 학교 등이 이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나라도 이와 유사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 미혼모 프로그램과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1) 미혼모 옹호(Advocacy) 및 예방 프로그램 실시

미혼모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청소년 임신 담당 부서(OAPP)는 미혼모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미혼모는 학업 중단의 위험이 있고, 자녀양육기술이 부족하여 청소년미혼모 본인의 건강 및 자녀의 건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미혼모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 교육의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미혼모 옹호 프로그램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미혼모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부모나 자녀양육자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인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이나 제도, 프로그램 시행 상 미혼모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나 청소년 쉼터를 통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나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미혼모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비결혼자"로서의 수치심보다는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영실, 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은화, 2005,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3):39-59.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입양홍보회 참여가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귀경, 2003, 「산전교육이 미혼모의 분만과 산후관리지식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 외,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령, 2010, 「청소년미혼모 사회교육 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07, 「양육미혼모의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수정, 2008,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학술상 수상논문.

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순・김은영, 2008,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늘푸른여성지원센터.

김지혜, 2002, 「미혼모를 위한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개입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2001, 「집단 미술치료가 미혼모의 자기존중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련, 2002,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숙・안상수・안미영 외,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하위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김혜영, 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안상수, 2009,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외, 2009, 「미혼부모와 그들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노대명・신영석・이태진・최승아, 2004, 「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미향・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1-11.

문의승・임애덕, 2006, “미혼모・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논문집」 26집:393-422.

박복순・전혜정, 2007,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2007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미 외,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순호, 1998, “한국 입양아의 미국내 입양의 사회・제도적 환경: 한・미 양국간의 입양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8:76-92.

박인선, 199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한국모자보건학회 제3차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모자보건학회.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8(3):45-70.

배태순, 1989, “한국 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창간호:201-244.

_____, 1995, “입양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107-126.

_____, 2000,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9:227-246.

변용찬・이삼식・김유경, 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99-19호.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1」.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 1 회 여성복지

세미나 자료.

서정애, 2009, “십대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281-308.

석창훈, 2008,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안순덕 외,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101:2-110.

여성가족부, 2010, 「아이돌보미사업안내 2010」.

우병창, 2001,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 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가족법연구」 16(2):169-202.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은기수・권태환, 2002, “한국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5(1):5-32.

이미정・김혜영・김승연・류연규, 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김혜영・선보영, 201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2008,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 2009,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복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삼식, 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임순 외, 2010,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 2007년 제 3차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53(6):512-519.

이진숙・신지연・윤나리, 2010, 「가족정책론」. 서울: 학지사.

전은희, 2004, 「사이코드라마가 미혼모의 우울, 충동성,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기원・김만지, 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재훈, 2003,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성차별적 특성 분석: 독일 보육수당・휴가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가을:257-289.

차명진・제석봉, “미혼모와 대학생의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생활자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175-199.

최유리, 2002, “음악활동이 미혼모의 불안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모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실, 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황정미・김혜영 외, 2007, 「가족돌봄의 사회화 등 가족정책 과제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허남순・노충래,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홍순혜・김혜래・이혜원・변귀연・정재훈・이상희,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Institute for Amercian Values, 1999, *The Age of Unwed Mothers*.

Lee, Bong Joo, 2007, Adop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6:75-83.

Barlow, Anne, 2007, Rollenleitbilder im Familienrecht des Vereinigten Königsreichs, in: BMFSFJ, Eigenverantwortung, private und öffentliche Solidarität - Rollenleitbilder im Familien- und Sozialrecht im europäischen Vergleich, Nomos Verlag, S.234-257.

Duncan, S., and R. Edwards, 1999, *Lone Mothers, Paid Work and Gendered Moral Rationalities*, London: Macmillan.

Eggen, Bernd, 2005, Familienpolitik, Geburtenhäufigkeit und Einkommensarmut in der EU, In: Statistische Monatsheft des Statistschen Landesamtes Baden Württemberg, Nr.4, 8-11.

European Commission, 2007,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Parent Households*.

Eurostat, 2007, Sozialschutz in der Europäischen Union, *Statistik kurz gefasst*, 99/2007.

Freud, David, 2007, Reducing Dependency, Increasing Opportunity: Options for the Future of Welfare to Work. *An Independent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Needs, Corporate Document Services.

Martin, C. Vion, A., 2002, Lone Parent Families, Work and Social Care, *EU-Soccare Project*, Work package 2.

Millar, Jane, 2003, Social Policy and Family Policy, in: Alcock, Pete u.a., *Social Polic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pp. 153-159.

ONS(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Social Trends 38*.

Polakow, Valerie et.al., 2001, *Diminished rights: Danish lone mother families in international context*, Policy Press.

Prognos AG, 2009,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für Alleinerziehende*, Basel/Berlin.

Sainsbury, Diane, 1994, Women's and men's rights: gendering dimensions of welfare state, in: Sainsbury, D.(ed.), *Gendering Welfare State*, Sage Publications.

Saraceno, Chiara, 1994, The Ambivalent Familism of the Italian Welfare State, in: *Social Politics*, 1. Jg., Heft 1, S.60-82.

Statistics Denmark, 2009, *Statistical Yearbook*.

Wiggins, M. Rosato, M., Austerberry, H., Sawtell, M. and S. Oliver , 2005,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 Plus: Final Report*,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Zhou, Y., 2009,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for Single Mothers in Japan: 2003-2008, *Japan Labor Review*, 6(2), 91-107.

부 록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자립기반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성 및 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자립기반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혼한부모들의 생활실태파악과 더불어 현재의 미혼한부모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진단하고, 앞으로 보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응답내용은 향후 효과적인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연구책임자 김 혜 영
주 소 서울 은평구 진흥로 276
문의 사항 선보영 3156-7143/이재경 3156-7162

성 별	1. 여자 2. 남자☞ **조사중단**	나이	_____ 년도 ____ 월 생
혼인 여부	1. 미혼 2. 기혼 ☞ **조사중단**		
자녀 유무	1. 있음 ->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남 _____여 2. 없음 ☞ **조사중단**		
비 고	응답일자 : 2010년 11월 _____일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 조사중단은 본 설문지 조사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므로 더 이상 문항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귀하의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귀댁 자녀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 주십시오.

문1) 귀하의 자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의 연령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① 1명 (_____세)
② 2명 이상 (_____세, _____세,_____세,_____세)

문2)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2-1)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이나 기관에 보냅니까?
① 보낸다 (보내는 곳: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사설학원
④ 기타 _____) ☞ **문2-2**
② 보내지 않는다 ☞ **문2-1-1**

문2-1-1)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②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③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으므로
④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⑤ 보육료가 부담되어
⑥ 입학거부나 놀림 등 차별을 받을까봐
⑦ 기타 (자세히: _____)

문2-1-2) 자녀를 누가 주로 돌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① 봐주는 사람 없음 ② 본인
③ 나 이외의 가족 ④ 파출부·도우미
⑤ 이웃·친구 ⑥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⑦ 기타(자세히: _____)

문2-2) 평상시 자녀가 돌봐줄 사람이 없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_____시간) ② 없다

문3)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해주세요.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3-1) 자녀가 학교공부를 마친 후에 방과후 교실이나 학원에 다닙니까?
① 다닌다(다니는 곳: ① 학교내 방과후교실 ② 사설학원

③ 공부방 ④ 기타 _____)☞ **문3-2**

② 다니지 않는다 ☞ **문3-1-1**

문3-1-1) 자녀를 방과후 관련 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골라주세요.

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②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 ④ 자녀가 다니기 싫어해서
⑤ 차별을 받을까봐 ⑥ 기타 (자세히: _____)

문3-2) 방과 후에 자녀를 누가 <u>주로</u> 돌봅니까? <u>하나만</u> 골라주세요.

① 봐주는 사람 없음 ② 본인
③ 나 이외의 가족 ④ 파출부·도우미
⑤ 이웃·친구 ⑥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⑦ 기타(자세히: _____

문3-3) 평상시 자녀가 돌봐줄 사람이 없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_____시간) ② 없다

문4) 귀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이용한 적 없음
② 경험 있음(☞ 1개월 기준 _____회/ 1회당 _____시간 이용)

문5)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u>하나만</u> 골라주세요

①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② 양육시간의 부족
③ 양육비·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④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등교거부, 학교친구로부터의 따돌림, 반항 등)
⑤ 자녀의 학습부진
⑥ 일상적인 자녀학습관리(숙제, 예습 및 복습, 알림장 등)
⑦ 자녀의 훈육지도(버릇, 규범 등) ⑧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생활 부적응
⑨기타(자세히: _____)

문6) 귀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골라주세요

① 필요한 서비스가 없다 ② 의료지원서비스 ③ 돌보미 서비스나 보육지원
④ 심리・정서적 상담 ⑤ 기초교과 지도 ⑥ 예체능 등 특기교육
⑦ 진학지도 ⑧기타(자세히: _____)

문7) 귀하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양육비 등 생활비의 부담 ② 자녀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
③ 향후 결혼의 어려움 ④ 직장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
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⑥ 주변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
⑦ 아버지 없이 자라날 아이장래에 대한 우려
⑧ 기타(구체적으로)

문8) 현재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자녀 ② 나 자신 ③ 부모님 ④ 형제/자매
⑤ 같은 미혼모 ⑥ 자녀의 아버지 ⑦ 기타____

문9) 다음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십시오.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내가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아이에 매여 전과 같이 자유롭게 지낼 수 없어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문10) 귀하는 그동안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문11으로** ② 하지 않는 편이다 ☞**문11으로**
③ 하는 편이다 ☞**문10-1로** ④ 자주 있다 ☞**문10-1로**

문10-1) **(문10)에서 ③④번이라고 응답한 분만)** 귀하가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다음은 자녀의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것을 골라 √표 해주십시오.

문11) 귀하가 임신할 **당시(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기준)** 귀하와 귀하 자녀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_____세 , 자녀의 아버지:_____세

문11-1) **당시** 아이 아버지의 가족상황은 어떠했습니까?

① 가족에 대해 아는 바 없었다 ② 부모님 모두 생존
③ 부모님 가운데 한분 생존 ④ 양친 모두 사망
⑤ 기타(자세히:_____)

문12) 귀하가 임신할 **당시** 자녀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모르고 있었다 ② 무직(구직자, 직업훈련자 등)
③ 자영업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임금근로자(전일제) ⑥ 임금근로자(시간제)
⑦ 학생 ⑧ 기타(자세히:_____)

문13) 귀하는 **현재** 자녀 아버지의 직업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모른다 ② 무직(구직자, 직업훈련자 등) ③ 자영업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임금근로자(전일제) ⑥ 임금근로자(시간제)
⑦ 학생 ⑧ 기타(자세히:_____)

※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현실에 비추어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문14) 귀하가 자녀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자녀 낳기 전 ② 자녀 낳은 후
③ 입양을 의뢰 했다가 마음이 바뀜 ④ 임신사실직후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15) 귀하가 자녀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나 혼자 결정 ② 미혼부(자녀 아버지) ③ 나의 가족
④ 미혼부(자녀 아버지)의 가족 ⑤ 시설/기관 상담원 ⑥ 종교인
⑦ 또래친구 ⑧ 미혼모 경험자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16) 귀하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있다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월평균 _____만원/ 혹은 일시금 _____만원)
② 아니오

문17) 귀하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고 계십니까?
① 예 ☞ **문17-1** ② 아니오 ☞ **문18로**

문17-1)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의 월평균 액수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만원
혹은 일시금 _____만원,
기타_____만원

문18) 귀하는 자녀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9) 귀하는 자녀 아버지에게 양육 사실을 알렸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19-1**

문19-1)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는 곳이나 연락처를 몰라서 ② 자녀의 친권을 빼앗길까봐
③ 연락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④ 판단이 되지 않아 망설이는 중
⑤ 기타(자세히:_____)4

문20) 귀하는 자녀의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문20-1** ② 그럴 필요 없다 ☞ **문21으로**

문20-1) 귀하는 자녀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① 원하는 것 없음 ② 자녀 양육비 지급
③ 아버지의 가족관계등재부에 자녀로 입적
④ 자녀와 정기적인 교류 ⑤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자 역할
⑥ 나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
⑦ 자녀와 부정기적인 교류(입학/졸업 등의 행사참여)
⑧ 기타(자세히:_____)

문21)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내용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자녀 아버지의 소식이나 근황을 알고 있다	①	②	⑨
자녀 아버지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	①	②	⑨
자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①	②	⑨
자녀 아버지의 직장(혹은 학교)를 알고 있다	①	②	⑨
자녀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⑨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⑨

※ 다음은 학교 교육 및 직업 훈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것에 √ 표 해주십시오.

문22) 귀하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문22-1** ② 아니다 ☞ **문22-2**

문22-1)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원격 교육기관 포함)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계 고등학교
④ 전문계 고등학교 ⑤ 2-3년제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이상

문22-2) 귀하가 최종적으로 다녔던 학교는 무엇입니까?(원격 교육기관 포함)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계 고등학교
④ 전문계 고등학교 ⑤ 2-3년제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이상

문23) (귀하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 23-1** ② 아니오 ☞ **문 24로**

문23-1) 왜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① 학교의 징계 또는 강요로
② 임신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스스로 자퇴
③ 부모님의 권유로 ④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⑤ 기타(자세히: _____)

문23-2) 귀하는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십니까?

① 그렇다 ☞ **문 23-2-1** ② 아니다 ☞ **문 23-3**
③ 잘 모르겠다 ☞ **문 23-3**

문23-2-1)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계속한다면 어떤 유형의 교육을 가장 희망합니까?

① 정규 학교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② 원격교육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③ 대안학교 교육 + 검정고시
④ 독학(혹은 홈스쿨) + 검정고시

문23-3) 중퇴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24) 귀하는 임신 혹은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많이 있다 ☞ **문24-1** ② 조금 있다 ☞ **문24-1로**
③ 별로 없다 ☞ **문25** ④ 전혀 없다 ☞ **문25로**

문24-1) 학교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면, 주로 누구에게 차별이나 소외를 당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 ② 담임교사/ 지도교수
③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들
④ 담임 이외의 다른 교사/ 지도교수 이외의 다른 교수
⑤ 친한 친구 이외의 다른 학생들
⑥ 기타 (자세히:_____)

문24-2) 직장에서 주로 누구에게 차별이나 소외를 당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직장의 인사파트 담당자 ②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
③ 직장의 일반 직원들 ④ 기타 (자세히:_____)

문24-2-1) 직장에서 미혼한부모로서 받은 차별이나 불이익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답해주세요.

① 따돌림이나 쑤근거림 ② 승진기회 차별
③ 업무배치에서의 차별 ④ 성희롱
⑤ 모욕적인 언행 ⑥ 기타 (자세히:_____)

문25) 귀하가 자립하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26) 자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력무관 ② 중졸 ③고졸
④ 2-3년제 전문대 졸 ⑤ 4년제 대졸 이상

문27) 귀하는 임신 혹은 출산 이후에 정규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직업(교육)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합니다.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강좌와 교양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래교실 등 단순한 취미활동은 제외되고 정규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학원수강이나 과외도 제외됩니다.
※ **직업학교의 교육도 직업교육(훈련)**에 포함됩니다.

*① 있다 ☞ **문27-1 으로*** *② 없다 ☞ **문28로***

문27-1) (있다면)교육받은 직업 훈련프로그램명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_____

문27-2)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았던 기관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② 직장/근무 장소
③ 사설학원 ④ 공공직업훈련기관
⑤ 미혼모 관련시설 ⑥ 통신강좌
⑦ 기타(자세히:_____)

문27-3) 직업훈련 비용은 **누가 주로** 부담하였습니까?(**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해준 것을 기준으로 하나만**)

① 본인 전액 부담 ② 부모님(혹은 가족, 친지)
③ 본인과 부모(혹은 가족-친지)가 공동으로
④ 직장(회사) ⑤ 정부나 공공기관
⑥ 미혼모 보호시설 ⑦ 기타(자세히:_____)

문27-4) 귀하가 임신 및 출산 이후 직업훈련을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기초지식 부족 ② 훈련비용 부담
③ 나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 선택
④ 훈련시간 동안의 자녀돌봄 ⑤ 미혼모에 대한 편견
⑥ 체력소모 및 건강 문제

문27-5) 귀하가 받은 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경우 **가장 오랫동안 교육 받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십시오)

_____개월

문27-6) 임신 혹은 출산 이후 받았던 직업훈련은 귀하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큰 도움이 됨 ② 도움이 됨
③ 그저 그런 편임 **①~③ 응답자 모두 문29로**
④ 도움이 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④⑤ 응답자 모두 문27-6-1 으로**

문27-6-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응답자 모두 문29로**
① 전문성 부족 ② 불투명한 직업전망 ③ 강사의 자질 부족
④ 교육운영 및 관리부실
⑤ 기타(자세히:_____)

문28) 임신 혹은 출산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②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훈련이 없었다
③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④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⑤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다
⑥ 체력 혹은 건강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⑦ 본래의 직장으로 복귀해서
⑧ 기타(자세히:_____)

문29) 귀하는 앞으로 자립을 위해 (추가로)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문29-1** ② 대체로 그렇다 ☞ **문29-1**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문30**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문30**

문29-1) 귀하가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 다음은 귀하의 현재 직장생활 및 과거의 직장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문30) 귀하는 임신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30-1로** ② 아니오 ☞ **문31으로**

문30-1)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① 직장(직장상사)의 징계 또는 강요로
② 임신사실이 알려질까봐 스스로 퇴직
③ 부모님의 권유로 ④ 출산후 몸조리를 위해
⑤ 기타(자세히: _____)

문30-2) 그 직장에서는 얼마동안 근무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문31) 귀하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다 ☞ **문31-1** ② 없었다 ☞ **문32(p.9)**로

※ 다음은 현재 취업자인 분들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주된 일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주된 일은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일을 의미합니다.

문31-1) 귀하가 하신 일은 어떤 직종의 일입니까? (여러가지 일을 하신 경우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
① 관리직 혹은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④ 농림어업 숙련직 ⑤ 기능직/ 조립직 ⑥ 단순노무직

문31-2)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타인회사에 고용되어 전일제로 근로
② 타인회사에 고용되어 시간제로 근로/아르바이트
③ 자영업 ④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도움
⑤ 기타(자세히:_____)

문31-3) 귀하는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날의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평균 _____일 / 하루 평균 _____ 시간

문31-4) 귀하가 현재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문31-5)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만원
(소득은 세금공제 이전금액을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문31-6)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런편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31-7) 현재 귀하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② 저임금 ③ 장시간 근로
④ 불투명한 직업전망
⑤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⑥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⑦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⑧ 기타(자세히:_____)

문31-8) 귀하의 직업경력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자립할 수 있을 만한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후 문33으로 가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미취업자인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2) 귀하는 현재 직장이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① 그렇다 ☞ **문32-1** ② 아니다 ☞ **문33**

문32-1) 귀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32-2** ② 아니다 ☞ **문33**

문32-2) 귀하는 **한 해 동안(2009년 8월~2010년 8월)** 취업을 위해 일자리에 몇 번이나 지원해보셨습니까?

① 지원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5-10회 ⑥ 10회 이상

문32-3) 귀하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②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③ 경력이 부족해서 ④ 미혼모라는 편견 때문에
⑤ 나이가 맞지 않아서 ⑥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아서
⑦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⑧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⑨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⑩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⑪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⑫ 기타(자세히:_____)

※ 다음은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실제로 지원받은 경험을 중심으로 귀하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 표 해주십시오.

문33) 귀하는 모자관련시설(미혼모자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 머무르고 있거나 머물러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현재 생활하고 있다 ☞ **문33-1** ② 생활한 경험이 있다 ☞**문33-1로**
③ 전혀 경험한 바 없다 ☞ **문34로**

문33-1) (미혼모자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 **미혼모시설 이용 경험자만)** 시설에 입소한(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출산지원을 받기 위해 ②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③ 갈 곳이 없어서 ④ 취업,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⑤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⑥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⑦ 기타(자세히:_____)

문33-2) (미혼모자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 **미혼모시설 이용 경험자만**) 미혼모 시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미혼모 시설은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② 단체 생활을 위한 규칙은 대체로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③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④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미혼모와 입양미혼모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⑥ 다양한 연령층의 미혼모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33-3) (미혼모자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 **미혼모시설 이용 경험자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미혼모시설을 권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아니다(그 이유는? 자세히: _____)

문34) 다음은 미혼한부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지원내용입니다. 귀하가 **현재 알고 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표 해주십시오

	알고 있는지 여부		지원받은 경험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①	②	①	②
2.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지원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지원 월 10만원)	①	②	①	②
3. 보육료 지원	①	②	①	②
4.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5.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6. 학습지원(학교 학습 또는 검정고시 등)	①	②	①	②
7. 임대주택 등 주거지 제공	①	②	①	②
8. 친자확인 및 자녀양육비행소송지원 (무료법률지원)	①	②	①	②
9. 자산형성계좌 지원(만 25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가구별 5~20만원 한도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별도 계좌로 입금시켜 자산형성을 지원)	①	②	①	②

문34-1) 위의 지원서비스 가운데 귀하가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번호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문35) 미혼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지원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
② 정보의 부족 ③ 지원기관의 미비 ④ 절차의 복잡함
⑤ 지원서비스 부실 ⑥ 일반인들의 따가운 시선
⑦ 관련 공무원이나 복지사의 태도(편견/불친절 등)
⑧ 기타(자세히:_____)

문36) 다음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이나 지식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내용	예	아니오
출생신고 당시 동사무소(구청) 담당자가 미혼한부모 지원서비스를 설명해주었다	①	②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모(부)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미혼모자시설(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서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예: 서울한부모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저소득 미혼모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을 알고 있다	①	②
아동보육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정부가 자녀양육비 이행청구소송 비용 지원 하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정부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보건 및 영양과 관련된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문37)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은 미혼 한부모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①	②	③	④
2. 생계비 지원	①	②	③	④
3. 자녀양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4. 자녀 돌봄(돌보미 파견) 및 보육지원서비스(보육료면제/감면 등)	①	②	③	④
5. 미혼한부모지원시설(구 모자원, 공동생활가정) 입소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6.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진학 또는 학업지속 지원	①	②	③	④
7. 임대아파트 입주권	①	②	③	④
8. 보호시설 및 공동주거시설확충	①	②	③	④
9. (비양육)미혼부의 양육비 지급제도 강화	①	②	③	④
10. 상담서비스	①	②	③	④
11.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①	②	③	④

문37-1) 위의 지원서비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u>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u> 골라 번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문38) 미혼모를 위한 자조모임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참여할 생각 없다 ☞ **문39로**

②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 ☞ **문38-1**

③ 반드시 참여하겠다 ☞**문38-1** ④ 현재 참여하고 있다 ☞**문38-1**

문38-1)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자조모임은 어떤 종류입니까?
①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이나 미혼모관련시설 등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
② 개별적인 자조모임(스스로 구성)
③ 기타(자세히:_____)

문38-2)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자조모임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입니까?
① 정서적 지지 ② 양육정보 교류 ③ 취업정보 교류
④ 학업정보 교류 ⑤ 기타(자세히:_____)

※ 다음은 귀하의 부모와 이웃, 친구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39) 귀하의 부모님에 관한 간략한 인적사항과 교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경우 해당되는 분만 응답해주십시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는 문 40)로 가십시오.**

문39-1) 부모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_____세, 어머니_____세

문39-2) 부모님께서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의 보기를 보고 번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_____, 어머니_____

① 관리직 혹은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④ 농림어업 종사직	⑤ 기능직/ 조립직	⑥ 단순노무직
⑦ 전업주부	⑧ 직업이 없다	

문39-3) 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방문하십니까? 아래의 번호로 답해주십시오.
아버지_____, 어머니_____

① 같이 살고 있다(☞문 40)	② 매주 1회 이상	③ 매달 1회 이상
④ 1년에 1회 이상	⑤ 몇 년에 한번씩	
⑥ 전혀 만나지 않는다.	⑦ 해당 없음	

문39-4)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접 만나는 것 이외에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_____ 어머니_____

① 거의 매일	② 매주 1회 이상	③ 매달 1회 이상
④ 1년에 1회 이상	⑤ 몇 년에 한번씩	⑥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⑦ 해당없음		

문40)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귀하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두 분**만 골라 번호로 답해주십시오. 한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한분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기>	①부모	②형제자매	③친척	④조부모	⑤자녀의 아버지
	⑥친구	⑦직장 동료	⑧이웃	⑨선생님	⑩아무도 없다

문40-1)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1순위_____, 2순위_____

문40-2)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1순위_____, 2순위_____

문40-3) 자녀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1순위_____, 2순위_____

문40-3)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1순위_____, 2순위_____

문40-4)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1순위_____, 2순위_____

문41) 귀하는 평소 미혼한부모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내용	전혀 차별이 없다	거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는 편이다	매우 심각한 차별이 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가족관계에서	①	②	③	④	⑨
친구와의 교제 시	①	②	③	④	⑨
이웃과의 관계에서	①	②	③	④	⑨
직장에서	①	②	③	④	⑨
관공서 등 관련된 업무 시	①	②	③	④	⑨
자녀의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⑨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오니, 정확하게 √표 해 주십시오.

문42)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자녀 ② 자녀의 아버지 ③ 내 부모
④ 내 형제 및 친척 ⑤ 내 친구 ⑥ 자녀아버지 부모
⑦ 자녀아버지의 형제 및 친척 ⑧ 시설이용자 ⑨ 기타(자세히:_____)

문43)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집의 소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자세히:_____)

문44) 귀하는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월평균 저축액_____만원) ② 아니오

문45) 귀하는 부채가 있으십니까?

① 예 ☞ (현재 총부채액:_____만원) ② 아니오

문46) 귀하의 현재 소득항목 중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고 얼마인지를 **(만원 단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 목	월평균 소득액	해당없음
① 가족으로부터의 지원(형제·자매 및 부모 지원 포함)	월 □□□□ 만원	
② 미혼부 또는 미혼부 가족의 지원	월 □□□□ 만원	
③ 정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월 □□□□ 만원	9
④ 정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월 □□□□ 만원	9
⑤ 정부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자산형성계좌 지원액 포함)	월 □□□□ 만원	9
⑥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등의 지원	월 □□□□ 만원	
⑦ 기타(부동산 임대소득, 저축 이자 등)	월 □□□□ 만원	

(* 일시금으로 받으신 경우 당시 지원받은 금액을 월평균 금액(1/12)으로 나누어 말씀해주십시오).

문47) 귀댁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 답해주세요.

항 목	월평균 지출액
① 자녀의 사교육비(학원, 과외, 학습지, 조기교육비 등)	월 □□□□ 만원
② 자녀의 공교육비(등록금 및 학교교재 비용 등)	월 □□□□ 만원
③ 자녀양육비(유치원, 보육시설이용료,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 등)	월 □□□□ 만원
④ 식료품비	월 □□□□ 만원
⑤ 주거비(집세, 관리비 등)	월 □□□□ 만원
⑥ 자녀의료비(예방접종, 치과치료 등 병원이용 비용 등)	월 □□□□ 만원

문47-1) 위의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제시한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골라 번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문48) 귀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① 예 ☞ **문49** ② 아니오 ☞ **문48-1**

문48-1) **(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②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③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④ 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자세히:_____)

문49) 귀하는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① 예 ☞ **문50** ② 아니오 ☞ **문49-1**

문49-1) **(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②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③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④ 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자세히:_____)

문50) 귀하는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으로 등록되어있습니까?

① 예 ☞ **설문종료** ② 아니오 ☞ **문50-1)로**

* 국민기초수급권자 이거나 최저생계비 130%이하가구는 문 48), 문49) 항목 가운데 해당되는 것에 응답(**예**)함. 단, 최저생계비 130%초과~150%이하의 가구의 경우만 문 50)의 해당자로 응답(예)로 표기함.

문50-1)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②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③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④ 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자세히:_____)

◓ 내년에는 미혼한부모 관련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예(조사에 응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라고 답하신 분은 알려주신 연락처나 주소지로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지속적인 참여의사가 확인되면, 본원의 연구진들이 바로 설문지를 배송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화번호 :_____

배송 받을 주소지 :_____

※ 본조사에서는 설문응답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상품권(2만원 상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모두 마치신 후, 연락가능하신 연락처(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상품권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공동생활가정 등 미혼모가족지원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을 통해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Abstract

The Survey of unwed mom's child support and self-reliance

Hyeyoung Kim
Mijeong Lee
Tackmeon Yi
Eunji Kim
Boyoung Sun
Yeonjin Chang

The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cultural changes toward more sexually tolerant society, due to the surge of atypical family types precipitated by an aging society & low birthrates, increasing divorce rate, delayed marriage age, and redefined sexuality. As the age of first sexual experience is getting low and society starts to accept sex openly, taboo on premarital sex is apparently eased. Nevertheless, as social tolerance towar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by unmarried women remains quite low, unmarried mothers have experienced many troubles.

Childbirth outside of wedlock (of single mothers) is estimated to be about 6,000 to 10,000 children in Korea per year. However, the exact number is

unknown. Social prejudice and inhospitality cause women to give up rasing their children or induce having an abortion. Even though the reports of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mothers rearing her child, the job insecurity of unwed-moms, unemployment, and low level of government support disturb their child support and self reliance.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s how many difficulties unwed mothers have in daily life, especially child-caring and sustentation. And this study analyzes how pregnancy and childbirth changes single(unwed) mother's life and further how their changed life affect their child rearing. Not only analyzing social support for single mother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but also reviewing the social provision for single mom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s study suggests an efficient welfare services for unwed moms.

The main methodologies incorporated in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n unwed-moms. On top of that, in order to produce relevant policy issues for Korean society, the experts conference and the facility personnel workshop were arrang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single moms, and survey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y KWDI.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unwed-moms' with their child. Total 1,200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by post-mail and returned 882. Among them, 72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analysis.

The following are policy agenda based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of the 727, 51.4% were unwed-moms in their twenties, 35% were 30's female. Most of unwed-moms have a child and 82.8% were under age 5. One of the most obvious findings is that single-moms have been tough on rearing their children, expecially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time for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lso, they had poor housing, and nearly half the unwed-moms(46%) had debt about thirteen million won. Thus, as the child

rearing ratios of single mothers are growing as well, supporting for single mothers will enable them to be independent earlier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strategies to enlarge the supporting range.

Secondly, as a result of the pregnancy and childbirth, many single-moms experienced drop out of school and career interruptions. 45% of the unwed-moms had a job, but level of income was very low, a monthly average about one million won(1,053,300 won). 35.6% of the unwed-moms were a person who had experienced job training, and the percentage of single-moms who need a new job training were 66.9%. They had experienced difficulties in job training due to caring of their children. Therefore, facilitating career-training and job placement is needed for prepare unwed mother's self-reliance foundation. For this, expanding subsidies for caring child service is needed.

Thirdly, single-moms have experienced the change in their lives and blocking off social networks due to their pregnancy and childbirth. Thus, building cooperating network in local communities is needed to single parents for providing direct service.

Fourthly, characteristics of unwed mom's family is distinct from another family's characteristics. So developing suitable welfare service program for characteristics of unweds mothers is very important. Also, to cope with the individual needs of single mothers, it is urgent to provide proper services and promote experts for being able to link these services.

At last, as single mothers have experienced severe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rograms are established about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to single mothers, in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implement preventing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

연구보고 2010-56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2010년 12월 24일 인쇄
2010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 **백 희 영**
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00-01